

相續·贈與稅制의 合理化 方案

各章別執筆者

序章 韓相國·裴俊皓	第3章 韓相國
第1部	第4章 裴俊皓
第1章 裴俊皓	第5章 裴俊皓
第2章 裴俊皓	第6章 李光宰
第3章 裴俊皓	第7章 韓相國
第4章 韓相國	終章 韓相國·裴俊皓
第5章 裴俊皓	附錄
第2部	附錄 1. 韓相國
第1章 韓相國	附錄 2. 韓相國
第2章 韓相國	附錄 3. 裴俊皓

序 言

우리나라에 相續稅制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62년전인 1934년이다. 日帝가 戰費를 調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이후 相續稅法은 1950년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고 또 그 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러나 부분적인 개정에 그쳐 社會·經濟環境이 크게 달라진 오늘까지 立法 當時의 基本骨格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즉 그간의 개정은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의 확대에 대응하여 一部 控除項目을 신설하거나 既存 控除限度額을 인상하여 免稅點을 상향조정하고, 과세베이스의 확대에 따라 稅率體系를 하향 조정하여 세부담의 급격한 증대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밖에 租稅回避 防止措置와 民法 改正에 따른 후속 改正도 있었다.

相續稅 稅收는 그 규모가 크지 않다. 이는 상속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최근 들어 상속세수가 빠르게 증가해 온 것은 地價의 평가방법이 公示地價로 바뀐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1993년 이후 도입된 金融實名制와 不動產實名制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상속세수의 국세내 비중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國稅廳과 內務部에서 준비중인 綜合電算網이 정상 가동되면 個人別 財產保有 現況의 파악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상속세 징세행정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상속세법을 둘러싼 納稅·徵稅環境이 크게 바뀔에 따라 시대상황에 적응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속세법을 개정하자는 요구가 각계에서 제시되어 왔다. 本 報告書는 이같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現行 相續稅法의 問題點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으로써 변화하는 사회·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相續稅制를 확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筆者들이 본 연구를 통해 중점을 두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보아 세 가지이다. 첫째,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을 가진 被相續人 家族들을 상속세 세 부담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는 것이다. 또 상속세 세 부담을 우려해 被相續人 家族들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변칙 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둘째, 규정이 애매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은 規定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은 없으면서 稅制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規定들을 정비하고, 또 경제활동의 다변화로 새롭게 課稅對象으로 포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는 사항들에 대해 적합한 규정을 新設하자는 것이다. 셋째, 相續稅制內의 課稅의 公平性を 저해하는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다른 稅目과의 상호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 公平性和 效率性的 관점에 입각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2부로 구성되어 있다. 第1部는 相續·贈與稅制의 理論과 實際를 다루고, 第2部는 相續·贈與稅制의 合理化 方案을 기술하고 있다. 第1部는 第2部의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相續行動과 상속세의 經濟學的인 考察, 그리고 相續稅 課稅 實態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第2部는 현행 상속세법의 바람직한 改正方向을 모색하는 작업으로 먼저 現況과 問題點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複數의 政策代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1996년에는 정책당국에 의해 상속세법의 대폭적인 개편이 시도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改編方向과 1996년도 개정 상속세법간에는 相異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筆者들은 1996년도 개정 세법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들이 향후에 단계적으로 반영되어 우리의 相續·贈與稅制가 체계적이고 순리에 맞는 稅制로 정비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本 報告書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인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문제는 별도의 보고서(정책보고서 96-

10;金珍洙)에서 다루고 있다.

연구진은 本院의 韓相國 博士, 裴竣皓 博士 그리고 李光宰 會計士로 구성되었다. 本院의 두 박사는 財政經濟院의 금년도 중점사업의 하나였던 相續稅法 改正에 實務作業팀의 일원으로서 적극 참여하였다. 李 會計士는 評價分野의 전문가로서 本 研究에 참여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이번 상속세법의 개정작업과 같이 연구자가 실무작업반에 초반부터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 향후의 세법개정 작업에 귀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韓 博士는 본 연구의 總括로서 지난 6월의 公聽會에서 주제발표를 담당하는 등 금년도 상속세법 개정에 깊숙히 참여하였다.

本 報告書에는 집필자 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주장이 소개되고 있다. 附錄의 公聽會 發表內容에는 지난 6월의 공청회 석상에서 발표된 討論者 및 客席質疑者들의 다양하고 신선한 주장이 실려 있다. 이들의 발언요지를 읽다보면 금년도 稅法改正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우리 상속세법의 문제점으로 거론될 수 있는 사항들이 조목조목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각계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本 報告書가 향후 상속세법 개정시의 指針書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필자들은 본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먼저 아이디어의 개발과 다듬질에 도움을 주신 公聽會 席上의 토론자 여러분, 財政經濟院 稅制室의 李根京 局長, 韓廷基 課長, 金榮龍 課長, 金炯澈 書記官, 실무작업반의 崔明根 教授, 李鎮淳 教授, 국세청의 황일성 과장, 金吉榮 事務官, 金冕圭 稅務士, 손봉숙 소장 그리고 보고서 내용을 논평해준 尹建永 教授, 3인의 논평자, 本院의 安鍾錫 博士에게 감사드린다. 또 상속세 과세 기초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해준 재정경제원 세제실과 국세청 재산세국의 담당자, 그리고 이 자료를 전산분석하는 데 힘을 쓴 池星林 前 研究員, 또 연구 자료의 정리와 분석, 그리고 교정작업을 도와준 沈在珍 主

任研究員, 林 駿 研究員, 洪忠基 研究員, 南美愛 研究助員, 安相淑 研究助員, 끝으로 보고서의 발간 작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애를 쓴 崔秉圭 출판팀장에게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제시하는 政策代案들이 향후 우리 相續·贈與稅法의 개정에 반영되어 公平하고 能率的인 相續·贈與稅制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들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韓國租稅研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년 12월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崔 洸

目 次

序 章	19
第 1 部 相續·贈與稅의 理論과 實際	27
第 1 章 遺產·相續行動의 經濟理論	29
第 1 節 問題의 所在	29
第 2 節 遺產·相續行動의 經濟理論	30
第 2 章 相續稅의 經濟學的 考察	60
第 1 節 相續稅의 經濟的 波及效果	60
第 2 節 相續稅 課稅類型別 特徵	70
第 3 節 相續稅의 세 가지 課稅根據	76
第 3 章 相續稅 課稅 實態：相續人數와 相續財產	102
第 1 節 相續家族의 相續人數 規模와 構成分布	102
第 2 節 遺產價額 階層別 相續財產의 規模와 構成分布	107
第 3 節 課稅價額 階層別 相續財產의 크기와 構成分布	120
第 4 節 課稅價額 階層別 債務額의 크기와 構成分布	121
第 4 章 相續·贈與 關聯稅制의 國際比較	122
第 1 節 制度와 稅負擔의 國際比較	122
第 2 節 美 國	126
第 3 節 英 國	133
第 4 節 獨 逸	137

第5節	프랑스	141
第6節	日本	143
第7節	臺灣	148
第8節	우리나라	153
第5章	우리나라의 中産層 規模 推定	162
第1節	中産層의 定義와 中産層 減少假說	163
第2節	우리나라 中産層의 定義와 中産層 規模 推定	165
第3節	中産層의 意思決定과 財政規模의 不安定性	176
第2部	相續·贈與稅制의 合理化 方案	179
第1章	相續·贈與稅制 改編의 必要性 및 基本方向	181
第1節	現況과 問題點	181
第2節	改編의 必要性和 基本方向	192
第2章	課稅類型의 選擇	199
第1節	課稅類型의 概觀 및 比較	199
第2節	課稅類型의 選擇	202
第3章	과세베이스의 擴充 方案	210
第1節	課稅對象의 包括主義 轉換	210
第2節	人別財産管理體系의 構築	216
第3節	金融資産 一括照會制度의 復活	221
第4節	借名株式의 實名化 誘導	224
第5節	贈與擬制規定의 贈與推定規定으로의 轉換	231
第4章	控除制度	236
第1節	配偶者 相續控除制度	236
第2節	시뮬레이션을 통한 配偶者 相續控除制度 改編效果 分析	256

第 3 節	配偶者 贈與控除	277
第 4 節	基礎控除, 人的控除, 物的控除의 單純化	281
第 5 節	贈與控除制度	290
第 6 節	相續後 發生하는 特別損失 控除	292
第 7 節	短期再相續控除制度	293
第 8 節	控除制度 改善方案 要約	295
第 5 章	稅率體系	299
第 1 節	稅率體系	299
第 2 節	世代省略 相續·贈與에 대한 適用 稅率	306
第 3 節	相續·贈與 不動產에 대한 移越課稅: 讓渡益 課稅	310
第 6 章	相續財產의 評價	314
第 1 節	相續財產 評價의 一般原則	314
第 2 節	上場法人의 支配株式 割増評價	317
第 3 節	上場株式의 評價	329
第 4 節	場外登錄法人의 支配株式 評價	330
第 5 節	非上場株式의 評價	331
第 6 節	土地·建物의 評價	355
第 7 節	擔保提供된 財產價額의 評價	358
第 8 節	其他 財產에 관한 評價	365
第 9 節	相續後 發生하는 特別損失費用	368
第 7 章	其 他	370
第 1 節	累積合算課稅期間의 延長	370
第 2 節	葬禮費用의 現實化	371
第 3 節	相續登記 後의 協議分割에 대한 贈與稅 課稅	373
終 章	要約 및 政策建議	376

參考文獻	393
〈附錄 1〉 相續·贈與稅 改正 沿革表	401
〈附錄 2〉 公聽會案	408
〈附錄 3〉 公聽會 發表內容	451

表 目 次

〈表 1-1-1〉 家計資産과 遺産의 比率(日本)	37
〈表 1-1-2〉 資産分布 不平等度에 대한 遺産의 役割 (지니계수 분해, 日本)	37
〈表 1-2-1〉 承繼課稅 運用 例	74
〈表 1-2-2〉 期間別 資産水準	84
〈表 1-3-1〉 相續家族의 相續人數別·家族數別 分布	103
〈表 1-3-2〉 相續家族의 配偶者 有無別 子女數 分布	104
〈表 1-3-3〉 相續家族의 子女數別·孫子女數別 分布 (配偶者 無)	105
〈表 1-3-4〉 相續家族의 子女數別·孫子女數別 分布 (配偶者 有)	105
〈表 1-3-5〉 配偶者別 直系尊屬別 分布	106
〈表 1-3-6〉 配偶者別 兄弟姊妹數別 分布	106
〈表 1-3-7〉 配偶者 其他相續人數別 分布	106
〈表 1-3-8〉 遺産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제1분위) ...	110
〈表 1-3-9〉 遺産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제2분위) ...	111
〈表 1-3-10〉 遺産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제3분위) ...	112
〈表 1-3-11〉 遺産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제4분위) ...	113
〈表 1-3-12〉 遺産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제5분위) ...	114
〈表 1-3-13〉 遺産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제6분위) ...	115
〈表 1-3-14〉 遺産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제7분위) ...	116
〈表 1-3-15〉 遺産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제8분위) ...	117
〈表 1-3-16〉 遺産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제9분위) ...	118

〈表 1-3-17〉	遺産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제10분위) …	119
〈表 1-3-18〉	課稅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와 構成分布 …	120
〈表 1-3-19〉	課稅價額 階層別 債務 등의 크기와 構成分布 …	121
〈表 1-4- 1〉	相續·贈與稅制의 國際比較 ……………	124
〈表 1-4- 2〉	美國의 統合移轉稅率 ……………	128
〈表 1-4- 3〉	獨逸 相續稅(贈與稅)의 課稅區間 및 稅率 …	139
〈表 1-4- 4〉	親密度에 따라 差等適用되는 累進稅率 ………	142
〈表 1-4- 5〉	日本의 相續稅率 ……………	145
〈表 1-4- 6〉	日本의 贈與稅率 ……………	145
〈表 1-4- 7〉	臺灣의 相續 및 贈與稅 稅率 ……………	149
〈表 1-4- 8〉	우리나라의 相續稅 稅率 ……………	155
〈表 1-4- 9〉	우리나라의 贈與稅 稅率 ……………	155
〈表 1-4-10〉	相續稅 人的控除 및 物的控除 ……………	157
〈表 1-5- 1〉	評價基準別 中産層 規模(우리나라) ………	175
〈表 2-1- 1〉	年度別 死亡者 對 課稅件數 比率의 國際比較	181
〈表 2-1- 2〉	相續·贈與稅의 對 內國稅比 推移 ……………	182
〈表 2-1- 3〉	相續財産 課稅現況(1995) ……………	183
〈表 2-1- 4〉	贈與財産 課稅現況(1995) ……………	184
〈表 2-1- 5〉	相續財産 分布現況 ……………	184
〈表 2-1- 6〉	年度別 相續·贈與稅의 不服請求 比率 ………	185
〈表 2-1- 7〉	年度別 平均壽命 ……………	192
〈表 2-1- 8〉	年度別 死亡者數 및 死亡率 ……………	193
〈表 2-1- 9〉	年度別 老齡化指數 ……………	193
〈表 2-1-10〉	年度別 男女 就業者數 ……………	194
〈表 2-4- 1〉	各種 控除의 利用比率과 控除額(1992) ………	237
〈表 2-4- 2〉	配偶者 控除制度의 國際比較 ……………	238
〈表 2-4- 3〉	相續稅 控除額의 推移 ……………	244
〈表 2-4- 4〉	相續財産 課稅現況(1995) ……………	253

〈表 2-4- 5〉	階層別 相續稅 負擔率과 稅負擔 分布 (相續開始年度 適用률)	265
〈表 2-4- 6〉	配偶者 控除制度 變更에 따른 稅收變化	266
〈表 2-4- 7〉	階層別 相續稅 負擔率과 稅負擔 分布 (全額控除, 法定相續分控除(1))	267
〈表 2-4- 8〉	階層別 相續稅 負擔率과 稅負擔 分布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268
〈表 2-4- 9〉	階層別 相續稅 負擔率과 稅負擔 分布 (法定相續分控除(2))	269
〈表 2-4-10〉	우리나라의 相續稅 控除制度 概要	282
〈表 2-4-11〉	主要國의 贈與控除	291
〈表 2-4-12〉	主要國의 短期相續控除率	294
〈表 2-4-13〉	短期相續控除 控除率(案)	295
〈表 2-5- 1〉	우리나라의 相續·贈與稅 稅率(1996)	299
〈表 2-5- 2〉	주요국의 相續·贈與稅 稅率	300
〈表 2-5- 3〉	相續·贈與稅率 改正(案)	302
〈表 2-5- 4〉	相續·贈與稅率 改正案	303
〈表 2-5- 5〉	우리나라의 相續·贈與稅 稅率(1996)	305
〈表 2-6- 1〉	移延資産의 種類	339
〈附表 1- 1〉	相續稅率의 調整沿革	401
〈附表 1- 2〉	贈與稅率의 調整沿革	402
〈附表 1- 3〉	相續稅의 控除額 調整沿革	403
〈附表 1- 4〉	贈與稅의 控除額 調整沿革	406
〈附表 2- 1〉	相續·贈與稅가 國稅에서 占하는 比重	410
〈附表 2- 2〉	稅收比重의 國際比較	410
〈附表 2- 3〉	相續財産 課稅 現況(1995)	410
〈附表 2- 4〉	贈與財産 課稅 現況(1995)	411
〈附表 2- 5〉	相續財産 分布 現況(1995)	411
〈附表 2- 6〉	主要國의 相續·贈與稅 課稅 現況	414

〈附表 2- 7〉	相續·贈與稅의 稅率 및 課稅區間	414
〈附表 2- 8〉	主要國의 相續·贈與稅 稅率 및 課稅區間	416
〈附表 2- 9〉	現行 相續控除制度	424
〈附表 2-10〉	主要國의 贈與控除制度	428
〈附表 2-11〉	主要國의 短期再相續 控除率	437
〈附表 2-12〉	加算稅와 稅額控除	442
〈附表 2-13〉	主要國의 合算課稅期間	443
〈附表 2-14〉	主要稅目의 物納基準金額 및 對象財産	448
〈附表 3- 1〉	討論內容 要約	452

圖 目 次

[圖 1-1-1]	子女教育水準 選擇	51
[圖 1-1-2]	世代間 富移轉曲線과 長期均衡	53
[圖 1-1-3]	世代間 富移轉曲線과 長期均衡 (教育效果曲線 彈力性 考慮)	59
[圖 2-1-1]	相續稅의 課稅體系	186
[圖 2-1-2]	贈與稅의 課稅體系	187
[圖 2-4-1]	配偶者 有無別 相續稅 負擔率 (相續開始年度 適用율)	270
[圖 2-4-2]	相續稅 負擔分布 (3천만원, 全額控除, 法定相續分控除(1))	271
[圖 2-4-3]	配偶者 有無別 相續稅 負擔率(全額控除)	272
[圖 2-4-4]	配偶者 有無別 相續稅 負擔率 (法定相續分控除(1))	273
[圖 2-4-5]	相續稅 負擔分布 (法定相續分控除(1), 法定相續分控除(2))	274

序 章

相續財産과 遺産은 같은 표현인 것 같지만 풍기는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 相續財産이라고 할 때는 재산을 물려받는 相續人의 입장에 중점을 두고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반면, 遺産이라고 할 때는 被相續人의 입장에 중점을 두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相續財産이든 遺産이든 이들은 被相續人이 남겨놓은 재산을 지칭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따라서 이 두 용어는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유사한 혼동이 相續行動과 遺産行動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다만 최근에 들어 경제의 스톡화가 진행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이들의 勤勞期末이나 老齡期의 행동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산행동이니, 유산동기니 하는 경제학적인 용어가 과거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유산을 남기는 被相續人의 행동패턴과 그 같은 행동을 가져오는 動機의 실상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先代로부터 받는 遺産과 自身の 당대에 축적한 자산은 그 성격이 다르다. 먼저 자산의 보유기간이 다르고, 저축 주체가 상이하다. 곧 유산은 보유기간이 길고 先代가 행한 저축인 반면 당대 축적자산은 보유기간이 짧고 자신이 행한 저축이다. 그러나 같은 점도 있다. 이들 자산이 모두 貯蓄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따라서 유산행동의 動機를 貯蓄動機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점이다.

저축동기는 크게 利己主義의 動機와 利他的 動機로 나눌 수 있다. 이기주의적 동기에는 라이프사이클 動機와 豫備的 動機가 있고 이타적 동기에는 純粹利他動機가 있으며 이들의 중간영역에 利己主

義的 動機의 변형인 戰略的 遺産動機와 交換動機가 있다.

이 때 라이프사이클 動機라 함은 자신의 一生週期에 맞추어 필요한 子女教育, 結婚, 住宅마련, 老後, 旅行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사망시까지 그 동안 저축을 전부 소진할 수 있도록 消費計劃을 세우는 행동을 지칭한다. 물론 본인의 의도와 달리 일찍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유산을 남기게 된다. 豫備的 動機라 함은 주로 자신의 老後資金이나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건강 악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대 등을 염두에 두고 저축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純粹利他動機는 자신의 자녀세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에 입각해 유산을 남기려는 행동을 말하며, 交換動機는 자신의 老後를 돌보아 주는 조건으로 일부 자녀에게 유산을 집중적으로 남기려고 사망시까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는 행동을 지칭한다. 또 戰略的 遺産動機는 교환동기의 일종으로 자신의 뒷바라지와 수발을 해주지 않을 경우 상속대상에서 자녀를 배제시키겠다고 위협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이같은 相續·遺産行動을 英國 등 당시의 선진주요국들은 과세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해방 이전부터 상속·증여과세가 행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同 課稅는 夫婦間 혹은 世代間의 재산의 無償移轉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다.

同 稅法의 기본취지는 크게 보아 세 가지이다. 첫째 世代間의 富의 이전이 다음 世代에 있어 원시적인 불공평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둘째 同 상속재산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所得稅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그간의 所得稅 課稅에서 누락된 所得 혹은 그 增殖分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公共部門의 지원을 통해 老齡者 扶養이 증대되는 것과 대응하여 자산가 계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社會化시켜 老齡者 지원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즉 社會保障 등의 公的支援이 없을 경우에 비해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상속

세를 좀 더 부담시켜 젊은 세대가 집중적으로 부담해온 老齡者 支援資金을 보충해 주자는 발상이다.

우리의 경우 이상의 세 가지 중 첫째와 둘째가 상속과세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어 있다. 셋째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충실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현 시점의 상속세 과세근거로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相續稅制는 日帝의 戰費調達을 목적으로 1934년에 도입되었으며 現 稅法은 정부수립후인 1950년에 制定·公布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다른 세목과 달리 상속세제는 제정 이래 전면적으로 개정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간의 개정은 물가의 상승과 경제규모의 확대 등에 대응하여 일부 控除項目의 新設, 기존 控除限度額의 引上을 통한 免稅點 引上과 稅率體系의 調整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밖에 租稅回避 防止 措置와 民法의 改正에 따른 後續 改正 등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다. 비록 수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富의 세습 방지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는 유지되고 있지만, 제정 당시와 社會·經濟環境이 크게 달라진 오늘까지 立法 當時의 基本骨格이 그대로 유지되어 전반적으로 낙후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 30여년간의 壓縮成長 過程에서 우리 사회에도 中產層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계층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中產層에 대해선 第1部 第5章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그 개념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中產層’은 低所得層이나 高所得層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그룹으로 정부나 친족 등 다른 경제주체의 도움없이 獨立的으로 家計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소지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居住用不動產이나 金融資產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중산층을 규정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혹은 인적 자산)으로 보면 중산층에 포함될 수 있지만 보유하는

實物 資産의 규모가 낮은 계층을 중산층으로 간주해야 하느냐 라는 점이다. 이같은 계층은 주로 젊은 세대에서 관찰된다. 우리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나라의 중산층 개념을 소득, 소득+거주용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방법에 의해 정의하여 그 범위를 신축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30여년간의 高度成長期를 거치면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地價가 상승하는 등의 자산인플레이로 인하여 위에서 규정한 바의 中産層은 물론 高所得層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계층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최근 들어 이들 계층의 1세대들이 老齡 後期에 접어 들어 사망자수가 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남긴 相續財産에 대한 과세가 갖추어야 할 모습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相續稅制는 제정후 큰 개정없이 오늘까지 유지되어 왔지만, 그간의 相續財産 評價額의 확대 추세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 등 諸般 控除 수준의 상향조정을 통해 면세점은 인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相續稅收는 1990년 이후 1994년까지 다른 어느 세목보다도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1994년에 최고 세율이 인하되고 과세구간이 조정되면서 1995년도에는 세수 증가가 크게 낮아져 내국세 증가율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상속세 비중은 對國稅의 경우 1.8%(1995년), 對納稅者의 경우(사망자 對比) 1.1%(1994년, 世帶 單位로 보면 약 2%)이므로 결코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相續稅法의 개정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課稅對象者가 中産層의 상부그룹과 高所得層으로서 이들 중 상당수가 각 계층의 지도자적인 지위에 있거나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들에게 유리한 개정안에 강한 반발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 課稅對象者에게는 상속세 부담이 아주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現行 相續稅法이 안고 있는 問題點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정 이래 부분적인 改正에 의존해온 결과 제도상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이 노출되고 그 결과 租稅回避行爲가 만연되어 상속세법이 富의 分散이라는 도입 당초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현행 상속세법에는 租稅 外的인 성격을 지닌 규정과 같이 租稅法律主義에 벗어난 조항들이 상당수 있고, 일부 규정은 論理的·法的 合理性이 결여되어 있다. 또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추가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인 뇌물수수, 기타 불법증여 등을 통한 불법소득의 이전에 대한 贈與稅 課稅根據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해석을 判例에 의존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는 상속세제가 상속세 고유의 정책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보다 經濟社會政策의 추진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對症療法の 남발로 相續稅制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

셋째, 상속재산의 評價制度가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 부동산은 時價보다 低評價되어 있고 金融資產은 時價에 따라 평가되고 있다. 물론 금융자산의 경우 지금까지는 부동산에 비해 과세포착률이 낮다고 하지만 현행 상속과세제도는 富의 再分配機能은 물론이고 所得稅에 대한 補完機能마저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현행 상속세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相續稅制는 미래 우리 사회 富의 保有 構造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稅目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경제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貯量化되어 감에 따라 사회구성원간에도 부모세대로부터의 相續 有無와 相續財産의 크기에 따라 경제적 지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富가 일부 소수계층에 세습되면서 社會階層間的 상호이동성이 낮아지면 우리 사회의 활력이 저하된다. 또 이는 일부 계층에 한정되긴 하지만 勤勞意慾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새로운 세대들간에

인생 出發線上에서의 자산수준이 달라져 機會均等과 衡平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상황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속세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向後 相續·贈與稅制의 개편방향은 위에서 제기된 問題點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相續·贈與稅制는 우리 경제 사회의 기본이 되는 富의 保有 構造의 질서를 확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同 세제의 기본틀을 짜야 한다. 이때 유념해야 할 사항은 相續·贈與稅와 같이 주로 世代間 富의 移轉을 대상으로 한 과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稼得所得을 대상으로 한 과세에 비해 세부담이 무거워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과세를 통해 富의 保有構造를 변화시킴으로써 자녀세대가 비슷한 선에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본 연구와 관계된 先行研究들을 열거해보면 稅制發展審議委員會(1991), 崔明根(1988, 1993, 1994), 崔 洸(1993), 韓相國(1994), 李鎮淳·李哲松(1994), 韓相國·裴竣皓(1996) 등이 있다. 韓相國·裴竣皓(1996)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는 상속세제를 연구함에 있어 외국과의 事例比較나 현안에 대한 論理的인 思惟에 근거하여 해당 문제점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본적으로 制度論的인 側面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韓相國·裴竣皓(1996)는 配偶者 相續控除에 한정되긴 하지만 相續稅 課稅事例에 대한 資料分析을 토대로 稅制變更이 가져오는 효과를 稅收 및 稅負擔分布의 측면에서 조명하여 제도변경의 효과를 상호 비교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구별된다.

본 보고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상속행동의 근원이 되는 家族內 經濟主體의 行動模型과 相續稅 課稅理由, 相續稅 課稅實態, 그리고 各國의 相續稅制의 比較 등을 통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상속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政策代

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법론으로 制度論에 입각한 法理的인 해석에 의존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分析技法을 활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부로 구성되어 있다. 第1部는 相續·贈與稅制의 理論과 實際를 다루고, 第2部는 相續·贈與稅制의 合理化 方案을 기술하고 있다. 第1部는 第2部의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상속행동과 상속세의 經濟學的인 考察, 그리고 相續行動의 實態와 相續稅制의 實態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第1章에서 遺産·相續行動을 라이프사이클모형과 王朝模型의 두 가지 경제모형으로 분류하여 각 모형에 있어서의 所得分配, 所得稅 減稅, 公的年金 給付 引上 등의 제반 정책의 과급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第2章에서는 相續稅 課稅의 경제적 과급효과를 勞動意慾·企業意慾, 貯蓄과 投資, 企業經營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어서 相續稅 課稅類型別 특징을 기술한다. 또 상속세 과세근거를 통상의 자산과세, 소득세 보완 과세, 그리고 노령기 應益課稅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第3章에서는 相續稅 課稅資料를 토대로 相續人數와 構成分布, 相續財產의 規模와 構成 등 우리의 상속세 과세 실태를 분석한다. 第4章에서는 우리를 포함한 主要國의 現行 相續·贈與稅制를 기술한다.

第2部는 현행 상속세법의 개정방향 모색이 주된 내용으로 사안별로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1996년에는 상속세법의 대폭적인 개편이 시도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편방향과 1996년도 개정 상속세법간에는 相異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우리는 1996년도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들이 장래에 단계적으로 반영되어 우리의 상속·증여세제가 體系的이고 順理에 맞는 세제로 정비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상속·증여세 개정 연혁표와 1996년 6월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발표된 案과 공청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강조하고자 했던 바는 現行 稅制의 問題點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現實的으로 運用可能한 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中長期的인 觀點에서 상속·증여세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課稅의 基本原理에 충실하면서도 오랫동안 운용해도 개정할 것이 별로 없는 相續稅制를 목표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第 1 部

相續・贈與稅의 理論과 實際

第1章 遺産·相續行動의 經濟理論

第1節 問題의 所在

相續은 오래 전부터 과세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이를 懲罰的으로 운영해 오지는 않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懲罰的인 과세라고 할 만큼 무거운 세율체계를 지니고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 있어선 상당히 伸縮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관행에서 우리는 상속세 부담후 家計나 企業家의 행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 政策當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또 相續稅를 통해 자산보유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資産分布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점에서 相續稅는 所得 및 資産 再分配의 유력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케인즈는 일반이론의 맨마지막에서 이같은 관점에서 相續課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카네기와 같은 대자산가들조차 이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세대간의 자산이전을 수반하는 행동으로는 相續 외에 贈與가 있다. 증여는 부모의 생존중에 행해지는 것으로 실제 경제에 있어 어느 정도의 相續과 贈與가 행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표된 稅務統計에는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가족들에 대한 데이터만이 나타나므로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相續·贈與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相續稅와 贈與稅를 비교해 보면 어느 나라나 相續稅가 크다. 우

1) Pechman(1987), p. 235.

리의 과세베이스는 1994년 기준으로 相續財産價額이 2조 4,165억원, 증여재산가액이 2,644억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이 9배 이상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숫자로부터 부모가 증여보다 상속을 選好한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같은 해석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주의할 점은 과세당국에 파악되지 않는 형태로 행해지는 증여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만큼 실제 규모에 있어 양자간의 차이가 9배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教育投資와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人的資産 축적을 위한 教育비지출을 통해 실질적인 증여를 행하는 경우, 贈與稅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동 教育비지출은 앞에서 논의한 贈與財産價額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에선 經濟學的 理論에 입각해 먼저 相續·遺産行動이 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經濟學的 理論에 입각해 검토하고 이어서 相續稅의 課稅根據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본질의 목적은 理論的인 側面에서 相續行動과 相續稅를 고찰하는 것이므로 현실의 세계에 대해선 최소한의 기술에 멈춘다.

第 2 節 遺産·相續行動의 經濟理論

1. 라이프사이클模型과 王朝模型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정부에 지불하는 稅金, 정부로부터 받는 移轉을 무시하자. 여기서 家計는 한정된 시간을 노동으로 나누어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혹은 저축을 통해 얻은 재산소득을 해당 기간의 소비와 저축에 충당한다고 가정하자. 물론 소비비용으로 할당된 소득은 여러 가지 재화, 서비스의 구입에 배분되고 저축에 할당된 소득도 여러 가지 금융상품과 실물자산의 구입에 배분된다. 가계는 이같은 소득, 소비, 저축의 배분과정을 통해 자신

의 만족도 즉 效用이 최대가 되도록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문제는 가계의 效用이 어떠한 요인에 의존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선 적어도 두 가지 시각이 있다. 모딜리니아니(F. Modigliani)가 안도(A. Ando) 및 브룸버그(R. Brumberg) 등과 더불어 전개한 라이프사이클모형은 가계의 效用이 자신의 소비와 여가에만 의존한다고 가정하는 데 대해 바로(R. Barro) 등이 전개한 王朝模型(dynasty model)은 가계의 效用이 자신의 소비와 여가뿐 아니라 자손의 소비와 여가에도 의존한다고 가정한다²⁾. 가계의 선호구조와 관련해 前者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이어서 자신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데 대해 後者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손들에 대해 일방적인 애정을 지니는 世代間 利他主義(intergenerational altruism)를 가정한다.

2. 遺産·相續行動의 經濟理論

여기선 앞에서 논의한 두 가지 모형이 유산·상속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 음미해 보자. 가장 간단한 라이프사이클모형에 의하면 사람들이 젊은 때는 일하고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貯蓄한다. 나이들어 퇴직하면 그때까지 축적한 저축을 통해 生活費를 조달한다. 이때 사망시점까지 저축을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소비의 크기를 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생전증여나 유산이 남지 않게 될 것은 물론이다. 이에 비해 王朝模型에선 사람들이 스스로의 소비, 여가는 물론 자손들의 소비와 여가로부터도 效用을 얻기 때문에 저축의 일부를 生前贈與나 遺産으로 자손에게 남겨 준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상의 두 가지 모형의 현실 적합성을 검증하려면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生前贈與나 遺産을 남겨주는지를 살펴보

2) Modigliani(1980), Barro(1974) 참조.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상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라이프사이클모형에서도 生前贈與와 遺産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한 간단한 라이프사이클모형은 극단적인 가정을 한 경우이다. 가령 사망시점이 확실하거나 불확실하더라도 終身年金制度가 정비되어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망시점이 확실하다면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은 퇴직후 사망시점에 자신의 저축이 한푼도 남아 있지 않도록 소비계획을 세울 것이다. 사망시점이 불확실하더라도 終身年金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은 전 재산을 終身年金의 형태로 지니려고 할 것이다. 어떤 경우도 사람들은 유산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시점이 불확실하고 종신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사람들이 위험회피적이라면 사람들은 長壽할 경우에 대비해 조금 더 저축하게 된다. 이 결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한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은 遺産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유산을 남기는 경우도 라이프사이클모형과 整合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사망시점이 불확실하지만 終身年金制度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기주의적이고 위험회피적인 사람들은 자녀들과 ‘家族 内の 暗黙의인 年金契約’을 맺을 수도 있다³⁾. 가족내 암묵적인 연금계약 (intra-family implicit annuity contract)이라 함은 부모가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남겨진 遺産을 상속받고, 비교적 장수하여 자신의 저축을 전부 쓰고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형태의 契約을 말한다. 이같은 계약의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遺産이 남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산은 세대간 이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노후의 생활보장이라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므로 라이프사이클모형과 整合的이다.

3) Kotlikoff and Spivak(1981).

‘가족내 암묵적인 연금계약’의 한 유형으로 자녀에게 土地나 住宅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대신에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자신의 뒷바라지를 부탁하는 형태의 암묵적인 연금계약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 살고자 하므로 집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노후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이때 ‘리버스 모게지(reverse mortgage)’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노후의 생활을 꾸려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리버스 모게지라함은 자신의 거주용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연금형태로 생활비를 지원받고 이에 대한 변제를 사망시의 담보물건 讓渡로 대신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같은 제도가 없다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살고자하는 사람은 金融機關과의 관계대신 자녀와 ‘리버스 모게지(reverse mortgage)’와 같은 방식의 암묵적 年金契約을 맺는 방안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선호되는 경우는 수발인과 養老院이 부족할 때이다. 노령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수발을 부탁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뒷바라지와 수발을 부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交換動機(exchange motive)’에 의한 연금계약시 자녀들에게 유산이 남겨진다. 이때의 유산은 세대간 이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노후의 뒷바라지와 수발의 對價로 주어지는 것으로 라이프사이클모형과 整合的이다.

교환동기의 한 유형으로 ‘戰略的 遺産動機(strategic bequest motive)’가 있다⁴⁾. 이는 뒷바라지와 수발을 해주지 않으면 상속대상에서 배제시키겠다고 자녀를 위협하여 뒷바라지와 수발을 전략적으로 強要시키는 형태의 유산동기이다. 이 경우에도 유산이 남겨지는데 그 유산은 자녀에게 노후의 뒷바라지와 수발을 강요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기능하며 이 또한 라이프사이클모형과 整合的의이다.

4) Bernheim, Shleifer and Summers(1985)

정리하면 사람들이 遺産을 남기더라도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遺産이거나 ‘가족내 암묵적인 연금계약(리버스 모계지를 포함)’이나 교환동기, 그리고 전략적 유산동기라는 형태의 이기주의적인 유산동기에 의해 남겨진 遺産이라면 라이프사이클모형과 정합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경제에 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에 있어서 라이프사이클모형이 성립하지 않고 王朝模型이 성립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사람들이 世代間 利他主義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유산을 남긴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가령 부모의 생애소득에 비해 자녀의 생애소득이 더 크다면 부모가 세대간 이타주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端點解가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염두에 두고 일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 세대간 이타주의를 지니고 있는 부모라도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게 된다. 결국 어느 경제에 유산이 작다고 하여 왕조모형이 성립하지 않고 라이프사이클모형이 성립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어느 경제에 라이프사이클모형이 성립하는지, 왕조모형이 성립하는지의 문제는 유산의 유무와 양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어느 모형이 성립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선 남겨진 유산이 의도하지 않은 유산인지, 아니면 의도된 유산인지, 또 의도된 유산이 어느 동기에 의해 남겨진 것인지를 구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3. 政策 含意

위에서 논의한 두 가지 모형이 지니는 세 가지 정책에 대한 含意를 생각해 보자. 첫째는 世代가 경과함에 따라 자산격차가 벌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라이프사이클모형은 부정하고 王

朝模型은 긍정한다. 둘째는 所得稅 減稅가 시행될 경우 소비, 저축이 변화하는 實物效果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라이프사이클모형은 긍정하고 王朝模型은 부정한다. 셋째는 賦課方式(PAYG) 公的年金의 給付를 인상할 때 위에서 말한 實物效果가 생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라이프사이클모형은 긍정하고 王朝模型은 부정한다. 이상의 세 가지 정책사안에 대해 두 모형은 정반대의 답을 제시하므로 한 나라의 경제가 어느 모형에 속하는 경제인가를 구명하는 작업은 경제학자는 물론이고 정책담당자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 資産移轉과 資産隔差

라이프사이클모형에 의하면 사람들은 生前贈與와 유산을 남기지 않든가 남길 경우에도 어떤 형태의 報答(교환조건)을 기대하고 남기는 경우가 많다. 가령 리버스 모게지(reverse mortgage)일 경우의 보답은 老後 生活費이고, 교환동기와 전략적 유산동기일 경우의 보답은 老後의 看病看護와 수발이다. 그리고 ‘家族內 暗默的 年金契約’의 경우는 젊어서 사망한 사람은 유산을 남기지만 장수한 사람은 도리어 자녀의 도움을 받아 負(-)의 유산을 남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유산은 零(0)이거나 零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생전증여와 유산이 존재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순이전(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이전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이전을 뺀 나머지)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것이다. 이에 비해 王朝模型에선 부모는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생전증여와 유산을 남기므로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순이전은 正(+)의 값이 될 것이다.

라이프사이클모형에선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순이전이 零에 가까우므로 자산격차가 다음세대로 이어져 가지 않는 데 비해 王朝模型에선 同 순이전이 正이므로 자산격차가 다음세대로 이어져 가고 또 점차 확대되어 갈 수도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것이 맞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선 실증적인 분석이 불가결하다. 그런데 실증분석의 결과도 크게 相馳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계의 축적자산 중 얼마만큼이 상속과 증여에 의한 자산이고 얼마만큼이 그 가계 스스로가 축적한 자산인가를 분석한 결과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코틀리코프와 섬머즈(Kotlikoff and Summers, 1981)는 美國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연도별 저축을 누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라이프사이클 자산을 추계하여 이를 가계의 실제자산 전체액과 비교하였다. 이 결과 라이프사이클 자산은 가계자산의 19% 정도이고 나머지 81%가 이전에 의한 자산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딜리아니(Modigliani, 1988)는 연도별 자산상속액 데이터를 누적하여 이전자산의 크기를 추계하고 이것과 가계자산 전체와의 차액을 라이프사이클 자산으로 간주하였다. 그에 의하면 家計資産에서 점하는 移轉資産의 비율은 15~20% 정도라는 것이다. 이같은 양자의 추계결과의 차이는 상속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현재 가치를 라이프사이클 자산에 포함시킬 것인가 移轉資産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⁵⁾.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필자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수편의 論文이 보고 되고 있다.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野口(1991)는 금융자산과 토지를 합한 가계자산의 약 절반이 相續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그리고 伊藤 外(1991)는 가계 토지자산의 4% 정

5) Blinder(1988), pp. 68~76; 石川(1991), pp. 344~348. Blinder는 모딜리아니와 코틀리코프-섬머즈의 논쟁에 대한 코멘트를 통해 양자 주장의 차이점에 대해 계산오류, 세대간 이전의 정의, 축적된 이자, 내구재 처리 등으로 나누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려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는 연령-소비 곡선이 연령-소득 곡선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들어 라이프사이클 저축이 과소추정되었다는 모딜리아니의 주장보다는 후자 쪽 주장을 지지하는 논평을 하고 있다.

도, 그리고 가계 전체자산의 30% 정도가 相續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橘木·高田(1992)에 의하면 사회전체 자산 중 약 44.5%가 遺産에 의한 것이며 이 중 실물자산이 유산전체의 52.6%, 금융자산이 4.7%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유산이 자산분포의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지니계수로 측정할 경우 유산이 자산분포 불평등도의 25.6% 정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表 1-1-2 참조>.

<表 1-1-1> 家計資産과 遺産의 比率(日本)

(單位: 萬円, %)

	평균가계	유산을 받은 가계		유산비율
		전체대비 비율	유산평균액 ¹⁾	
금융자산	1,051.2	4.3	1,150	4.7
실물자산	5,196.3	23.7	11,500	52.6
합 계	6,247.5	26.4 ²⁾	10,530 ²⁾	44.5

註: 1) 시가평가

2)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어느쪽을 상속한 사람

資料: 橘木·高田(1992)

<表 1-1-2> 資産分布 不平等度에 대한 遺産의 役割(지니계수 분해, 日本)

(單位: %)

금융자산		실물자산	
유산에 의함	유산과 無關	유산에 의함	유산과 無關
1.4	98.6	31.9	68.1
100.0		100.0	
0.4	28.1	25.1	46.2
100.0			
전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			
유산에 의함		유산과 無關	
25.6		74.4	
100.0			

註: 전체 지니계수를 유사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분해하여 각각의 기여도를 계산했다. 따라서 각 행의 숫자 합계는 100이 된다.

資料: 橘木·高田(1992)

나. 減稅效果

라이프사이클모형에 의하면 減稅가 행해졌을 경우 그에 의해 사람들의 假處分所得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減稅가 항구적일 경우 이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王朝模型에 의하면 감세가 항구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減稅는 財政赤字를 증가시키고 정부가 늘어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公債發行量을 증가시킬 경우 새로 발행한 공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이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음 기에 增稅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현재의 감세분만큼을 소비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장래의 증세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장래의 增稅는 현재 살고 있는 이들이 사망한 다음 행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王朝模型은 사람들이 세대간 利他主義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므로 자녀세대가 부담하게 될 增稅를 상쇄하도록 자신들의 저축분을 생전증여나 유산의 형태로 남겨줄 것이다⁶⁾.

다. 賦課方式 公的年金 給付 引上の 效果

근로자에게서 定額稅 形態로 각출금을 거두어 같은 시점의 은퇴자에게 연금을 급부하는 賦課方式의 年金을 고려하자. 이 급부수준이 상향되었다고 하자. 라이프사이클모형에 의하면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의 급부수준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할 필요성이 그만큼 약해지므로 저축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王朝模型에 의하면 연금급부가 인상되더라도 사람들은 저축을 전혀 바꾸지 않게 된다. 이유는 사람들이 利他主義를 지니고 있으므로 젊은 세대의 부담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생전증여와 유산을 그만큼 증가시키고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저축을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6) Barro(1974).

4. 家族保險

가. 家族保險의 理論

앞의 遺産·相續行動의 經濟理論에서 ‘家族 內的 暗默的인 年金契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理論과 現實의 事例를 들어 좀더 상세히 설명해 보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높은 家族保險 體系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家族保險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재난이나 사건에 연루되어 입은 피해나 손실을 나머지 가족 구성원이 보상해 주는 보험을 가리킨다. 이같은 보험계약은 명시적으로 행해지기보다는 信義에 입각한 가족간 유대관계에 의해 暗默的으로 행해진다. 실제로 부부나 부자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같은 保險關係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美國의 사례를 분석한 코틀리코프와 스피바크(Kotlikoff-Spivak, 1981)는 가족보험이 완전한 보험의 70% 수준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은 행해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가족간 유대가 미국의 그것에 비해 약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한국 가족의 保險度는 완전한 보험의 70% 이상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고 사고에 따른 被害發生額이 대형화되어 가족구성원만으로 同 피해액을 전부 보상할 수 없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추론은 분석을 통해 좀더 체계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관련 이론을 살펴보자. 부모가 자녀에 대해 일방적으로 遺産을 남기기보다는 부모와 자녀가 일정한 계산하에 서로의 자산을 屢출하여 일정 규모의 자산을 형성하여 이를 공동으로 소비하는 계획에 암묵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하자. 이후 이들 중 누군가가 먼저 사망하면 사용하고 남은 자산을 남은 이들이 쟁겨가진다. 이같은

은 契約의 결과 유산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코틀리코프와 스파바크(1981)에서 제시되고 있다. 부모의 생존확률이 자녀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넘겨받을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여기서 공동 소비가 의미하는 것은 부모가 장수할 경우 자녀가 양자간에 미리 합의된 대로 부모의 老後生活을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가족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신뢰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신뢰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선 각각의 가족 구성원이 독립된 지출주체인 이상 共同計劃에 따라 소비한다는 약속의 이행 여부를 서로가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약속 이행은 한 쪽이 다른 쪽에게 필요로 하는 생활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완료된다. 그런데 이같은 약속 이행 과정에서 生前贈與와 같이 지원하는 측의 자산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형태의 경제적인 지원은 비교적 덜 발생한다.

슈프(Shoup, 1966)는 미국에서 세제가 遺産보다 생전증여를 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증여 이용실적이 의외로 낮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이를 설명하는 이유로 富의 보유가 가져다주는 사회적인 힘을 들고 있다. 이때의 힘에는 정치·사회적인 권한 외에 가족 내의 자녀에 대한 통제력도 포함된다. 즉 그는 가족 내의 지원이 생전증여와 같은 대규모 이전보다는 생활비 지원과 같은 소규모 이전 중심인 것은, 지원하는 측이 자신의 富를 가능한 한 길게 보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암묵적인 계약의 이행을 강제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코틀리코프와 스파바크는 가족내 리스크공유(family risk pooling)에 입각한 이론을 전개해 家族保險의 정도를 계측하고 있다. 완전한 年金市場이 있을 경우 자신의 자산을 年金會社에 맡기고 자산은 매월 혹은 매년 지급되는 급부로 생활하면 사망시까지 가장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완전한 年金市場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가족이라는

사회를 구성해 부부와 부자간에 암묵적으로 리스크를 공유함으로써 상당히 높은 保險市場을 형성하고 있다. 가족구성원간의 소비지출과 소득이전에 관한 결정은 암묵적인 不完全年金契約을 의미한다. 부부라면 서로 상대방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명하는 遺言狀을 교환하거나 배우자의 예상되는 유산을 고려한 양자의 공동소비지출 규모 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서로의 期待效用을 극대화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부자간에는 부부보다 공동소비 계획이 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부부간의 공동소비 계획 때보다 장수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더욱 효과적이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젊은 시기에 遺産을 얻을 수 있어 일생의 기대효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모가 장수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녀는 부모의 노후 뒷바라지를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부모는 대가로 자녀를 상속인으로 지명하겠다고 언질을 준다. 부모가 일찍 사망하여 자녀가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가령 부모가 장수하여 유산을 남겨주지 않거나 작은 유산밖에 남겨주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는 효용을 높일 수도 있다. 이것은 부모와 消費資源을 共有함으로써 부모의 보유자산에 따른 효용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第3者 介入 老後契約：家族信託基金

부모와 자녀가 별거하는 경우 상호약속의 이행을 확인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한 가지 대안은 제3자가 실행할 수 있도록 明示的인 契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가령 신탁회사가 ‘家族信託基金’을 만들어 부모와 자에게 자산과 매월의 소득을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여, 부모와 자녀가 사전에 합의한 연간소비금액을 기금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가 그것이다」⁷⁾.

7) 石川(1991), p. 342.

다. 事例：中國의 相續 慣行과 家族保險制度⁸⁾

우리에 비해 빠른 老齡化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 주변에 있는 中國과 日本을 들 수 있다. 中國의 경우 日本보다도 노령화가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다. 예상으로는 老齡社會에 이르는 속도가 西歐社會에서 경험해온 것보다 훨씬 빠르고 日本의 그것보다도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령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인구에서 접하는 비율이 10%에서 20%로 상승하는 데 주요 선진국들이 50년에서 80년 정도 소요된 데 비해 日本이 32년 정도 걸리고 중국은 2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中國 人口에서 65세 이상의 노령자는 1996년 현재 6,5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6%에 달하고 있다. 老齡社會의 피크점으로 예상되는 2040년에는 同 노령자가 3억명에 달해 전체인구의 20%를 점할 것이다. 이처럼 급격한 老齡化를 가져온 주된 원인은 1960년대의 毛澤東 時代의 人口政策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인구정책은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으로 이 결과 1962년부터 1973년까지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3억 2천만명에 달하는 歪曲된 人口構造를 지니고 있다.

이들 ‘團塊世代(베이붐세대)’들이 다시금 高出産을 감행할 경우 중국대륙의 생산력은 이들을 먹여 살릴만한 여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지도 모른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中國政府는 1970년대 후반부터 ‘한 자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정책을 놓고 국제적인 여론은 결코 이를 좋게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따가운 눈초리로 이러한 정책을 질책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中國 當局者들은 이같은 국제적인 여론이 잘못되어 있다고 강변

8) 이하의 기술은 鈴木 賢(北海道大學 教授), 「日本經濟新聞」 1996년 7월 6일 석간과 「朝日新聞」 1991년 10월 23일자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증가 억지정책이 세계를 안정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 자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정책수단 중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인권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毛澤東 時代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비참만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中國 當局者들은 당시의 정책이 기본방향에서 옳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조만간 닥쳐올 노령시대를 대비하여 中國 當局은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것일까? 6,500만명에서 매년 증가해 가는 노령자들을 위해 서구식의 高福祉政策을 새롭게 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주목한 것이 傳統的인 家族이 지닌 扶養, 看病·看護機能이다. 지금도 70% 내지 80%의 노령자가 자녀세대와 동거하고 있고 獨居老人이 비교적 적다. 유교적인 가족윤리가 희박해져 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良風美俗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중국정부는 養老·敬老의 전통적인 미덕을 칭송함으로써 나이들어 자립능력을 상실했을 때 가족이 보살피도록 다방면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相續財產을 활용한 가족내 扶養, 看病·看護 獎勵策이다. 중국의 相續法(1985 재정)에선 生前의 부양과 보살핌이 유산상속의 尺度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조항이 배우자의 사후 부모를 부양, 간병·간호한 며느리나 사위에게 相續權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며느리나 사위로 하여금 시부모나 장부모를 봉양하도록 하는 유인이다. 이같은 제도를 相續稅法에 明記함으로써 중국당국은 남은 노령자의 노후 보살핌에 대한 사회적인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被相續人에게 손자가 있어도 며느리를 손자와 동급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媳父나 媳母에게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며느리가 주로 노부모를 뒷바라지 해주는 경우 扶養時間과 努力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다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물론 며느리가 배우자의 노부모를 모시는 것이 의무조항은 아니다. 그런데 이를 의무화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가령 天津市, 山西省, 成都市 등 일부 지방에선 노부모를 부양하고 간병·간호하는 의무를 자녀부부에게 공동으로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며느리가 상속권을 지니지 못해 불공평한 세제라는 지적이 많다. 이로 인해 생전의 부양이나 간병·간호를 유산상속시 법적으로 평가하여 유산취득을 허용해 주려는 看病·看護契約擬制說, 寄與分說 등이 이론적인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상속세제도는 이 점에서 흥미있는 면이 있지만 사탕을 담보로 며느리를 看病·看護에 종사하도록 몰아부치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사회에서 통용될지는 의문이다.

이 밖에 중국에선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가족내 계약에 의해 노부모에 대한 扶養, 看病·看護 提供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扶養契約 締結 캠페인도 전개되고 있다. 가령 행정지도의 예로서 중국의 上海市 郊外, 浙江省, 그리고 江蘇省 등 선구적인 농촌에서 1987, 1988년경부터 시작된 ‘家族扶養協議書制度’를 들 수 있다. 이는 부모가 60세를 넘어서면 부모와 자녀가족과의 사이에 扶養內容을 기재한 구체적인 覺書를 교환하게 하여 이 覺書를 지역의 民生局, 司法局, 老齡問題委員會가 보증을 하여 법적구속력을 지니도록 한 것이다.

5. 教育投資를 통한 生前贈與

가. 教育投資 概要

위에서 우리는 實物資產과 金融資產 등의 명시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방법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논의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증여의 한 형태가 教育投資이다. 부모가 막대한 教育費를 부담하면서 자녀를 유명고교와 유명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예능계 전문학교의 경우 상상을 넘어서는 教育費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이 教育費 지출을 통한 실질적인 증여가 어느 나라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教育投資라 함은 장래 자녀가 生産年齡에 접어들었을 때 그들의 경제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녀들의 人的資本을 개발하거나 축적시키는 것을 지칭한다. 물론 教育投資에는 이같은 생산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교육은 각종 ‘브랜드 상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다⁹⁾. 이른바 시그널효과(signalling effect)라는 것으로 教育投資가 사회적인 가치를 전혀 증가시키지 못하더라도 출신대학과 출신학부가 자녀들의 潛在的인 能力을 대표해 주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녀들의 능력에 관한 정보가 당사자들간에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그널효과에 의해 교육이 人的資本理論에 따라 능력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지닐뿐 아니라 자녀들의 潛在能力까지도 선별해 주는 기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브랜드 상품’이라 함은 대입 수험생들의 경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류대학과 법학과, 의학과, 한의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특정 학부への 입학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들 브랜드 상품을 갖게 되면 해당 상품의 실용성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內容과 質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대학에 들어가면 브랜드 직업인 辯護士, 醫師, 공인 회계사, 公務員 등을 지향해 전공학문과 관계없이 사법시험 등 각종 고시에 매달리며, 일단 이들 시험에 합격하면 이후에는 해당 직업인으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자질 향상과 능력 개발을 소홀히 하는 것도 시그널효과的인 연장선상에서 해석가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9) 中馬宏之(1994) p. 148.

이하의 논의에서는 위에서 논한 교육이 지닌 두 가지 기능 중 前者인 교육에 의한 자녀들의 人的資本 開發과 이에 근거한 자녀들의 勞動生産性 向上 機能에 초점을 맞춘다. 곧 부모는 자녀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투자라는 實質的인 贈與를 통해 자신의 富를 이전시킨다고 假定한다. 우리 사회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교육투자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정도이다¹⁰⁾. 물론 이같은 투자가 전부 公的인 루트를 통해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경우 公的인 루트보다 私的인 루트를 통한 이른바 私教育 투자가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투자는 몇 가지 점에서 실물자산의 증여보다 有利하다. 첫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대학생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학업 관련 교육비 지출은 소득세법상 所得控除의 對象이 되고 있다. 셋째,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은 실물자산과 달리 보유량이 금방 눈에 띄는 것이 아니고 보유량의 적정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부 예외는 있다. 유명인사의 경우 학력과 저작 등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은 실물자산과 달리 계측하기 어려운 수익내지는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즉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해주어 인생의 폭을 넓혀 주고 삶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이같은 좋은 환경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人的資本 理論에 의하면 교육투자는 해당자의 人的資本의 蓄積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높은 임금을 얻을 수 있게 하

10) 대학교육, 대학원 교육, 평생교육 등 고등 교육을 포함하면 우리의 교육투자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결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고교입시와 대학입시를 위한 課外라는 형태로 상당부분의 교육투자가 행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課外가 자녀들의 취업시점에서 勞動生産性 증대로 연결되는 부분이 약하다는 점에서 학창기 교육투자의 상당부분이 국민경제적으로 보면 비생산적이거나 불필요한 교육투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여 國民經濟적으로 플러스 효과를 안겨다 준다. 이같이 국민경제적으로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도 교육은 커다란 수익을 가져다 준다. 가령 대졸자의 경우 고졸자로 취업하는 것에 비해 일생 동안 벌어들이는 純所得이 크다면 대학에의 진학은 적극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순소득이라 함은 일생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機會費用을 포함해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투입한 제반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대학 진학에 따른 교육투자의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教育投資가 활발한 이유의 하나로 오래 전부터 教育投資의 높은 수익률이 지적되어 왔다. 최근 들어 教育投資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대학 진학의 열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통상의 교육투자 수익률에 포함되지 않는 암묵적인 수익률까지를 고려한 大學教育投資의 수익률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암묵적인 수익률이라 함은 대졸간판이 가져다 주는 ‘브랜드효과’ 가령 보다 좋은 결혼배필과 만날 수 있게 되거나 좋은 친구, 친지를 통해 지낼 수 있는 제반 편익 등을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수익률로 환산한 것으로 客觀的인 收益率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¹¹⁾.

최근 논의가 활발한 內生的 成長理論에서는 인적자본의 외부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경제전체로서의 인적자본의 축적수준이 상승하면 개개기업으로 볼 때에도 같은 생산자원을 투입해도 보다 높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면 인적자본의 축적을 촉진하기 위해 효율성 관점에서 교육투자에 의한 世代間移轉을 우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얻어질 수 있다.

11) 우리는 수치로 계량화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같은 작업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편성과 신뢰성을 지니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암묵적인 수익률은 주관적이고 비계량적인 수익률을 지칭한다.

나. 富의 移轉手段인 教育¹²⁾

여기서는 생전증여 수단으로서의 教育投資에 대해 이론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논의를 전개해 보자. 부모세대가 자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독립해 장차 자기 슬하를 떠날 자녀들의 稼得能力을 포함한 전체자산을 일정수준으로 확보시키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되는 전체자산을 總遺産이라고 부르자. 이는 인적자산과 물적자산의 합으로 자녀의 경제적 독립시점에서 평가한 값이다. 여기서 인적자산은 교육투자 제로하의 稼得能力(이하 $y(0)$ 으로 표시한다)을 포함한 것이므로 이 만큼, 즉 $y(0)$ 를 차감한 값이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준 純遺産이다.

2기간 모형을 고려해 보자. N명의 자녀는 부모세대의 제1기 $1-\delta(0<\delta<1)$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탄생하여(즉 취업가능해져) 제2기 초에 독립하기까지 δ 기간만큼 부모와 함께 산다. 부모는 아들 자녀에게 e 기간 만큼 교육을 시킨다. 교육비용은 이 기간 동안의 喪失賃金만 고려하고 기타 直接費用은 고려하지 않는다. 교육의 결과 자녀의 가득능력은 1기간을 1로 하는 단위시간당 $y(e)$ 가 된다. $y(e)$ 곡선을 教育效果曲線이라고 부르자. 이 곡선은 위로 강볼록인 부드러운 곡선이라고 가정한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 收益遞減度는 아주 강하고 선택되는 e 는 반드시 $0<e\leq\delta$ 의 범위에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자녀 1인은 교육과정 완료후 $(\delta-e)y(e)$ 만큼의 수입을 부모에게 가져다 주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점까지는 $y(e)$ 의 人的資産을 보유하게 된다. 같은 시점에서 취득하는 物的資産을 b_n, b_s 라고 하면 총유산은 부모가 제1기 말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식 (1), 부모가 제2기에 생존하는 경우에는 식 (2)와 같이 된다.

12) 이하의 기술은 石川(1991), pp. 351~361와 中馬宏之(1994), pp. 111~163 참조.

$$(1) w_D = b_D + y(e)$$

$$(2) w_S = b_S + y(e)$$

마찬가지로 부모세대의 초기자원은 遺產 b_0 와 勞動所得 y 의 합계이므로 식 (3)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3) w_0 = b_0 + y$$

유산동기의 대상이 자녀의 초기 총자산으로 옮겨감으로써 부모세대의 效用函數는 종래의 b_D, b_S 대신에 w_D, w_S 로 바꾸어 놓은 형태가 된다. 이하 완전한 연금보험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부모세대는 완전보험 상태인 $w_D = w_S$ 가 달성되도록 행동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세대는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을 선택할까.

1) 利他主義

먼저 부모가 利他的인 遺產動機를 지녔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부모는 출생한 자녀가 택하는 교육투자수준과 동일한 수준을 택한다. 이유는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의 生涯資源을 자신의 예산제약식 안에 넣어 자신의 소비와 총유산간의 배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제약이 없다면 부모와 자녀 공동의 자원풀을 최대화하는 것이 부모세대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곧 제1기 초나 자녀의 경제적 탄생 시점에서 평가한 자녀의 교육투자에 따른 순수익의 현재가치식 (4)를 최대화 하는 조건인 식 (5)를 만족시키는 수준의 教育投資를 선택한다¹³⁾.

13) 식 (5)의 도출은 다음의 분석에 의해 얻어진다. 부모세대의 저축행동은 (A1)과 같이 정의된다. p 는 제2기초 생존확률, a 는 완전한 연금보험의 보험료, s 는 제1기 저축, ρ 는 한 기간당 (1+이자율)을 나타낸다. (A2)는 제1기 예산제약식, (A3)은 부모가 제1기말 사망시의 유산배분액, (A4)는 부모가 제2기 생존시의 유산배분액을 가리킨다.

$$(A1) \text{ Max } U(C_1) + (1-p)N V(w_0) + p[U(C_2) + N V(w_S)]$$

$$(4) V(e; 1+\delta) = (\delta - e + 1/\rho)y(e)$$

$$(5) y'(e)/y(e) = 1/(\delta - e + 1/\rho)$$

이렇게 되면 개인의 最適教育投資理論이 적용가능해진다¹⁴⁾. [圖 1-1-1]은 식 (5)의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우하향 곡선 RR' 는 식 (5)의 좌변이 나타내는 投資의 限界收益을 표시하고, 우상향 곡선 CC' 은 우변이 나타내는 회수기간의 길이로 割引한 限界投資費用을 보여준다. 양 곡선의 교점 E 는 최적 교육수준 e^* 를 가리킨다. 이 점은 가령 교육의 효율성이 높아 $e > \delta$ 즉 교육기간이 경제적인 독립시점보다 긴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e < \delta$ 를 가정한 것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가정은 아니다. e^* 의 크기가 계획기간의 길이에 의존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점과 계획기간이 $1 + \delta$ 인 점을 감안하여 $e^* = e^*(1 + \delta)$ 라고 쓰자.

가령 교육효과곡선이 주어져 있고 資金市場이 완전하다면 선택되는 교육수준은 부모세대의 富와는 무관하게 결정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總遺産에서 최대화된 인적자산을 차감한 값이 부모세대가 유산으로 남기는 物的遺産이다.

2) 利己主義

위와 대조적으로 부모가 利己主義에 입각해 순수 라이프사이클적

s.t.

$$(A2) \quad C_1 = w_0 + N(\delta - e)y(e) - a - s$$

$$(A3) \quad N(w_0 - y(e)) = \rho s$$

$$(A4) \quad N(w_s - y(e)) = \rho s + \rho/p \cdot a - C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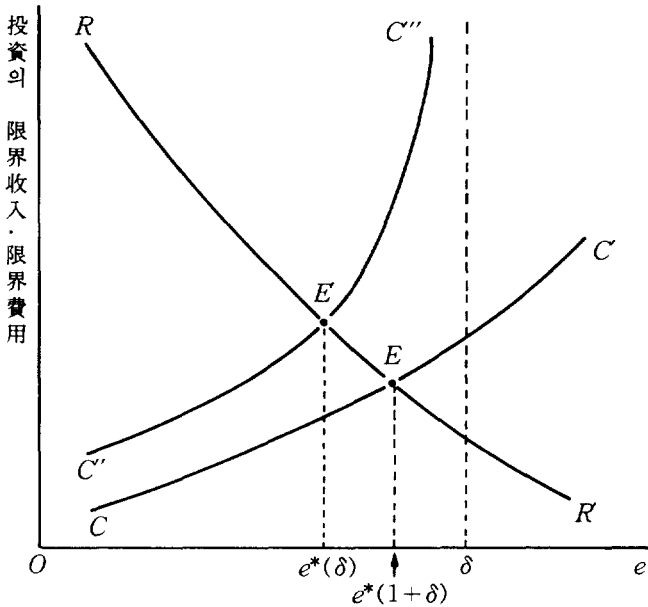
(A3)과 (A4)에서 s 를 소거하고 (A2)를 이용하여 a 를 소거하면 부모세대의 2기간에 걸친 예산제약식은 (A5)와 같이 된다.

$$(A5) \quad C_1 + pC_2/\rho + p/\rho \cdot Nw_s + (1 - p)/\rho \cdot Nw_0 = w_0 + N(\delta - e + 1/\rho)y(e)$$

이것이 다음 세대의 생애자원을 고려한 예산제약식이다. (A5) 제약아래 (A1)을 최대화하기 위해선 먼저 (A5)의 우변을 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모와 자녀의 공동자원풀을 최대화하는 작업으로 1계조건이 본문의 식 (5)이다.

14) Becker(1974), p. 1077, Ishikawa(1975), p. 995.

[圖 1-1-1] 子女教育水準 選擇



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자원을 풀(pool)화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의미가 없어진다. 부모는 자녀가 가계에 기여하는 수입인 식 (6)을 최대화시키는 교육수준을 택하게 된다.

$$(6) V(e; \delta) = (\delta - e)y(e)$$

內點解를 가정하면 [圖 1-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용곡선은 회수기간의 단축을 반영하여 위로 이동하므로 最適點이 E' 즉 $e^* = e^*(\delta)$ 로 이동한다. 內點解가 존재하는 경우는 $V(e; \delta)$ 의 극대치가 $V(0; \delta) = \delta y(0)$ 보다 큰 경우이다. 교육의 한계수익이 초기적으로 아주 클 때 이같은 解가 존재한다.

이같은 경우 자녀는 부모의 순수 보조노동력으로 간주된다. 당연히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과소수준에 머물게 된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다음 교육을 보충하려고 해도 투자의 회수기간이 짧기

때문에 본래의 최적수준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年金保險 대신 부모와 가족 내의 暗黙的인 保險契約와 유사한 相互扶養契約, 즉 자녀에게 최적수준의 교육을 시켜주는 대신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고 부양하겠다는 계약을 맺고 싶은 유인을 갖게 된다. 물론 이같은 계약의 교환이 확실하게 보증받기 위해선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가족내 信賴關係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상호신뢰에 입각해 암묵적인 보험계약을 맺는 경우 이타적인 유산동기하의 最適教育投資가 실천된다. 즉 부모와 자녀의 相互扶養契約은 쌍방에게 파레토개선을 가져다 준다. 교육투자가 높아질 뿐 아니라 부모의 厚生水準도 높아지기 때문이다¹⁵⁾.

3) 人的資產을 포함한 富 移轉曲線과 長期均衡

먼저 利他主義에 의한 유산동기가 존재하고 富가 物的資產만인 경제를 생각해 보자. 世代間의 富保有에 관한 장기균형점의 존재여부는 ϵ/μ 와 r/n 의 크기에 좌우된다. ϵ 은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성, μ 는 유산의 한계효용 탄력성 r 은 이자율, n 은 인구증가율이다. $\epsilon > \mu$ 일 경우 유산이 사치재로서 부모의 생애자산이 증가할수록 유산을 늘리게 되고, $\epsilon < \mu$ 일 경우에는 유산이 필수재로서 생애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유산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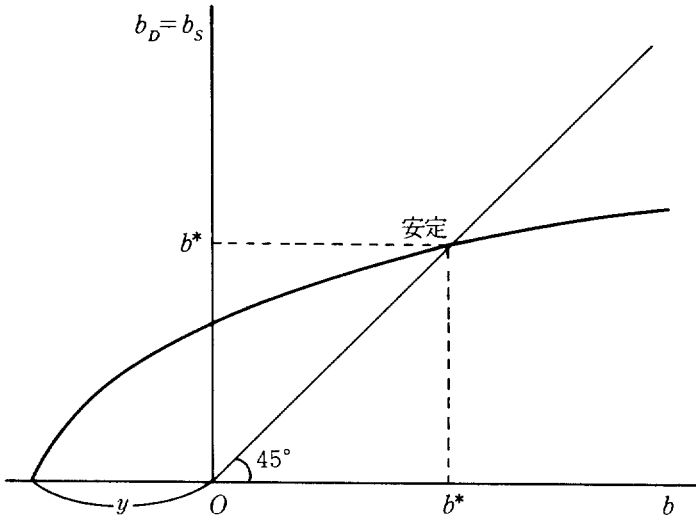
ϵ 과 μ 의 대소관계는 선형적으로 말할 수 없다. [圖 1-1-2]의 (A)는 $\epsilon < \mu$ 인 경우의 장기균형, (B)는 $\epsilon > \mu$ 인 경우의 장기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富移轉曲線이라 함은 부모세대가 받은 유산과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의 자녀 1인당 남기는 유산과의 대응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지칭한다. 따라서 45° 선은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富保有 수준이 代代로 바뀌지 않는 점들의 집합이다.

(A)에서 보듯 $\epsilon < \mu$ 이면 富移轉曲線의 기울기는 급격히 낮아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富保有 관계는 안정적인 장기균형을 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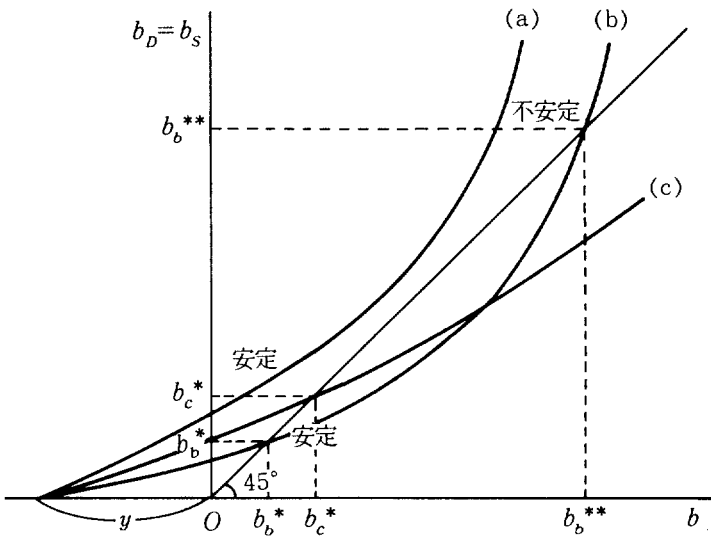
15) Ishikawa(1975) 註 18, 19.

[圖 1-1-2] 世代間 富移轉曲線과 長期均衡

A(유산이 必需財인 경우)



B(유산이 奢侈財인 경우)



그리고 (B)에서 보듯 $\epsilon > \mu$ 이고 $r > n$ 이면 유산 즉 富가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빠르게 증가한다. 이때는 초기세대의 富水準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발산하고, 同水準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안정적인 균형점을 지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富保有 수준이 장기 균형점에 回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이타적인 유산동기가 충분히 강할 때에는 초기세대의 富保有 수준에 관계없이 富는 계속 커져 장기균형점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epsilon > \mu$ 이고 $r \leq n$ 이면 富移轉曲線은 유산액이 증가하면서 그 기울기가 r/n 에 수렴한다. 이때는 유일한 장기균형점에 얻어진다. $r \leq n$ 의 의미는 간단하다. 자녀수가 많으면 자녀 1인당 유산액이 줄어 들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富保有가 급작스럽게 커져 발산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조금 확장하여 富에 物的資產 외에 人的資產을 고려한 경제를 고려해 보자. 그렇게 되면 [圖 1-1-2]의 세대간 富移轉曲線은 첫째 물질자산(b)에서 총자산(w)으로 축이 바뀌고, 둘째 물질유산에 대한 非陰制約 및 最低消費制約에 의해 발생하는 몇 개의 굴곡점을 제외하면 世代間的 富移轉曲線은 [圖 1-1-2]와 유사한 모습을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

人的資產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 몇 가지 점에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안정적인 長期均衡點이 존재할 경우 이것이 복수의 굴곡점을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① 正의 물질자산과 최적의 교육수준 ② 제로의 물질자산과 차선적인 교육수준 ③ 제로의 물질자산과 최저소비에 의존하는 낮은 교육수준의 세 가지 중 어디인가로 회귀하는 경향이 생긴다.

둘째, 안정적인 균형점보다 윗부분에 불안정한 균형점이 존재할 경우 일단 어떤 세대의 富가 불안정균형 수준을 넘어서면 이후 교육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물질자산만 누적적으로 증대해간다.

이때 교육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教育效果曲線이 바뀌지 않을 때이다.

셋째, 안정적인 균형점의 좌측에 불안정한 균형점이 생겨날 수 있다. 이같은 사례는 두 가지 제약 곧 물적유산에 대한 非陰制約 및 最低消費制約이 낮은 富水準에서 富移轉曲線에 강한 굴곡을 가져오는 경우이다. 이럴 때 일정수준 이하의 富에서 출발한 가계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의 稼得能力을 포함한 생애자원에 대해 利他的인 遺産動機를 지닐 경우, 대략적으로 말하면 중간 이하의 富水準을 지닐 계층에서는 교육을 통한 생전증여가 부자간 富移轉의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美國에서 유산상속액에 대한 家計 標本調査의 대부분은 과반수의 가계가 물적자산 형태의 유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물적유산이 없다고 하여 遺産動機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유산상속액에 대한 家計標本調査가 체계적으로 시도되지 않아 이 분야에 관한 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¹⁶⁾. 분명한 것은 물적자산의 형태로 유산을 물려받는 가족들이 최근에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에서 교육을 통한 생전증여는 예나 지금이나 美國의 가계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행해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4) 父母의 富와 子女 教育과의 相關

자녀교육이 부모세대의 富水準에 의존하는 이유로서 고려될 수

16) 한국조세연구원은 대우경제연구소의 협조를 얻어 1996년도 가구조사에서 기존의 소득, 소비실태에 관한 조사에 추가하여 유산동기 및 상속행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同 조사의 결과는 1997년도에 공표될 예정이다.

있는 것은 물적유산에 대한 非陰制約, 가계의 最低消費制約 외에 추가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불완전한 자본시장과 부모세대의 流動性制約이다. 둘째, 교육이 投資財라는 측면 외에 消費財로서 수요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教育投資曲線이 부모세대의 富와 관련 될 경우이다.

첫째,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문제는 인신매매가 금지된 현대사회에서 장래소득을 담보로 자유롭게 차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借入額을 제한받게 되고 이에 따라 차입이자율을 대출이자율보다 높여서 차입해야만 한다. 이같은 상황하에선 교육투자 행동이 소비·저축의 의사결정과 독립적으로 행해질 수 없고, 따라서 교육투자는 비인적자산의 보유액에 의존하게 된다. 즉 人的資產은 다른 유형자산과 달리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능력이 낮아 교육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이 필요할 경우 부모세대가 지닌 물적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장학금 제도와 최근에 발달한 공적금융기관에 의한 學資金貸出制度는 차입제약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지닌다.

둘째, 消費財로서의 교육은 교육을 받는 목적이 비경제적인 능력을 획득하거나 특정의 가치를 추구하고, 혹은 브랜드 상품을 소비하는 것과 유사한 것일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선택되는 교육수준은 순수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다하게 될 것이다. 즉 투자가치인 인적자산의 감소가 가져오는 限界非效用을 교육자체의 限界效用이 상쇄하는 점까지 교육은 연장된다. 여기서 인적자산이 감소한다는 것의 의미는 학력의 증가로 每期 벌어들이는 소득이 계속 상승하더라도 수입상승 효과보다 교육의 연장에 따른 취로기간 단축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인적자산의 저하는 富移轉曲線을 아래로 이동시키고 부모가 남기는 물적자산이 거꾸로 증가하므로 富移轉曲線의 하강효과는 상당부

분 상쇄된다. 따라서 富의 이전 정도가 약해졌다고 해도 생애효용 측면에서 보면 이같은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부모의 富와 教育效果曲線의 상호관계는 이 부문에서 가장 큰 실증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온 부분일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수준을 달리하는 중요한 이유는 같은 투입 자원을 얼마만큼 가득능력의 증대로 변환시킬 수 있는가 하는 효율의 차이일 것이다. 이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녀들의 본원적 능력, 가령 IQ테스트에 의한 認知容量과 자녀들을 둘러싼 가정의 社會經濟的 環境 등이 거론되어 왔다.

자녀들의 본원적 능력인 認知容量 등을 중시하는 경우, 부모의 富(소득과 직업을 대리변수로 파악)와 자녀의 교육간에 관찰되는 正의 상관 내지 그 배경에 있는 부모의 富와 교육효과의 彈性性(효율성)과의 正의 상관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유전과정에 의한 외견상의 상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논의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教育效果曲線의 彈性性(이하 줄여서 탄력성이라고 칭한다)이 유전적으로 결정되고, 또 결정 遺傳子型(genotype)이 세대간에 엄격하게 계승된다고 하자. 그리고 초기세대는 동일한 物的資產을 지니고 있다고 하자. 이때 [圖 1-1-2]의 富移轉曲線은 탄력성을 높이는 우수한 유전자형을 지닌 사람일수록 위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 세대가 경과한 다음에는 큰 물적자산을 소유하는 가계는 반드시 높은 탄력성을 지니게 된다. 이같은 결과는 [圖 1-1-2]의 어느 패턴에 있어서도 들어 맞는다. 이렇게 보면 부모의 富와 자녀의 교육수준간의 相關은 유전자가 역사를 통해 만들어낸 외견상의 상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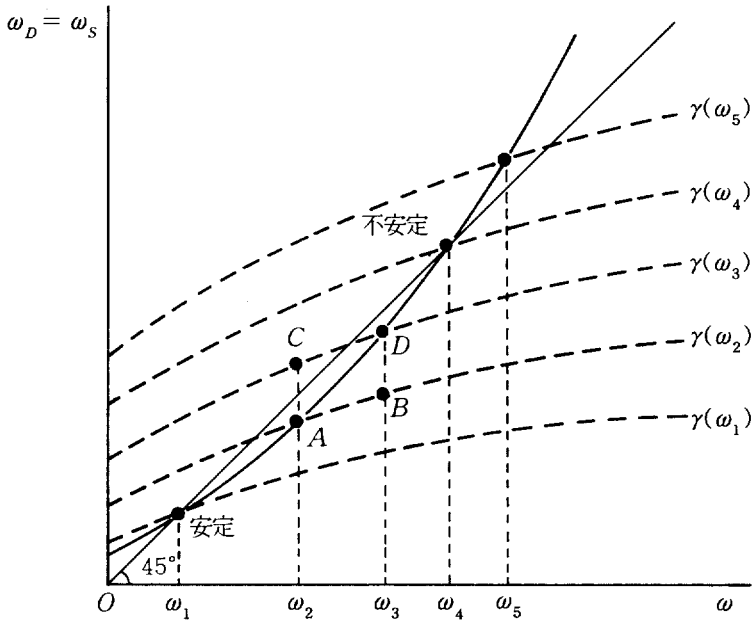
이처럼 유전적 요소가 세대간의 IQ지수의 계승에 어느 정도 관계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收入函數에 대한 실증분석

의 주된 결과는 전문직, 관리직 등 일부 한정된 직종을 제외하면 IQ 요인이 수입과 인적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효과의 탄력성에 대한 IQ 요인의 영향은 일부 직종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녀교육과 부모세대의 富와의 상관을 설명하면서 그 대부분을 유전적요인에 의한 외견상 상관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그 상관의 배후에는 本源의 能力, 사회경제적 환경요인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육효과의 탄력성이 부모세대의 생애자원의 합계인 富와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는 경우, 자녀세대의 가득능력은 부모세대의 富의 증가함수가 된다. 따라서 [圖 1-1-2]에 제시한 富移轉曲線은 부모세대의 부가 증가하면서 위쪽으로 이동해 간다. 결국 연속적으로 이동해 가는 곡선상의 점을 연결해 새로운 富移轉曲線이 생겨난다. [圖 1-1-3]이 그것이다. γ 는 교육투자곡선의 탄력성을 나타낸다. 이 그림은 간략하게 그린 탓으로 물적유산의 非陰制約과 최저소비 제약의 영향에 따른 곡선의 굴곡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두터운 곡선이 새로운 富移轉曲線이다. 특징적인 점은 탄력성과 부모세대의 연관이 충분히 강할 경우 그림이 나타내듯이 $\epsilon < \mu$ 가 되어 균형점에 회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에도 부이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되어 富가 누적되어 발산하고마는 불안정한 균형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또 본래 불안정한 $\mu > \epsilon$, $r > n$ 의 경우에도 불안정영역의 경계를 밑으로 밀어부친다.

요컨대 初期世代의 富保有의 크기에 따라 人的資產과 物的資產의 양면에서 世代間 富保有가 장기 균형수준에 회귀경향을 보이는 계층과 雙方의 富를 누적적으로 증대시키는 계층의 두 가지 패턴으로 兩極化될 가능성이 크다.

[圖 1-1-3] 世代間 富移轉曲線と 長期均衡 (教育效果曲線 弾力性 考慮)



第2章 相續稅의 經濟學的 考察

앞 장에선 가계의 유산·상속 행동을 두 가지 경제모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즉 라이프사이클模型과 王朝模型이 그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대한 실증분석은 거의 없지만 우리의 가계가 순수 이타주의로 설명되는 王朝模型과 순수 이기주의로 설명되는 라이프사이클모형이 혼합된 형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유산과 상속의 실태를 보아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일정 규모의 유산을 남겨준다고 볼 수 있는 가계가 있는가 하면 피상속인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뜻하지 않게 상속이 발생하는 가계도 없지 않다. 또 이외에도 노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일정규모의 生前贈與나 遺贈을 받는 가계 등 우리 주변에선 다양한 형태의 상속·증여가 행해지고 있다.

本章에선 이같은 다양한 유산·상속 행동이 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와 상속세의 두 가지 과세유형인 유산과세형과 상속과세(혹은 취득과세)형의 特徵, 그리고 相續稅의 세 가지 課稅根據에 대해 살펴본다.

第1節 相續稅의 經濟的 波及效果

상속세가 미치는 경제적 과급효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상속세는 근로기에 있는 이들의 勞動意慾과 企業意慾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상속세는 근로기에 貯蓄을 억제하고 소비를

조장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 상속세 납부를 위해 投資財源으로 준비해 두었던 자원이 사용될 경우 해당 기업의 투자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배주식의 일부를 처분해야 할 경우 기업 경영이 여러 가지 경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지배주식을 처분한 결과 상속인과 그 가족들이 企業을 經營하는 데 위협을 느끼게 되거나 일시에 대규모 주식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주가가 낮아져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상의 경제적 효과 외에 상속세는 富의 分배를 개선하고 稅收를 調達하는 주된 기능을 통해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두 가지 효과에 대해서는 本書의 第2部 第4章 第2節에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두 가지 효과를 집중 분석하고 있는 논문을 소개한다. 데이비스와 더프(Davies-Duff, 1994)가 그것이다. 이들은 캐나다 온테리오 州정부의 事例를 예로 들어 상속세 도입이 所得 및 富 分배의 개선과 稅收 증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과세의 유형으로 상속세 외에 純富裕稅(annual wealth tax, AWT)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도 분석하여 상속세와 비교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 모형은 기존 연구에서 얻어진 파라메타값과 가구주 연령별 가구유형별 所得과 富의 분포 자료, 또 인구, 사망확률 등에 관한 추정치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값들에 입각해 상속세 관련 모형을 설정한 다음 이들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속세 도입이 미치는 효과를 소득계층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속세가 미치는 파급효과 중 富 分배의 개선과 세수 조달 측면을 제외한 세 가지 기능 즉 勞動意慾·企業意慾, 貯蓄·投資, 企業經營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1. 勞動意慾·企業意慾

상속세 과세베이스는 과거 노력의 대가인 축적된 자산이다. 이 점은 개인의 富이든 기업의 富이든 마찬가지이다. 개인이 좀더 일하거나 기업행위에 좀더 매진하고자 할 때 상속세가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모든 소득과 재산을 자신의 생애 중 전부 소비하려고 걱정하고 있다면 상속세는 이들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개인들은 힘들여 번 소득이나 자산의 상당부분을 자녀세대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므로 상속세가 근로기에 있는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이들 가계의 목표자산 규모가 있을 경우 상속세는 근로기에 노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그리고 상속세의 有無와 세율의 高低는 유산동기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인해 목표자산의 규모가 조정되어 노동의욕과 기업의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속을 받는 상속인(잠재적 상속인을 포함)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세로 인해 상속재산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므로 상속세가 자신들을 좀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기능을 지닌 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상속세가 없을 때에 비해 상속세는 상속인의 노동공급을 항상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외국의 경우에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물론 우리 나라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도 없다. 상속세가 노동의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家計의 遺産動機의 강도에 대한 분석이 先行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연구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는 가계가 상대적으로 적고, 상속재산가액의 태반이 資本利得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개인의 勞動意慾과 企業意慾에 미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貯蓄과 投資

상속세가 資本蓄積을 방해한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안의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속세가 없었을 경우 富의 분배가 한층 불공평해져 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이 방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효과는 우리의 상황에선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富의 공평한 분배가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하고¹⁷⁾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는 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상속세가 민간의 資本蓄積率을 낮추고 경제 전체의 자본축적을 방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기술해 보자. 먼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事前에 저축을 증대시키는 것은 쉽게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납부는 보유자산의 매각으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신규투자용 자금이 자산 매각에 따른 새로운 자본, 장비구입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거둔 상속세는 그 일부만이 공공투자, 정부재정 적자 보전,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되므로 민간부문의 투자 감소를 충분히 대체하지 못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매각한 자산이 우리나라의 경우 곧바로 민간부문의 투자 감소로 연결되느냐 하는 점이다. 상속세 납부 현실을 보면 토지·건물·산림 등 보유 부동산과 보유 주식의 일부 매각이나 同 자산의 物納을 통한 상속세 납부가 주된 패

17) Kuznets(1955), Galor and Zeira(1993), Torvik(1993), The Economist (1996), Deininger and Squire(1996), Perotti(1996) 등.

턴인 점과 이들 자산매각 중 일부만이 투자 감소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 일부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용될 경우 민간 부문 투자감소를 상쇄하는 효과가 뜻밖에도 크게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른다. 또 매각 자산이 투자자산이 아닐 경우 이를 구입한 이가 투자 자산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면 자산 매각이 민간부문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와 저축의 관계를 살펴보자. 상속세가 저축자의 저축을 저해하는 마이너스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저축동기는 아주 다양하다. 노후의 편안한 생활, 불확실한 미래의 재난 대비, 큰 기업을 영위하려는 준비, 가정 내외에서의 힘과 지위 확보 등 라이프사이클모형에서 설명되는 동기가 있는가 하면, 유산 확보, 자녀교육 자금 마련, 주택 마련 등 자녀세대까지를 고려한 왕조모형에서 설명될 수 있는 동기도 있다. 이밖에도 많은 저축동기가 있다. 유산을 남겨 주려는 동기는 이들 여러 가지 동기 중 하나에 불과하며 따라서 상속세 부과로 인한 저축에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나이가 들어 다른 저축동기들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유산동기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상속세 重課가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상속인의 경우 저축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불분명하다. 즉 피상속인의 경우 목표유산이나 목표소득이 있으면 상속세 부과가 노동공급과 저축을 더 증대시키는 효과를 지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상속에 대한 가격의 상승이 純相續財産을 축소시켜 피상속인의 저축의욕을 저해하고 이들의 생애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비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축소가 노동공급을 촉진시키고 소득 중 저축비율을 증대시키도록 하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상속세가 민간부문의 자본축적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상속세 부과 사례를 사안별로 구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우리의 논의가 西歐의 연구분석 결과와 우리의 상속세 부과에 개략적인 현실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검토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한편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기업가일 경우 자신들의 富를 信託에 맡기거나 慈善團體에 기부토록 촉진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은 피상속인이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선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상속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보다 보수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¹⁸⁾.

상속세는 포괄적 소득세와 달리 死後에 부과되므로 잠재적인 寄贈者의 一生에 걸친 투자결정의 형태에 미치는 왜곡이 훨씬 작다¹⁹⁾.

3. 企業 經營

상속세는 중견기업과 대주주 지분이 높은 일부 대기업의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줄 수 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해야 할 경우가 있는바, 이때 시장에 한꺼번에 대량의 주식이 매물로 나올 경우 株價下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우 장래 성장 전망이 있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주가하락이 투자자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안겨줄 경우 해당 기업의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물론 이같은 사례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해당 기업에 성장전망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나돌아 상속세 부담을 위한 주식매각으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는 드

18) Zuhtu Yucelik(1995), p. 191.

19) OECD(1988).

물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창업주의 사망이 후계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의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는 사례가 더 현실성을 지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의 창업주 사망에 따른 상속세 납부 부담이 주가하락을 가져오는 사례는 별로 많지 않았다. 또 이들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창업주의 사망에 대비하여 가족과 경영권을 이어받는 후계자들에게 富가 事전에 분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기업의 경우 창업주 사망이 株價와 기업경영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속세 부담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성질의 과제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비상장기업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중심의 경영체제가 일반적이고 창업주나 대주주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당량의 주식을 처분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이 주식인수를 꺼리거나 인수할 능력이 없을 때 기업 밖의 세력을 기업경영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같은 경우 대개는 가족기업에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들어 오며, 들어와서도 경영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같은 경우를 예상하여 창업주의 사망을 계기로 회사를 매각해버리거나 흡수·합병에 응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상속을 예상하고 취해지는 조치들이 기업경영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매각을 준비하게 하거나 상속세 납부를 대비해 기업의 발전에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구입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행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 일부 규모가 큰 가족기업들은 상속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기업을 공개하여 상속세 부담이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시키려고 한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은 이같은 상속에 따른 파급효과들이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발행한다면 이로 인해 경제내 효율성이 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답은 대주주의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과 주변 환경 변

화에 대한 대주주 주변의 대응자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기업내 사망자의 주식 지분이 높고, 전체 유산 가운데 주식 등 시장에서 쉽게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이 높고 부동산 등과 같이 거래에 시일이 소요되는 자산의 비중이 낮은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해당기업은 대주주의 사망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평소부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선호하는 투자행위를 하거나 借入을 한다면 이는 기업과 경제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한편, 이에 대비해 기업을 공개하여 새로운 주주를 맞아들이거나 吸收·合併 제의를 받아들여 통합된 회사가 마찰없이 돌아갈 경우 효율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성공한 기업가의 자녀가 부모와 동일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優生學에서 지적된 바 있으며 중소기업에 관한 영국의 검토보고서인 볼톤(Bolton)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특정의 한 가족에 맡겨두는 것이 나라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물론 數 世代에 걸쳐 한 가족이 통제력을 행사해온 기업 중에 걸출한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공을 거둔 기업가의 자녀들이 그들 부모가 지닌 통찰력과 힘을 반드시 이어 받는다고 壯談할 수 없다.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경영권의 변화와 기업의 소멸이 동일시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²⁰⁾”.

이 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헤이와 모리스(Hay and Morris, 1984)는 비상장기업(unquoted companies) 중 큰 기업들과 유사한 크기의 상장기업(quoted companies)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비상장기업이 창업주의 상속에 대해 더 잘 대처’한 것으로 보

20) Committee of Inquiry on Small Firms, Bolton 보고서, 1971, p. 226.

고하고 있다. 이들은 小標本の 비상장기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최고경영자들은 기업을 公開할 경우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理事들은 최고경영자로부터 장기적인 경영전략보다는 단기간의 高配當 실시를 통한 株主 지지 확보를 토대로 예상되는 흡수·합병 제의에 대처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어 기업의 공개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보스웰(Boswell, 1972)은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그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많다고 지적한다. 64개의 중소기업 경영자를 면접한 결과, 그는 창업자가 경영하는 젊은 기업들은 흡수·합병하거나 공개하는 경향이 평균 이상이었는데 창업주 2세 등이 운영하는 역사가 오랜 중소기업들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기업쇠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가족 후계자에 의한 서투른 경영을 꼽고 있다.

일부 후계자들이 이끄는 기업 중 어려움을 겪은 다음 다시 일어난 기업들이 있는데 재생과정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최고 경영자 계층이 한 두차례 교체된 경험을 안고 있다²¹⁾. 보스웰은 가족내 상속이 다수의 가족관계자를 채용케 하는 잘못을 저질러 기업의 쇠퇴를 가져 오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업활동을 전개하는 데 장애를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쇠퇴하는 산업에서는 오래되고 효율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합리화와 구조 변화에 더디다. 다시 말해서 이들 기업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쇠퇴의 운명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보스웰의 연구는 기업행위에 박차를 가하는 요소로서 家系動機(dynastic motive)에 주목한다. 그는 오늘날 창업자의 약 3분의 1이 男子 후계자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가 조사한 표본에서 전체의

21) Boswell(1972), p. 178.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영자가 남자 자녀가 없어 가족내 승계 의사가 없거나 어떻게 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나머지 반의 경영자는 強度의 強弱은 있지만 가족 내에서 기업을 승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흥미있는 사실은 남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自手成家한 경영자들이 창업자 2세들에 비해 가족 내에서 기업을 승계시키려는 의사가 약하다는 점이다.

보스웰은 상속세를 무겁게 부과할 것을 주장한다. 즉 무거운 상속세 부담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가족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체질개선의 시점으로 창업자가 은퇴하거나 사망한 시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가족내 후계자를 통해 경영이 양호하게 유지될 것같은 기업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취급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농업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다소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상속세의 영향을 받기 쉬운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토지가로 평가할 경우 농업은 資本化 비율이 아주 높아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다.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에서는 기업형태의 조직이 별로 없다. 또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개인 자산의 일부를 쪼개는 작업은 다른 산업에서의 분할 작업보다 유리하다. 물론 이같은 분할 작업의 결과 개인의 토지가 적정규모보다 작아지거나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한편 매각되는 농지의 일부를 지역의 농부가 구입하여 적정수준의 경작규모를 확보하게 될 경우 경쟁력을 지니는 농부가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다. 그리고 농장을 통채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잘 훈련된 농업전문가나 기업인이 농업 분야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정리하면 상속세가 기업운영에 유익한 효과를 미치는지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속세의 특성, 수준, 개개 상황에 따라 과급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상속세가 기업의욕과 기업경영은

물론 저축과 투자에까지 언제나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주장은 틀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OECD 국가들이 민간 기업과 농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방법은 輕減稅率(영국, 아일랜드)이나 유리한 평가방법(스웨덴, 미국)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들이 상속세가 ‘생산적 자산(productive assets)’에 대한 미칠 수 있는 해악적인 파급효과를 배제하기 위함인지 농업이나 중소기업 단체들의 로비의 결과인지는 불분명하다. 이같은 상속세 부담의 완화는 재산의 보유 형태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점에서 水平的 公平性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避稅·節稅의 길을 터준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第2節 相續稅 課稅類型別 特徵²²⁾

상속세제가 富의 재분배를 통해 수직적 公平성을 提高시키는 기능을 지닌다는 점에선 異論이 없다. 문제는 이같은 바람직한 기능을 지닌 稅制를 도입·운영하려고 할 경우 어떤 형태를 채택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相續稅制는 크게 보아 遺產稅(estate tax)型和 相續稅(inheritance tax)型的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국가마다 自國의 사정에 맞추어 이들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외에 미국, 영국, 대만 등이 유산세형 상속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 미국,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대부분 상속세형 세제로 되어 있다.

상속세 관련 用語에 대해 정리하면 相續稅型은 상속인이 납세의

22) 유사한 내용이 第2部 第2章에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同 기술과 중복되는 내용을 피해 개념을 정리하는 데 重點을 두었다. 法的 側面에 대해선 第2部 第2章의 기술이 보다 상세하다.

무자가 되는 경우이고, 遺産稅型은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과세유형을 가리킨다. 이는 표준적인 분류이며 本稿도 이에 따르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英國에서는 用語를 이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아 약간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오늘날 영국에선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일 경우 상속세(inheritance tax)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는 영국의 상속세법 개정의 역사가 담겨 있다. 즉 집권당이 바뀌면서 상속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²³⁾.

1. 相續課稅型의 長點

첫째, 증여세를 수반하는 상속세(inheritance type death duty, inheritance tax)는 유산세(estate duty, estate tax)에 비해 富의 불공평을 시정하는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받은 자산에 대해 누적 합산과세하기 때문이다. 불공평을 영구화시키는 원인은 큰 遺産이 아니라 큰 相續分 財產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23) 1894년부터 1974년까지 피상속인이 납세자일 경우 영국에선 유산세(estate duty)가 부과되었다. 同稅는 1974년까지 사망전 7년 이내 행해진 증여에도 부과되어 탈영이 많고 避稅·節稅의 대명사가 되었다. 1974년 노동당 정권이 집권하자 재무장관 Denis Healey는 이를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자본이전세(capital transfer tax)로 바꾸고 동일 증여자로부터의 일생에 걸친 증여를 합산하여 세액을 누진적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979년에 보수당이 다시 집권하자 Geoffrey Howe와 재무장관인 Nigel Lawson은 누적합산 기간을 줄였다. 1986년 Lawson은 사망전 7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를 제외한 모든 증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같은 변화로 인해 상속세는 1974년 이전의 유산세와 유사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대규모 유산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크게 낮아졌다. 증여가 과세대상에서 대부분 빠졌기 때문에 이를 자본이전세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과거의 호칭으로 돌아가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한 Lawson은 상식을 무시하고 자본이전세를 상속세로 개칭하였다. Sandford(1995) p. 64 註.

는多數의 기증자나 피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증자나 피상속인이 한 사람이거나少數일 경우에는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유는 누진세율 체계하에선 분할 재산인 相續分에 적용되는 세율이 분할전의 全體 遺産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 피상속인은 누진적인 상속세율 체계를 감안하여 가능하면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을 고르게 나누어 줌으로써 세부담을 줄여 자녀들의 稅後 유산문을 늘려 주려는 誘因을 지닌다. 이를 통해 자녀세대간 富의 분배가 공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유인으로 인한 富의 재분배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상속인 중 상당수는 그들의 富를 稅制와 상관없이 直系家族, 특히 家業을 승계할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남겨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유인이 상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本 유인에 따른 富의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셋째, 상속세는 생존자의 富에 부과되는 점에서 사망자의 富에 과세되는 유산세보다 공평성 추구 측면에서 적합한 조세이다. 사망자가 남긴 富는 개인의 편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처칠(Churchill)은 遺産稅를 가리켜 ‘산자 대신 죽은자에게 과세하려는 試圖’ 라고 비꼰 바 있다²⁴⁾.

넷째, 부의 공평성 측면과 배치되지만 상속인별 특성을 고려해 세부담을 조정해주려 할 경우 유산세에 비해 손쉽게 또 효과적으로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령 피상속인의 상속인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상속인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높은 면세점을 허용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국가가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까운 사이일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상속세를 유산세와 동일한 세수를 거둘 수 있도록 세율

24) Churchill(1906).

과 과세구간을 정해두었는 데도 상속세하에서 유산세보다 세수가 적게 징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자. 세수가 적게 징수되었으니 유산세에 비해 富의 불공평 시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틀린 지적이다. 오히려 상속세가 유산세보다 富의 불공평 해소에 더 기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산이 예상했던 것보다 공평하게 분배되어 세수가 작게 징수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이때의 세수 감소는 상속세의 富의 불공평 해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음을 말한다.

2. 遺産課稅型의 長點

첫째, 최대의 장점은 간편한 행정이다. 상속세에서는 면세점을 넘는 유산을 지니는 상속인에 대한 개별 계정을 관리해야 하는데 유산세에서는 유산총액에 대한 하나의 계정만 관리하면 된다. 물론 상속세의 利點이 많은 만큼 이를 즐기기 위한 對價로서 행정비용의 부담 증대를 감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유산세는 상속세보다 세수를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세율이 동일하고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령 상속세 체계하에서 세율을 다소 높게 설정하면 유산세 체계하에서 조달가능한 세수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차등세율하에선 상속인수가 작거나 특정인에게 집중 배분되면 오히려 상속세제하에서 더 많은 세수가 징수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3. 承繼課稅²⁵⁾(accessions tax)型의 長點

위에서 기술한 두 가지 과세유형 중 상속세형을 채택하기로 한

25) 상세한 기술은 Sandford, Willis and Ironside(1973) 참조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모든 상속세는 포괄적 증여세로 보완되어야 한다. 또 상속세의 주된 기능을 相續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不公平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할 경우, 承繼稅라고 규정된 형태의 상속세가 이같은 목적에 적합하다.

완전 포괄적 승계세(full and comprehensive accessions tax)에서는 모든 증여와 유산이 공평하게 처리된다. 증여와 유산은 누적되며 적용되는 세율은 과거에 받은 증여와 유산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누적합산이 생애에 걸쳐 행해지며 생애 면세점 등이 허용된다. <表 1-2-1>에는 承繼稅의 한 예가 제시되어 있다. 또 최소 증여에 대한 면세점과 한 해에 허용가능한 최대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 최대한도액을 설정한 것은 피세목적으로 소규모 증여 면세점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承繼稅는 증여와 상속을 통해 전달되는 재산을 누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富者들은 증여와 상속을 가장 적게 받은 자녀들에게 富를 남겨주려는 유인을 지닌다.

<表 1-2-1> 承繼課稅 運用 例

(單位 : 달러, %)

유산·증여	세율	연도	내용	납부세액
~5만	0	1975	숙모 A씨로부터 증여 5만	0
5만~10만	10	1980	부친 B씨로부터 증여 5만	5천
10만~20만	20	1985	모친 C씨로부터 증여 5만	1만
20만~30만	30	1990	숙부 D씨로부터 상속 5만	1만
30만~	40	1995	부친 B씨로부터 상속 30만	11만
총 유산(상속+증여)				50만
납부세액			0.5만+2만+3만+8만 = 13.5만	
기납부세액			2.5만	
유산상속시 납부세액			11만	

承繼稅는 단순한 상속세에 비해 복잡하고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자료가 전산처리 가능하므로 오늘날 그 실용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아일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아일랜드에서는 순수한 형태의 승계세는 아니지만 이의 일종인 資本取得稅(capital acquisition tax)를 시행하고 있다. 자본 취득세는 모든 증여와 상속을 누진합산하여 과세하는데 承繼稅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 同稅는 生前贈與와 遺産에 대한 면세점을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관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또 유산보다 生涯 贈與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특정 자산에 대한 다양한 세부담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같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자와 전문가들은 과거의 유산세보다 현행 세제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4. OECD 主要國의 運用 實態

1995년 기준 OECD 국가 중 16개국 이 상속세형을, 미국과 영국 이 유산세형을, 이탈리아는 두 가지 모두, 그리고 스위스는 세에 따라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 1970년대 초반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도 유산세형을 채택하고 있었다. 아일랜드는 상속세형으로 전환했고 나머지 3국은 유산세를 폐지하였다.

상속세의 세수 기여는 미미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경우 세수(사회보장기여금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달하지 못한다. 스위스와 일본만이 최근 수년간의 평균이 1.5~3%대를 기록해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계를 보면 흥미를 끄는 두 가지 측면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상속세형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는 유산세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비율을 웃돌고 있다. 둘째, 일본 경제는 1980년대까지 저축률, 투자율, 경제성장률이 높았다. 높

은 相續稅 稅率이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친 것으로 간주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第 3 節 相續稅의 세 가지 課稅根據

相續稅의 課稅根據로 자산과세, 소득과세 보완, 그리고 노령기 응
익과세의 세 가치를 검토한다.

첫째, 자산과세는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자산이 과
세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자산과세를
도입하여 불공평한 富의 分配를 개선하는 것이 세제가 수행해야 할
공평성 제고 기능이라는 것이다.

둘째, 소득과세 보완은 소득의 발생단계에서 행해지는 소득과세
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富가 이전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즉
脫稅·節稅 所得과 자산인플레로 인해 발생한 資本利得에 대한 과세
가 현행 소득세제하에서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代替稅로서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老齡期 應益課稅는 은퇴세대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
부의 상당부분이 청장년기 세대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되어 이전되
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노령기 세대인 피상속인은 이상의 이전급부
에 대한 對價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年金制度로
인해 世代間移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와 대칭적 관계에 있는
資產 承繼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社會化하
자는 것이다. 즉 상속세는 부양해야 할 부모가 없는데도 연금을 납
부하는 계층에 대해선 부담을 덜어주고, 연금제도 덕분에 부모 부
양비가 줄어든 계층에 대해선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기능을 지
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징수된 相續稅를 피상속인과 同一世代인 노

령기 계층의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왜냐하면 이같은 방법으로 인해 부양해야 할 부모가 없는데도 연금을 납부하는 계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덜어지고, 연금제도 덕분에 부모 부양비가 줄어든 계층은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재산 몫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相續稅 課稅根據에 대해선 다음의 세 가지가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富의 分配 등의 관점에서 다른 조세와 독립적으로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絶對的 相續稅'라고 부르자. 둘째는 所得稅 혹은 支出稅를 보완하는 세목으로서 상속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福祉施策에 대응하는 應益稅로서 相續稅를 규정짓자는 주장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의 현행 상속세제를 평가한다. 우리는 기존의 논의가 상속과세를 논함에 있어 일관된 이론적 기초에 입각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능하면 相續稅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데 분석의 주안점을 둔다. 또 기존의 조세이론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所得稅 및 支出稅(expenditure tax) 논의와 相續稅 논의의 상호연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1. 資產課稅

資產 특히 富에 대한 과세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다. 純富裕稅(annual wealth tax)와 富移轉稅(wealth transfer tax)가 있다. 순부유세는 매년 특정시점의 富스톡에 대한 과세이고, 富移轉稅는 증여나 상속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富의 이전에 대한 과세이다.

純富裕稅는 매년 개인의 보유자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純資產에 대한 과세로서 장점으로는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효율성 측면

에서 유리하고 소득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등의 과세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이 있고, 단점으로 수익과 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찾아내야 하는 점과 평가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비해 富移轉稅는 純富裕稅만큼은 못하지만 공평성을 제고시켜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고, 특히 수직적 공평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²⁶⁾. 하부리와 히친즈(Harbury and Hitchens, 1979)가 지적하고 있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영국에서의 富의 불공평은 아마도 많은 다른 서구 국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또 富移轉稅는 세무행정과 평가에 있어 純富裕稅보다 훨씬 간편하다.

이하에선 우리의 주된 관심인 富移轉稅인 상속세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가. 資産課稅의 存在理由

相續稅는 자산이 이전될 때에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부과되는 資産保有稅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때 資産移轉이라 함은 반드시 세대간의 이전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지만 주요부분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의 이전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경우를 상정한다. 먼저 자산보유세의 존재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자산이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所得(현금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귀속소득인 경우를 포함)을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소득에 과세하면 이것과는 별도로 독립된 자산세를 과할 필요가 없다는 논의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립된 資産稅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미드

26) Harbury and Hitchens(1979)는 광범한 실증 자료들을 분석하여 상속이 금세기 들어 특히 최근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富의 불공평을 초래한 아주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p. 136.

(Meade)報告書²⁷⁾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자산보유 자체의 經濟的 價値이다. 資產이 가져오는 소득은 노동소득과 달리 연령과 더불어 감소하는 일이 없다. 또 여가의 희생도 수반하지 않는다. 이 의미에서 자산은 그 보유자에 대해 特別한 經濟的 利益을 부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²⁸⁾. 또 자산보유는 獨立, 安全, 影響力 등의 이익을 제공한다.

둘째, 使用促進이다. 자산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과세하면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인센티브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자산보유 그 자체에 과세하면 이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물론 귀속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면 소득과세에서도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아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귀속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자산의 유효활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셋째, 資產分布의 平等化이다. 자산보유에 과세함으로써 자산의 보다 평등한 분포가 기대된다. 나아가 과세방법에 따라서는 자산보유자가 보다 다수의 상속인에게 자산을 남길 인센티브를 안겨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선 다음에 기술한다.

넷째, 歸屬所得課稅의 不完全性이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행해지더라도 실제로는 현금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만이 대상이 되어 歸屬所得이 정확히 과세되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자산 그 자체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 이것은 특히 居住用 不動產에 관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자산에 대한 獨立課稅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같은 입장에서 보면 자산가치에 대해 매년 과세하는 純富裕稅(annual wealth tax)가 필요해진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자산세에서는 相續으로 얻은 자산과 貯蓄으로 축적된 자산을 구별할 수 없

27) 미드(Meade)보고서 제15장. 미드보고서는 영국의 미드위원회가 1978년에 제출한 세계개혁구상이다. 지출세에 관한 현대적인 계연을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8) 지출세의 입장을 취할 경우 이와 같은 이유로 자산보유를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 점에 대해선 미드보고서를 참조.

다. 사회적 공평과 경제적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前者를 보다 무겁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상속과 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이것이 ‘絶對的 相續稅’의 논거이다.

나. 課稅對象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相續稅를 볼 경우 바람직한 相續稅는 어떤 것일까.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被相續人과 상속인의 어느쪽에 과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기술한 絶對的 相續稅의 논거에 입각하면 被相續人보다는 상속인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결론이 얻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被相續人에게 과세하면 상속으로 얻은 자산과 저축으로 축적된 자산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실제부담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상속세가 比例稅라고 해보자. 이때 被相續人이 상속세 포함 일정액을 남기려고 행동하면 被相續人에게 과세하든가 상속인에게 과세하든가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귀착된다. 역으로 被相續人이 과세 후에 일정액을 남기려고 행동하면 被相續人에게 과세하든 상속인에게 과세하든 상속세는 被相續人에게 귀착된다. 이처럼 상속세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누가 되는가는 세제상의 납세의무자와는 관계가 없고 被相續人의 行動에 의존한다.

被相續人과 상속인이 어느 쪽에 과세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은 累進稅의 경우이다. 가령 누진적인 유산과세가 被相續人에게 부과되는 경우, 세율은 被相續人이 얼마만큼을 유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역으로 누진적인 유산취득형과세가 상속인에게 과해지는 경우 세율은 상속인이 얼마만큼을 취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 경우 자산보유의 分散化를 촉진시키기 위해선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상속인이 생애에 얻은 자산에 누진과세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평가하면 다음의 세 가지 점이 지적된다.

첫째, 被相續人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점은 전체 총유산에 대한 누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속인과 비상속인 간의 富의 再分配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증여를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는 조치가 있는바, 이는 被相續人의 생애축적자산에 누진과세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세율이 상속재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문제이다. 먼저 본시 상속세의 존재 이유가 매년 부과되는 자산세를 유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겁게 매긴다는 것이므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다음은 子女世代를 뛰어 넘어 손자세대에 유증하는 이른바 世代省略相續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 累進的 生涯資產承繼稅

위에서 기술한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조세가 필요할 것이다. 즉 자산을 취득한 시점에서 일정연령 가령 85세까지 매년 납부하는 純富裕稅(annual wealth tax)의 現在價值 相當分을 지불한다. 따라서 젊은 사람일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이 경우 과거에 취득한 자산기록을 참조하여 평생 동안의 취득자산에 대해 累進課稅가 되도록 조정한다. 그리고 자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시점에서 85세까지의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조세는 還拂된다. 이는 미드(Meade)보고서에서 제안된 과세방식으로 PAWAT(Progressive Annual Wealth Accession Tax)라고 한다.

이 방식에 의하면 유산으로 취득한 자산의 保有期間에 따른 과세가 행해져 앞에서 지적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또 빨리 증여하면 還付金이 많아지므로 빨리 증여할 유인이 생긴다. 누적취득액에 과

세하므로 과거에 상속재산을 많이 받지 않은 자에게 남기는 유인이 생긴다. 어느 것도 富의 所有를 분산화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다만 被相續人이 자기 저축으로 축적한 자산에 관해서는 이같은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문제점은 현재의 시스템에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2. 所得課稅 補完

상속세를 이상과 같은 특별한 조세로 보지 않고 包括的 所得稅(이하 소득세라고 칭한다)나 支出稅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 가령 ‘相續으로 취득한 자산도 資產 純增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包括的 所得稅의 입장에선 상속재산이 소득이 되므로 이에 대해 다른 소득과 같이 소득 과세를 적용한다. 사이먼스(H. Simons)는 소득을 정의하면서 相續과 贈與에 의해 얻은 자산을 所得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드(R. Goode)는 상속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증여에 대해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증여는 새로운 소득의 창출이 아니라 단순한 所得의 分割(sharing)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⁹⁾. 한편 ‘유산을 소비의 일종’으로 생각하면 支出稅 基準에 따라 상속재산을 통상의 소비용 소득에 준해 과세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득세제에선 ‘상속·유증이나 개인으로부터의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明示的으로 두고 있지 않다. 일부 국가에선 상속세와 소득세의 二重課稅를 배제하기 위해 所得稅法에서 이같은 非課稅 規定을 두고 있다³⁰⁾. 그런데 소득세법에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같

29) Goode(1964), p. 101.

30) 일본의 경우 소득세법 제9조에 이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은 규정을 두는 경우 세제를 보는 시각이 상속세를 소득세의 일부라고 보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가령 앞에서 기술한 절대적 상속세론에 입각해 소득세와 독립된 상속세를 고려하면 二重課稅 問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相續稅를 所得稅나 지출세의 일부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相續稅의 위치를 검토해보자.

가. 論點과 模型

相續稅를 所得稅 혹은 支出稅의 일부로 볼 경우 所得稅 및 支出稅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 즉 課稅單位, 資產純增에 대한 개념 정의, 유산의 소비 유무에 대한 논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먼저 課稅單位의 문제이다. 소득세나 지출세를 논의함에 있어 과세단위를 부부를 포함한 개인으로 볼 것인가, 부모와 자녀를 통합한 擴張家族(extended family)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선 당분간 과세단위를 개인이라고 하자.

두번째는 資產純增에 대한 개념의 정의이다. 소득세나 지출세의 과세베이스를 정의할 때에 '資產純增'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즉 '資產純增'을 상속재산의 原本을 제외한 増殖分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상속재산의 原本까지를 포함한 原本+増殖分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課稅單位와도 연관되어 있다. 가령 과세단위를 확장가족이 아닌 개인으로 보면 일생의 출발점의 보유자산은 零(0)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하의 논의에서는 상속재산도 '資產純增'에 포함되는 것으로 고려한다. 가령 어느 개인이 우연히 금괴를 발견할 경우 소득세에서는 同 금괴의 가치상당분만큼 자산이 증가했다고 해석한다. 상속재산도 마찬가지이다.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파악할 경우 상속재산을 資產純增에 포함시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발상이다.

세번째는 遺産의 消費 有無이다. 소득세나 지출세의 과세베이스

를 정의할 때 유산을 소비로 간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여기선 유산이 被相續人에게 效用을 안겨주며 따라서 소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물론 유산 중에는 被相續人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축적자산이 조기 사망으로 인해 남게 되는 '非意圖的인 遺産'이 상당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같은 유산은 소비로 간주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하에서는 3期間을 사는 개인에 대해 유산을 고려한 라이프사이클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자. 개인은 먼저 제1기를 생각해 보자. 제1기 초에 유산 A 를 받아 노동소득 W_1 을 얻는다. 이 중 C_1 을 소비하고 S_1 만큼을 저축한다. 제1기의 豫算制約은 $A + W_1 = C_1 + S_1$ 이 된다. 제2기에는 노동소득 W_2 를 벌고 C_2 만큼 소비하여 S_2 만큼을 저축한다. 이자율을 r 이라고 하면 제2기 豫算制約式은 $(1+r)S_1 + W_2 = C_2 + S_2$ 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자본이득 등을 포함한다. 제3기에는 C_3 을 소비하고 유산 B 를 남긴다. 제3기 豫算制約式은 $(1+r)S_2 = C_3 + B$ 이 된다. 여기서 $R_1 = 1/(1+r)$, $R_2 = 1/(1+r)^2$ 이라고 하면 생애 예산제약식은 $A + W_1 + R_1W_2 = C_1 + R_1C_2 + R_2C_3 + R_2B$ 가 된다.

논의를 전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가정을 추가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壽命의 불확실성은 없다. 다음은 소비는 과

〈表 1-2-2〉 期間別 資産水準

	노동소득	이자소득	기말자산	期中 자산증가
제1기	W_1	0	S_1	$S_1^{1)}$
제2기	W_2	rS_1	S_2	$S_2 - S_1$
제3기	0	rS_2	0	$-S_2^{2)}$

註: 1) 소득세 과세단위를 부부를 포함하는 개인으로 볼 경우 $S_1 - A$.

2) 의도하지 않은 유산이 발생되어 기말자산이 B 일 경우 제3기중의 자산증가는 $B - S_2$.

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번째는 資本市場은 완전하고 예금이자와 같은 率로 무제한으로 차입할 수 있다.

나. 所得稅 體系

소득세 과세원칙에서는 과세베이스인 소득을 ‘消費+資産의 純增’으로 정의한다. 앞에서 논의한 모델에서 각 기별로 과세베이스가 되는 소비+자산의 순증을 생각해 보자.

제1기에서는 과세베이스는 소비 C_1 과 期中의 저축순증 S_1 이다. 따라서 제1기의 과세베이스는 $C_1+S_1=W_1+A$ 이다. 제2기에는 과세베이스는 소비 C_2 와 期中의 저축순증 S_2-S_1 이다. 따라서 제2기 과세베이스는 $C_2+(S_2-S_1)=W_2+rS_1$ 이다. 제3기에는 소비에 유산이 포함된다. 따라서 소비는 C_3+B 이다. 또 期中의 저축순증은 <표 1-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S_2$ 이다. 따라서 제3기 과세베이스는 $(C_3+B)-S_2=rS_2$ 이다. 여기서 좌변은 이론상의 과세베이스일 뿐이고, 실제 과세는 우변에 대해 행해진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제1기 과세베이스를 나타내는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세 입장을 취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모든 자산에 대해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稅率이 적용된다. 이는 캐나다의 카터(Carter)報告書(1966)와 동일한 발상이다. 즉 同 보고서는 경제력 증가를 모두 소득으로 간주하는 포괄적 소득의 사고에 입각해 유산·증여에 의한 자산의 수취도 과세베이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세 원칙에 의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과세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납세용 자금을 위한 流動性問題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延納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자산의 純增이라는 정의와 관련해 태어날 때부터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1기 자산순증은 S_1-A 가 되고 상속재산인 A 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소득세에서는 資産純增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

한편 유산이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에도 제3기 과세베이스는 $C_3 + (B - S_2) = rS_2$ 가 되어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 支出稅 體系

앞에서는 소득세 체계에 입각하여 상속세를 기술하였다. 이하에서는 지출세 체계에 근거하여 상속세가 지닌 支出稅의 特性을 간접세방식의 지출세, 저축공제방식 지출세, 노동소득세 방식의 지출세에 입각하여 살펴본다.

1) 間接稅方式 支出稅

간접세방식의 지출세에 입각할 경우 과세베이스는 消費가 된다. 제1기 소비 C_1 , 제2기 소비 C_2 , 제3기 소비 C_3 , 소비로 간주하는 유산액 B 가 과세베이스에 포함된다. 따라서 제1기 과세베이스는 C_1 , 제2기 과세베이스는 C_2 , 제3기 과세베이스는 $C_3 + B$ 가 된다. 결국 遺産은 다른 소비와 같은 세율로 과세된다. 이 경우의 과세유형은 우리나라와 같은 遺産課稅型이 된다. 이 점은 다음에 기술하는 貯蓄控除方式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유산이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제3기 과세베이스는 C_3 이다. 현실이 이들 해석의 중간적인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면 유산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

2) 貯蓄控除方式 支出稅

저축공제방식 지출세에 입각할 경우 과세베이스는 ‘所得-貯蓄 (= 자산 순증)’이다. 제1기 소득은 소득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소득 W_1 과 상속재산 A 이다. 한편 자산순증이 S_1 이므로 위의 정의에 따라 제1기 과세베이스(예 산제약)는 $W_1 + A - S_1 = C_1$ 이 된다.

제2기 과세베이스의 경우, 노동소득 W_2 와 제2기 이자소득 rS_1 이고, 자산순증 제2기 말의 저축잔고 S_2 에서 제2기 초 저축잔고 S_1 을 차감한 $(S_2 - S_1)$ 이다. 즉 제2기 과세베이스는 $W_2 + rS_1 - (S_2 - S_1) =$

C_2 가 된다.

제3기 과세베이스의 경우 퇴직 후이므로 노동소득은 없고 이자소득 rS_2 뿐이다. 한편 유산 B를 소비로 간주하면 期末資產은 零(0)이 되고 期中 純增은 $(0-S_2)$ 가 된다. 즉 유산은 기말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기 과세베이스는 $rS_2 - (-S_2) = C_3 + B$ 가 된다.

실제로 과세베이스가 되는 것은 각 식의 좌변으로 표현된 生涯資產이 된다. 이것이 우변의 생애소비와 같으므로 과세베이스는 간접세방식의 지출세와 일치한다.

여기서는 상속재산이 제1기에 다른 소득과 같은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빠지고 소비를 목적으로 同 저축을 인출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제2기까지 소비되지 않은 부분은 제3기에 저축인출 S_2 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미드(Meade)보고서는 유산을 소비로 간주하고 자산이전에 대해 공제해주지 않는 것이 支出稅 原則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같은 지출세는 '증여를 포함한 지출세'(GIET, Gifts Inclusive Expenditure Tax)라고 불리운다. 이 방식에 따르면 유산은 제3기의 資產純增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기서 상속재산 A를 자산순증으로 보아 위의 결과와 비교하여 자산순증에 관한 정의가 지출세의 과세베이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자. 가령 제1기 資產純增을 $S_1 - A$ 로 표기하면 제1기 소득은 소비 + 자산순증 $(C_1 + S_1 - A) = W_1$ 이 되고, 지출세의 제1기 과세베이스는 소득 - 자산순증 $(W_1 - (S_1 - A)) = C_1$ 이 된다. 즉 지출세 과세베이스는 자산순증의 정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령 위에서와 달리 유산이 소비가 아니라고 하면 유산은 기말자산이 되므로 제3기 과세베이스가 축소된다. 제3기의 자산순증은 $B - S_2$ 가 되고 제3기 소득은 $C_3 + (B - S_2) = rS_2$ 가 된다. 따라서 제3기 과세베이스는 $rS_2 - (B - S_2) = C_3$ 이다. 즉 유산이 기말자산으로 공제되는 만큼 과세베이스가 축소된다.

실제 과세에서 상속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상속재산의 평가가 덜 엄격하고 諸控除額 수준이 높아 비과세 한도액은 높고 실효세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로 상속세를 지출세 입장에서 바라보고 유산 중 일부를 저축이라고 간주하는 視角을 들 수 있다. 즉 유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非意圖的인 遺産(unintended bequests)은 소비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대부분은 저축이라는 것이다. 또 의도된 유산도 同 유산을 남기는 행동이 ‘사회적 資産풀(pool)에서 무엇인가를 빼내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도적인 유산을 소비로 규정할 경우에도 다른 소비와 달리 輕減課稅를 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유산은 소비’라는 견해와 달리 미국 財務省(1977)은 靑書(blue print)를 통해 유산이 소비 기회의 포기이며 소비지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세베이스에서 공제대상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이렇게 공제된 저축이 세대간 이전으로 축적될 경우 자산집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와 별도로 ‘資産移轉稅’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즉 상속·증여 등 세대간의 資産移轉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適格資産³¹⁾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同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한 과세가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이 다음 세대로 비과세 상태로 이전되어 가면서 축적되어 자산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

스웨덴의 로던委員會(1976)報告書는 위의 미드보고서와 美國 財務省 靑書(blue print)의 제안을 구분하여 받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산 이전을 상속과 증여로 구분하여 증여는 소비로 간주하는 미드보고서 방식을 채용하고, 유산은 소비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美國 財務省 靑書方式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

31) 저축공제방식 지출세에서 공제인정 자산을 適格資産이라고 한다. 適格(qualified)이라 함은 靑書의 용어이다. 미드보고서는 이를 登錄資産(registered assets)이라고 부른다(제9장).

하다고 주장한다. 증여를 소비로 간주하는 것은 증여자의 의사가 同 행위에 명확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3) 利子非課稅(노동소득 과세)方式 支出稅

利子所得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그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식이다. 과세베이스의 현재가치인 間接稅方式 및 貯蓄控除方式과 같게 하기 위해선 상속재산 A를 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各期の 과세베이스를 보자. 먼저 제1기의 경우 $A + W_1 = C_1 + S_1$, 제2기는 $W_2 = C_2 + S_2 - (1+r)S_1$, 제3기는 零(0)이다. 제1기 시점의 현재가치는 $C_1 + S_1 + R_1(C_2 + S_2 - (1+r)S_1) = C_1 + S_1 - S_1 + R_1C_2 + R_1S_2 = C_1 + R_1C_2 + R_2(C_3 + B)$ 가 된다.

여기서 A를 과세하지 않고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면 아주 불공평한 과세가 된다. 이 방식은 소비보다 소득의 원천에 과세하고 있다. 즉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消費餘力을 지니게 되므로 과세가 필요하다.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소득세제는 지출세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³²⁾. 다만 상속과세는 덜 엄격한 상속재산 평가방법과 높은 비과세한도액 등의 조치에 영향을 받아 통상의 소득과세보다 실효세 부담이 낮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훨씬 불완전한 지출세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행해지던 시기에도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등 실현된 자본이득이 과세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과거 이자소득을 폭넓게 비과세해주던 우리의

32) 野口悠紀雄(1989), 제4장 p. 108. 참조 우리의 경우 과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폭넓은 비과세조치가 행해졌지만 근래에 들어 비과세 저축은 금융실명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분위기하에서 점차 축소되어 왔다. 한편 최근 들어 국내 경기전망이 밝지 못한 가운데 저축장려책으로 소득세 비과세저축이 폭넓게 도입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보다 소액저축에 대해 폭넓은 비과세제도를 장기간 운영해왔던 일본의 경우 이같은 논리가 더욱 들어 맞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제는 利子非課稅型 支出稅와는 거리가 있는 세제라고 할 수 있다.

라. 讓渡益 課稅와의 調整

1) 論點

絶對的 相續稅나 노령기 응익과세로서의 상속세를 고려할 경우에는 相續稅와 讓渡益課稅간의 조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세목은 전혀 별개의 조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세를 소득세와 지출세를 보완하는 세목의 일부로 고려하면 相續稅와 讓渡益課稅의 문제를 조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의 두 가지 논점에 대해 고찰해보자. 첫째는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익과세시 취득가격으로 상속시점의 평가가격과 被相續人의 취득가격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讓渡益課稅에서 상속세액을 공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행 세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속한 자산을 매각한 경우의 양도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격은 被相續人의 취득가격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된 날의 가격이다³³⁾. 다만 증여의 경우 배우자, 자녀, 특수관계인 등이 수증 후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讓渡所得稅를 부과하며, 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이다. 본 규정에 대해 1996년도 상속세법 개정안은 자녀와 특수관계인은 수증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취득가격을 이어 받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일본 소득세법 제60조. 따라서 일정한 조건하에 납부한 상속세를 양도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일정 조건이라 함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었던 자산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비에 가산한다. 다만 이는 양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별조치법 제39조. 산식은 납부해야할 상속세액×(양도자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격 계산의 기초에 산입된 가액/해당자의 상속세 과세가격)임.

로 1년을 더 늘렸고, 배우자의 경우 5년으로 3년을 더 늘렸다. 이때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납부한 증여세 부담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2) 所得稅 體系

가) 理想的인 所得稅

이상적인 소득세에서는 상속시에 同 상속재산을 자산 순증에 따른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상속시점의 재산가액에서 증가한 자본이득으로 계산된다. 이 稅는 상속세와는 별도의 조세이므로 同 자산에 상속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同 상속세액을 공제할 필요는 없다.

나) 未實現 資本利得 非課稅

앞의 소득세 논의는 미실현 자본이득이 과세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소득세에서는 자본이득은 실현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시에 토지, 주식의 未實現 資本利得에 대한 과세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과세할 필요가 있다. 예금이자 과세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同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未實現 資本利得 清算稅와 상속세가 다른 조세라는 점이다. 상속세는 미실현 자본이득 청산세와 대체 관계에 있을 수 없다. 가령 예금의 경우 이자는 이자소득 과세 대상이 되고 원금은 상속세 과세대상도 된다. 또 사망직전 토지를 매각하여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讓渡所得稅를 납부해야 함은 물론 同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세도 납부해야 한다. 즉 상속세는 상속인의 자산 증가에 대한 과세이므로 미실현 자본이득 청산세와는 다른 세목이다.

다) 未實現 資本利得 課稅도 死亡時 清算稅도 없는 경우 :

우리나라

우리의 세제에서는 土地超過利得稅가 유일한 미실현 자본이득세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세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 또 사망시의 清算稅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상속재산에 대한 미실현 자본이득의 경우 대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현행 세법이 양도익과세 계산시 상속재산의 취득시점을 相續開始日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同 자산의 취득가격은 相續稅 評價價額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우 未實現 資本利得은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되는 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만다.

자산의 취득시기를 相續開始日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현행 세제는 과세대상을 인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규정이라고 하기 어렵다. 상속재산의 취득시점은 被相續人이 同 자산을 취득한 시점으로 규정하는 것이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는 본래 부모가 지불해야 했던 資本利得稅를 자녀가 지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요컨대 미실현 자본이득과세와 상속세는 다른 조세라는 것이며 讓渡所得稅 산출세액에서 상속세 납부액을 공제해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미실현 자본이득과세도 사망시 清算課稅도 없는 경우, 바람직한 과세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時價法으로 적용하여 평가한 다음 이를 토대로 相續稅를 산출한다. 이유는 상속인의 재산 증가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함이다. 적용 세율은 다른 소득에 대한 세율과 동일하다.

둘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할 경우 동 매각자산의 취득가격으로 被相續人의 취득가격을 사용하여 讓渡所得稅를 산출한다. 또 양도소득세액에서 기납부 상속세액은 공제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에서 被相續人의 취득가격을 적용한 것은

被相續人의 미실현 자본이득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별개의 조세라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서 현행 우리나라 세제 즉 상속개시 시점의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간주하고 讓渡所得稅에서 相續稅를 공제해 주지 않는 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상속재산의 평가법으로 時價評價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평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공시지가가 폭넓게 활용되어 時價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되고 있고 일부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적정한 時價 파악이 곤란하여 임의의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없지 않다. 또 높은 공제로 비과세 한도액이 높게 설정되어 다른 소득과 비교하여 볼 때 실효세율이 낮다.

둘째, 讓渡所得稅에서 취득가격을 상속개시 시점의 상속세 평가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은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의 충실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올바른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被相續人代에 형성된 자본이득이 상속과정을 거치면서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셋째, 讓渡所得稅 산출세액에서 상속세 납부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타당하다. 곧 상속세는 미실현자본이득의 清算稅가 아니고 상속인의 자산 증가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한 未實現 資本利得에 대한 소득세나 사망시의 청산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식적으로는 받아 들여지기 어렵다³⁴⁾. 상속재산은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일정수준의 과세조치

34) 일본의 경우 상속세 과세시에는 시가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부모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므로 부모의 취득가격과 상속세 시가의 차인 자본이득이 이중과세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동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양 세목이 별개의 세목으로 파악되어야 함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소득세의 경우 실제로는 부모가 납부했어야 할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가 자녀의 양도시점에서 延納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바르다. 二重課稅라는 視角은 양 세목을 별개의 세목으로 보지 않을 때 성립된다.

를 받고 있다. 또 일시적으로 多額의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소득세율에 버금가는 세율로 累進課稅가 적용된다. 그리고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의 경우 流動性을 확보하는 문제가 수반된다. 즉 납세를 위해 보유자산의 일부를 매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기업활동이나 일상 생활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는 납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평균화 조치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크게 손질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課稅單位를 개인으로 한정했다. 만일 과세단위를 擴張家族이라고 볼 경우 상속세는 필요가 없어진다. 필요한 것은 미실현 자본이득의 사망시 清算뿐이다. 따라서 미실현 자본이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금융자산 등에 대해선 상속세 과세를 정당화할 수 없게 된다.

3) 支出稅 體系

우선 간접세방식의 지출세의 경우, '使用'인 소비를 대상으로 하고 '원천'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시 讓渡益課稅 문제가 아니다. 또 이자비과세의 경우에는 취득자산과 노동소득만이 과세대상이므로 역시 자본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익과세와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貯蓄控除方式의 경우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경우에 대해 고려해 보자.

가) 全 被相續人이 課稅받는 경우

미실현 자본이득은 자산의 순증에 해당하는 소득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시에는 모든 유산은 소비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과세는 여기서 완결된다. 자녀대의 자본이득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시의 時價에서 출발하면 된다.

나) 一部 被相續人이 課稅받는 경우

실제로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유산에 대한 과세는 다른 소비보다 가벼운 과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유산과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미실현 자본이득으로 과세가 연기되는 소득이 과세되지 않고 끝나고 자녀대로 물려져 버리고 만다. 따라서 이 자산분에 대해 자녀대에서 양도익이 실현될 경우 과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래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부모가 남긴 유산에 유산과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자녀의 讓渡益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시의 평가가격에서 출발한다. 다음은 부모가 남긴 유산에 유산과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익 실현시에 이자분까지를 포함해 延納형태로 부과된다. 이것은 취득가격을 被相續人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과 대부분의 경우에 동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별은 복잡하다. 그래서 양도익과세시의 취득가격을 일반적으로 被相續人의 취득가격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가 남긴 유산에 유산과세가 부과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되므로 상속세 납부분과 이자분을 공제해 준다. 日本의 현행 세제가 이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분석상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당화될 수 있다.

3. 老齡期 應益課稅

가. 世代間 資產承繼와 扶養

부모의 뒷바라지를 국가가 대신하는 경우, 福祉國家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상속세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이것은 상속세를 일종의 應益原則에 의한 과세라고 보는 視角이다.

어떤 사회에도 고령자가 보유하는 자산은 어떤 형태로든 다음 세대로 승계되고 한편으로 퇴직 후의 사람들은 현역세대에 부양된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나라에 따라 혹은 발전단계에 따라 다양하다. 이들을 도식적으로 樣式化해 나눈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첫번째, 자산의 승계도 노후의 부양도 가족 내부에서 행해지는 패턴이다. 즉 퇴직 후의 고령자는 자녀에 의해 부양되고 看病·看護도 가족 내에서 행해진다. 다른 한편 자산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회에 있어서의 世代間移轉의 패턴이다.

이에 대해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사고는 퇴직 후의 생활을 公的年金으로 유지하고 의료, 간병·간호 등도 공적서비스로써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을 포함한 선진제국은 이것을 이상형으로 추구해왔다. 전통사회의 '가족내 이전형'은 가족 내의 친근한 부양이 기대 가능한 반면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같은 부담을 사회전체로 평균화시키기 위해 복지국가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형 시스템에는 자산을 가진 자와 그 자녀에게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고 무자산자의 자녀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급부도 부담도 자산보유 상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족내 이전이 행해지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父母 扶養의 原始資本으로 부모가 가진 자산의 일부가 사용되고 따라서 자녀가 상속할 수 있는 자산은 그만큼 줄어든다. 福祉國家에서는 부모의 부양이 국가에 의해 대신되므로 자녀가 상속할 수 있는 자산은 전통적인 사회의 경우보다 많아진다. 그 결과 '자산격차의 확대'라고 하는 우스꽝스런 결과가 초래되는 위험이 있다.

이 점이 지금까지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지 않았던 것은 종래 사회에서는 스톡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톡의 중요성이 커지면 무시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 본래 '복지국가'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일 것이다. 확실히 플로단위로 보면 福祉國家 시책은 격차를 시정하는 기능을 지닌다. 그러나 스톡사회에서는 반대현상이 생길 수 있다.

나. 相續稅 直接 強化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부양을 公的施策을 통해 사회전체가 행하는 것과 평형을 도모하기 위해 세대간 이전의 반대 측면인 자산의 승계에 대해서 사회화가 필요하다. 자산의 승계에 대해 사회화한다는 것은 상속·증여세를 근본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相續人은 자산을 상속하는 對價로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公的年金이 도입되면서 그 의무가 상당히 낮아졌다. 왜냐하면 노후 생활비의 상당부분이 공적연금 제도를 통해 보장되기 때문이다. 급부의 대부분은 현역세대로부터의 이전에 의해 조달된다. 따라서 부모가 남겨 주는 상속재산이 연금제도의 도입과 상관없이 일정하다면 연금을 통한 부모에의 이전분만큼 상속재산은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부모가 유산동기를 지니지 않을 경우이다. 부모가 유산동기를 지니고 있다면 연금제도에 따른 이전급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의 유산이 자녀에게 남겨질 수 있고 이는 제1장에서 논의한 바 있다. 여기서 유산을 남기지 않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유산을 남겨 상속세를 부과받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이들은 연금제도 등을 통해 자녀세대로부터 이전을 받지만 상속세를 면제받아 富의 社會化 對象에서 빠지게 된다. 상속세를 노령기 응익과세라는 관점에서 과약할 경우 이들과 이들의 자녀세대 중 일부는 世代間 移轉을 유발시키는 年金制度의 受惠者로 분류될 수 있다.

다. 年金給付와 資産確認制

앞에서 기술한 것과 동일한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도 실현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지닌 자에 대해 이를 처분하여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자는 것으로 그 자산처분분만큼 公的年金을 줄인다. 다만 이것은 주로 소득비례부분에 대해서

행하는 것으로 기초연금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최저한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종래대로 자산확인제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또 이 경우의 자산확인제는 당분간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행한다. 이것은 먼저 고령자의 보유자산 중 거주용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음은 보유자산액 조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없이 쉽게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물론 자산을 不動產만으로 한정하면 자산보유형태를 바꿈으로써 자산확인을 회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는 것도 고려가능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금융자산 등 다른 자산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公的年金은 보험료를 지불한 것이므로 자산보유 여하에 관계 없이 수급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가령 연금급부를 본인이 적립한 보험료에 의해 지급하는 적립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수급을 자산보유 상황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연금제도는 ‘세대와 세대의 상호부조제도’이다. 즉 급부의 대부분은 적립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점의 현역세대의 부담, 즉 社會保險料 부담과 세부담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장래에는 거의 완전히 이같은 부과방식으로 이행해갈 것이다.

35) 노령자가 보유하는 거주용 부동산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톡에서 플로우로 전환을 쉽게 하는 제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流量化하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고려될 수 있다. 첫째,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이것을 연금으로 수취하는 ‘리버스 모기지(reverse mortgage)’방식 둘째, 주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연금으로 수취하되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권리가 보장되면서 집세를 내는 방식인 ‘세일 리스백(sale lease back)’방식이 그것이다. 전자는 주택임대를 역으로 한 것으로 통상의 주택 대부에서는 주택건설시에 일괄하여 차입하고 이것을 장기간에 걸쳐 변제하는 방식이지만 여기선 생활자금의 대부를 연금형식으로 받고 사망시점에서 주택을 처분하여 원리금 합계를 일괄 변제하는 형식을 지닌다.

둘째, 토지는 사유재산이므로 그 보유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것에 의해 연금급부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토지가치 증가의 대부분이 인구의 都市集中 등의 사회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셋째,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자산을 축적하는 유인이 저해된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연금의 삭감수준을 너무 높게 하지 않으면 이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다.

라. 年金과 연계된 相續稅

제3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이것은 공적 연금의 삭감을 수급자의 생존기간중에는 행하지 않고 사망시에 일괄하여 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제 교부되는 것은 종래의 연금과 동일액이다. 그리고 대상자가 사망한 시점에 ‘住宅價值-年金削減分の 終價’에 해당하는 만큼의 純資産이 남게 되고 이것이 유산으로 상속되게 된다.

결국 이 경우에는 주택자산 보유자에게는 현재 제도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즉 주택에 계속 살면서 종래와 동액의 연금을 받는다.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연금삭감분 증가에 해당하는 만큼 증가한 셈이 된다. 이 조치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완화조치를 취해 상속세 증가가 연금삭감분 증가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

현재 제도에서는 상속세는 상속인수와 상속재산의 가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여기서 제안된 제도에는 이것들에 추가하여 연금조건이 고려된다. 즉 연금수급연수가 길어지면 相續稅가 증가하도록 조정된다³⁶⁾.

36) 이같은 제안의 약점은 상속세가 늘어날 것을 사전에 아는 長壽者가 상속용 재산을 생전증여하거나 처분하려는 유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 要點 整理

이상에서는 상속세의 이론적 근거로서 세 가지 입장을 고려해 각각의 입장에서 현실의 제도를 평가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분배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相續稅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현재의 우리나라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세율이 취득자산의 保有期間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다음은 生涯累積取得資産에 累進課稅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年齡에 따라 세율을 바꿀 필요가 있고 生涯累積取得資産을 파악하여 여기에 과세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의 우리나라 세제에서는 상속인의 취득자산의 대소와 무관하게 유산총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실취득자의 상속재산액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누진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과세유형이 遺產課稅型이므로 이를 取得課稅型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을 취할 경우 讓渡益課稅와의 조정조치는 불필요하다.

둘째, 상속세를 노후의 社會保障給付(주로 年金給付)에 대한 應益稅로 규정할 경우 세액을 年金수급액과 연결시켜 다액의 이전급부를 받은 경우일수록 세부담을 높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인이 세를 부담하는 遺產取得型 課稅가 아니라 被相續人이 세를 부담하는 遺產型 課稅라야 한다. 즉 세부담이 상속인의 數와 무관해져야 한다. 이 경우에도 讓渡益課稅와의 조정조치는 필요 없을 것이다.

셋째, 상속세를 基幹稅인 所得稅의 일부로서 고려할 경우, 현재의 상속세 세율에서는 다른 소득에 비해 實效稅率이 아주 낮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이 경우에도 讓渡益課稅와의 조정조치는 필요 없다. 사망시점에서 未實現 資本利得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서는 상속세와 다른 별도 세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基幹稅인 支出稅의 일부로서 상속세를 파악할 경우 현실 상속세의 상당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정당화된다. 가령 다른 소비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遺産이라고 하는 ‘消費’의 특수성(의도하지 않은 유산 등이 있음)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讓渡益課稅와의 조정조치도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세제 전체가 支出稅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실의 세제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이와 같이 어느 입장을 취하든 현실의 相續稅制度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장래 스톡의 비중이 높아져 갈 것을 생각하면 상속세의 합리화는 앞으로 稅制改革時 主要課題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論點들이 고려될 수 있으나 本章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① 課稅單位의 문제, 특히 부부간의 증여와 유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② 부모의 집에 同居하는 등의 형태로 이전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즉 가족내부에서 행해지는 서비스 이전에 대해 과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 ③ 直系 以外的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는 직계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와 差를 두어야 할 것인가 ④ 教育에 의한 세대간 이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⑤ 중소기업의 ‘商號와 看板’, 정치가의 ‘地盤’ 등의 無形資產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⑥ 事業承繼稅制의 평가 등이 그것이다. 이들 문제에 대한 검토는 將來의 課題로 남겨둔다.

第3章 相續稅 課稅 實態： 相續人數와 相續財産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가족의 실제 상속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인수와 상속재산의 분포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다. 우리가 이용하는 자료는 1995년에 상속세가 부과결정된 사례 중 관련기록이 충실한 1,966건의 사례이다. 同 자료는 재정경제원이 작성한 지침에 따라 각 地方國稅廳에서 작성한 것으로, 담고 있는 정보는 被相續人의 성별, 연령, 상속인과 관련한 배우자 유무와 결혼연수, 자녀수 등과 상속개시일, 신고일, 부과결정일, 소관지방청, 상속재산, 과세가액, 채무 등 그리고 인적공제, 물적공제, 감면, 연부연납, 물납, 상속인별 상속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상속세 과세실태분석표가 <表 1-3-1>부터 <表 1-3-19>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第1節 相續家族의 相續人數 規模와 構成分布

1. 相續家族의 相續人數 規模와 分布

상속가족 중 가장 보편적인 패턴은 配偶者와 子女만이 상속인인 가족으로 전체의 68.9%이다. 다음은 子女만이 상속인인 가족으로 21.9%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配偶者만이 상속인인 가정도 1.2% 가량 존재하며, 직계존속과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과 자녀가 상속한 경우가 0.1%로 아주 낮으며 이보다는 배우자와 손자, 형제자매, 혹은

은 이들의 혼합된 형태가 전체의 7.8%에 해당한다.

가장 대표적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하는 경우, 자녀수별로 보면 3인, 2인, 4인, 5인, 6인, 1인, 7인, 8인의 순서로 적어지며 자녀수가 최고 10인까지 있다.

또 자녀들만이 상속인인 경우 2인, 1인, 4인, 5인, 3인, 6인, 7인, 8인의 순으로 적어져 3인과 1인이 배우자가 포함된 가족과 다르게 나타난다.

상속인의 구성과 관계없이 相續人數別로 분류해 볼 경우 4인, 3인, 5인, 6인, 2인, 7인, 1인, 8인의 순으로 나타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가족의 자녀자수 순위와 거의 같게 나온다.

〈表 1-3-1〉 相續家族의 相續人數別·家族數別 分布

(單位 : 名)

구 성 상속인수	A	B	C	D	E	합 계
0	0	0	0	0	3	3
1	24	0	88	0	21	133
2	0	88	90	0	9	187
3	0	299	53	1	7	360
4	0	345	74	0	31	450
5	0	253	55	0	15	323
6	0	182	31	1	21	235
7	0	106	23	0	18	147
8	0	40	10	0	15	65
9	0	25	5	0	3	33
10	0	13	2	0	6	21
11	0	4	0	0	1	5
12	0	0	0	0	3	3
13	0	0	0	0	1	1
합 계	24	1,355	431	2	154	1,966

註 : A : 배우자 단독 B : 배우자+자녀 C : 자녀
 D : 직계존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자녀 E : 기타

기타의 경우 상속인수는 4인, 6인, 1인, 7인, 5인, 8인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상속인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2. 相續家族의 配偶者 有無別 子女數 分布

배우자가 있는 가족의 경우 자녀수별 분포가 전체적인 패턴의 그것과 같게 나온다. 이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가족의 경우 동 분포가 자녀만이 상속인인 경우와 같게 나온다.

〈表 1-3-2〉 相續家族의 配偶者 有無別 子女數 分布

(單位: 名)

자녀 수	배우자(유)	배우자(무)
0	29	35
1	93	91
2	326	94
3	362	56
4	273	77
5	198	61
6	109	31
7	41	23
8	29	10
9	14	6
10	5	3
소 계	1,479	487
합 계	1,966	

3. 相續家族의 子女數別 孫子女數別 分布(配偶者 無)

〈表 1-3-3〉 相續家族의 子女數別·孫子女數別 分布(配偶者 無)

(單位：名)

손자녀수 자녀수	0	1	2	3	4	5	6	합 계
0	30	3	0	0	1	1	0	35
1	90	0	0	0	0	1	0	91
2	91	0	0	1	1	0	1	94
3	54	1	1	0	0	0	0	56
4	74	1	0	0	1	0	1	77
5	57	0	3	1	0	0	0	61
6	31	0	0	0	0	0	0	31
7	23	0	0	0	0	0	0	23
8	10	0	0	0	0	0	0	10
9	5	1	0	0	0	0	0	6
10	2	0	1	0	0	0	0	3
합 계	467	6	5	2	3	2	2	487

4. 相續家族의 子女數別 孫子女數別 分布(配偶者 有)

〈表 1-3-4〉 相續家族의 子女數別·孫子女數別 分布(配偶者 有)

(單位：名)

손자녀수 자녀수	0	1	2	3	4	5	6	합 계
0	29	0	0	0	0	0	0	29
1	93	0	0	0	0	0	0	93
2	318	4	2	2	0	0	0	326
3	357	2	2	0	1	0	0	362
4	267	2	4	0	0	0	0	273
5	194	2	2	0	0	0	0	198
6	107	1	0	1	0	0	0	109
7	41	0	0	0	0	0	0	41
8	28	0	0	1	0	0	0	29
9	13	1	0	0	0	0	0	14
10	4	1	0	0	0	0	0	5
합 계	1,451	13	10	4	1	0	0	1,479

5. 配偶者 直系尊屬別 分布

〈表 1-3-5〉 配偶者別 直系尊屬別 分布

(單位：名)

직 계 존 속	배 우 자(有)	배 우 자(無)
0	1,467	476
1	10	9
2	2	2
소 계	1,479	487
합 계	1,966	

6. 配偶者別 兄弟姉妹數別 分布

〈表 1-3-6〉 配偶者別 兄弟姉妹數別 分布

(單位：名)

형 재 자 매	배 우 자(有)	배 우 자(無)
0	1,477	475
1	2	8
2	0	1
4	0	3
소 계	1,479	487
합 계	1,966	

7. 配偶者 其他相續人數別 分布

〈表 1-3-7〉 配偶者 其他相續人數別 分布

(單位：名)

상 속 인 수	배 우 자(有)	배 우 자(無)
0	1,408	465
1	69	17
2	1	3
3	0	2
4	1	0
소 계	1,479	487
합 계	1,966	

第 2 節 遺産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規模와 構成分布

상속재산의 구성은 크게 나누어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예금, 간주상속재산, 기타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不動產은 주택, 상가·빌딩, 대지, 농지·초지 등으로 구성되고 有價證券은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기타 유가증권으로 구성된다. 現金預金은 현금과 예금 등으로 구성되며, 看做相續財産은 보험금, 신탁자산, 相續稅法 법7조의 2에 규정하는 자산³⁷⁾으로 구성된다. 其他에는 차량, 선박, 각종 회원권, 전화가입권, 사업용자산, 퇴직금, 무체재산 영업권, 입목, 증여가산(1년내), 처분재산, 채권, 임차보증금, 상품, 부동산취득권리 등이 포함된다.

分析結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95년에 상속세가 부과된 자료 중 1,966件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不動產 79.3%, 有價證券 7.8%, 現金預金 3.5%, 看做相續財産 4.2%, 其他 5.0%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³⁸⁾.

토지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토지의 평가는 基準時價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37)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또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앞에서 말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채권, 기타 재산을 말한다.

38) 우리가 사용한 자료는 1995년에 상속세 부과 결정된 1,966건의 실제 과세자료이다. 兩者의 값이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 표본 선정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데, 基準時價는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시가의 70~80% 수준으로 상속재산을 토지로 남겨두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때문이다. 둘째, 토지는 대부분의 상속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므로 租稅抵抗 때문에 重課稅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유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地價上昇으로 인해 보유 토지의 가격이 다른 자산의 가격에 비해 급격히 상승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들 주장은 어느 것도 유산 중 토지의 비중이 높은 사실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지만 유일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2. 유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해 9분위, 10분위로 분류되는 최상위 계층 4.8%가 보유한 유산 현황을 보면, 不動產이 전체 과세대상 부동산의 36.2%, 有價證券이 전체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79.4%, 現金預금이 전체 과세대상 현금예금의 52.6%, 看做相續財產이 전체 과세대상 간주상속재산의 37.4%, 其他가 전체 과세대상 기타자산의 76.6%에 해당된다. 즉 유가증권과 현금예금, 기타상속재산의 경우 전체 과세대상 자산의 50% 이상을 고액자산가 계층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3. 토지 중 農地·草地 등의 자산규모는 주택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의 계층에서만 농지·초지 등의 자산규모가 주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산규모를 계층의 전가족 평균이 아닌 해당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평균으로 계층하면 모든 계층에서 農地·草地 등의 자산규모가 주택보다 크게 나타난다.

4. 토지 이외의 부동산인 건물 중 상가·빌딩의 상속재산액이 주택보다 월등히 높다. 이것은 주택이 住宅相續控除에 의해 대부분 공제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다만 유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계층에 있어선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가·빌딩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자산규모를 계층의 전가족 평균이 아닌 해당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평균으로 측정할 경우 이들 계층에서도 상가·빌딩의 재산가액이 주택보다 높게 나온다. 5억원 이하 계

층은 전체 상속가족의 47.5%에 해당한다.

5. 有價證券과 看做相續財產(특히 동법 제7조의 2)의 경우 보유 가족이 제한됨으로써 부동산, 현금예금에 비해 계층내 전가족 평균과 해당자산 보유가족 평균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제1분위의 경우 부동산 평균가액이 前者 기준에 의하면 1억 7,500만원, 後者 기준에 의하면 1억 8,400만원으로 1.05배에 불과하지만, 有價證券에서는 前者의 1백만원에 비해 後者の 4천만원은 40배, 看做相續財產에서는 前者의 5백만원에 비해 後者的 6,900만원은 13.8배의 차이를 보인다. 제3분위의 경우에도 유사한 차이를 보여 해당 배율은 각각 1.0배, 8.9배, 9.5배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有價證券의 경우 제6분위 이후 계층에서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들지만 看做相續財產의 경우에는 제9분위, 제10분위에 있어서도 2,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看做相續財產의 경우 상속가족별도 이용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입증한다.

6. 有價證券은 株式과 債券으로 구분되며 주식은 다시 上場株式과 非上場株式으로 구분된다. 주식이 채권보다 월등히 크며 주식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규모가 상장주식의 규모보다 크다. 또 유산가액 계층별로도 모든 계층에서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보다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자산규모를 계층의 전가족 평균이 아닌 해당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평균으로 계층하면 제9분위와 제10분위에서 상장주식이 비상장주식보다 크게 나타나 제9분위에서 1.3배, 제10분위에서 2.1배로 나타나고 있다.

7. 상위 4.8%에 해당하는 제9분위, 제10분위 계층의 상속재산의 구성을 가액순으로 정리하면 대지, 상가·빌딩, 기타, 농지·초지 등,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현금예금, 주택, 법 제7조의 2의 순이 된다. 특히 최상위 계층인 제10분위에 한정하면 대지, 상가·빌딩, 비상장주식, 기타, 상장주식, 현금예금, 농지·초지 등, 채권, 주택, 법7조의 2의 순이 되어 非上場株式의 비중이 순위가 높아지고 農地·草地 등의 순위가 낮아진다.

〈表 1-3-8〉 遺産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제1분위)

(單位: 億원, %)

표본수	상속재산의 구성	합 계	평 균	비 율	비 고
722	부동산	1,266.13	1.75	92.37	4.31
	주 택	378.42	0.52	27.61	
	상가 등	153.20	0.21	11.17	
	대 지	439.78	0.60	32.08	
	농지·초지 등	289.34	0.40	21.11	
	유가증권	14.21	0.01	1.03	0.04
	상장주식	0.46	0.00	0.03	
	비상장주식	12.41	0.01	0.90	
	채 권	0.80	0.00	0.05	
	기 타	2.17	0.00	0.15	
	현금·예금	16.90	0.02	1.23	0.05
	현 금	2.25	0.00	0.16	
	예 금	15.03	0.02	1.09	
	간주상속재산	41.86	0.05	3.05	0.14
	보험금	10.05	0.01	0.73	
	신 탁	0.00	0.00	0.00	
	법 제7조의2 ¹⁾	32.43	0.04	2.36	
	기 타	31.46	0.04	2.29	0.10
	합 계	1,370.57	1.89	100.00	4.67

註: 1) 舊法條項으로 '相續稅課稅價額算入'을 지칭함.

〈表 1-3-9〉 遺產價額 階層別 相續財產의 크기(제2분위)

(單位：億원, %)

표본수	상속재산의 구성	합 계	평 균	비 율	비 고
212	부동산	951.09	4.48	89.72	3.24
	주 택	193.75	0.91	18.27	
	상가 등	166.95	0.78	15.75	
	대 지	412.07	1.94	38.87	
	농지·초지 등	200.84	0.94	18.94	
	유가증권	17.93	0.08	1.69	0.06
	상장주식	1.39	0.00	0.13	
	비상장주식	16.34	0.07	1.54	
	채 권	0.19	0.00	0.01	
	기 타	0.00	0.00	0.00	
	현금·예금	17.37	0.08	1.63	0.05
	현 금	4.59	0.02	0.43	
	예 금	10.39	0.04	0.98	
	간주상속재산	40.14	0.18	3.78	0.13
	보험금	0.75	0.00	0.07	
	신 탁	0.32	0.00	0.03	
	법 제7조의2	37.57	0.17	3.54	
	기 타	33.47	0.15	3.15	0.11
	합 계	1,060.02	5.00	100.00	3.61

〈表 1-3-10〉 遺産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제3분위)

(單位: 億원, %)

표본수	상속재산의 구성	합 계	평 균	비 율	비 고
229	부동산	1,523.06	6.65	92.23	5.19
	주 택	293.64	1.28	17.78	
	상가 등	345.70	1.50	20.93	
	대 지	512.87	2.23	31.05	
	농지·초지 등	328.03	1.43	19.86	
	유가증권	19.43	0.08	1.17	0.06
	상장주식	0.27	0.00	0.01	
	비상장주식	1.91	0.04	0.66	
	채 권	0.14	0.00	0.00	
	기 타	2.09	0.00	0.12	
	현금·예금	30.08	0.13	1.82	0.10
	현 금	1.87	0.00	0.11	
	예 금	24.84	0.10	1.50	
	간주상속재산	31.02	0.13	1.87	0.10
	보험금	1.37	0.00	0.08	
	신 택	3.43	0.01	0.20	
	법 제7조의2	28.88	0.12	1.74	
	기 타	47.73	0.20	2.89	0.16
	합 계	1,651.35	7.21	100.00	5.62

〈表 1-3-11〉 遺產價額 階層別 相續財產의 크기(제4분위)

(單位：億원, %)

표본수	상속재산의 구성	합 계	평 균	비 율	비 고
214	부동산	1,917.51	8.96	90.10	6.53
	주 택	274.18	1.28	12.88	
	상가 등	437.19	2.04	20.54	
	대 지	788.89	3.68	37.06	
	농지·초지 등	466.31	2.17	21.91	
	유가증권	33.50	0.15	1.57	0.11
	상장주식	9.01	0.04	0.42	
	비상장주식	23.21	0.10	1.09	
	채 권	0.55	0.00	0.02	
	기 타	0.00	0.00	0.00	
	현금·예금 ¹⁾	113.74	0.53	5.34	0.38
	현 금	1.84	0.00	0.08	
	예 금	33.28	0.15	1.56	
	간주상속재산	38.55	0.18	1.81	0.13
	보험금	7.95	0.03	0.37	
	신 탁	0.33	0.00	0.01	
	법 제7조의2	25.47	0.11	1.19	
	기 타	24.85	0.11	1.16	0.08
	합 계	2,128.17	9.94	100.00	7.25

註：1) 原始資料의 記錄이 不一致함.

〈表 1-3-12〉 遺産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제5분위)

(單位: 億원, %)

표본수	상속재산의 구성	합 계	평 균	비 율	비 고
321	부동산	4,552.46	14.18	89.54	15.51
	주 택	605.05	1.88	11.90	
	상가 등	1,244.75	3.87	24.48	
	대 지	1,831.87	5.70	36.03	
	농지·초지 등	858.89	2.67	16.89	
	유가증권	139.91	0.43	2.75	0.47
	상장주식	15.28	0.04	0.30	
	비상장주식	78.64	0.24	1.54	
	채 권	10.29	0.03	0.20	
	기 타	4.86	0.01	0.09	
	현금·예금	100.24	0.31	1.97	0.34
	현 금	18.25	0.05	0.35	
	예 금	88.99	0.27	1.75	
	간주상속재산	188.82	0.58	3.71	0.64
	보험금	9.76	0.03	0.19	
	신 탁	0.47	0.00	0.00	
	법 제7조의2	179.70	0.55	3.53	
	기 타	102.47	0.31	2.01	0.34
	합 계	5,083.92	15.83	100.00	17.32

〈表 1-3-13〉 遺產價額 階層別 相續財產의 크기(제6분위)

(單位：億원, %)

표본수	상속재산의 구성	합 계	평 균	비 율	비 고
104	부동산	2,353.29	22.62	82.95	8.02
	주 택	245.02	2.35	8.63	
	상가 등	643.55	6.18	22.68	
	대 지	1,155.00	11.10	40.71	
	농지·초지 등	379.79	3.65	13.38	
	유가증권	106.20	1.02	3.74	0.36
	상장주식	17.61	0.16	0.62	
	비상장주식	79.00	0.75	2.78	
	채 권	5.63	0.05	0.19	
	기 타	3.93	0.03	0.13	
	현금·예금	103.26	0.99	3.64	0.35
	현 금	10.88	0.10	0.38	
	예 금	94.38	0.90	3.32	
	간주상속재산	203.16	1.95	7.16	0.69
	보험금	0.90	0.00	0.03	
	신 택	0.00	0.00	0.00	
	법 제7조의2	201.14	1.93	7.09	
	기 타	70.78	0.68	2.49	0.24
	합 계	2,836.71	27.27	100.00	9.66

〈表 1-3-14〉 遺産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제7분위)

(單位: 億圓, %)

표본수	상속재산의 구성	합 계	평 균	비 율	비 고
50	부동산	1,500.30	30.00	80.04	5.11
	주 택	216.97	4.33	11.57	
	상가 등	437.66	8.75	23.35	
	대 지	665.40	13.30	35.50	
	농지·초지 등	186.24	3.72	9.93	
	유가증권	100.48	2.00	5.36	0.34
	상장주식	3.11	0.06	0.16	
	비상장주식	65.92	1.31	3.51	
	채 권	31.40	0.62	1.67	
	기 타	0.03	0.00	0.00	
	현금·예금	51.40	1.02	2.74	0.17
	현 금	8.41	0.16	0.44	
	예 금	43.76	0.87	2.33	
	간주상속재산	195.11	3.90	10.41	0.66
	보험금	0.39	0.00	0.02	
	신 탁	0.00	0.00	0.00	
	법 제7조의2	152.22	3.04	8.12	
	기 타	26.93	0.53	1.43	0.09
	합 계	1,874.23	37.48	100.00	6.38

〈表 1-3-15〉 遺產價額 階層別 相續財產의 크기(제8분위)

(單位：億원, %)

표본수	상속재산의 구성	합 계	평 균	비 율	비 고
20	부동산	781.38	39.06	80.75	2.66
	주 택	44.29	2.21	4.57	
	상가 등	207.47	10.37	21.44	
	대 지	434.21	21.71	44.87	
	농지·초지 등	95.39	4.76	9.85	
	유가증권	52.96	2.64	5.47	0.18
	상장주식	0.03	0.00	0.00	
	비상장주식	52.69	2.63	5.44	
	채 권	0.23	0.01	0.02	
	기 타	0.00	0.00	0.00	
	현금·예금	61.34	3.06	6.34	0.20
	현 금	1.31	0.06	0.13	
	예 금	59.80	2.99	6.18	
	간주상속재산	55.31	2.76	5.71	0.18
	보험금	0.62	0.03	0.06	
	신 탁	0.00	0.00	0.00	
	법 제7조의2	54.69	2.73	5.65	
	기 타	16.57	0.82	1.71	0.05
	합 계	967.57	48.37	100.00	3.29

〈表 1-3-16〉 遺産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제9분위)

(單位: 億원, %)

표분수	상속재산의 구성	합 계	평균	비 율	비 고
55	부동산	3,597.85	65.41	73.84	12.26
	주 택	115.66	2.10	2.37	
	상가 등	1,500.93	27.28	30.80	
	대 지	1,431.01	26.01	29.37	
	농지·초지 등	436.55	7.93	8.95	
	유가증권	232.00	4.21	4.76	0.79
	상장주식	102.55	1.86	2.10	
	비상장주식	118.49	2.15	2.43	
	채 권	9.13	0.16	0.18	
	기 타	0.00	0.00	0.00	
	현금·예금	134.36	2.44	2.75	0.45
	현 금	12.82	0.23	0.26	
	예 금	119.55	2.17	2.45	
	간주상속재산	317.39	5.77	6.51	1.08
	보험금	2.28	0.04	0.04	
	신 탁	0.00	0.00	0.00	
	법 제7조의2	214.37	3.89	4.39	
	기 타	590.72	10.74	12.12	2.01
	합 계	4,872.34	88.58	100.00	16.60

〈表 1-3-17〉 遺產價額 階層別 相續財產의 크기(제10분위)

(單位：億원, %)

표본수	상속재산의 구성	합 계	평 균	비 율	비 고
39	부동산	4,819.41	123.57	64.29	16.42
	주 택	132.98	3.40	1.77	
	상가 등	1,180.11	30.25	15.74	
	대 지	3,522.70	90.32	46.99	
	농지·초지 등	239.97	6.15	3.20	
	유가증권	1,586.77	40.68	21.17	5.40
	상장주식	498.10	12.77	6.64	
	비상장주식	558.24	14.31	7.44	
	채 권	203.23	5.21	2.71	
	기 타	0.32	0.00	0.00	
	현금·예금 ¹⁾	409.33	10.49	5.46	1.39
	현 금	15.66	0.40	0.20	
	예 금	689.94	17.69	9.20	
	간주상속재산	143.79	3.68	1.91	0.49
	보험금	3.02	0.07	0.04	
	신 탁	0.00	0.00	0.00	
	법 제7조의2	118.77	3.04	1.58	
	기 타	535.90	13.74	7.14	1.82
	합 계	7,495.23	192.18	100.00	25.54
	총 합 계	29,340.14	433.80		100.00

註：1) 原始資料의 기록이 不一致함.

第 3 節 課稅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와 構成分布

상속세 과세가액은 國內 相續財産이 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전증여 합산분이 3.9%를 점하고 있다. 國外 相續財産은 0.2%에 불과하다.

분위별 과세가액은 최상위 계층인 제10분위가 31.4%로 가장 높고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인 제5분위가 16.9%, 제9분위가 11.4%의 순이다. 10억원 이하인 제4분위까지에 속하는 상속가족의 70.0%가 전체 국내 상속재산액의 16.4%, 전체 사전증여 합산분의 9.1%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제9분위, 제10분위에 속하는 상속가족의 4.8%가 전체 國內 相續財産額의 44.9%, 사전증여 합산분의 50.6%를 점하고 있다.

〈表 1-3-18〉 課稅價額 階層別 相續財産의 크기와 構成分布

(單位：%)

분 위	국 내	국 외	사전증여합산분 상속인	사전증여합산분 상속인외	합 계
1	3.52	0.01	0.09	0.00	3.62
2	2.71	0.00	0.07	0.01	2.79
3	3.60	0.00	0.07	0.00	3.67
4	5.79	0.03	0.11	0.01	5.94
5	16.88	0.00	0.48	0.06	17.42
6	8.94	0.00	0.48	0.14	9.56
7	7.12	0.00	0.12	0.04	7.28
8	4.06	0.00	0.26	0.00	4.32
9	11.40	0.17	0.70	0.13	12.4
10	31.42	0.00	1.06	0.10	32.58
합 계	95.44	0.21	3.44	0.49	100.00

第 4 節 課稅價額 階層別 債務額의 크기와 構成分布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관련 채무액 등은 債務, 公課金, 公益法人 出捐金, 葬禮費, 其他 등이다. 이 중 채무가 가장 높아 67.4%, 기타가 21.9%, 공과금이 6.9%, 장례비가 3.2%, 공익법인 출연이 0.1%를 각각 점하고 있다. 분위별 채무액은 최상위 계층인 제10분위가 17.35%로 가장 높고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인 제5분위가 16.2%, 제6분위가 8.4%의 순이다. 10억원 이하인 제4분위까지에 속하는 상속가족의 70.0%가 전체 채무액의 9.4%, 전체 공과금의 10.2%, 전체 공익법인 출연금의 21.4%, 전체 장례비의 47.8%, 전체 기타의 10.5%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9분위, 제10분위에 속하는 상속가족의 4.8%가 전체 채무액의 34.6%, 전체 공과금의 49.7%, 전체 공익법인 출연금의 14.3%, 전체 장례비의 25.8%, 전체 기타의 54.9%를 점하고 있다.

〈表 1-3-19〉 課稅價額 階層別 債務 등의 크기와 構成分布

(單位：%)

분 위	채 무	공과금	공익법인 출 연	장례비	기 타	합 계
1	2.21	0.07	0.01	0.98	0.29	3.56
2	1.67	0.23	0.01	0.17	0.48	2.56
3	2.45	0.16	0.01	0.15	0.49	3.26
4	4.16	0.24	0.00	0.24	1.05	5.69
5	16.20	0.76	0.08	0.45	2.22	19.71
6	8.40	0.85	0.01	0.25	1.94	11.45
7	5.80	0.85	0.00	0.10	2.15	8.90
8	3.18	0.29	0.00	0.05	1.27	4.79
9	5.95	0.83	0.02	0.16	0.92	7.88
10	17.35	2.58	0.00	0.67	11.12	31.72
합 계	67.37	6.86	0.14	3.22	21.93	100.00

第4章 相續·贈與 關聯稅制의 國際比較

第1節 制度和 稅負擔의 國際比較

한 나라의 租稅制度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및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그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각국의 相續·贈與課稅制度도 명칭은 동일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表 1-4-1>에 의해서 각국의 相續·贈與課稅制度의 일반현황과 제도의 개요를 상호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相續·贈與稅收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西歐國家들의 비중은 0.5~2.0% 수준임에 비해서 유교권 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일본·대만의 비율은 각각 1.8%, 4.7%, 2.6%를 점하고 있다. 즉 이들 유교권 국가는 富의 集中抑制 내지는 分配促進의 수단으로서 상속·증여과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課稅類型은 각국의 역사적인 배경, 법률적인 배경, 소득세와의 관계 또는 세무행정 수준 등에 따라 遺産課稅型 또는 取得課稅型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상속세의 세율구조를 보면 英國이 單一稅率이고 獨逸은 單純累進稅率인 점을 제외하고 각국은 多段階 超過累進稅率 構造로 되어 있다. 특히 미국, 대만 및 독일이 각각 17단계, 18단계 및 25단계라는 다단계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4단계로서 비교적 단순하다고 하겠다. 최저세율을 보면 독일이 3%, 대만이 2%로서 낮으며, 미국은 19%로서 비교적 높은 선에서 출발하

고 있다. 최고세율은 독일과 일본이 70%, 대만이 60%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相續人의 親密度(親疎關係)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直系尊卑屬을 保護 내지는 優待하기 때문이다.

증여세의 세율구조를 보면 미국, 독일 및 프랑스는 상속세와 세율 및 과세구간이 完全統合된 統合稅率 體系이므로 상속·증여간의 사결정에 세부담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본 및 대만은 상속세와 최고세율은 비록 동일하지만 과세구간은 상속세에 비하여 좁게 되어 있다. 즉 상속·증여간의 사결정시에 贈與를 抑制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영국은 증여자가 증여 후 7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는 증여시에 20%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증여 후 7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補完課稅 生前移轉과 失敗한 暫定的 免稅移轉制度로 나누어서 적용한다.

상속세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소유자가 과세대상이 되며, 다양한 정책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한 과세 수위의 조절을 위해서 控除制度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同 制度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控除制度는 각국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 경제구조 특히 정책목표 등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중산층과 그 이하 계층의 물질 생활기초를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基礎控除制度를 두고 있으며, 또한 자녀의 물질 생활기초를 보호하기 위해서 子女控除 및 未成年者控除를 두고 있다. 특히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하고 또한 배우자의 여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配偶者控除制度를 두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全額控除制度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一定額의 範圍 내에서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에서는 일정기간 내에 다시 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재개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어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短期再相續控除制度를 두고 있다.

〈表 1-4-1〉 相續·贈與稅制의 國際比較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반 현 황	GNP	63,433억	6,326억	28,428억
	국세(A)	730.0억	164.735억	653.015억
	상속·증여세(B)	12.577억	1.268억	3.044억
	비율(B/A, %)	1.7	0.8	0.5
과세유형		유산과세형	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
세 율 비 율	상속세	17단계 초과누진 세율 (18~55%)	단일세율(40%)	친밀도에 따른 25단계 단순누진 · 최저:3~20% · 최고:35~70%
	증여세	상속세와 동일	20~40%	상속세와 동일
개 요	주요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공제 : 전액 · 비용공제 · 종합이전세액 공제 (192,800달러) · 단기재상속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제 · 배우자공제 : 전액 · 기타기부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 · 일반공제 · 비용공제 등

〈表 1-4-1〉의 繼續

		프 랑 스	일 본
일 반 현 황	GNP	70,275억	4,975,000억
	국세(A)	1,429.632억	568,128억
	상속·증여세(B)	28.014	26,840억
	비율(B/A, %)	2.0	4.7
과세유형		유산취득과세형	유산과세형
제 도 개	세 율	상속세	친밀도에 따른 2~7단계 단순누진 · 최저 : 5~35% · 최고 : 40~45%
		증여세	상속세와 동일
요	주요 공 제	·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 · 형제 자매공제 · 장애자공제 등	· 기초공제 · 배우자세액공제 · 장애자세액공제 · 미성년자공제

〈表 1-4-1〉의 繼續

		대 만	한 국	
일 반 현 황	GNP	55,691억	3,482,843억	
	국세(A)	515.165억	567,745억	
	상속·증여세(B)	13.178억	10,294억	
	비율(B/A, %)	2.6	1.8	
과세유형		유산과세형	유산과세형	
제 도	세 율	상속세	18단계 초과누진세율 (2~60%)	4단계 초과누진세율 (10~40%)
		증여세	17단계 초과누진세율 (4~60%)	4단계 초과누진세율 (10~40%)
개 요	주요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공제 · 직계존비속공제 · 미성년자공제 · 단기재상속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제 ·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 · 장애자공제 · 주택상속공제

註 : 1. 통화단위는 각국의 자국화폐단위임.

2. 통계수치의 경우 한국 및 일본은 1995년 기준, 기타국가는 1993년 기준임.

資料 : 재정경제원, 『재정관련통계집』, 1996. 5.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5.

第 2 節 美 國

미국에서는 1916년과 1924년에 각각 相續稅와 贈與稅가 처음으로 과세되기 시작했으며, 양자는 별개의 세목으로 독립적으로 부과되었다.

미국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移轉稅(transfer tax)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속세를 연방에서는 遺產稅(estate tax), 각 州에서는 相續稅(inheritance tax),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死亡稅(death tax)라고 부르고 있다. 연방상속세는 증여세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이 평생 동안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준 데 대한 세금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재산상속은 사망자의 마지막 贈與(final gift)로 취급되는 것이다.

1. 納稅義務者

상속 또는 증여와 관련한 재산이전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이전세는 증여 또는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자, 즉 贈與者나 被相續人(相續財團)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遺產執行人 또는 遺產管理人이 되며, 상속세체계가 遺產課稅型에 속하지만 수증인 또는 상속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한국의 경우와 다르다.

2. 課稅區間과 稅率

미국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統合하여 同一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統合稅率表(unified rate schedule)上的 統合移轉稅率(unified transfer tax rate)은 최저 18%에서 최고 55%까지 17단계의 累進稅率로 되어 있다(〈表 1-4-2〉 참조). 개인은 생전의 타인에 대한 재산이전에 대하여 그 가액을 누적해 가면서 누진구조의 統合移轉稅率을 적용하여 贈與稅를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한 재산이전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한 최후의 贈與(final gift)로 보아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액을 납부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재산이전에 따른 세금납부를 마치게 된다.

〈表 1-4-2〉 美國의 統合移轉稅率

(單位: 달러, %)

과 세 구 간	세율	과 세 구 간	세율
1만 이하	18	50만 초과~ 75만 이하	37
1만 초과~ 2만 이하	20	75만 초과~100만 이하	39
2만 초과~ 4만 이하	22	100만 초과~125만 이하	41
4만 초과~ 6만 이하	24	125만 초과~150만 이하	43
6만 초과~ 8만 이하	26	150만 초과~200만 이하	45
8만 초과~10만 이하	28	200만 초과~250만 이하	49
10만 초과~15만 이하	30	250만 초과~300만 이하	53
15만 초과~25만 이하	32	300만 초과	55
25만 초과~50만 이하	34		

3. 稅額算定方式

가. 相續稅

被相續人의 총상속재산에는 “動產 또는 不動產, 有形財産 또는 無形財産 등 소재지를 불문하고 사망시의 그의 全財産”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기초한 財務省 規則³⁹⁾은 外國에 소재하고 있는 被相續人의 재산도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被相續人이 사망한 때의 時價(공정시장가격; fair market value)로 하든가, 아니면 사망후 6개월이 된 때의 時價로 평가해서 과세대상으로 한다. 農土 또는 家族會社에 사용되는 財産은 특별한 평가방법인 特別用度評價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聯邦相續稅의 稅額算定方式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39) Treasury Regulation Sec. 20. 2031-1(a)(1).

○ 총상속재산가액

- 각종 공제
- = 조정총유산(Adjusted Gross Estate)
 - 배우자공제
 - 기부금공제
- = 과세대상 재산가액(Taxable Estate)
 - + 1977년 1월 1일 이후 과세대상 증여가액
- = 총이전재산가액
 - × 통합이전세율(Uuified Transfer Tax Rate)
- = 잠정 상속세액
 - 1977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증여세
 - 통합이전세액공제(미사용액)
 - 기타 세액공제
- = 상속세 납부세액

總相續財産價額이란 사망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公正市場價格 혹은 사망후 6개월이 지나서 재평가한 총재산 가치를 말한다. 단 가족 소유의 회사(business)와 가족 소유의 농장은 예외적으로 實際 使用價值(actual use)로 평가한다. 각종 공제에는 葬禮費, 遺産管理費, 負債, 各種 稅金(연방·주·지방소득세) 및 相續財産管理期間중 발생한 損失額(偶發損失) 등이 포함된다.

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價額控除制度는 아래와 같다.

가) 配偶者控除

被相續人의 財産이 상속재산으로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全額控除가 인정된다. 즉 미국 국적자이면 기본적으로 전액 면제되지만, 받는 이가 미국 국적자가 아니면 適格國內信託(qualified domestic trust)을 통한 상속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공제는 調整總遺産(純適格遺産; adjusted gross estate)의 크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 寄附金控除(慈善控除 ; charitable deduction)

자선단체·비영리기관에 증여한 재산은 생존시에는 所得稅에서 세금 공제되고, 사후에는 기증한 재산이 상속세 계산시에 공제된다. 文化財團이나 教育機關 등에 유산을 기증함으로써 상속세를 내지 않고 유산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기에 있다.

다) 從業員持株組合에의 株式 매각에 대한 공제

被相續人인 雇用主가 자기 소유주식을 從業員持株組合(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ESOP 또는 eligible worker-owned cooperative: EWOC) 등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賣却對價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가 인정된다.

라) 葬禮費用 및 相續財産管理費用 控除

遺言執行人(executor)이나 遺產管理人(administrator)이 실제로 사용한 葬禮費用 및 상속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管理費用(administration expenses)은 全額控除가 허용된다.

마) 被相續人の 債務

상속지를 관할하는 州의 法에 의하여 被相續人の 상속재산에서 지급이 허용된 채무는 控除對象이 된다. 단, 사망 당시 被相續人の 個人的 債務에 한정한다.

바) 偶發損失 등

상속재산의 관리기간중에 발생한 偶發損失 또는 盜難損失은 保險에 의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범위에 한해서 總相續財産價額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稅額控除는 아래와 같다.

가) 統合移轉稅額控除(unified transfer tax credit)

同 控除는 1977년에 종전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통합한 통합이전

세를 시행하면서 종전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각각 인정되던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單一한 稅額控除로 묶은 것이다.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統合移轉稅額控除限度는 19만 2,800달러이다. 과세가액 60만달러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개인은 자신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평생 동안 이 한도액의 미사용 잔액을 移越해 가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나) 短期再相續稅額控除(credit for tax on prior transfer)

短期間에 걸쳐 상속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재산이 두 사람 모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本 制度이다. 그 한도액은 당초 상속개시일과 재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2년 단위로 20%씩 遞減한다(0~2년 : 100%, 3~4년 : 80%, 5~6년 : 60%, 7~8년 : 40%, 9~10년 : 20%).

다) 贈與稅稅額控除

被相續人이 통합이전세제도가 시행된 1977년 이후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납부세액 계산시 자동적으로 공제되나, 1977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그 재산이 被相續人의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납부한 증여세액 또는 그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상속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라) 外國死亡稅額控除

二重課稅의 問題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재산에 대하여 양국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타국에 실제로 납부한 세금 또는 同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미국연방상속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나. 贈與稅(gift tax)

증여세는 개인이 평생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累積額에 대하여 每 歷年을 과세기간으로 증여가액을 累進稅率로 贈與者에게 부과한다. 즉 每 歷年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개인별로 매년의 贈與價額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증여세의 稅額算定方式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연간증여총액
 - 연간증여공제
 - 각종 공제(증여공제액)
- = 과세대상 당해연도 증여가액(연간 과세증여액)
- + 당해연도까지 이전재산 누계액
- = 증여세의 과세표준(평생 과세증여가액; lifetime taxable gifts)
- × 세율(unified transfer tax rate)
- = 잠정적 증여세액(tentative tax)
 - 이전연도 증여에 대하여 당해연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통합이전세액공제(unified transfer tax credit)
- =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

年間贈與總額은 公正市場價格에 의하여 산정하며 연간증여공제(annual exclusion)는 증여자 1인당 1만달러이다. 각종 공제(증여공제액)에는 의료비나 교육비를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대납했을 때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統合移轉稅額扣除(unified transfer tax credit)는 19만 2,800달러이며 60만달러의 증여가액에 해당한다. 이것은 증여세없이 평생 동안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60만달러라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세는 1년중 증여한 재산을 전부 합산한 총액에서 법이 인정하는 항목을 차감하여야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를 산출할 수

있다. 美國 內國稅法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 年間贈與控除(非課稅金額 : annual exclusion) : 1년에 한 사람에게 1만달러까지 허용된다. 따라서 부부는 한 자녀당 2만 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매년 증여할 수 있다.
- 慈善寄附控除(charitable deduction) : 聯邦政府, 州政府, 市政府, 종교·자선·교육단체, 향군단체 등에 제공하는 자선적 증여는 공제한다.
- 配偶者控除(marital deduction) : 배우자에게 주는 증여공제 (단, 수증자가 非市民權者인 경우 1988년 7월 13일 이후 발생한 증여에 대해서만 10만달러 한도로 공제가능)
- 教育기관에 내는 入學登錄金
- 醫療費

4. 納 付

상속세는 被相續人이 사망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現金으로 납부해야 한다.

第 3 節 英 國

영국에서는 현행 상속세의 모태가 되는 遺產稅(estate tax)가 1894년에 도입되어 1974년까지 시행되었다. 유산세는 자산의 생전 이전(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망전 7년 내⁴⁰⁾에

40) 1894년에는 1년으로 시작했으나 1910년에는 3년으로, 1946년에는 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증여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산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행한 생전이전만을 사망유산에 합산해서 과세하였다. 배우자간 자산의 생전이전에 대해서 1961년에는 Finance Act에 의해 非課稅하였다. 자산 과세에 대한 조세가 최고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입 당시의 최저 1%, 최고 8%(15단계의 과세계급)였던 稅率構造가 점차 상향 조정되어서 최고세율이 1949년에는 80%에까지 이르렀다.

1975년에 유산세를 폐지하고 資産移轉稅(capital transfer tax)를 시행하였다. 資産移轉稅에서는 증여자가 평생⁴¹⁾ 동안 행한 모든 증여액을 累積合算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資産移轉稅를 과세함과 동시에 그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사망유산에 대하여는 생전이전 과세시에 도달한 超過累進稅率상의 한계세율점에서 그 세율 적용이 시작되도록 하였다.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完全 免稅하였다.

1986년 3월에 그때까지 시행되던 資産移轉稅가 폐지되고, 같은 해 4월부터 相續稅(inheritance tax)가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제도는 遺産課稅型에 속한다.

1. 納稅義務者

영국의 상속세 부과는 개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遺産課稅型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被相續人(遺産執行人)이 되지만 생전증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증여를 취득한 자, 즉 受贈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41) 1981년부터는 10년으로 단축되었다.

2. 課稅區間과 稅率

상속세의 세율체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의 40%로 고정되어 있는 單一稅率體系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속과 증여를 연계하여 증여자의 生存年數에 따라 상이한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생전에 자산을 위탁한 경우 사망시의 자산이전에 대한 세율의 2분의 1(20%)을 과세하고 만약, 자산위탁 후 7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율(40%)로 산정하여 과세하며 7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세하는 이른바, 暫定的 免除移轉(potentially exempt transfers: PETs)制度를 1989년 3월 13일 이후 시행하고 있다. 즉, 贈與稅 稅率은 20%이다.

3. 稅額算定方式

현행 상속세는 被相續人이 國內에 住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재산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被相續人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한다. 被相續人이 海外에 居住하고 있는 경우에는 英國內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상속세는 마치 사망자가 사망 직전에 그의 전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擬制해서 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의 稅額算定方式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circ [(유산총액 + 7년 이내 증여분) \\
 & \quad - (채무·장례비 + 제반공제 + 비과세·감면)] \times 세율 \\
 & = 상속세액
 \end{aligned}$$

상속세의 各種 控除制度는 아래와 같다.

基礎 控除	상속재산 누적시가총액의 첫번째 15만 4천파운드까지는 전액 공제된다(1995년 4월 이후).
配偶者控除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은 그것이 상속이든 증여이든 그 여부를 불문하고, 또한 특별신탁 여부에 관계없이 완전 면세하고 있다. 이를 배우자 면세(spouse exemption)라고 한다. 단 증여나 유증의 경우 일방의 배우자(증여자나 유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타방의 배우자(수증자 또는 수유자)가 해외에 주소를 두었거나 비영국인일 경우 면세액은 5만 5천파운드가 상한이다. 한편 증여나 유증이 직접적으로 배우자를 위한 것이 아니거나 혹은 이전이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조건에 따라 행해질 때에는 면세가 되지 않는다.
債務, 葬禮費	채무, 실제 사용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의 관리와 관련 하여 실제로 발생한 관리비용은 전액공제가 허용된다.

4. 非課稅 및 減免

위의 공제제도 이외에 기타 非課稅 및 減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선단체, 국가기관, 피용자 기금 및 등록주택협회에의 증여 및 상속은 전액 비과세된다.
- 適格政治團體⁴²⁾에의 기부금은 비과세되며, 사망후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가 대상이며 1988년 3월 15일 이전의 증여는 10만파운드가 상한이다.

42) 적격정치단체는 증여행위 발생전 마지막 총선에서 2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거나 1인의 국회의원과 15만표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을 말한다.

- 戰死 또는 公務로 인한 상속
- 증여자의 소득에서 지불한 正常費用 형식의 생전증여
- 1과세연도에 3천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생전증여
- 자녀나 부양가족의 생계에 지불되는 생전증여
- 결혼과 관련된 생전증여
- 국가적 유산이나 공공물의 보존과 관련된 단체에 대하여 행해지는 증여 및 상속

第 4 節 獨 逸

상속 및 증여과세제도의 연원은 1906년의 獨逸帝國相續稅法에서 찾을 수 있다. 1959년에 새로운 상속세법이 제정되었으며 1974년에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統合型으로 單純累進稅率構造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독일 民法에 의하면,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 배우자 法定相續分은 4분의 1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들에게 平等하게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1. 納稅義務者

독일의 상속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생긴 富의 增加에 대하여 과세하는 遺産取得課稅型을 취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속세와 기본적으로 다르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가진다. 생존증여시에는 수증인이 납세의무를 지지만 증여자도 連帶的 納稅義務를 가진다.

독일 상속세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재산취득자(즉, 납세의무자)를 被相續人 또는 贈與者와의 身分關係에 기초하여 4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이다. 제1류 내지 제3류는 親族關係를 기준으로 가까운 순서로부터 분류하고 제4류는 친족관계가 없는 자를 분류하고 있다.

- 제 1 류 : 배우자, 자녀 및 의붓자녀
- 제 2 류 : 손자, 증손자, 부모, 조부모
- 제 3 류 : 제2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모 및 기타 직계비속, 형제자매, 계부모, 형제자매의 1촌의 직계비속,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이혼한 배우자
- 제 4 류 : 기타의 모든 취득자 및 목적 출연을 받은 자

이상의 분류에 속하는 친족관계는 入養에 의해 생길 수도 있다. 단, 入養으로 생긴 친족관계가 민법상 소멸된 때는 종전 관계에 따라 분류한다.

2. 課稅區間과 稅率

독일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相續·贈與稅率의 共通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의 경우 殘存家族(배우자, 자녀)에 대한 생존배려를 위해 特別控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상속인의 세부담이 수증인의 세부담보다 가벼울 뿐이다.

나. 納稅義務者別 差等稅率

위에서 언급한 납세의무자별 분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즉, 被相續人과 상속인 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家族法的 親疎關係에 따

라 세부담을 달리하고 있다.

다. 單純累進稅率

상속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 아닌 단순누진세율이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각 세율별 과세의 한계금액을 초과할 때마다 세액이 飛躍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는 별도의 방법에 의해 조정한다.

〈表 1-4-3〉 獨逸 相續稅(贈與稅)의 課稅區間 및 稅率

(單位: 마르크, %)

	납세의무자별 세율			
	제 1 류	제 2 류	제 3 류	제 4 류
5만 이하	3	6	11	20
7만 5천 이하	3.5	7	12.5	22
10만 이하	4	8	14	24
12만 5천 이하	4.5	9	15.5	26
15만 이하	5	10	17	28
20만 이하	5.5	11	18.5	30
25만 이하	6	12	20	32
30만 이하	6.5	13	21.5	34
40만 이하	7	14	23	36
50만 이하	7.5	15	24.5	38
60만 이하	8	16	26	40
70만 이하	8.5	17	27.5	42
80만 이하	9	18	29	44
90만 이하	9.5	19	30.5	46
100만 이하	10	20	32	48
200만 이하	11	22	34	50
300만 이하	12	24	36	52
400만 이하	13	26	38	54
600만 이하	14	28	40	56
800만 이하	16	30	43	58
1천만 이하	18	33	46	60
2,500만 이하	21	36	50	62
5천만 이하	25	40	55	64
1억 이하	30	45	60	67
1억 초과	35	50	65	70

3. 稅額算定方式

$$\circ \left[(\text{유산총액} + 10\text{년 이내 수증분}) - (\text{채무} \cdot \text{장례비} + \text{비과세재산} + \text{공제액}) \right] \times \text{세율} = \text{상속세액}$$

독일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累積課稅方式을 취하고 있다. 즉, 상속세의 세액계산과정에서 과거 10년 동안 동일인의 상속·증여액을 전액 과세대상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에 과거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세액공제하여 상속세의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이것은 생전증여에 의한 상속세부담의 回避防止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상속인·수증자별 신분에 따라 人的控除를 허용하고 있는데, 모든 상속인·수증자에게 허용하는 일반공제와 배우자와 자녀에게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特別配慮控除로 나눌 수 있다. 인적공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一般控除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공제금액을 적용한다. 납세의무자로 공제액에 차별을 두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25만마르크 · 제1류의 기타 납세의무자 : 9만마르크 · 제2류 납세의무자 : 5만마르크 · 제3류 납세의무자 : 1만마르크 · 제4류 납세의무자 : 3천마르크
配偶者特別配慮控除	생존하는 배우자에게는 일반공제 외에 추가로 25만마르크의 특별배려공제 인정함.
子女特別配慮控除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한 특별배려로서 연령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고 금액을 달리하여 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 : 20세 초과~27세 이하의 자녀 1만마르크 · 최고 : 5세 이하의 자녀 5만마르크

4. 非課稅 및 減免

독일 상속세법은 매우 廣範圍하게 비과세대상을 설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少額家事財産 : 의류, 골동품 및 수집품을 포함하는 家財에 대하여 제1, 2류 납세의무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각각 1만~4만마르크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하고 상속·증여재산이 동산인 경우에도 각각 2천~5천마르크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
- 公益用財産 : 100분의 60을 비과세하고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기념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거나 당해재산을 가족이 20년 이상 소유한 경우 및 문화재반출제한법에 의해 국보등록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비과세
- 直系尊屬의 生計配慮를 위해 귀속되는 재산으로 타 재산과 합하여 4만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
- 公益的 出捐 : 일정한 공익단체에 출연하는 것은 금액의 제한 없이 비과세
- 政黨에의 寄附 : 정당에 기부한 재산은 금액의 제한없이 비과세

第5節 프랑스

1. 納稅義務者

프랑스의 상속세제는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富의 增加에 대하여 과세하는 遺産取得課稅型을 취하고 있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되며, 생존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인이 납세의무를 가진다. 프랑스의 상속세제도가 被相續人과 상속인의 親密度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分類하고 세율을 相異하

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상속세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

2. 課稅區間과 稅率

被相續人과 상속인의 親密度(신분관계)에 따라 상속재산의 취득을 배우자간 상속, 직계상속, 형제·자매에 대한 상속, 4촌 이내 상속, 기타 상속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각각의 상속형태에 따라 서로 相異한 超過累進稅率을 적용하고 있다.

〈表 1-4-4〉 親密度에 따라 差等適用되는 累進稅率

(單位: 프랑, %)

배우자간 상속		직계상속		형제·자매상속	
5만 이하	5	5만 이하	5	15만 이하	35
5만 초과	10	5만 초과	10	15만 초과	45
10만 초과	15	7만 5천 초과	15	4촌 까지	55
20만 초과	20	10만 초과	20	기타	60
340만 초과	30	340만 초과	30		
560만 초과	35	560만 초과	35		
1,120만 초과	40	1,120만 초과	40		

3. 稅額算定方式

$$\begin{aligned}
 & \circ [(유산총액 + 일생 동안의 증여총액) \\
 & \quad - (채무·장례비 + 비과세재산 + 공제액)] \times 세율 \\
 & = 상속세액
 \end{aligned}$$

각종 공제제도는 아래와 같이 被相續人과 납세의무자의 親密度에 따라 공제액을 差等하여 적용하고 있다.

- 배우자공제 : 33만프랑
- 직계 자녀공제 : 30만프랑(자녀가 없을 때는 손자녀들이 공제받음)
- 형제자매 공제 : 10만프랑
- 장애인 공제 : 30만프랑
- 기초공제 : 1만프랑
- 세액공제 : 배우자와 직계 자녀는 각 4천프랑까지, 기타는 각 2천프랑까지 허용

4. 非課稅 및 減免

과세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기타 비과세 및 감면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테러희생자의 유산 비과세
- 생명보험금 지급, 유물, 산림 등에 대한 부분 또는 완전 비과세
- 연금의 경우 생존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전시 전액 비과세

第 6 節 日 本

유산과세형 상속세체계를 유지해 오던 일본의 상속세제는 1950년 슈프(Shoup) 사절단의 권고에 따라 承繼課稅型(accession tax type)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사회관행과의 충돌 및 세무행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1953년에 이를 폐지하고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하였다. 취득과세형 상속세제의 시행과정에서도 몇 가지의 폐단이 노출되자 稅制調査會의 권고에 따라 1958년의 세제개정에서 法

定相續分 課稅方式에 의한 取得課稅型⁴³⁾이라는 折衷型을 취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納稅義務者

일본의 상속세는 相續, 遺贈 또는 死因贈與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無制限納稅義務者는 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개인으로서 法施行地 內에 住所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재산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制限納稅義務者는 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개인으로서 法施行地 內에 住所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전체 재산 중 法施行地 內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세의 補完稅로서 창설된 贈與稅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개인이 되며 無制限納稅義務者 및 制限納稅義務者에 대한 사항은 상속세의 경우와 동일하다.

2. 課稅區間과 稅率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구간 및 세율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세율은 다음과 같다.

- 相續稅 : 9단계의 超過累進稅率 構造이며 최저 10%에서 최고 70%까지 있다.
- 贈與稅 : 13단계의 超過累進稅率 構造이며 최저 10%에서 최고 70%까지 있다.

43)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이란 과세되는 유산총액, 법정 상속인의 수, 법정상속분이라는 객관적 수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의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表 1-4-5〉 日本의 相續稅率

(單位: 円, %)

법정상속분 취득금액	세 율	속산공제액
800만 이하	10	—
800만 초과~1,600만 이하	15	40만
1,600만 초과~3,000만 이하	20	120만
3,000만 초과~5,000만 이하	25	270만
5,000만 초과~1억 이하	30	520만
1억 초과~2억 이하	40	1,520만
2억 초과~4억 이하	50	3,520만
4억 초과~20억 이하	60	7,520만
20억 초과	70	2억 7,520만

〈表 1-4-6〉 日本의 贈與稅率

(單位: 円, %)

기초공제·배우자공제 후의 과세가액	세 율	속산공제액
150만 이하	10	—
150만 초과	15	75만
200만 초과	20	175만
250만 초과	25	300만
350만 초과	30	475만
450만 초과	35	700만
600만 초과	40	1,000만
800만 초과	45	1,400만
1,000만 초과	50	1,900만
1,500만 초과	55	2,650만
2,500만 초과	60	3,900만
4,000만 초과	65	5,900만
1억 초과	70	1억 900만

3. 稅額算定方式

$$\begin{aligned} & \circ [(유산총액 + 3년\ 이내의\ 수증분) \\ & \quad - (\채무 \cdot \text{장례비} + \text{비과세재산} + \text{공제액})] \times \text{세율} \\ & = \text{상속세액} \end{aligned}$$

증여세는 통상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text{과세가액} - \text{배우자공제} - \text{기초공제}) \times \text{증여세율} = \text{증여세액}$$

증여시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며 특히 그 이전에 지불한 증여세의 조정은 되지 않으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稅額控除된다. 그러나 생전이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生前移轉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자가 被相續人의 1親等の 혈족 및 배우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세액의 20%를 加算한다. 상속재산의 취득자가 1親等の 혈족 및 배우자 이외인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재산취득의 우연성, 과세기회의 회피·감소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관련된 主要 控除制度는 아래와 같다.

- 基礎控除 : 5천만엔 + (1천만엔 × 법정상속인수).
- 債務控除 : 被相續人의 채무로서 상속이 개시된 때의 남은 금액. 被相續人의 장례비용은 전액공제.
- 贈與稅額控除 : 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그 상속의 被相續人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납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증여세

세액을 공제.

- 配偶者稅額輕減：현행 제도에 의한 배우자 세액경감제도를 보면,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의 상속세 총액에 다음의 ① 또는 ②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격의 합계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배우자세액 경감액으로 한한다.

① 과세가격 합계액에 배우자의 法定相續分을 곱해서 얻은 금액. 이 금액이 1억 6천만엔에 미달할 경우에는 1억 6천만円, 즉 법정상속분과 1억 6천만円 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② 배우자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상기 내용을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상속세 총액} \times \frac{\left. \begin{array}{l} \text{○ 법정상속분과 1억 6천만円 중 큰 금액} \\ \text{○ 배우자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end{array} \right\} \text{중 적은 금액}}{\text{각 상속인의 과세가격의 합계액}} \\ = \text{配偶者稅額 輕減額}$$

- 未成年者稅額控除：상속인 중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6만円×만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障礙者稅額控除：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무제한 납세의무자로서 법정상속인이고 장애자인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에서 1년에 6만円의 금액을 70세가 달할 때까지 공제할 수 있다.
- 外國稅額控除：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법 시행지 외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소재 국가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서 그 부과된 상속세 상당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4. 非課稅 및 減免

상속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다.

- 皇室經濟法에 규정한 皇位와 더불어 전해지는 유서있는 물건
- 묘소, 제구, 분묘 등의 소유권 등
- 공익사업용 재산
-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의한 심신장애공제제도에 의하여 급부금을 받을 권리
- 상속인이 취득한 생명보험금 등의 합계액 중 일정한 금액
- 상속인 등이 취득한 퇴직수당금 중 일정한 금액
- 상속세의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국가 등에 증여한 상속재산

第 7 節 臺 灣

1. 納稅義務者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自然人이 사망하면서 남긴 財産이다. 즉, 中華民國 國民이면서 거주자인 자가 국내외에 소유하는 재산을 사망으로 인해 이전할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遺産課稅型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명목상 被相續人이 되며 실제로 遺言執行者가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유언집행자가 없을 경우 상속인 및 被相續人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贈與行爲이며 中華民國 國民이면서 거주자인 자가 국내외에 소유하는 재산을 증여로 인해 이전할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贈與者이며 증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나 본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고 국내에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受贈者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課稅區間과 稅率

상속 및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表 1-4-7〉 臺灣의 相續 및 贈與稅 稅率

(單位: 元, %)

상속세		증여세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30만 이하	2	30만 이하	4
30만 초과~ 60만 이하	3	30만 초과~ 57만 이하	5
60만 초과~ 114만 이하	5	57만 초과~ 114만 이하	6
114만 초과~ 162만 이하	7	114만 초과~ 162만 이하	8
162만 초과~ 216만 이하	9	162만 초과~ 216만 이하	11
216만 초과~ 270만 이하	11	216만 초과~ 270만 이하	14
270만 초과~ 351만 이하	14	270만 초과~ 331만 이하	17
351만 초과~ 408만 이하	17	331만 초과~ 408만 이하	20
408만 초과~ 510만 이하	20	408만 초과~ 510만 이하	23
510만 초과~ 765만 이하	23	510만 초과~ 720만 이하	26
765만 초과~ 1,020만 이하	26	720만 초과~ 960만 이하	30
1,020만 초과~ 1,440만 이하	30	960만 초과~ 1,440만 이하	35
1,440만 초과~ 2,400만 이하	34	1,440만 초과~ 2,880만 이하	40
2,400만 초과~ 3,360만 이하	38	2,880만 초과~ 4,500만 이하	45
3,360만 초과~ 4,800만 이하	42	4,500만 초과~ 9,000만 이하	50
4,800만 초과~ 9,000만 이하	46	9,000만 초과~ 1억 5천 이하	55
9,000만 초과~ 1억 6천 이하	52	1억 5천 이상	60
1억 6천 이상	60		

3. 稅額算定方式

상속세의 稅額算定方式은 다음과 같다.

- [(유산총액+3년 이내의 증여분)
 - (채무·장례비+비과세재산+면세액+공제액)]×세율
 - (의제유산으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 및 그 이자+
 - 국외세액공제)
 = 상속세액

증여세의 稅額算定方式은 다음과 같다.

- [매년 증여총액-(매년 면세액+해당연도 매회 증여공제액의 합계)]×세율-(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해당연도 국외세액 공제액)
 - = 증여세액

控除制度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공제 : 유산총액에서 200萬元(NT\$)을 차감한다.
- 직계 존·비속공제 : 1인당 유산총액에서 25萬元을 차감한다.
- 미성년자공제 :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인 상속인의 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 20세가 될 때까지의 매년 25萬元이 차감된다.
- 형제·자매 및 조부모공제 : 피상속인이 부양하는 민법 제1138조의 제3, 제 4순위의 상속인(형제자매 및 조부모)이 있는 경우, 1인당 유산총액에서 25萬元을 차감한다.
- 농업용지의 토지가액공제 : 유산 중 농업용지를 상속인 또는 수증인이 상속받아서 계속 영농을 하는 경우, 그 토지가액의 50%를 차감함. 단 자정할 수 있는 상속인 1인이 상속받아서 계속 영농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액의 전액을 차감한다.

- 단기재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9년 전에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年單位로 체계적으로 공제 (80%, 60%, 40% 및 20%)한다.
- 채무 및 필요경비 공제 :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40萬元까지 인정되며 유언집행 및 유산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지출된 필요경비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4. 非課稅 및 減免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면세액은 다음과 같다.

- 一般免稅 : 被相續人이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 유산총액에서 200萬元까지 면세된다.
- 군인, 경찰, 공무원, 교원 등이 임무수행으로 인해서 사망할 때에는 400萬元까지 면세된다.
- 증여세의 경우 매년 증여총액에서 45萬元이 면세되며 이때 국민과 비국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음 각 항의 재산은 상속세의 유산총액 계산시에 算入되지 않는다.

- 유증인, 수유자 또는 상속인이 各級 政府 및 공립 교육, 문화, 공익 및 자선기관에 기부하는 재산
- 유증인, 수유자 또는 상속인이 公有事業機構 또는 全株式이 공공 소유인 공영사업에 기부하는 재산
- 유증인, 수유자 또는 상속인이 被相續人 사망시에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교육, 문화, 공익, 자선 및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재산
- 유산 중 문화·역사 및 미술과 관련한 도서물품으로서 상속인이 주관 세무기관에 등기를 신청한 경우
- 被相續人이 자기가 창작한 저작권, 발명특허권 및 예술품

- 상속인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구 및 용구로 그 총가액이 45萬元 이하인 것
- 被相續人の 직업상의 공구로 그 총가액이 25萬元 이하인 것
- 법에 의해서 별채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삼림
- 被相續人の 사망시에 지정 수익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생명보험금액, 공무원 및 교사 또는 勞工(勞動者)의 보험금액 및 상조금
- 被相續人이 사망하기전 5년 내에 상속받은 재산으로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다음 각 항의 재산은 증여총액의 계산시에 算入되지 않는다.

- 각급 정부 및 공립 교육, 문화, 공익 및 자선기관에 기부하는 재산
- 公有事業機構 또는 全株式이 공공 소유인 공영사업에 기부하는 재산
-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인 교육, 문화, 공익, 자선 및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재산
-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인을 위해서 지불하는 생활비, 교육비 및 의료비
- 가정농장의 농업용지를 자경할 수 있는 배우자 또는 민법 제 1138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 1인이 수증받아서 계속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第 8 節 우리나라

相續·贈與稅는 부부간 혹은 세대간의 富의 無償移轉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34년에 상속세제가 도입되었으며, 당시의 도입목적은 日帝가 戰費를 調達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었다.

현행 相續稅法은 1950년에 제정·시행되었다. 「立法沿革」에 의하면 同 稅法은 稅收確保와 實質的 平等의 原則을 실현시키며, 또한 소득세제에 대한 補完稅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어 贈與稅法도 독립적으로 제정·시행되었으나 1952년에 廢止되고 相續稅法에 吸收되었다.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을 거듭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遺產課稅型이고 증여세의 과세유형은 取得課稅型이다. 이는 세무행정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이지만 상호 보완관계에 있어야 할 상속·증여세가 課稅類型의 相異로 인해서 보완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1. 納稅義務者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자인 相續人과 受遺者이다. 이들 납세의무자가 지는 납세의무의 범위에 따라 無制限納稅義務者와 制限納稅義務者로 나누어진다. 無制限納稅義務者란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被相續人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이 국내·외에 있음을 불문하고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無制限納稅義務를 지는 것을 말한다. 制限納稅義務者란 상속개시일에 被相續人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과할 租稅債權(相續稅)의 확보 내지 행정집행을 신속·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相續稅 連帶納付 義務의 부여 및 推定 相續人 등의 납세의무자로 나눌 수 있다. 連帶納付義務者는 각자가 취득한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취득한 재산가액이 한도이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受贈者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자도 連帶納付 責任이 있다. 이와 같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 따라 無制限納稅義務者와 制限納稅義務者로 나누어진다. 無制限納稅義務者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者가 타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그 者가 취득한 재산의 주소가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불문하고 그 증여로 취득한 전부의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制限納稅義務者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者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그 者의 취득재산 중에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2. 課稅區間과 稅率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超過累進稅率構造로서 같지만 과세구간은 다르다(〈表 1-4-8〉, 〈表 1-4-9〉 참조).

- 相續稅 : 4단계의 超過累進稅率 構造이며 최저 10%에서 최고 40%이다.
- 贈與稅 : 4단계의 超過累進稅率 構造이며 최저 10%에서 최고 40%이다.

〈表 1-4-8〉 우리나라의 相續稅 稅率

(單位: 원, %)

과 세 표 준	세 율
5천만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5천만 초과~2억 5천만 이하	500만+5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억 5천만 초과~5억 5천만 이하	4,500만+2억 5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억 5천만 초과	1억 3,500만+5억 5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表 1-4-9〉 우리나라의 贈與稅 稅率

(單位: 원, %)

과 세 표 준	세 율
2천만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천만 초과~1억 5천만 이하	200만+2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억 5천만 초과~3억 이하	2천 800만+1억 5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억 초과	7천 300만+3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 稅額算定方式

상속세의 稅額算定方式은 다음과 같다.

$$[(\text{유산총액} + \text{사망전 5년내 증여재산}) - (\text{비과세재산} + \text{공과금} + \text{채무 등}) - \text{각종 상속공제}] \times \text{세율} = \text{산출세액}$$

증여세의 稅額算定方式은 다음과 같다.

$$[(\text{증여재산} + \text{증여의제재산}) - \text{증여공제}] \times \text{세율} = \text{산출세액}$$

상속세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소유자가 과세대상이며, 과세의水位는 통상적으로 控除制度를 통해서 조정된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공제제도는 基礎控除·人的控除 및 物的控除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表 1-4-10〉참조), 공제 방법도 課稅價額控除方法(基礎控除, 人的控除, 物的控除 및 山林相續控除)과 稅額控除方法(短期相續控除, 國外相續控除, 贈與稅額控除 등)을 모두 채용하고 있다(控除額의 변천은 〈附表1-3〉참조).

증여세의 공제제도는 다음과 같으며, 課稅價額控除方法과 稅額控除方法을 모두 채용하고 있다.

○ 贈與財產控除

배우자 : 5,000만원 + (결혼연수 × 500만원)

직계존비속 : 3,000만원(미성년자 경우 1,500만원)

기타 친족 : 500만원

○ 再次贈與稅額控除 : 합산과세의 증여세 산출세액에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의 합계액 중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한도

○ 國外財產稅額控除 : 외국법령에 의해 부과된 금액한도

○ 申告稅額控除 : 6개월내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시 세액의 10%

〈表 1-4-10〉 相續稅 人的控除 및 物的控除

		내 용	1996년 이후
① 상속재산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 : 1,500만원 • 금전 이외의 • 신탁재산 : 700만원 • 퇴직급여 : 100만원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10px; height: 20px; margin-right: 5px;"></div> <div style="margin-right: 5px;">초과</div>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10px; height: 20px; margin-right: 5px;"></div> <div style="margin-right: 5px;">부분</div>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10px; height: 20px; margin-right: 5px;"></div> <div>합산</div> </div> <p>퇴직급여는 1,000만원 초과 부분만 합산</p>
② 증여재산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에게 : 3년 이내 • 타인에게 : 1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에게 : 5년 이내 • 타인에게 : 3년 이내
③ 공과금 공제액	장례비용 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 • 미납분 및 상속인에 승계분 • 묘지에 관한 비용 제외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 • 미납분 및 상속인에 승계분 • 500만원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
④ 과세가액		① + ② - ③	① + ② - ③
⑤ 기초공제			1억원
⑥ 인적공제	배우자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억원 + (결혼연수 × 1,200만원) 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10억원 한도)
	자녀 ¹⁾	• 출생순 2인 한도	1인당 2,000만원
	미성년자 ¹⁾	• 출생순 2인 한도	3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 남 60세, 여 55세 이상	3,000만원
	장애자 ²⁾	• 금(한정)치산자, 불치의 질환자	3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表 1-4-10〉의 繼續

		내 용	1996년 이후
⑦ 주택 상속공제	일 반 주 택	• 상속재산 중 주택이 있는 경우	1억원 한도(⑤, ⑥ 포함, 연료, 장애자 제외)
	특 별 주 택	•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 •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주택	(주택가액 - 1억원) × 90% 추가공제하되, 5년 이상 동거봉양 주택은 3,000만원 범위 내 추가공제
⑧ 농지, 초지, 산림지 상속공제(1979이후)	• 농지 : 농지세 과세대상 • 초지 : 초지법의 규정 • 산림지 : 조림기간 5년 이상	농지 : 9천평 이내 초지 : 4만 5천평 이내 산림지 : 9만평 이내 ⑤, ⑥, ⑦ 일반주택 포함 1억 1천만원 한도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외에 별도로 1억원 한도 안에서 공제(영농조합법인의 출자액 포함)(다만, 농사를 직접 짓는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에 대해서는 다른 물적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10억원까지 추가공제 가능)
⑨ 산림상속공제	• 조림기간 5년 이상	전액(육림시 포함)	
⑩ 과세표준액	④-⑤-⑥-⑦-⑧-⑨	④-⑤-⑥-⑦-⑧-⑨	
⑪ 과세최저한	과세표준액 기준	20만원 미만	

註 : 1) 자녀공제와 미성년공제는 겹하여 공제됨(중복공제).

2) 장애자공제는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공제를 겹하여 공제됨(중복공제).

4. 非課稅 및 減免

가. 相續稅의 非課稅 및 減免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非課稅財産, 無條件不算入財産과 특정한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불산입하는 條件附不算入財産이 있다.

相續稅 非課稅制度는 被相續人의 사망원인에 따라 납세의 주체인 被相續人을 중심으로 被相續人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非課稅財産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법상의 비과세재산(제13조)으로서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에 준하는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租稅減免規制法상의 비과세재산(제86조)으로서 우리社株組員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額面價額이 5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주식에 한한다)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상속세법 제8조의 2에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無條件不算入財産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일정면적 이내의 禁養林野 및 墓土 등
- 國民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되는 遺族年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返還一時金
- 公務員年金法 또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遺族年金·遺族年金附加金·遺族年金一時金·遺族一時金 또는 遺

族補償金

- 軍人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되는 遺族年金·遺族年金一時金·遺族一時金 또는 災害補償金
-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지급되는 遺族補償年金·遺族補償一時金 또는 遺族特別給與

상속세법 施行令 제4조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無條件不算入財産은 다음과 같다.

-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이재구호금품 기타 불우한 者를 돕기 위한 금품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등

條件附不算入財産이란 원칙적으로 상속세의 과세대상재산이나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不算入要件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일 것
- 理事 등의 주요 의사결정권이 집중되지 아니하였을 것
- 출연재산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被相續人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것
- 당해 공익법인을 수행하는 법인이 상속세법상 요구되는 제반 의무를 이행할 것

나. 贈與稅의 非課稅 및 減免

증여세에 있어서도 공익성 내지 정책적 배려에서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과세하는 규정을 相續

稅法과 租稅減免規制法에 두고 있다.

相續稅法의 규정(제34조의 8)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 주택취득보조금 및 주택임차보조금에 관한 비과세
-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租稅減免規制法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경농민이 租稅減免規制法 제56조 제1항 各號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相續稅法 제11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영어민에게 그 소유 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第5章 우리나라의 中産層 規模 推定

中産層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지닌 계층이나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하다. 특히 1996년도 상속세법 핵심 개정 사항의 하나인 배우자 상속·증여공제액과 면세점을 크게 인상하는 이유의 하나로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가 거론되면서 중산층의 정의와 그 규모를 놓고 많은 이들이 궁급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산층이라는 용어가 영어의 미들클래스(middle class)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라면 ‘中間階層’이라고 해석해도 지장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중간계층은 말 그대로 그 사회의 중간그룹에 속하는 계층을 지칭하므로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수치의 산술평균값이나 중앙값을 잡아 이로부터 양쪽으로 일정한 비율의 인구나 가구를 포함시키면 중산층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연구된 자료들이 대부분 이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또 평가의 기준으로는 ‘所得’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의 主題는 우리나라의 중산층 규모를 추정해내는 작업이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등과 달라 所得만을 중산층 평가의 기준으로 채택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즉 高地價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중산층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근로자가 自家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西歐 국가들의 근로자에 비해 장기간 근로하고 또 저축을 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같은 우리의 사정을 감안하여 중산층에 대한 定義를 기준으로 所得 외에 토지, 주택 등의 住居用 資産과 금융자산을 함께 고려한다. 먼저 第1節에서 중산층의 정의와 중산층 감소 가설을 살펴보고, 第2節에서는 우리나라 중산층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

고 중산층의 규모를 추정해 본다. 그리고 第3節에서 중산층의 의사결정과 정부 재정 규모의 불안정성에 대해 기술한다.

第1節 中産層의 定義와 中産層 減少假說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며 크게 보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구매력을 보아 중간층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소득계층을 잡아 이 범주에 드는 그룹을 중산층이라고 정의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中央值(median) 가계소득을 포착해 이를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에 드는 그룹을 중산층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두 방법 모두 소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1960년대에 비해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래서 이를 검증해 보려는 많은 연구가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분석결과의 주된 결과는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에는 중산층이 오히려 줄고 低所得層과 상류층이 더 늘었다는 것으로 중산층 감소가설이 대체로 들어 맞는다고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0여년이 경과한 1995년 3월과 4월에는 다시 ‘중산층 반란(middle class revolt)’이 주요 매스컴에 크게 부각되었다. 중산층 반란이라 함은 많은 중산층 가구가 지난 20여년간의 저성장으로 인해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생활수준도 과거보다 크게 향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녀세대에 가서는 생활수준이 자신들 세대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자신들에게 손해 되는 정책을 발표하는 政黨에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이들을 달래기 위해 각종 減稅政策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美國 學者들이 제시한 중산층에 대한 정의와 中産層 減少假說 관

런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르며 이를 정리하면 중산층의 감소분 배분을 두고 로렌스(Lawrence, 1984)와 브래드버리(Bradbury, 1986)는 低所得層, 더러우(Thurow, 1984)는 低所得層과 上流層으로 양분, 호리건과 호건(Horrigan and Haugen, 1988)은 대부분 상류층의 증가로 연결되었다고 조금씩 상반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러우는 중산층을 메디안 소득의 75%에서 125% 사이에 드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그는 중산층이 접하는 비율이 1967년의 28%에서 1982년에는 24%로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 1967년은 경제회복기, 1982년은 불황기에 해당한다. 중산층 감소분은 低所得層과 상류층에 대략 반반씩 수용되었다.

로렌스는 중산층을 남자 근로자 週給(中央值)의 3분의 2에서 3분의 4사이에 드는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개념하에 그는 전체 풀타임 근로자 중 중산층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는 비율이 1969년의 50%에서 1983년에는 46%로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1969년은 경기의 頂點에 해당하는 연도이고 1983년은 경기가 바닥을 벗어나 회복세를 보인 첫 해이다. 중산층 감소분은 대부분이 低所得層의 확대로 연결되어 低所得層은 전체 풀타임 근로자의 33%를 접하게 되었다.

브래드버리는 家計所得을 사용하여 중산층을 정의하고 있는데 1984년도 기준 2만달러 이상 5만달러 미만의 소득계층에 드는 가계를 중산층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값을 1973년(경기의 정점기인 연도) 값으로 디플레이트시켜 분석한 결과 그녀는 중산층이 1973년의 53%에서 1984년에는 48%로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1984년은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든 지 2년째 되는 연도이다. 그리고 상실된 중산층 몫은 대부분이 低所得層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레비(Levy, 1987)는 가구소득을 5분위로 나누어 볼 때 중산층

(middle class)을 제2분위부터 제4분위까지의 60%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정의에 입각해 미국의 중산층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7년의 52.0%에서 1969년에 53.8%로 올라갔다가 1984년에는 52.4%로 다시 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호리건과 호건은 위의 연구에서 사용된 중산층 분류기준인 중간소득구간과 區間 디플레이터 접근법, 중앙치 家計所得의 일정비율 접근법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되 기존 연구와 달리 여러 가지 상이한 조건을 부여하여 感應度를 체크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들은 중산층 감소가설을 지지하되 감소된 중산층의 대부분이 상류층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低所得層으로 이동해 가는 중산층은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간소득 구간과 區間 디플레이터 접근법을 이용할 경우 감소된 중산층은 대부분 상류층으로 이동해 가고, 중앙치 가계소득의 일정비율 접근법을 이용하면 일부가 低所得層으로 이동해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수는 상류층으로 이동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분석방법과 관계없이 뚜렷이 드러나는 사실은 지난 20년 사이에 전체 소득 중 低所得層 보유 소득지분이 줄어 들어 低所得層과 나머지 계층간에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어 왔다는 점이다.

第2節 우리나라 中産層의 定義와 中産層 規模 推定

앞에서 미국 학자를 중심으로 행해진 중산층의 定義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두 가지 접근이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정의함에 있어 크게 보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이들의 기준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득 외에 자산을 추가하여 이들의 기준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특징은 토지와 주택

으로 대표되는 부동산의 가격이 연간소득에 비해 미국 등에 비해 아주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간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 기준에 의하면 충분히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도 주택을 지니고 있지 못하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먼저 소득에만 한정하여 중산층의 범위를 살펴보고, 이어서 소득 외에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중산층의 범위를 간략하게 계측해 본다. 물론 소득, 토지, 주택에 관한 정보를 동시에 담고 있는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분석보다는 대략적인 개요를 모색하는 데 목표를 둔다.

1. 要 約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정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구분이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1993년도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및 보유자산의 평균수준은 다음과 같다. 연간 소득(도시가계 근로소득자 기준) 1,477만원, 금융자산(도시가계 기준) 1,170만원, 주택자산(전국 가계 기준) 3,600~4,200만원, 토지 8,200~9,600만원 이다. 이상의 수치는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는 이들의 平均值이다. 1995년 기준으로 고려할 경우 연간소득 1,911만원, 토지와 주택은 1993년 값과 유사한 수준, 금융자산은 1,744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인 연구에 따라 중산층을 소득 혹은 보유자산의 평균값이나 중앙값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일정한 비율의 범위 안에 드는 계층으로 정의해 보자. 그런데 분류 기준에 따라 중산층의 범위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즉 분류 기준을 所得, 所得+住居用 資産, 住宅, 土地, 金融資産 중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중산층의 규모는 다르게

나온다.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규모는 전체 가구의 13~62% 정도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⁴⁴⁾.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구분해 보자. 年齡 등 世代別 要因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중산층은 연간소득이 1천 5백만원~5천만원 범위에 들고 보유자산 규모가 5천만원~10억원 정도로 규정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年齡에 따라 분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중산층을 구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物的資產보다는 소득(혹은 人的資產)에 좀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며, 나이든 세대를 대상으로 중산층을 구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物的資產의 규모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유는 젊은 세대의 경우 遺産의 유무에 따라 보유자산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고 소득이 인적자산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보다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고, 나이든 세대는 人的資產 요소가 고려될 소지가 아주 작기 때문이다.

물론 주된 변수 외에 추가적인 변수로 젊은 세대는 보유자산, 나이든 세대는 소득이 고려된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경우 낮은 인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者라도 유산 상속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자산을 보유하여 자산소득을 얻고 있는 者들이 있기 때문이며,

44) 洪斗承(1983)은 직업 기준으로 중산층 규모가 29.0%(1970)에서 38.5%(1980)로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독립 자영농을 포함할 경우 규모는 57.0%에서 61.7%로 크게 증가한다. 또 韓相震(1987)은 비농가 부문을 대상으로 소득, 직업, 교육, 주택의 네 변수를 교차분석하여 중산층 규모가 36.1%(1980)에서 41.1%(1985)로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분석이 맞다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규모는 1970년 이후 1985년까지 증가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延河淸 外(1990)는 1988년에 행한 「國民生活水準 및 經濟意識調查」에 입각해 우리나라 중산층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高卒 이상의 30세 이상 남자 家口主로 자영업자나 근로자로 취업하고 있으며, 근로자일 경우 사무직, 판매직, 전문기술직, 경력 있는 생산직 종사자로 中 이상의 歸屬意識을 소유하고 있다. 또 30평 내외의 自家나 傳貰住宅에서 생활하며 총 보유자산 규모는 3천만원 이상이며 부채가 약간 있고,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내구재를 5~6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다. 소득은 年 6백만원 이상으로 표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延河淸 外(1990), p. 64 <表 2-7>, pp. 116~118.

나이든 세대의 경우 부동산의 流動化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保有 資産이 제법 큰 데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계가 있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정리하면 젊은 세대의 중산층은 연간소득이 2천 5백만원~5천만원이고 보유자산이 5천만원~3억원 정도인 세대, 나이든 세대의 중산층은 연간소득이 1천 5백만원~5천만원이고 보유자산이 1억원~10억원 정도인 세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나이든 세대가 젊은 세대에 비해 所得과 保有資産의 偏差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所得 및 保有 資産 平均值

1993년 기준으로 우리 나라 가구의 소득 및 보유자산의 평균치는 다음과 같다⁴⁵⁾.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이다. 단 연간 소득은 전 가구(도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평균치이다. ① 연간 소득이 1,477만원(1,911만원, 1995년) ② 金融資産이 1,170만원(1,744만원, 1995년) ③ 土地가 8,200~9,600만원 ④ 住宅이 3,600~4,200만원이다.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은 時價로 환산한 값이다. 金融資産은 소유 편중도가 토지 및 주택에 비해 크고 비상장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이 엄격히 조사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제시된 값이 過少 評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해당자산을 보유하는 가구당 평균치이므로 숲 가구로 환산할 경우 토지가 5,600~6,500만원, 주택이 1,600~1,800만원, 금융자산이 1,110만원(1,650만원)이 된다.

45) 연간 소득은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금융자산은 韓國銀行 『都市家計貯蓄市場調査』, 토지는 內務部 市郡稅課 『1993년 종합토지세 부과 기초자료』, 주택은 內務部 市郡稅課 『1993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 기초자료』 참조.

3. 基準別 中産層 範圍

이하에서는 기준별로 중산층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所得 基準

소득만을 가지고 중산층의 범위를 살펴보자. 1994년도 도시가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가구를 구분할 경우 중산층 61%, 상류층 14%, 그리고 低所得層 24%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는 중산층을 같은해 근로자 월소득 중앙치인 148만원을 기준으로 71%에 해당하는 105만원보다 크고 172%에 해당하는 255만원보다 작은 소득수준에 속하는 그룹을 정의한 경우이다.

사업소득자 가구의 경우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소득이 공표되지 않으므로 「대우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同 자료의 1992년도 소득기준에 의하면 중산층은 60%, 상류층 11%, 低所得層 29%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는 중산층을 같은해 사업소득자 월소득이 83만원 이상 208만원 미만에 속하는 그룹을 정의한 경우이다. 83만원은 사업소득자 월평균소득 중앙값 112만원(같은해 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의 중앙값 99만원의 1.13배)의 74%에 해당하고, 208만원은 同 중앙값의 186%에 상당하는 값이다. 사업소득자의 중산층을 규정함에 있어 소득기준을 중앙값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시킨 것은 사업소득자의 소득분포가 근로소득자의 그것에 비해 편중도가 심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포함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가정을 대상으로 중산층을 구분하여 보면 다소 색다른 결과가 얻어진다. 이는 대우패널자료로 1994년 8월부터 1995년 7월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조사한 값이다. 이들의 월평균소득 중앙치가 347만원이므로 중산층을 이 중앙치의 72%인 250만원 이상 180%인 625만원 미만으로 정의할 경우 중산층 50%, 상류층 29%, 低所得層 21%가

얻어져 앞에서 계산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분류와 비교할 때 중산층 비율이 줄어들고 상류층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다. 주의할 점은 조사대상가구를 교육비를 지출한 가정으로 한정시킴으로써 표본이 전체 표본의 63%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보듯 중산층 개념은 조사대상 자료와 조사대상 그룹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가 얻어진다. 이들을 토대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중산층은 50%~60%, 상류층은 10%~30%, 低所得層은 20%~30%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나. 所得과 資産 基準

소득 외에 거주용 부동산을 감안할 경우, 중산층의 개념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소득은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거주용 부동산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자신들이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데 대해 수긍하지 않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年所得에 비해 거주용 부동산의 가격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은 낮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들을 중산층으로 분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때 부동산의 높은 수익성이 임대소득 등으로 실현되면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논의에서 제외되고, 높은 수익성이 자본이득의 형태를 지니면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 같은 경우에 이들 그룹을 중산층으로 분류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상의 문제들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중산층을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고 동시에 보유자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그룹을 중산층으로 정의한다.

먼저 도시가계조사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중산층을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월소득 105만원 이상 255만원 미만이고 月貫評價額(保有資産의 代理變數)이 월 50만원(時價 5,000만원~7,500만원 정도)

이상인 그룹, 둘째 월소득 255만원 이상이고 월세평가액이 월 50만원 이상 80만원(時價 8천만원~1억 2천만원 정도) 미만인 그룹이다. 이렇게 되면 상류층은 월소득 255만원 이상이고 월세평가액이 월 80만원을 초과하는 그룹으로 정의되고, 低所得層은 월소득 105만원 미만이거나 월세 평가액 50만원 미만인 그룹으로 정의된다.

이 기준에 의할 경우 중산층 13%, 상류층 2%, 나머지 85%는 모두 低所得層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수치를 쉽게 수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중산층을 다수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 가구(기업 경영자 및 임원 가구 포함)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근로소득자 가구 중 고소득계층과 극빈계층이 조사대상에 극히 일부만 포함되어 있으며, 또 조사대상에 토지 등의 보유 현황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중산층 중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며, 또 상당수가 근로자 가구라는 사실이다. 또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근로자 가구와 비교하여 상류층이 소수이고 低所得層이 다수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산층의 경우 자영업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점을 종합하여 다소 무리는 있지만 도시근로자 가구의 계층별 분포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계층별 분포로 확대 해석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다. 資産 基準

소득을 무시하고 토지와 주택 보유만을 대상으로 중산층을 고려해보자.

1) 土地 資産

1993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보유자는 839만 9,472명인데 전체 가구수는 1,242만 4천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한 가구당 1인만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토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32.5%에 달한다. 가령 한 가구에서 복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체가구의 33~35% 정도가 토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토지의 보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한다. 첫째 時價 5천만원 미만의 토지를 보유하는 계층은 低所得層으로, 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중산층, 1억원 초과는 상류층으로 정의한다. 이 같은 구분의 기준은 앞에서 중산층의 분류기준인 월세평가액 50만원 이상이 자산가격이 5천만원 이상에 해당되고, 월세평가액 80만원 이상이 자산가격 1억원 이상에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중산층은 20%, 低所得層이 52%, 상류층은 28%가 된다.

둘째, 중산층의 규모를 자산가격 5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정의한다. 5천만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며, 여기서는 10억원의 근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時價 10억원은 현행 상속세법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과세가액 7억원 전후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배우자가 있고, 2인의 자녀가 있는 상속가족의 경우 면세점상의 값이다. 논의를 간편화시키기 위해 면세점에 해당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同 재산은 배우자에게 5억원, 자녀 1인에게 2억 5천만원씩 배분된다. 여기서 피상속인 70세, 자녀 40세로 가정하면 同 유산액은 자녀의 남은 人的資產 7억원(殘餘 勤勞期間의 勤勞所得의 현재가치 합계액, 60세까지 20년 추가 근속 가능성을 가정, 年所得 3,500만원, 할인율과 임금성장률은 일정하다고 가정)의 36% 수준이다. 문제는 이 정도의 유산액이 자녀의 상속 전후의 근로행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점이다. 자녀가 근로생활을 하면서 장래 유산을 받아 자신의 生涯所得이 20~30% 정도 늘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를 게을리 할 수도 있고, 유산이 없었을 때에 비해 일찍 퇴직할 수 있으며, 또 근로소득자를 사직하고 유산을 자본삼아 사업을 영위하는 행동 등이 예상될 수 있다.

이 같은 상속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된 자료나 연구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왕성한 근로의욕을 감안할 때 파급효과가 歐美 국가들에서 나타난 것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두번째 분류기준에 의하면 중산층 46%, 상류층 2%, 低所得層 52%가 된다. 첫번째 분류와 비교하면 상류층이 28%에서 2%로 대폭 줄고 중산층은 20%에서 46%로 크게 늘어난다.

이상의 두 가지 분류기준 중 도시가계조사와 일관성이 있는 기준은 첫번째 기준이다. 그리고 두번째 기준은 중산층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 비난의 소지가 없지 않으나, 자산수준의 상한선이 경제학적으로 보아 자녀세대의 행동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을 最大遺産額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존립 이유는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住宅 資産

1993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보유주택은 812만 8,390호이고 이 중 주민등록이 불분명한 주택은 632만 5,250戶이다. 또 이를 보유세대로 파악하면 711만 5,055세대이고 이 중 주민등록이 불분명한 세대를 차감하고 남은 세대는 531만 1,915세대이다. 같은 해 전체 세대수를 1,212만 2천가구(건설부 통계)로 볼 경우 주택보유세대는 59%이며 주민등록이 분명한 세대는 44%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토지 보유세대에 비해 주택보유세대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주택보유를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과표구간이 2,600만원 이상인 세대는 상류층, 同 구간이 500만원 이상이고 2,600만원 미만인 계층은 중산층, 500만원 미만인 계층을 低所得層으로 구분한다. 구분의 근거는 상류층의 기준인 2,600만원의 경우 건축물의 재건축비용이 約 8,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건축물을 가리킨다. 여기에 부속 토지의 대금을 감안하면 時價 1억원~2억원 정도의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의 도시가계조사에서 규정한 상류층의 구분과 유사한 수준이다. 중산층의 기준인 500만원 이상의 근거는 건축물의 재건축비용이 약 1,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 부속토지의 대금을 감안하면 時價 5천만원~1억원 정도의 부동산이 될 것이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중산층은 35%, 상류층은 2%, 低所得層은 63%이다. 즉 低所得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41%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표구간이 500만원 미만인 22%이다.

3) 資産 綜合

토지와 주택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중산층은 토지 20~46%, 주택 35%, 상류층은 토지 2~28%, 주택 2%, 低所得層은 토지 52%, 주택 63%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들 수치에서 주택의 비율에 좀더 비중을 두고 계층간 비율을 추산해 보면 중산층 38%, 상류층 2%, 低所得層 60%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金融資産 基準

여기서는 금융자산의 보유액을 대상으로 중산층을 고려해 보자.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도시가계 저축시장조사(1994) 등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1993년도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평균 금융자산 저축액은 1,112만원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금융자산 저축 보유액에 따른 중산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즉 금융자산 저축액의 중앙값인 757만원을 기준으로 66% 수준인 500만원을 하한액, 528% 수준인 4천만원을 상한액으로 이 범위내 저축액을 지닌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면 중산층 62%, 고소득층 2%, 저소득층 36%의 분포가 얻어진다.

이 같이 중산층을 정의하게 된 뚜렷한 근거는 없으며 토지·주택 등과 비교하여 계층간의 분포가 형평성을 지니도록 구분했을 따름

이다. 결과적으로 얻어진 하한액 500만원은 근로자 가구가 1년에 행하는 평균적인 저축규모 수준의 값이고, 상한액 4천만원은 근로자 가구 연평균소득의 3배 수준에 해당하는 값이다.

마. 中産層 개념과 相續稅 免稅點

중산층 규모는 가구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13%에서 61%까지 폭 넓게 고려될 수 있다. 또 소득만을 고려할 경우에 비해 자산까지를 고려하면 중산층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작게 평가된다. 평가 기준별로 相異한 중산층 규모가 얻어지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表 1-5-1〉 評價基準別 中産層 規模(우리나라)

(單位：%)

평가기준	조사대상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a 所得	근로소득자 가구(都市)	14	61	24
b 所得+住居用資産	근로소득자 가구(都市)	2	13	85
c 土地 資産	全家口(狹義)	28	20	52
	(廣義)	2	46	52
d 住宅 資産	全家口	2	35	63
e 金融 資産	全家口	2	62	36

이상에서 우리 나라 가구의 평균 보유자산의 규모와 중산층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제시한 수치가 지닌 객관성에 대해선 좀더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잠정적인 數値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자산분포는 소득보다 분포의 편중도가 심하고 또 자산분포 중에서는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의 분포가 더 편중되게 분포되어 있는데, 암묵적으로 이들이 편중된 고소득층 보유자산이 조사대상에 모두 포함되었다고 가정하고 측정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우리 분석의 출발점이 된 '相續稅 免稅點 水準'과 관련해 설명하

면 개정안이 담고 있는 10억원은 時價로 평가할 경우 13억 내지 17억원 정도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서울 시내의 초호화 빌라맨션의 가격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주택(최고급을 포함) 혹은 주택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비과세해 주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세법이 일정한 요건(4인 가족, 결혼연수 30년 등)을 갖춘 가족에 대해 7억원(時價 10억원 상당) 정도까지 면세를 허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가족수, 결혼연수 등과 무관하게 허용하는 10억원은 同 遺産이 자녀세대의 경제행위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 비교를 통해 보아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행 면세점 수준인 7억원(時價 10억원)의 유산에서 자녀 1인 몫인 時價 2억 5천만원이 자녀세대의 근로의욕 등 경제활동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第 3 節 中産層의 意思決定과 財政規模의 不安定性⁴⁶⁾

앞에서는 중산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우리나라의 중산층 범위를 계측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우리가 다소 모호한 면이 있는 가운데 중산층의 범위를 계측하려고 시도한 것은 이들 계층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행사하는 투표권의 향방에 따라 집권당이 바뀌고 또 기존 정당의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정부재정의 向方

46) 이하의 내용은 吉田和男(1995), pp. 108~118 참조.

을 정함에 있어 중산층이 福祉論者와 減量論者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기술한다.

增稅나 減稅를 통해 재정규모를 재조정하려고 할 때 중산층의 생 작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령 균형재정 원칙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중산층의 판단에 따라 큰 정부가 되기도 하고 작은 정부가 되기도 한다. 현실을 보아도 때에 따라 큰 정부, 작은 정부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산층이 확고한 효용함수를 배경으로 특정 정책을 지지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중산층이 움직이면 정부의 재정정책이 바뀌어져 왔다. 이 같은 재정정책의 선택에 대한 메커니즘을 고려해 보자.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두 주장을 검토한다. 하나는 세부담을 올려서라도 재정규모를 확대하자는 ‘福祉論者’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세부담을 줄이자는 ‘減量論者’이다. 한 나라의 재정 현실을 감안하면 재정규모의 선택은 결국 여론이 어느 쪽의 생각을 지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 계층을 低所得層(허위신고에 의한 이들도 포함), 中産層, 高所得層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경우, 중산층의 판단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는 각 계층의 시각과 입장에 차이가 없더라도, 복지정책 등의 이전과 준공공재의 규모 선택에 관해서는 시각과 입장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층은 재정 지원에 의해 수혜를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세 부담이 작으므로 재정규모를 크게 할수록 得을 본다. 따라서 이들은 대개는 복지론자가 된다. 이에 비해 고소득층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고소득을 가져오는 원천을 지속시킬 수 있으므로 현행 체제하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法秩序 측면의 선택이고 현실의 고소득층에게 이득을 안겨주려고 선택한 정책은 아니다. 실제로 이

들 계층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으로부터 받는 수혜는 작고 세부담은 크므로 減量論者로 행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곧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異論의 여지 없이 前者는 복지론자, 後者는 감량론자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中産層이다. 이들은 정부 재정의 지원이 없다고 해서 생활에 궁핍함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들의 노력과 소속 職場의 힘으로 대부분의 필요한 예산을 조달해 쓸 수 있다. 세부담 능력은 크지 않지만 정해진 부담분에 대해선 에누리 없이 징수당한다. 봉급 생활자들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이들은 저소득층이 정부 재정의 지원을 받아 생활수준이 자신들에게 근접해 오는 것을 싫어한다. 자신들이 재정에 대해선 수동적이고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 계층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자신에게까지 미치고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는 福祉論者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減量論者가 된다. 또 세부담이 낮으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더라도 '理念'을 내세워 복지론자가 될 것이다. 반대로 세부담이 다소 높으면 '自助'를 내세워 減量論者로 변신할 것이다.

또 이들은 저소득층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복지론자가 될 수 있고, 거꾸로 고소득층으로 옮겨갈 것을 염두에 두고 감량론자의 깃발을 들 수도 있다. 그리고 복지국가가 심화될 경우 세율이 높아져 중산층에서 고소득층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감량론자로 변신할 수도 있다. 요컨대 중산층의 경우 자신의 처지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세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복지론자를 표방하고, 복지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도 개선시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수혜가 많이 돌아오는 복지정책의 확대를 요구한다. 거꾸로 높은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복지를 충실하게 하고자 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中産層은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第 2 部

相續・贈與稅制의 合理化 方案

第 1 章 相續·贈與稅制 改編의 必要性 및 基本方向

第 1 節 現況과 問題點

1. 現 況

가. 相續·贈與稅 課稅現況

「立法沿革」에 의하면 세수확보와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며, 또한 소득세제에 대한 補完稅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지닌 상속세법이 1950년에 제정·시행되었다. 증여세법도 독립적으로 제정·시행되었으나 1952년에 폐지되고 상속세법에 흡수되었다. 이후 증여세법이 상속세법에 포함된 형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분적인 改正이 거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表 2-1-1〉 年度別 死亡者 對 課稅件數 比率의 國際比較

(單位: %)

	1990	1994
韓 國 ¹⁾	0.97	0.99
日 本 ²⁾	5.85	5.35
臺 灣 ³⁾	2.90	7.67

資料: 1) 한국은 統計廳의 『人口動態年報』(1995)와 國稅廳의 『國稅統計年報』(1995)에 의거 작성함.

2) 일본은 『財政金融統計月報』(1996.4)에 의거 작성함.

3) 대만은 韓相國, 『臺灣의 財政과 租稅制度』에서 인용함.

死亡者 對比 課稅件數의 比率은 상속세의 稅源捕捉問題와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同 比率은 日本이나 臺灣에 비해서 낮다(〈表 2-1-1〉참조). 이는 세무행정과 세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일본과 대만 과세당국의 徵稅行政 改善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며, 또한 대만의 경우는 상속세 最低課稅區間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의 稅收가 국세에서 접하는 비중은 1980년대 전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 그 비중이 1%를 초과하고 1995년에는 국세의 1.81%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상속·증여세의 稅收額도 1980년에 96억원에 불과

〈表 2-1-2〉 相續·贈與稅의 對 內國稅比 推移

(單位: 億원, %)

	國 稅	相續·贈與稅		
			相續稅	贈與稅
1980	58,077	96(0.17)	29(0.05)	67(0.12)
1985	118,764	464(0.39)	178(0.15)	286(0.24)
1986	136,063	644(0.47)	334(0.25)	310(0.23)
1987	163,437	697(0.43)	327(0.20)	370(0.23)
1988	194,842	1,093(0.56)	360(0.18)	733(0.38)
1989	212,341	1,430(0.67)	395(0.19)	1,035(0.49)
1990	268,474	2,959(1.11)	710(0.26)	2,249(0.84)
1991	303,198	3,262(1.08)	1,044(0.34)	2,218(0.73)
1992	352,184	4,333(1.23)	1,750(0.50)	2,582(0.73)
1993	392,606	6,672(1.70)	3,463(0.88)	3,208(0.82)
1994	472,617	9,074(1.92)	5,236(1.11)	3,839(0.81)
1995	567,745	10,294(1.81)	6,057(1.06)	4,237(0.75)

資料: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재정경제원, 내부자료.

했지만 꾸준히 증가해서 1988년에는 1천억원을 초과했고, 1995년에는 1조 290억원에 이르렀다(〈表 2-1-2〉 참조). 1987년에서 1992년에 이르는 기간중에는 증여세의 세수가 상속세보다 많았는데, 이는 세율면에서 상속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높고 상속의 주류를 이루는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된 것에 기인한다.

〈表 2-1-3〉에 의하면, 1995년의 相續稅 總課稅人員은 3,464명이고 總決定稅額은 8,811억원이다. 재산가액¹⁾ 1~5억원인 구간의 과세인원이 약 50%로서 가장 많다. 그러나 결정세액은 재산가액 50억을 초과하는 구간이 약 60%로서 가장 많다. 따라서 상위 3%의 과세인원이 결정세액의 6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세부담 분포측면에서 보면 상속세는 中産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세목이라고 할 수 있다.

〈表 2-1-3〉 相續財産 課稅現況(1995)

(單位: 名, 원, %)

재산가액	1억 이하	1~5억	5~10억	10~50억	50억 초과	합 계
과세인원	377 (10.9)	1,701 (49.1)	647 (18.7)	634 (18.3)	105 (3.0)	3,464 (100)
결정세액	8 (0.1)	458 (5.2)	405 (4.6)	2,664 (30.2)	5,275 (59.9)	8,811 (100)

資料: 재정경제원.

1) 相續人으로부터 相續稅의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예외(상속세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가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결정 및 부과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율 및 공제액 등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의 기준에서 보면 낮은 재산가액도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表 2-1-4〉 贈與財産 課稅現況(1995)

(單位: 名, 원, %)

재산가액	1억 이하	1~5억	5~10억	10억 초과	계
과세인원	32,299 (90.8)	2,932 (8.4)	227 (0.6)	97 (0.2)	35,555 (100)
결정세액	1,310 (29.2)	1,639 (36.6)	662 (14.8)	870 (19.4)	4,481 (100)

資料: 재정경제원.

〈表 2-1-4〉에 의하면, 1995년의 증여세 總課稅人員은 3만 5,555명이고 總決定稅額은 4,481억원이다. 재산가액 1억원 이하인 구간의 과세인원이 약 91%로서 가장 많다. 그러나 결정세액은 재산가액 1~5억원인 구간이 36.6%로서 가장 많다. 따라서 재산가액 5억원 이하가 인원의 99%, 세액의 65.8%를 차지하고 있다.

상속재산 연도별 분포현황을 보면 土地 및 建物を 포함하는 부동산이 80~90%, 금융자산이 7~16% 그리고 기타자산이 3~6%를 차지하고 있어서 不動産이 상속재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表 2-1-5〉참조).

〈表 2-1-5〉 相續財産 分布現況

(單位: %)

	토 지	건 물	금융자산	기타자산
1990	67	18	10	5
1991	66	13	16	5
1992	77	13	7	3
1993	76	8	11	5
1994	74	8	12	6
1995	75.9	11.3	9.6	3.2

資料: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재정경제원.

연도별 상속·증여세의 不服提起件數가 전체적인 不服提起件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의 기복이 있지만 增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의신청 비율은 10% 내외를, 審査請求 比率은 13~18%를, 소송사건은 20~23%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審査請求件數가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건수 자체는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表 2-1-i〉참조). 상속·증여세가 國稅에서 접하는 비중이 1995년 기준으로 1.81%에 불과한 데 비해서 不服請求 비율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상속·증여세의 과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서 合理性 내지는 說得力이 부족하고 또한 租稅抵抗이 비교적 심한 세목이라는 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상속·증여세가 行政訴訟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를 더욱 잘 입증한다고 하겠다.

〈表 2-1-6〉 年度別 相續·贈與稅의 不服請求 比率

(單位：件,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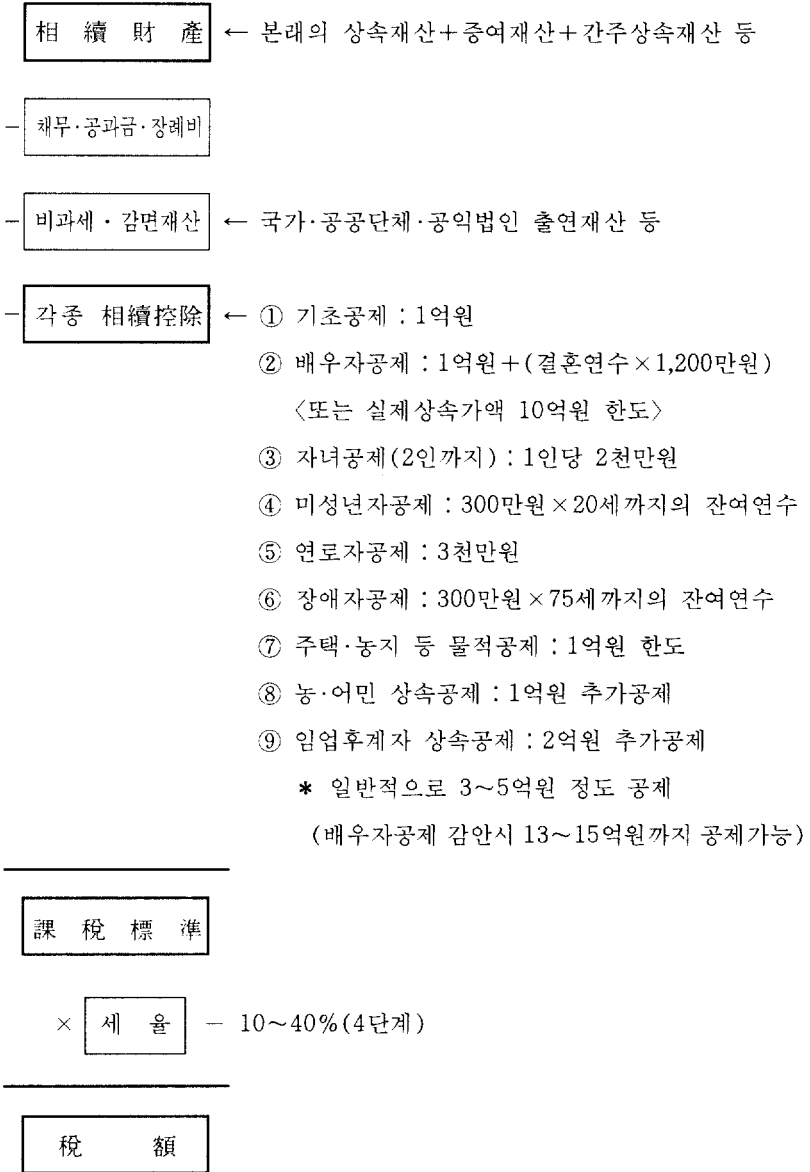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소송 사건	
	국세 합계	상속·증여세	국세 합계	상속·증여세	국세 합계	상속·증여세
1990	2,217	235(10.6)	4,206	747(17.8)	2,519	602(23.3)
1991	2,686	289(10.8)	5,319	877(16.5)	2,930	680(23.2)
1992	2,752	398(14.5)	6,468	1,064(16.5)	3,836	789(20.6)
1993	4,377	403 (9.2)	7,664	1,005(13.1)	3,871	817(21.1)
1994	3,469	353(10.2)	9,225	1,244(13.5)	3,997	771(19.3)

資料：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相續稅 課稅體系

상속세의 課稅體系는 [圖 2-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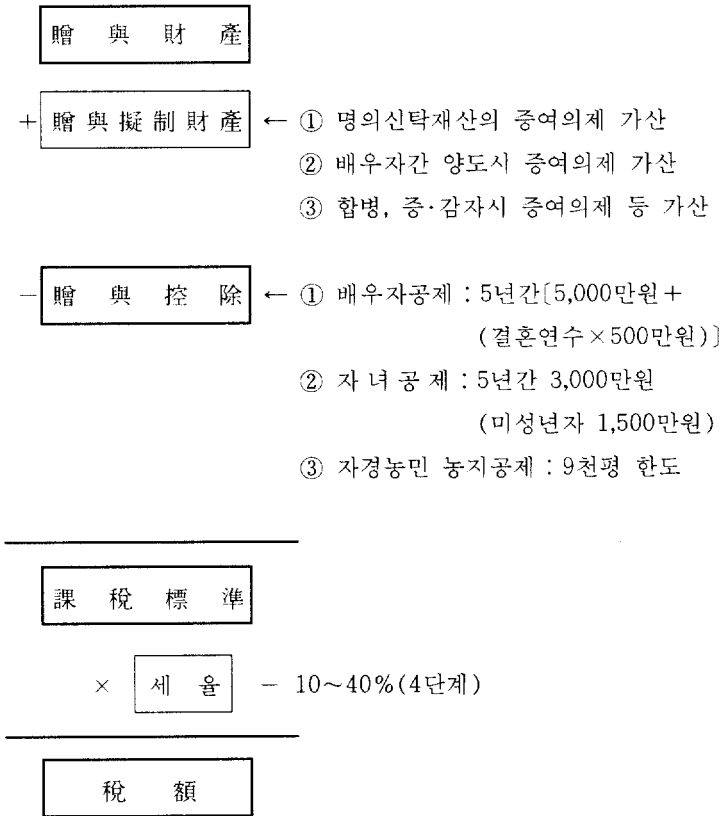
[圖 2-1-1] 相續稅의 課稅體系



다. 贈與稅 課稅體系

증여세의 課稅體系는 [圖 2-1-2]와 같다.

[圖 2-1-2] 贈與稅의 課稅體系



2. 問題點

현 단계에서의 상속·증여세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야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課稅類型：

그 동안의 급속한 經濟成長과 더불어 제기되어 온 富의 集中 抑制, 公平課稅에 대한 國民의 輿望 및 應能負擔의 實現이라는 租稅政策, 그리고 平等주의의 확산 및 상속의 기본 흐름의 변화라는 새로운 稅制 環境이 대두함에 따라 取得課稅型 相續課稅制度로의 전환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세베이스의 擴充：

첫째, 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新種 金融商品이 등장하고 다양한 資本去來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경제현상이 등장하고 있지만 증여세는 列舉主義的 課稅方式을 취하고 있어서 새로운 경제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집된 상속·증여세의 課稅資料가 일부 자산에 국한되고, 수집된 자료가 자산종류별로 관리됨에 따라 관련 과세자료의 效率的인 確保體系가 미흡하다.

셋째, 「金融實名去來 및 秘密保障에 관한 緊急財政經濟命令」에 의하여 금융자산 一括照會制度가 폐지되고 特定 店舖別 조회만 허용됨에 따라 금융기관과 과세관청의 많은 시간과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과세 불공평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과세당국에 대한 지나친 금융정보의 제한은 상속세 과세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넷째, 각종 法令의 규제 회피 내지는 요건의 부합을 위해서 또는 상속·증여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株式의 借名去來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속·증여세의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식의 차명 거래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다섯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現行 贈與擬制規定은 國稅基本法上的 實質課稅原則을 희생시키고 있으며, 同 規定이 어떤 면에서는 租稅法의 擴張解釋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租稅法律主義와

상충된다. 또한 同 規定은 현행 조세행정의 편의를 고려해서 도입·확산된 측면도 있다.

控除制度 :

첫째,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의 경우 유산형 과세체계임에도 불구하고 制限的인 金額밖에 허용하지 못하는 약점을 안고 있다. 또 배우자 증여공제는 외형상 배우자 상속공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선 배우자 상속공제보다 優待받는 제도로 되어 있다.

둘째, 基礎控除는 금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人的控除는 적은 금액이 다양하게 허용되고 있으며 자녀공제와 같이 필요성이 없어진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연로자 공제와 같이 그 내부에서 差別化해야 할 공제를 일괄해서 규정하는 등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셋째, 物的控除의 경우 주택공제와 같이 다수가 이용하여 基礎控除와 같은 성격으로 변해버린 공제가 있는가 하면 농지, 초지, 산림지 공제 등과 같이 이용도가 극히 낮은 공제가 함께 규정되어 있고 주택공제의 경우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어 住宅相續追加控除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바뀌어 버렸다.

넷째, 금융자산 공제의 경우 보험상품과 실물신탁 등 일부 상품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금융상품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현행 공제제도는 배우자의 유무, 해당 자산의 유무 등에 따라 상속가족간에 큰 稅負擔의 차이를 요구하고 있다.

世代省略課稅 :

현행 상속세법에서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하여 세액의 20%를 가산하여 할증과세하고 있지만, 이는 상속·증여세의 平均 實效稅率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相續·贈與 不動産에 대한 移越課稅：讓渡益 課稅

현재는 贈與資産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점을 증여자 취득시점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으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크게 확대시키면서 이 규정을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점으로 확대시킬 것인가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상한액을 지닌 법정상속분 공제로 크게 확대될 경우 현행과 같이 相續時點을 取得時點으로 인정하면 배우자 공제로 분배되는 상속재산이 양도되어 자본이득이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이 비과세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는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所得稅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결국 신설되는 배우자 법정상속분 공제를 통해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의 대부분이 非課稅될 가능성까지 남게 된다.

稅率：

현행 세율체계는 상속인 3인(배우자+자녀 2인) 기준 7억원까지 세부담을 전액 면제해 주는 반면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稅負擔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과세대상 유산이 中規模(10억원 이하)인 가족에 대해 높은 稅負擔을 요구하는 반면 同遺産이 大規模(50억원 이상)인 가족을 우대하고 있다. 상속세율 체계는 소득세 체계에 비해 엄한 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즉 상속재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고 있는 셈이다.

評價：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과세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經濟的 價値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經濟的 價値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상 어려움이 있음이 사실이다.

첫째, 현행 상속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時價에 의하도록 하나, 時價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補充的 評價方法에 의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법상 時價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고 상속재산의 특성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실무상으로는 補充的 評價方法이 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보충적 평가방법 중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의 不動產과 주식 등의 有價證券이 상속과세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현행 상속세법의 규정으로는 토지 및 건물의 평가가 時價보다 過小評價됨으로써 평가방법 차이를 이용한 租稅回避가 이루어지거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 등의 支配株式과 같이 평가대상에서 漏落됨으로써 상속재산평가의 不公平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其他 :

첫째,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상당기간에 걸쳐서 소액으로 분할증여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贈與財産의 累積合算 課稅期間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누적합산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해서 分割贈與를 통해 누진구조의 높은 한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둘째, 현행 피상속인의 葬禮費用 500만원은 비현실적인 금액이며, 경제의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적시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상속등기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協議分割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의사에 의해 특정상속인이 이익을 얻게 되므로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과세할 수 없다. 이는 또한 實質課稅의 原則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第 2 節 改編의 必要性和 基本方向

1. 改編의 必要性

相續稅法이 1950년에 제정된 이후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수차례의 소폭적인 改正만을 하게 됨에 따라 다른 稅目에 비해서 정책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稅制環境이 도래하고 대외적으로는 國際化 時代에 진입함에 따라 변화된 사회·경제여건을 수용해서 상속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必要性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새로운 稅制環境

향후 상속·증여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社會環境으로는 인구의 노령화, 경제력 집중의 진전, 정보화, 생활환경의 고도화, 평등주의의 확산, 공익법인의 활동 증가 그리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등이 있으며, 이들은 새로운 세제를 설계(design)할 때 고려해야 할 環境的 要因으로 등장하고 있다.

〈表 2-1-7〉 年度別 平均壽命

(單位：歲)

	1966	1970	1979	1985	1991
평 균	61.9	63.2	65.8	69.0	71.6
남 자	59.7	59.8	62.7	64.1	67.8
여 자	64.1	66.7	69.1	73.3	75.7

資料：統計廳.

總人口 增加率은 서서히 둔화되는 추세이나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人口의 老齡化는 가속화되고 있어(〈表 2-1-7·8·9〉 참조) 노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사회복지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租稅負擔率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령화 사회에 상응하는 상속·증여세제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表 2-1-8〉 年度別 死亡者數 및 死亡率

(單位：千名,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4
사망자수 (사망률)	216 (9.8)	244 (7.3)	263 (6.7)	242 (6.3)	240 (6.0)	238 (5.5)

資料：統計廳.

〈表 2-1-9〉 年度別 老齡化指數

(單位：%)

1965	1976	1986	1990	1996
7.0	9.4	15.0	19.4	25.9

註：老齡化指數란 「65세 이상 인구/14세 미만 인구」를 말한다.

資料：統計廳.

높은 貯蓄率이 지속되어 가계와 기업의 자산이 축적되는 21세기에는 가계와 기업의 양 부문에서 經濟力의 偏重과 集中이 우려되며 따라서 富의 집중억제 기능을 가진 상속·증여세의 역할이 한층 중요시 될 것이다.

情報通信技術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세무행정도 이에 대응하는 電算化를 추진해서 납세환경을 투명화하고 징세 비용을 절감하는 情報化를 이루어야 한다.

국민의 전반적인 所得水準이 향상되면서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점점증하게 될 것이다.

수차례에 걸친 民法改正(1960, 1977, 1989)에서는 향상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해서 兩性平等의 精神(헌법 제36조)을 구현하는 입법조치가 취해졌다. 여성의 권익 신장, 남녀평등주의의 확산 및 남녀동등의 노동 참여 일반화(〈表 2-1-10〉 참조)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의 기본 흐름이 현재의 垂直的 移動(父子間 이동) 및 水平的 移動(夫婦間 移動)에 대해서 모두 과세하는 混合體系에서 수직적 移動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체계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와 더불어 夫婦共同財産의 持分 分割論이 여성계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 寄與分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表 2-1-10〉 年度別 男女 就業者數

(單位：千名, %)

	1963	1970	1980	1990	1994
남 자	4,930(65.2)	6,104(63.5)	8,462(61.8)	10,709(59.2)	11,832(59.6)
여 자	2,633(34.8)	3,513(36.5)	5,222(38.2)	7,376(40.8)	8,005(40.4)

資料：統計廳.

公共財的인 성격을 지닌 公益活動²⁾을 국가가 독점하는 경우에 정부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모든 공익부문이 충분히 지원받는다라는 주장이 없기 때문에 民間公益法人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民間公益法人의 결성과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稅制

2) 公共經濟學의 이론에 의하면 公益活動은 그 자체가 公共財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재화를 市場機構에만 맡기면 최적수준 이하로 過少供給되기 때문에 適正供給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의 혜택이라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金融實名制와 不動產實名制의 실시로 인해서 금융자료와 토지전산망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원의 광범위한 포착이 가능해지고 있다.

나. 國際化時代 到來

최근의 국제조세환경을 보면, 1980년대 중반 이래 본격화된 세계경제의 自由化(liberalization)와 統合化(integration)에 따라 세계경제는 'globalization'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각국의 경제정책들이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어져 정책의 국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내외 정책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고 國家競爭力에 미치는 영향이 정책판단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 수립시 주변국가들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로부터의 대응등을 고려해야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특히 自由市場 經濟原理와 世界經濟의 自由化 趨勢로 정부의 기능이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립하고 이를 감독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각국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直接規制的인 政策手段의 여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수단으로서의 租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相續 및 贈與에 대한 二重課稅防止에 관한 勸告」를 포함한 財政委員會 관할 14개 國際規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표시해야 하며, 새로운 雙務協約의 체결 또는 개정시에는 재정위원회의 「相續·贈與에 대한 二重課稅防止協約에 관한 모델協約」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 외국 정부와 동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으나, 거주자의 해외투자 및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등 국외투자가 증대하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는 위 협약의 체결 필요성이 擡頭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일·재미교포에 의한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증

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OECD 財政委員會의 「相續 및 贈與에 대한 租稅의 二重課稅防止協約에 관한 報告書(1983.2.3)」를 참조해서 OECD회원국의 입장을 연구해 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다. 相續稅와 贈與稅의 課稅體系 一致

일반적인 이론에 따르면 遺產課稅型은 피상속인의 생전의 富를 淸산한다(租稅回避精算說)는 사고에 기초한 것이어서 증여세도 贈與者 課稅를 택하고 있으며, 取得課稅型은 상속세란 불로소득을 이유로 한 취득세(應能負擔力說)라고 보는 입장이므로 증여세도 자연히 受贈者 課稅方式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제의 유형은 유산과세형이지만, 조세수입의 증대와 조세행정상의 편의 등을 이유로 현행 相續稅體系는 遺產課稅型을, 贈與稅體系는 取得課稅型을 취하고 있다. 즉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전이전의 누적합산도 수증자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에는 찾아보기 어렵고 증여세의 상속에 대한 보완기능은 반감할 것이므로 이는 立法上의 矛盾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산과세형을 유지하면서 증여세 과세체계를 증여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취득과세형을 취하면서 수증자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改編의 基本方向

바람직한 相續課稅制度란 富의 分散機能, 應能負擔原則의 실현, 適正水準의 稅收 확보, 相續稅와 所得稅의 補完과 調和 관계, 稅務行政의 용이성 및 家族共同體의 物的基礎 보호 등이라는 조건을 충

족해야 한다³⁾. 이와 같은 조건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서 향후 상속·증여세제의 개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稅負擔의 衡平性 提高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서 擔稅力에 相應하는 상속과세를 통해 垂直的 및 水平的 公平을 실현해야 한다.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은 가볍게, 고액자산가의 세부담은 무겁게 할 필요성이 있다.

나. 富의 世代間 無償移轉 遮斷

富의 세대간 무상이전을 차단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機會均等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조세정책을 통한 소유집중의 해결이 불가능하지만 富의 세습화는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富의 소득격차에 기인하는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계층간 수직적 이동의 가능성을 제고시켜 活力있는 社會를 지향해야 한다.

다. 축적된 富가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유도

蓄積된 富가 社會的 厚生을 증대시키고, 經濟活力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동적인 장년세대에게 生前移轉贈與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의 활력을 진작시켜야 한다.

라. 家族共同體의 物的 基礎 保護

가정의 안정은 곧 사회의 발전과 안정의 요체가 된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은 물론이고 특히 중산계층이 상속과세에 의해 생활 기반

3) McNulty(崔明根(1993), p. 13에서 재인용).

을 잃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서 生活基盤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마. 實名制 실시에 따른 相續·贈與稅 運營의 實效性 提高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인해서 금융자료와 토지전산망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세자료의 효율적 수집이 가능해지고, 특히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원의 광범위한 포착이 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상속·증여 과세자료의 效率的 蒐集과 고액자산을 중심으로 한 人別財產管理體系를 확립해서 상속·증여세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第 2 章 課稅類型的 選擇

第 1 節 課稅類型的 概觀 및 比較

1. 課稅類型的 概觀

가. 遺產課稅型 相續稅制

遺產課稅型 相續稅制란 사망자인 被相續人이 남긴 遺產總額의 移轉을 課稅物件으로 하여 無償移轉者 基準으로 課稅하는 方法이다. 즉 各 相續人의 持分으로 分할하기 전의 遺產總額을 課稅物件으로 하여 無償移轉者 基準으로 課稅하는 方法이다. 따라서 共同相續의 경우에도 이를 各자의 相續分으로 分할하기 전의 遺產總額을 과세 베이스(tax base)로 하여 이에 累進構造의 稅率을 적용하게 된다⁴⁾.

英美法系의 나라에서 선호하는 이 과세방법은 被相續人의 일생에 걸친 경제생활을 청산·과세하여 생존시에 축적한 富를 사회에 환원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사고에 기초한 것이어서 증여세 도 贈與者 課稅를 택하고 있다.

나. 取得課稅型 相續稅制

取得課稅型 相續稅制란 遺產取得者(相續人, 受遺者 등)의 取得財 產價額을 과세베이스(tax base)로 하여 課稅하는 方法이다. 相續人 ·受遺者 등이 여러 사람인 경우 유산을 먼저 各자의 相續分·遺贈分 등에 따라 分할하여 계산하고 이와 같이 分할·계산된 各자의 課

4) 崔明根(1990), p. 73.

(지분)에다 所定の 稅率을 적용하여 과세한다⁵⁾.

이 과세방법은 偶然所得 또는 不勞所得의 취득을 억제하고 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맞추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이 과세유형에서는 재산의 증여에 대해 과세할 때 세부담이 受贈者에게 귀착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受贈者를 기준으로 담세능력을 추정해서 과세하게 된다⁶⁾.

2. 課稅類型의 比較

가. 遺產課稅型的 長短點

遺產課稅型的 長點으로는 첫째, 상속세 세율구조가 동일하다면 취득과세형에 비해서 稅收가 상대적으로 많다.

둘째, 분할 전 유산총액에 과세하므로 상속세 행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이다.

遺產課稅型的 短點으로는 첫째, 擔稅能力이 無償移轉者를 기준으로 측정·과세되므로 實質課稅의 原則에 어긋나며, 相續稅의 실질적인 負擔者의 擔稅能力을 충분히 고려하기가 어렵다.

둘째, 피상속인의 富가 1인에게 이전되거나, 다수인에게 분할되어 이전되거나 간에 유산이 부담하는 세액은 동일하다. 따라서 상속세율의 누진구조하에서의 共同相續의 경우 유산을 적게 승계하거나 많이 승계하거나 간에 결과적으로 각자가 적용받는 限界稅率이 동일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된다. 따라서 應能負擔의 原則과 조화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중산계층의 상속과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過重해

5) 崔明根(1990), p. 99.

6) 현행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세무행정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입법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상호보완관계에 있어야 할 상속·증여세가 과세유형의 相異로 인해서 보완기능이 반감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입법상의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많은 상속인에게 분할한다 해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遺産의 分割을 촉진시키지 못한다.

넷째, 控除의 효과가 間接的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나. 取得課稅型의 長短點

取得課稅型의 長點으로는 첫째, 遺産의 無償取得者를 기준으로 담세력을 측정·과세하므로 實質課稅의 원칙에 부합하며 또한 公平한 稅負擔을 기대할 수 있어 應能負擔의 原則에 부합한다.

둘째, 과세방법상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자의 相續分으로 분할한 후 각자가 取得한 遺産을 課稅基礎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과세하므로, 富가 다수인에게 分散移轉되면 될수록 상속세 총부담액이 감소하므로 富의 분산유인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⁷⁾. 따라서 經濟的 不均衡의 是正에 유리하다.

셋째, 각 상속인은 무상취득한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限界稅率의 적용을 받아 相續稅를 납부하므로 遺産액이 여러 사람에게 分散 承繼되면 될수록 그 遺産總額이 부담하는 상속세 총부담액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遺産課稅型 相續稅制度보다 富의 분산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하다. 또 무상취득한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限界稅率의 적용을 받으므로 中產階層의 상속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취득과세형이 유산과세형의 경우보다 가벼워지게 될 것이다.

取得課稅型의 短點으로는 첫째, 만약 상속세 세율구조가 동일하다면, 遺産課稅型에 비해서 稅收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둘째, 세무행정이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稅源을 逸失할 우려가 유산과세형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 즉 공동상속의 경

7) 국가가 고율로 상속세를 과세하여 부를 분산시킬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시키게 되므로 상속인 스스로가 재산을 분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 분할되는 遺産額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각자에게 상속세를 부과 처분해야 하고 또한 상속인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취득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告知하고 徵收해야 하며⁸⁾, 상속인별로 상속재산의 분할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현금 등 금융자산의 확인체계가 불충분한 상태여서 상속인이 취득한 자산을 확인하는 데 많은 行政力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셋째, 분할이 어려운 상속재산(기업소유의 자산, 농업용자산 등)의 경우 분할이 가능한 재산에 비해 세부담 산출이 곤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稅負擔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넷째, 富의 분산유인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富가 다수인에게 分散移轉되면 될수록 상속세 총부담액이 감소하므로 僞裝分割相續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第 2 節 課稅類型의 選擇⁹⁾

取得課稅型 相續課稅制度는 상속인별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應能負擔의 原則에 보다 부합되고, 유산이 분할될수록 세부담이 경감되므로 상속인간 遺産分割을 촉진하여 친족내부의 富의 분산 유인이 가능하고 또한 공제제도를 단순화할 수 있고, 상속인별 실제 상속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해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8)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관청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어려울 경우 상속인간 상속세 결정 자체가 서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取得課稅型을 취하고 있는 日本에서도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일괄해서 처리하고 상속인의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는 附則의 經過 規定을 거의 30년간이나 존속시켜 오고 있음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9) 韓相國(1994)의 제2장 제4절을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의 개별적인 환경인 사회제도, 경제정책, 상속의 방식 및 징세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課稅類型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견해에 의한 바람직한 相續課稅制度의 조건인 富의 分散機能, 應能負擔의 原則, 家族共同體의 物的基礎保護, 稅收確保 및 稅務行政의 容易性의 側面에서 取得課稅型으로의 轉換問題를 分析하기로 한다.

1. 課稅類型的 選擇基準

가. 應能負擔의 側面

遺產課稅型에서는 被相續人의 富가 1인에게 이전되거나, 다수인에게 분할되어 이전되거나 간에 각자의 相續分으로 분할하기 전 遺產總額을 과세베이스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과세하기 때문에 유산이 부담하는 稅額은 동일하다. 따라서 상속세율의 누진구조하에서의 공동상속의 경우 유산을 적게 승계하거나 많이 승계하거나 간에 결과적으로 각자가 적용받는 限界稅率이 동일하게 되므로 應能負擔의 原則과 부합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取得課稅型에서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자의 相續分으로 분할한 후 각자의 取得遺產(相續分)을 과세베이스(tax base)로 하여 그 財產價額에 相應하는 限界稅率의 적용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므로 應能負擔의 原則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나. 富의 分散 促進 側面

遺產課稅型은 無償移轉者의 遺產總額을 과세베이스로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單獨相續이든 共同相續이든 간에 總負擔稅額은 같게 되므로, 富의 分散誘引機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取得課稅型은 相續人 등 각자가 相續分에 의해서 무상취득한 재

산가액에 상응하는 限界稅率의 적용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유산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分散移轉하면 할수록 그 유산총액이 부담하는 상속세 총부담액은 적어진다. 따라서 取得課稅型은 富를 광범위하게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富의 分散誘引機能이 遺産課稅型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다. 家族共同體의 物的基礎 保護 側面

적정한 상속과세가 富의 分散을 위하여 필요하기는 하지만 社會의 基礎共同體인 家庭을 파괴해서는 안되므로 상속과세에 있어서는 家庭의 物的基礎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各種 控除制度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

家族共同體의 物的基礎의 保護라는 목적과 상속과세의 유형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각종 공제의 차감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즉, 無償移轉者 기준으로 과세하는 遺産課稅型에서는 각자의 相續分으로 분할하기 전 總遺産에서 控除額을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그 控除效果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즉 控除效果가 간접적이다.

遺産取得者의 취득재산가액을 과세베이스로 하여 과세하는 取得課稅型에서는 각자의 相續分으로 분할한 후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분에서 控除額을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그 控除效果의 귀속자가 분명하다. 즉 控除效果가 직접적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取得者 기준으로 상속과세하는 取得課稅型이 家族共同體의 物的基礎의 保護에 좀더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保護의 정도는 控除價額의 多寡 및 控除의 種類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상속과세의 유형과는 상관관계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라. 稅收確保의 側面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稅收寄與도와 課稅類型과의 관계는 稅率의 높이와 누진구조가 동일하면 遺産課稅型이 取得課稅型에 비해 稅收寄與도가 더 크다고 한다. 그것은 分割前 유산총액에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取得課稅型에서도 單獨相續의 경우에는 遺産課稅型과 같은 금액의 세수가 들어오겠지만, 共同相續의 경우에는 遺産課稅型에 비해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 특히 取得課稅型은 富의 分散機能이 遺産課稅型보다 우수하지만 富의 광범위한 分散에는 節稅效果가 있기에 遺産課稅型보다 稅收가 감소할 것은 분명하다.

現行 遺産課稅型下에서는 相續價額의 多寡에 관계없이 각 相續人은 동일한 限界稅率의 적용을 받게 되나 取得課稅型下에서는 각 상속인이 무상취득한 재산가액에 相應하는 限界稅率의 적용을 받게 되어, 取得課稅型으로 전환시에는 稅收確保의 어려움¹⁰⁾ 또는 相續稅의 機能 弱化가 예상된다.

마. 租稅行政의 難易度 側面

遺産課稅型은 管轄 課稅官廳이 피상속인 한 사람의 상속세신고서를 調査·確認하면 되기 때문에 세무행정이 간편하며, 相續人이나 受贈者, 受遺者의 數, 유산의 分割持分 여하에 관계없이 총조세부담액이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유산의 위장분할신고가 거의 없다.

取得課稅型에서는 관할 세무관청이 共同相續人·受贈人·受遺者의 數 만큼의 상속세신고서를 調査·確認해야 하므로 세무행정이 복잡

10) 시험적인 계산에 의하면, 취득과세형은 유산총액이 아닌 상속인별 상속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同 類型으로 전환시 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한 약 20% 내외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계속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고액재산가의 경우는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고, 상속재산 20~30억원 정도가 20~30%의 집중적 감소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분석내용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다. 뿐만 아니라 상속인 등의 數가 많아서 相續分이 작게 分割되면 될수록 총조세부담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유산의 僞裝分割이 가속화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취득과세형은 유산과세형에 비해 租稅行政上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에게 適合한 課稅類型

應能負擔의 側面에서 보면, 각자의 相續分으로 분할한 후 각자의 取得遺產(相續分)을 과세베이스로 하여 그 財產價額에 相應하는 限界稅率의 적용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取得課稅型이 應能負擔의 原則과 부합된다.

富의 分散 促進 側面에서 보면 無償移轉者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해 富를 광범위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取得課稅型이 富의 分散誘引機能 面에서 遺產課稅型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家族共同體의 物的基礎 保護 側面에서 보면 각 相續人의 相續分에 직접 귀속하는 取得課稅型의 控除效果가 간접적인 遺產課稅型에서 보다 좀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保護의 정도는 控除價額의 多寡 및 控除의 種類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상속과세의 유형과는 상관관계가 적다고 할 수 있다.

稅收寄與度の 側面에서 보면, 세수증대 효과가 큰 遺產課稅型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특히 現行 遺產課稅型下에서는 相續價額의 다과에 관계없이 각 相續人에게는 동일한 限界稅率이 적용되나, 取得課稅型下에서는 각 상속인이 무상취득한 재산가액에 相應하는 限界稅率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取得課稅型으로 전환시에 세수의 감소를 방지하려면 限界稅率을 遺產課稅型과 같게 하거나 높여야 하고 또한 課稅區間을 좁게 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현행 세제개편의 방향과 상충된다. 따라서 取得課稅型으로 전환시에는 稅收確保

의 어려움 또는 相續稅의 機能 弱化가 예상된다.

租稅行政의 難易度 側面에서 보면, 租稅行政이 과거보다는 進一步해서 取得課稅型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租稅行政이 進一步했다지만 取得課稅型의 시행시에는 稅務行政이 복잡해지고 行政需要가 크게 증대됨은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상속세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取得課稅型으로의 전환은 政策의 比重(課稅目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성질의 문제이다. 富의 分散 促進과 稅負擔의 衡平性 提高에 과세목적이 있다면 取得課稅型을 채택해야 할 것이며, 稅收確保와 租稅行政의 便易性을 도모한다면 遺產課稅型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獨逸과 日本이 取得課稅型을 채택한 이유는 우리에게 他山之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獨逸이 취득과세형을 채택한 이유¹¹⁾는 첫째, 취득과세형이 유산과세형에 비해서 담세자의 擔稅能力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보다 公平한 稅負擔이 이루어질 수 있고 둘째, 독일 상속법에서 중요시하는 生存家族 등의 생계에 대한 배려가 상속인의 특성에 따라 상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日本은 Shoup의 稅制改革報告書를 기초로 상속세 과세유형을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했으며, 채택이유¹²⁾는 첫째, 상속세부담자의 擔稅能力을 정확히 파악해서 유산과세형의 경우보다 稅負擔의 衡平性을 제고할 수 있고 둘째, 遺產의 分割을 촉진해서 富의 集中이 세대간에 걸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급속한 經濟成長과 더불어 제기되어 온 富의 集中 抑制과 公平課稅에 대한 國民的 輿望 및 富의 分散 促進과 應能負擔의 實現이라는 租稅政策 그리고 經濟力 集中의 進展, 男女同等的 노동 참여 일반화, 평등주의의 확산 및 상속의 기본 흐름의 변화라

11) 稅發委, 1991. 4. p. 68.

12) 稅發委, 1991. 4. pp. 54~55.

는 새로운 稅制 環境 등을 고려한다면, 取得課稅型이 보다 바람직한 課稅類型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賦課除斥期間이 10년 내지 15년으로 연장되어 있어서 사전증여에 의한 조세회피가 곤란하고, 유산과세형의 경우 납세자가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불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현재 상속세과세대상자는 거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取得課稅型으로의 전환은 실무적으로 가능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現在の 相續慣行¹³⁾ 및 相續登記制度¹⁴⁾ 등에 의해서 遺産의 僞裝分割相續이 가능하다는 점과 取得課稅型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相續稅法 전체를 개편해야 하고 相續稅 關聯 稅務行政을 뒷받침할 電算網의 完備 및 金融資産에 대한 一括照會權의 復活 그리고

-
- 13) 예를 들면 相續財産의 分割과 被相續人의 負債에 대한 辨濟는 상속개시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에 따라 課稅官廳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事後管理을 해야 하는데 현행 세무행정 집행체제 측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많다. 특히, 動産(金融資産 등)에 대한 財産分割 여부 확인은 실무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協議分割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 14) 共同相續人이 相續財産을 協議分割함에 있어서 共同相續人 중 1인이 자기의 法定相續分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同 超過取得분에 대하여 贈與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大法院 判例(大法院 1986. 11.25 宣告, 86누505 판결 등)와 相續稅法 基本通則(93-2-29-2)은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共同相續人 間의 法定持분에 따른 相續登記를 한 후에도 協議分割을 원인으로 하는 更正登記를 했을 시에도 贈與稅가 부과되지 않는다(大法院判例는 協議分割에 의하여 共同相續人 중 1인이 고유의 相續分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相續開始當時에 被相續人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것은 協議分割을 통한 財産의 僞裝分割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協議分割問題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民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相續財産의 분할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미확정상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申告期限까지 미확정된 재산에 대해서만 連帶納稅義務를 지도록 하고, 法定期限(예:상속개시후 1년내 등)이 경과한 후에는 協議分割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세원 포착률의 제고를 통한 수평적 형평성 실현 등과 같은 선결사항의 해결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純粹取得課稅型」으로 전환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비록 稅務行政上의 부담이 현재보다는 조금 더 증가한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현단계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는 遺産課稅型과 取得課稅型의 折衷型인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에 의한 取得課稅型」¹⁵⁾을 우선 채택하고, 향후 相續慣行 및 相續登記制度가 합리화되고 稅務行政이 개선되면(특히 電算網이 완비되어서 相續人 및 受贈者 전체의 관리가 가능할 때) 「純粹取得課稅型」으로 轉換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類型은 應能負擔의 側面과 富의 分散 促進 側面에서는 遺産課稅型보다는 우수하지만 純粹取得課稅型보다는 뒤지며, 稅收確保側面 및 租稅行政側面에서는 純粹取得課稅型보다는 우수하지만 遺産課稅型보다는 뒤진다. 따라서 僞裝分割問題가 해결되고, 稅務行政이 뒷받침될 때까지는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에 의한 取得課稅型」을 시행해야 될 것이다.

15)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에 의한 取得課稅型」이란 課稅되는 遺産總額, 法定相續人의 數, 法定相續分이라는 객관적 수치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日本에서 시행중이다.

第3章 과세베이스의 擴充 方案

第1節 課稅對象의 包括主義 轉換

1. 現況 및 問題點

가. 現況

대부분의 세법은 과세대상재산에 대한 定義規程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 상속세법(제1, 2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 대한 定義規程이 없고 다만 相續稅法 基本通則과 國稅基本法 基本通則에 규정되어 있다.

「相續稅法 基本通則 9...1」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 包括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相續稅法(第1條)에서 규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法律上 또는 事實上 權利를 말한다.
-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 ① 재산에는 物權, 債券 및 無體財產權뿐만 아니라 信託受益權, 電話加入權 등이 포함된다.
 - ② 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經濟的 價値가 있는 것, 가령 營業權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③ 質權, 抵當權 또는 地域權과 같은 從된 권리는 主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相續稅法 基本通則 10...1」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包括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一身에 專屬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認定賞與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現金, 채권인 配當金, 無償株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또한 「國稅基本法 基本通則 3-2-9...24」에서 상속으로 인한 재산을 例示的으로 설명하고 있다.

-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遺贈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損害賠償請求權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피상속인의 一身에 專屬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信託財産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상 基本通則의 내용을 정리하면,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列舉主義 課稅方式이지만 包括主義的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相續稅法(29조의 2, 3)에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가 없어서 민법의 典型契約 중의 하나인 贈與(贈與契約)의 개념을 차용해서 그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증여계약에 의한 本質的 意味의 贈與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민법상 증여의 목적물인 物權·債券·무체재산권 등의 既存權利를 양도하는 것, 受贈者를 위하여 무상으로 地上權 또는 地域權 등의 用益物權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無因의 債務를 부담하는

것 등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列舉主義 課稅方式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相續稅法에서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민법상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租稅回避 防止를 위해 贈與擬制規定(12개)¹⁶⁾을 두고 있는데 이 또한 列舉主義 方式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列舉主義 課稅方式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問題點

현행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列舉主義이지만 包括主義的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新種 金融商品의 등장 및 다양한 資本去來 등 새로운 경제현상에 어느 정도까지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贈與稅의 列舉主義的 課稅方式으로는 한계가 있다. 즉 민법상의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로 보는 경우(贈與擬制規定)를 상속세법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일부 新種 金融商品(타익신탁 등)이 상속·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계속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소득세제가 열거주의를 취함에 따라 누락되는 부분을 補完關係에 있는 증여세에서 포착·과세해야 할 필요성도 점증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包括的인 規定이 필요하다.

한편 현행 증여의제규정이 새로운 경제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신종 금융상품 등이 활발히 개발될 경우에는 同 規

16) 同 規定은 國稅基本法 第14條에서 규정하고 있는 實質課稅原則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租稅法律主義의 원칙 안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 추가가 예상되고, 또한 조세행정의 편의 도모 측면에서 同 規定이 확산될 개연성이 크다. 이와 같은 증여의제규정은 實質課稅原則을 희생시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租稅法律主義의 原則 위에서 새로운 경제현상을 포괄해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인 包括主義 課稅方式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여기에서 제기된다고 하겠다.

단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다음의 문제점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안은 조세행정적 측면에서 運營의 彈性性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국민을 지나치게 속박할 수 있다.

둘째, 과세요건이 불명확하여 租稅法律主義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違憲訴願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 포괄주의 채택시 稅務行政上 負擔 增加라는 문제의 발생이 예상된다. 日本과 臺灣은 세무행정상의 부담 증가문제로 인해서 열거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넷째, 소득세 과세대상이 열거주의 과세방식에서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포괄주의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실효성의 저하가 예상된다.

다섯째, 과세대상의 확대로 인해서 현행 평가체제하에서는 다양한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改善方案

현행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列舉主義이지만 包括主義的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증여세는 열거주의적 과세방식으로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해서 새로운 經濟現象¹⁷⁾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상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상속·증여세의 현행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判斷의 基準만 제시하는 制限的 包括主義 課稅方式으로 전환하는 案이다. 그 예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이 案은 판단의 기준만 제시함에 따라 違憲訴願의 제기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서 새로운 경제현상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특히 다양한 자본거래형태에 대하여 현행 열거주의적 증여의 제규정으로는 사실상 증여인 자본거래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制限的 包括主義 課稅方式으로 전환시에는 과세대상의 확대로 인해서 이의 차단이 가능할 것이다.
- ③ 당사자간의 계약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실상 特殊關係人에게 이익을 分與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한편 포괄주의 과세방식에서는 각종 과세대상자산을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水平的 公平을 달성하기가 용이하며, 누진세율구조를 적용하면 垂直的 公平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비과세소득이 없으므로 租稅回避行爲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 ⑥ 과세관청은 과세할 수 있는 사실의 존재만을 인식하면 되고 납세의무자로 추정된 자가 이 사실을 증거에 의해 번복하지 못하는 한 과세하면 된다. 따라서 贈與擬制規定의 贈與推定規定으로의 전환과도 相應한다.

17) 타익신탁상품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위한 5년 이상 장기저축상품이 개발되는 등 신종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富의 무상이전을 도모하는 자본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둘째, 상속세 과세대상은 현행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증여세만 包括主義 課稅方式으로 전환하는 案이다. 후속 조치 및 예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이지만 포괄주의적인 내용으로 이미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행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계속 유지하되 다만 相續稅 및 國稅基本法 基本通則上의 포괄주의적인 내용을 施行令 등 그 下位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②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作爲·不作爲로 사실상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가 과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③ 특히 金融派生商品 등 새로운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 하위법에 위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 ④ 단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차후 違憲訴願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증여의제과세규정 등이 포괄주의에 대한 例示的 規定임을 명확히 하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포괄주의적인 내용을 시행령 등 그 하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⑤ 다양하게 전개되는 새로운 經濟現象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 ⑥ 한편 현행 증여의제규정이 포괄주의적 내용으로 구성됨으로 인해서 贈與擬制의 贈與推定으로의 전환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 ⑦ 제한적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案에 비해서 증여세 부분만 전환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을 것이다.

第 2 節 人別財産管理體系의 構築

1. 現況 및 問題點

가. 現況

과세당국은 相續稅法 및 國稅基本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서 상속·증여세의 課稅資料를 수집하고 있으며 관련된 者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相續稅法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또는 퇴직수당·공로금·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를 지급한 자는 支給調書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제23조 ①), 국내에서 공채·사채·채권·주권·출자지분의 증서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그 사실을 기재한 調書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제23조 ②)라고 규정하고 있다.

國稅基本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84조 ①).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者는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이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85조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또는 전자계산·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하는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資料 또는 統計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이를 國稅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85조 ②)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法人稅法에서도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法人稅申告와 함께 株式移動狀況明細書¹⁸⁾를 제출해야 하며(제66조의 4),

18) 株式移動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등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의 변동 또는 소유지분을 및 소유주식수가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주식이동조사업무관리규정 제3조 제6호).

이는 상속·증여세의 과세자료로 이용된다.

이와 같은 과세자료가 상속·증여세 부과에 기초자료가 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국세청 전산관리 DB에 구축되어 있어서 이용 가능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登記申請書 副本을 전산처리한 人別 不動產 去來狀況 : 1981년 이후분부터 구축되어 있으며 물건소재지, 지목, 면적, 등기원인 등이 출력된다.
- 연 1회 수집하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高級乘用車 保有狀況 : 차량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이 출력된다.
- 연 1회 수집하는 地方稅課稅 時價標準額 100만원 이상의 非業務用 自家用船舶 保有狀況 : 실험실습용은 제외되며, 선종, 등록번호, 제작연도, 과세표준 등이 출력된다.
- 연 1회 수집하는 高級住宅 및 別莊 保有狀況 : 소재지, 취득시기, 면적, 과세표준 등이 출력된다.
- 高級會員券 수집자료를 전산처리한 會員券 保有狀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의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이용권, 헬스클럽회원권, 사우나회원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매분기별로 지방청에서 수집하며, 클럽명, 회원권번호, 취득일자, 발행회사, 회원권번호, 소재지 등이 출력된다.
- 소득세신고 소득자료를 전산처리한 所得資料 狀況(1992년 이후분부터) : 소득발생 DB자료를 활용한 것이며, 소득구분, 수입금액, 귀속연도, 소득금액 등이 출력된다.
- 보험금지급조서를 통해서 保險金關聯 資料 狀況 : 매월 처리한다.
- 법인이 제출한 株式移動狀況明細書 자료에 의한 인별 주식보유상황 DB는 구축이 진행중이다. 법인명, 사업자번호, 주식수 등이 출력될 것이다.
- 高額財産家は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전산자료에 의해 家口別로 財産變動狀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처럼 다양한 항목의 자료가 수집되고 있지만 金融實名制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규정으로 인해서 예금계좌 잔액이나 거래내용은 통보받지 못하고 다만 利子所得金額만 통보받으므로 연도별 이자소득금액 등만을 DB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예금계좌, 증권계좌)의 DB구축에는 限界가 있다. 물론 이자를 이용한 逆算方法을 통해서 금융자산의 DB구축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한계가 있다. 1996년 이후에도 이자소득금액만 수집이 가능하다.

과세당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상속개시자료에 출력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株式名義改書 項目 : 법인명, 금액(주식명의개서자료를 매월 처리)
- 保險金支給調書 項目 : 법인명, 지급보험금, 사고연월일(매월 처리)
- 住宅資料 項目 : 소재지, 지목, 면적(연 1회 수집)
- 綜合土地稅資料 項目 : 소재지, 공시지가, 면적, 등급, 취득일자(내무부자료 : 연 1회 수집)
- 會員券 保有狀況 : 클럽명, 회원권번호, 취득일자, 발행회사, 회원권번호, 소재지 등

나. 問題點

현행 제도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는 앞에서 보듯이 一部 資產에 局限되어 있고, 수집된 자료도 자산종류별로 관리되고 人別管理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관리체계가 효율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과세자료를 보유 및 생산하는 기관이 과세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도 불충분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액자산가의 人別財產管理體系 構築을 위한 과세자료수집체계 정립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부동산, 특정 동산, 회원권 및 일부 금융자산(주식, 보험 등) 외에는 상속·증여세

관련 과세자료의 확보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관련 자료 수집을 총괄적으로 규정해야 할 國稅基本法의 규정이 포괄적어서 자료 수집면에서 실효성을 갖추기에 미흡하다.

셋째, 부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高額資産家를 DB화해서 개인별 및 가구별 재산변동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만 준비중에 있으므로 아직은 미흡하다고 하겠다. 단 개인별 재산관리체계의 구축은 국민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증대로 違憲訴願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改善方案

고액재산가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富의 분산촉진 내지는 富의 집중억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산자료 및 새로이 구축하는 전산자료에 의해 人別 및 家口別 財産變動狀況을 별도로 집중 관리하는 재산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課稅資料蒐集體系를 정립하는 것이 개선의 기본방향이다. 이를 위해서 國稅基本法, 相續稅法 및 法人稅法 등 관련 법규에서 유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정기적 및 자동적으로 과세자료가 수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기존의 전산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여 高額財産家의 家口別 管理 體系는 구축중에 있으므로

- ① 토지전산망, 주택전산망, 주민등록전산망 및 국세청 전산망과의 효율적인 연계 운영 방안을 국세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해서 인별 및 가구별 부동산 거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현행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상황 미제출·제출 누락에만 加算稅(제출누락 주식액면금액의 1% 상당액)를 징수하고 있는데 상장법인에도 加算稅를 징수해서 인별 및 가구

별 주식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상장법인에의 가산세 징수를 통해서 과세자료 수집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비상장법인과 비교할 때 공평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세자료 수집 관련기관의 協助義務를 다음과 같이 보완해야 한다.

- 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支給明細書의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 ② 보험금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작성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산데이터의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 ③ 골프장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 발행사업자에 대해서는 每年會員券發行狀況 및 會員變動狀況을 일정기간 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④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시 出資持分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수집된 자료와 활용 가능한 자료의 입력을 통한 고액재산가를 중심으로 하는 人別財産管理體制(personal record)의 구축을 관계 법령에 明文化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및 고액재산가액의 배우자상속인 등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인별관리를 하도록 법정화하는 것 등이다.

넷째, 새로이 구축해야 할 電算資料의 目錄은 다음과 같다.

- ① 인별 및 가구별 금융자산(예금계좌, 증권계좌 등) 관련 자료의 DB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망자에 한해서 그의 금융자산을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조회할 수 있는 규정¹⁹⁾의 부활이 필요하며, 금융소득자의 성명·주소·금융상품명·계좌잔액·거래내용 등을 코드화해서 관리해야 한다.
- ② 국세기본법과 관련법에서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의 종류,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평가액 등의 제

19) 이는 1993년 12월에 폐지된 相續稅法 제23조 제3항의 금융자산 일괄조회제도를 말한다.

출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망사실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서 埋葬許可資料의 국세청 통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과 관련법에 국세청으로의 통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內務部의 住民登錄電算網과 연결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第 3 節 金融資産 一括照會制度의 復活

1. 現況 및 問題點

가. 現況

「金融實名去來 및 秘密保障에 관한 緊急財政經濟命令」²⁰⁾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호 조항에 의하여 금융거래자의 금융거래 비밀이 보장된다. 단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소관관서의 장이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課稅資料 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의 金融情報照會는 납세자(거래자)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및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特定店鋪에 개별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法官이 발부한 令狀이 있는 경우, 監査院法(제27조 제2항,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4조의 2), 公職者倫理法(제8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0조 제2항) 등에서도 금융기관의 본점 전산실에 대해 금융자산 一括照會를 허용하고 있다.

20) 이하 緊急命令이라 약칭한다.

나. 問題點

과세당국이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의 조회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일일이 조회함에 따른 업무처리상의 불편과 번잡함 그리고 조사공무원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조사함에 따른 금융자산의 포착 불충분 및 특정점포에 개설된 금융자산만 우연히 검출됨에 따라 야기되는 課稅의 不公平問題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金融資產의 一括照會制度가 1990년 12월에 도입·시행되었다(상속세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 그러나 「緊急命命」 제4조에서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함에 따라 同制度는 1993년 12월 31일의 상속세법 개정시 廢止되었다. 이후 일괄조회가 아니라 개별점포별 조회만 허용됨으로써 금융계좌 검색 및 특정점포 금융거래조회와 확인절차가 번잡하여 금융기관과 과세관청의 많은 시간과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어 상속세조사 결정기간이 평균 1년을 초과하는 상태이며 또한 조사공무원의 경험적 판단에 따른 조사로 인해서 漏落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과세당국에 대한 지나친 금융정보의 제한은 상속세 과세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OECD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하고 있다. 아직은 금융자산의 果實所得(利子·配當所得)에 대한 종합과세의 시작단계에 있고, 또한 금융실명제가 확실하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²¹⁾ 아직까지 合意借名에 의한 금융거래의 관행이 사라지지도 아니한 단계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은 상속과세의 관점에서 時機尙早이므로 부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1) 참고로 1995년 12월 末의 실명확인율은 97.8%, 가명예금의 실명확인율은 98.7%, 실명예금 중 미확인액은 5조 4천억원, 가명예금 중 실명 미 전환액은 371억원이다.

2. 改善方案

金融實名制의 비밀보장 측면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의 금융정보이용을 과다하게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점, 一括照會制度의 부활을 위해서는 緊急命令 제4條(金融去來의 秘密保障)의 개정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및 금융시장의 자금이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지나친 금융정보의 제한은 상속세 과세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OECD는 권고하고 있다. 또한 사망자에 대해 일생에 한번 최종적으로 과세하는 상속세의 특성상 금융자산의 일괄조회 허용에 따라 증대되는 사회적 이익을 감안한다면 금융자산에 대한 一括照會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부동산은 基準時價로 평가되어 時價보다 低評價된 수준에서 과세되고 있는 상황에서 一括照會制度로 금융자산을 포착해서 額面金額으로 과세하는 경우 兩 資産間에 과세상 衡平性 問題가 발생될 수 있다. 이의 보완을 위해서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공제제도의 신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는 금융자산의 보유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안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死亡者 및 그 配偶者에 限하여 금융기관 본점에 一括照會를 허용하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가 國稅廳에 제출된 자 중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案이다.

- ①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망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일괄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② 상속세 課稅人員이 통상 연간 약 3,500명(1995년기준) 수준이므로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한 자 중 연간 약 7천명 정도가 一括照會 對象이 된

다.

둘째, 金融機關 本店에 대한 一括照會의 허용이 곤란하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해서 제출·신고된 금융소득자료를 DB화해서 이를 상속세 부과시에 이용하는 案을 상정할 수 있다.

- ① 비록 상속세법 영역 외의 사항이지만 相續稅와 所得稅는 相互 補完關係에 있음을 감안하면 이론적인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 ② 과세관청에서는 금융소득자의 성명·주소·금융상품명·계좌잔액·거래내용 등을 코드화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第 4 節 借名株式의 實名化 誘導

1. 現況 및 問題點

가. 現況

相續稅法 第32條의2 第2項 規定(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借名한 경우(명의신탁) 차명시점에 贈與擬制 課稅하고 있다. 이는 名義信託을 이용한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이다²²⁾.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은 名義者가 해야 되므로²³⁾ 舊 相續稅法 第32條의2 第1項²⁴⁾의 적용범위와 적용배제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贈與擬制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²⁵⁾. 단 주식소유상한을

22) 대법원 89 헌바38, 1989.7.21

23) 대법원 89누4857, 1990.3.13

24) 신탁재산의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25) 대법원 91누 2410, 91.10.25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온 이유는 憲法裁判所의 限定合憲決定²⁶⁾에 따른 것이다. 憲法裁判所의 결정을 보면,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의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된 憲法訴願審判請求에 대하여, 憲法裁判所는 1981.12.31자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비록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실질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限定的 合憲決定을 내리고 있다.

借名하고 있지만 租稅回避目的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골프회원권 등록절차상 아들에게 일시 명의신탁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85누 467, 85.9.24).
- ② 회사가 본점으로 임차사용중인 건물의 경매기일에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경리직원 명의로 競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90누 936, 91.1.15).
- ③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여 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贈與擬制로 볼 수 없다(대법원 90누 2291, 90.10.23).
- ④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名義信託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때에는 증여로

26) 全員裁判部, 89헌마38, 1989.7.21

보지 않는다(相法 제32조의2 단서 : 1990.12.31.신설).

- ⑤ 證券去來法 第200條 소정의 주식소유상한을 회피하기 위해 친지에게 주식을 名義信託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91누 870, 91.6.1).
- ⑥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재산권보전목적의 일시적인 名義信託은 증여의제할 수 없다(대법원 91누 6429, 91.10.8).
- ⑦ 임직원들이 그룹 회장에게 명의사용을 동의하였으나 주식에 관한 실질상의 권한은 모두 그룹 회장이 행사한 경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2누 10685, 93.3.23).
- ⑧ 父가 증권회사에 子의 명의로 株式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에 따른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93누 2643, 93.8.24).

이상의 내용을 참고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구분·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名義信託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信託法상의 信託이 있는데 상속세법(第32條의2 第2項)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이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다. 셋째, 讓渡擔保가 있는데 大法院 判例²⁷⁾에서는 증여의제로 보지 않고 있다. 넷째, 原因無效인 상태로 된 등기가 있는데 이는 取得原因無效判決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게 되기 때문이다²⁸⁾.

나. 借名去來의 背景

앞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배경하에서 주식 차명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7) 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 517판결

28) 相基通 84...29의2

첫째, 證券去來法(제200조) 등에 의한 規制(대주주 보유비율 제한, 타법인 주식보유 제한)를 회피하기 위해서 연고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인데, 규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상장 당시 10% 이상 보유주주는 등록 당시 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추가 취득함이 불가하다. 단 證券委員會의 허가시는 가능하다.
- ② 他法人 주식의 보유를 1%로 제한하고 있다.
- ③ 上場法人의 一般株主(10% 미만 보유)는 10% 이상 보유가 불가하다. 단 이 규정은 1997년부터 폐지되고 다만 5% 이상 보유시 신고가 필요하다.

둘째,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에 의한 規制(기업결합의 제한)를 회피하기 위해서 연고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인데, 규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企業結合의 제한을 위해서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이거나, 총 자산 200억원 이상인 법인은 다른 법인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가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 단 産業合理化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7조 제1항).
- ② 相互出資禁止를 위해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법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함이 불가하다(제9조 제1항).

셋째, 상장요건·장의등록 요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유가증권 상장규정 제15조) 연고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① 상장신청일전 6개월 이내 총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매출한 실적이 있는 등 주식을 분산해야 상장요건에 부합된다.
- ② 장의등록이나 공개시에는 10% 이상 분산되어야 한다.

넷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51% 이상)에 대한 법인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

하여 연고자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

다섯째, 상법상 법인 설립 요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고자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인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주주 7인이 발기인이 되나, 1996년 10월 1일부터는 3인으로 변경되었다.

여섯째, 배당소득의 누진종합과세 및 상속세 회피 목적을 위한 경우 이처럼 租稅回避 내지 租稅滲脫 목적보다는 각종 規制의 回避 내지는 要件의 符合을 위한 借名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問題點

현재 주식을 借名하는 이유는 상법·증권거래법 등 각종 법령의 規制 回避 내지는 要件의 符合을 위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상속·증여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명의신탁된 주식(차명주식)은 과세를 우려하여 실명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용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증여세 과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아직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속·증여재산의 은닉(조세회피)을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차명한 경우에는 차명시점에 명의자에게 증여의제 과세하고 있지만 조세회피 목적 여부의 확인이 어려워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식의 차명은 상속·증여세를 통한 富의 集中抑制 내지는 富의 分散 그리고 課稅의 衡平性 達成이라는 정책목적의 달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의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株式의 借名去來에 대한 規制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금융기관을 통한 주식거래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앞으로 주식의 名義信託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 改善方案

상당수의 차명거래는 各種 規制의 回避 내지는 要件의 符合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證券去來法,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法, 國稅基本法, 地方稅法 및 與信管理規定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내지 완화없이 차명주식이 계속 유지될 것이므로 관련법의 改善 내지는 改正이 전제가 된다고 하겠다. 이는 또한 상속세법이 아닌 관련법의 개정이 전제가 되므로 상속세법으로서는 限界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상속세법을 강화 내지는 개정하더라도 최선책이 아닌 次善策이 될 것이다. 한편 관련법의 개정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 ① 證券去來法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여도 이는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호 목적이 상치되는 사항이다.
- ② 國稅基本法, 地方稅法상의 과점주주 비율(51% 이상)의 완화 또는 과세완화는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의 실질 소유 형태로 볼 때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완화는 곤란한 상태이다.
- ③ 國稅基本法 第39條, 地方稅法 第22條의 과점주주²⁹⁾를 실질주주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명문화하는 것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실질주주의 판단은 행정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차명주식의 실명화를 위해서는 비록 관련법의 개정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법으로서는 限界가 있어 상속세법의 강화 내지 개정이 次善策이 될지라도 상속세법의 입장에서는 탈법적인 내용을 과세대상으로 捕捉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조항을 存置시키면서 주식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실명화를 誘導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은 다음과 같다.

- ① 實名轉換猶豫期間을 설정하여 실명전환을 유도한다. 실명전환

29) 과점주주의 요건에 대해서는 國稅基本法 通則 4-2-16...39 참조.

유예기간은 과거의 차명주식에 대하여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通過裝置 역할을 할 것이며, 당초 명의신탁 사실의 확인은 각종 입증자료 등을 통해서 사실판단을 한다. 동 기간중 실명전환분에 대해서는 증여나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아 면세조치함이 바람직하다.

- 실명전환이란 名義信託의 解止로 볼 수 있다.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소유 명의를 환원시키는 것은 진실에 맞게 변경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새로운 재산의 증여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84.5.22 선고, 84누 19 판결 ; 同 1983.9.27 선고, 83누134 판결).
 -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相基通 105...32의2)
 - 정황증거에 의해서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것도 증여의제로 보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借名株式의 실명전환을 위한 상속세법의 강화 내지는 개정의 조치는 관련법의 하나가 증가된 데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며, 특히 低率의 特例稅率로 과세한다면 宣言的인 意味의 조문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
 - 뿐만 아니라 借名이라는 부정적이고 비합법적인 상황에서 실명이라는 긍정적이고도 합법적인 상황으로 전환을 장려하는 데는 轉換費用(低率의 특례세율)이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장애가 될 수가 있다.
- ② 猶豫期間까지 실명화하지 않거나,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하여는 租稅回避目的이 있는 것으로 推定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한다. 세무당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推定하여 과세할 수 있는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실질주의의 판단 내지 조사는 행정상으로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③ 僞裝贈與에 대한 資金出處調査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직계비속 및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주식을 타인에게 위장 증여할 가능성이 크므로 資金出處調査는 필요하다. 또 배우자·직계비속 및 미성년자 명의 등으로 실명전환한 경우에 대한 과세는 위장증여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④ 法人稅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租稅犯處罰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第 5 節 贈與擬制規定을 贈與推定規定으로 轉換

1. 現況 및 問題點

가. 現況

민법의 典型契約 중의 하나이며 본질적 의미의 증여인 贈與契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어떠한 과세사실의 결과가 財産의 無償移轉이라는 민법상 증여와 同一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贈與로 擬制(看做)해서 과세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주로 租稅回避行爲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시행하고 있는데 12가지가 있다.

- 信託利益을 받을 권리의 증여(相續稅法 第32條)
- 第3者 名義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相續稅法

第32條의2)

- 保險金の 증여의제(相續稅法 第33條)
- 배우자 등의 讓渡行爲에 대한 증여의제(相續稅法 第34條)
- 低價·高價讓渡시 증여의제(相續稅法 第34條의2)
- 債務免除 등의 증여의제(相續稅法 第34條의3)³⁰⁾
- 合併시 증여의제(相續稅法 第34條의4)
- 增資·減資시 증여의제(相續稅法 第34條의5)
- 財産取得資金의 증여추정(相續稅法 第34條의6)
- 公益法人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의제(相續稅法 第8條의2 第4項)
- 特定株式을 5% 초과하여 公益法人에 출연하는 경우의 증여의제(相續稅法 第8條의2 第1項 第1號 단서)
- 離婚配偶者의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의제(相續稅法 第29條의2 第1項 第1號)

나. 問題點

贈與擬制規定은 國稅基本法(第14條)上的 實質課稅原則을 희생시키고 있다. 실질과세원칙이란 조세에 있어서 形式과 實質(실질적 귀속자, 실질적 내용)이 다를 때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인데, 同 原則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의제(相續稅法 第34條)³¹⁾ 등 일부 증여의제 규정은 國稅基

30) 민법의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채무의 면제란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그 법률적인 성질은 증여가 아니다.

31) 有償讓渡를 가장한 재산의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의 夫婦別算制下에서는 特有財産이 인정되고 또 直系尊卑屬이 경제적 능력이 있고 실제로 有償讓渡인 경우에도 무차별적으로 贈與擬制해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법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法理上的의 모순 해결을 위해서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의 有償讓渡의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는 大法院의 입장이 수용되어 相續稅法 施行令 第41條 第3項에서 몇몇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지 않는다.

本法上の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特例規定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國稅基本法이 비록 개별 세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국세 부과의 원칙에 관하여 개별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國稅基本法 第3條 第1項)는 점에서 현행 증여의제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증여세의 경우 贈與擬制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할지라도 그 특례규정이 실질과세원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을 희생시킴을 부인할 수는 없다.

憲法 제59조에 租稅法律主義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大法院 判例³²⁾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類推適用을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租稅實體法的인 사항의 모든 것은 법률로써 정하여질 것과 이러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는 발생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贈與擬制規定은 어떤 면에서는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租稅法律主義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贈與擬制規定은 租稅法律主義 原則 안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인 효력 측면에서 보면, 擬制(看做)란 비록 진실에는 反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법이 이렇다고 규정하면 반대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규정이므로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과세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相續稅法과 같이 의제규정을 두는 경우 의제된 사실이 실질이 아닌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반드시 과세를 해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그것이 실질이 아님을 입증하더라도 반복시킬 수 없게 된다는 短點이 있다. 또한 현행 증여의제규정은 租稅行政의 便宜를 고려해서 도입·확산된 측

32) 1976.2.10 宣告, 74누 44.

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의 看做(擬制)相續財産規定³³⁾을 보면 그 범위가 비교적 간단하고 제한적임은 최소의 범주내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2. 改善方案

擬制란 반대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게 하는 규정이므로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과세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推定이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므로 실제적인 진실에 따라 과세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또한 實質課稅의 原則과 租稅法律主義의 原則에 부합하므로 贈與擬制規定을 推定規定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推定規定의 경우에는 과세요건 충족사실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그 추정사실이 실질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로 추정된 자가 부담한다. 다시 말해서 과세관청은 과세할 수 있는 추정사실의 존재만을 인식하면 되고 납세의무자로 추정된 자가 이 추정사실을 증거에 의해 번복하지 못하는 한 과세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상 사실인정의 부담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또한 그 내용도 포괄적이 되어서 課稅對象의 包括主義로의 轉換과도 상응하게 된다.

또한 憲法裁判所 결정에서도 推定規定으로 해석하고 있어 추정규정화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일부는 이미 전환이 가능한 상태이다.

단 추정규정도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濫用은 삼가야 할 것이다.

33) 看做相續財産에는 생명보험금과 손해보험금, 퇴직수당금 및 공과금의 給與, 생명보험 계약에 관한 권리, 정기금 급부 계약 권리, 보증기간 부 정기금 급부계약에 관한 권리 그리고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정기금에 관한 권리가 있다.

현행 증여의제규정 중 「債務免除 등의 贈與擬制」는 타인으로부터 채무면제 등을 받은 이익은 당연히 증여이므로 이를 증여의제할 필요성이 없고, 「第3者 名義로 登記 등을 한 財産에 대한 贈與擬制」³⁴⁾는 限定違憲判決을 받아서 1997년부터 폐지할 예정이고, 「配偶者 등의 讓渡行爲에 대한 贈與擬制」는 違憲 判決을 받았고, 「離婚配偶者의 財産分割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의제」는 違憲訴訟이 進行中이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은 추정규정으로의 전환을 모색함이 좋을 것이다.

34)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라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제7조 제2항)에 의한 명의신탁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도 그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닌 한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憲法裁判所 1989.7.21 宣告, 89 헌마38 決定)을 내리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과세관청이 오히려 그 명의신탁에 조세포탈의 목적이라고 하는 행위자의 내심적 주관적 요소에 대하여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민법의 원리에 따라 명의상의 등기소유자에 대한 증여로 추정하면서 명의수탁자의 자금출처를 추적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推定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명의신탁자는 그것이 受贈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게 된다.

한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轉嫁시키는 것이 「推定規定」이라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식 소유상한을 회피하기 위해 친지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대법91누 870, 91.6.11) 및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재산권보전 목적의 일시적인 명의신탁(대법91누 6429, 91.10.8)은 증여로 보아 증여의제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즉 단순히 주식소유상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재산권보전 목적을 위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의제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贈與擬制規定」이라기 보다는 「推定規定」이라고 할 수 있다.

第 4 章 控除制度

본장에선 配偶者 相續控除, 配偶者 贈與控除, 其他 相續控除, 贈與控除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신설 예정인 概算控除, 金融資産控除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한다.

第 1 節 配偶者 相續控除制度

配偶者間 富의 移轉은 死後移轉인 相續과 生前移轉인 贈與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들 무상이전 행위에 대한 相續·贈與稅의 課稅與否와 課稅時의 논리적 근거를 둘러싸고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遺産課稅型 相續稅制를 지닌 英國과 美國에선 수십년간의 논의를 거친 후 英國이 먼저 配偶者間의 相續·贈與에 대해 과세하지 않게 되었고 美國도 1982년부터 非課稅로 전환하였다.

우리와 동일한 課稅類型을 지닌 兩國의 相續·贈與稅法 개정은 국내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아 女性界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그룹이 生存配偶者 특히 婦人의 相續財産에 대한 相續稅 全額控除論³⁵⁾을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다.³⁶⁾ 이같은 움직임은 民法改正³⁷⁾으로 女性의 社會·經濟的 地位가 向上된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民法의 家族法(親族·相續法)은 憲法上的 國民平等의 原則에 의거해

35) 이하 本 報告書에서 사용하는 ‘全額控除’는 各國의 상속세법에 규정된 배우자 몫의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全額控除, 非課稅, 그리고 全額免除 조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36) 崔 洸(1993), p. 212.

37) 1977年과 1989年의 民法改正에서 이와 같은 措置가 이루어졌다.

兩性を 平等하게 다루려는 목적하에 개정되었으며 이는 相續稅法 등 相關법규의 順차적인 改定을 가져왔다.

1. 現 況

우리의 現行 配偶者控除額은 두 가지로 하나는 一般 가정을 대상으로 한 結婚年數 1년에 1,200萬원을 攄하여 計算한 金額에 1億원을 합한 金額이고, 다른 하나는 高額資産家 계층을 대상으로 한 10億원 한도 내의 配偶者 實相續財産價額이다.

相續稅 總課稅 件數에서 控除別 利用頻度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 기준으로(〈表 2-4-1〉 참조), 基礎控除 100%, 子女控除 85.4% 및 配偶者控除 70.9%의 순서로서 配偶者控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 특히 配偶者控除額이 總課稅價額에서 점하는 비율 12.5%는 여타 控除보다 그 比率이 높은 수준이다.

〈表 2-4-1〉 各種 控除의 利用比率과 控除額(1992)

(單位: %)

控除 項目	利 用 率	控除額(對課稅價格比)
1. 기 초	100.0	3.9
2. 배 우 자	70.9	12.5
3. 자 녀	85.4	2.1
4. 미 성 년 자	17.8	0.28
5. 연 로 자	9.4	0.26
6. 장 애 자	2.6	0.21
7. 주 택 상 속	48.6	3.6
8. 농 지 상 속 등	11.2	0.5
9. 산 림	—	—
10. 기 타	0.1	0.1

資料: 韓國租稅研究院.

가. 主要國의 配偶者控除制度

1) 國際比較와 示唆點

主要國의 配偶者控除制度를 요약하면 <表 2-4-2>와 같다. 相續·贈與稅 課稅類型을 遺產課稅型和 取得課稅型으로 대별하면, 美國, 英國, 臺灣 및 韓國은 前者에 속하고, 獨逸, 프랑스, 日本은 後者에 속한다. 配偶者控除의 效果는 課稅類型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즉 相續人의 持分比率로 分割한 遺產을 課稅物件으로 하는 取得課稅型에서는 配偶者控除가 배우자에게 직접 귀속됨에 따라 그 效果가 분명하지만 遺產課稅型下에서는 相續人의 持分으로 分割하기 前의 遺產總額이 課稅物件이 되므로 配偶者控除는 共同相續人에게 귀속되어

<表 2-4-2> 配偶者 控除制度의 國際比較

		控除方法	控 除 額
遺產課稅型	美 國	財産價額控除	全額控除
	英 國	財産價額控除	全額控除
	臺 灣	財産價額控除	200萬대만달러
	韓 國	財産價額控除	1億원 + (結婚年數 × 1,200萬원)과 配偶者가 실제 相續받은 財産價額(10億원 한도) 중에서 選擇
取得課稅型	獨 逸	財産價額控除	一般控除 중 配偶者分 25萬마르크와 配偶者特別配慮控除 25萬마르크
	프랑스	財産價額控除 稅額控除	配偶者控除 33萬프랑 및 4千프랑의 稅額控除
	日 本	稅 額 控 除	相續稅總額 × { (法定相續分과 1億6千萬円 중 큰 金額과 配偶者의 課稅價格에 상당하는 金額 중 적은 金額) / 各 相續人의 課稅價額의 合計額 }

그 효과가 다소 불분명하다.

配偶者控除 방식에서는 日本만이 稅額控除 方式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財産價額控除 方式이다.

또 配偶者控除 限度額 수준도 各國別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課稅類型의 측면에서 配偶者控除 限度額을 비교하면, 遺產課稅型的 美國과 英國에서는 遺言³⁸⁾에 의한 재산분할이 일반적이고 또 우리의 協議分割과 같은 制度가 없으며 配偶者 相續分の 全額控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遺產額이 동일하다면 配偶者控除 限度額이 우리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遺產課稅型인 臺灣의 경우 遺言 또는 法定相續持分에 의한 재산분할이 일반적이고 우리보다 엄격한 部分控除 方法을 취하고 있으므로 遺產額이 동일하다면 配偶者控除 限度額이 우리보다 적다. 한편 取得課稅型인 獨逸·프랑스·日本 등은 控除限度額이 美國과 英國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세대 1회 課稅 原則에 충실하려 할 경우 이들 국가도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해 全額控除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비교적 엄격한 部分控除 方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⁹⁾.

여기서 所得水準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미국과 영국은 所得水準이 높아 배우자공제 限度額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臺灣의 경우 우리보다 소득수준

38) 美國의 각 州는 遺言의 법적 효력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이 사망시 配偶者에게 전혀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配偶者의 法的持分相續權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이 遺言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주소지가 소재하는 州의 財産分配法에 정한 순서와 비율에 따라 遺產을 분배하게 된다.

39) 배우자 공제가 배우자의 납세액에 미치는 효과는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에서 상이하므로 兩 과세유형의 배우자 공제의 상대적 규모를 비교하는 작업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납세액은 相續人數와 기타 공제의 有無, 그리고 공제의 크기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同 控除限度額이 크게 낮아 우리의 控除限度額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 獨逸·프랑스·日本 등은 엄한 部分控除 방법이 말해 주듯이 同 控除限度額이 소득수준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간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의 配偶者控除 限度額이 낮지 않다는 점이다. 배우자 공제 한도액이 높아진 배경을 보면 첫째, 相續財産의 85~90%가 不動産이고 또 부동산 가격이 다른 재화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生存配偶者와 그 가족의 物的基礎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고 둘째,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配偶者 財産形成 寄與度を 높게 평가해 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상의 示唆點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 시점에서 우리의 配偶者控除 限度額을 크게 늘리거나 배우자 몫의 유산을 全額控除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國別 現況

가) 美 國

配偶者에 대한 相續稅는 美國 國籍者이면 기본적으로 全額免除되지만, 받는 者가 美國 國籍者가 아니면 適格國內信託(qualified domestic trust)을 통한 相續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配偶者控除가 허용되지 않는다⁴⁰⁾. 配偶者控除는 調整總遺產(純適格遺產; adjusted gross estate)⁴¹⁾의 크기로 한정된다. 곧 聯邦 및 州 政府의 死亡稅(death taxes)⁴²⁾,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債務, 葬禮費 및 遺產管理費

40) NU Law Services National Underwriter(1995).

41) 調整總遺產이란 總相續財産價額에서 各種 控除(葬禮費, 遺產管理費, 負債, 各種 稅金 및 相續財産 管理 期間중 발생한 損失額 등)를 차감한 價額을 말한다.

42) 相續稅를 聯邦에서는 遺產稅(estate tax), 各 州에서는 相續稅(inheritance tax), 그리고 이 둘을 합해서 死亡稅(death tax)라고 부른다.

등을 차감한 殘餘額으로 限定된다.

法改正 前까지는 25萬 달러와 調整遺産總額의 50% 중 큰 쪽을 上限으로 허용하였는데, 새로운 法에서는 配偶者控除가 無制限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첫째 1981년 9월 12일 이전에 행해진 遺言이나 信託에 配偶者控除 上限條項이 들어 있고, 이 條項이 上記日 이후 그리고 被相續人의 死亡前에 수정되어 無制限의인 配偶者控除를 허용한다고 기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둘째 州가 遺産에 대해서 無制限의인 配偶者控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條項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두 가지이다.

나) 英國

配偶者間 財産의 無償移轉, 즉 贈與이든 相續이든 그 與否를 불문하고 또한 特別信託 與否에 관계없이 完全 免稅하고 있다⁴³⁾. 이를 配偶者 免除(spouse exemption)라고 한다. 단 贈與나 遺贈의 경우 一方의 配偶者(贈與者나 遺贈者)가 國內에 주소를 두고 他方의 配偶者(受贈者 또는 受遺者)가 海外에 주소를 두었거나 非英國人일 경우 免稅額은 5만 5,000파운드가 上限이다. 한편 贈與나 遺贈이 직접적으로 配偶者를 위한 것이 아니거나 혹은 移轉이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條件에 따라 행해질 때에는 免除가 되지 않는다.

다) 獨逸

現 段階에서 相續人과 受贈者別 身分에 따라 허용되는 人的控除는 모든 相續人 및 受贈者에게 허용되는 一般控除와 配偶者 및 子女에게 추가적으로 허용되는 特別配慮控除로 대별된다⁴⁴⁾. 一般控除

43) IBFD(1995), p. 565; Steward and Taylor(1996), pp. 361~362.

44) IBFD(1995), p. 181.

란 相續과 贈與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控除金額을 적용하되 身分關係에 따라 納稅義務를 分類하고 各 分類別로 控除額에 차별을 두는 것이며, 配偶者에게는 25萬마르크가 인정된다. 配偶者特別配慮控除란 생존하는 配偶者에게 一般控除 外에 추가로 인정되는 控除이며 현재 25萬마르크가 인정되고 있다.

夫婦財産은 增加財産共同制라는 점과 같은 第1類의 課稅對象에 속하는 子女의 一般控除가 9萬마르크이고, 第4類의 課稅對象者에게 적용되는 稅率이 20~70%인 데 비해서 配偶者의 稅率은 3~35%인 점 등을 고려하면 配偶者에게 허용되는 輕減措置가 적다고 할 수는 없다.

라) 日 本

配偶者 稅額輕減制度⁴⁵⁾는 相續 또는 遺贈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者의 相續稅 總額에 다음의 ① 또는 ②의 금액 중 적은 金額이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者의 相續稅 課稅價格의 合計額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 金額이 配偶者稅額 輕減額이다⁴⁶⁾.

① 課稅價格 合計額에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곱해서 얻은 金額. 이 金額이 1億 6千萬円에 미달할 경우에는 1億 6千萬円. 즉 法定相續分과 1億 6千萬円 중 큰 金額을 말한다.

② 配偶者의 課稅價格에 상당하는 金額.

稅額輕減을 받기 위해선 婚姻申告가 되어 있어야 하고, 婚姻期間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이 없으며 또한 配偶者가 代償分割에 의해 다른 相續人에 대해 부담하는 代償財産을 급부하는

45) 尾崎三郎·中野秀之(1995), pp. 856~861.

46) 上記 내용을 計算式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left. \begin{array}{l} \text{法定相續分과 1億 6千萬円 중 큰 金額} \\ \text{配偶者의 課稅價格에 상당하는 金額} \end{array} \right\} \text{중 적은 金額} \\ \text{相續稅 總額} & \times \frac{\quad}{\text{各 相續人의 課稅價額의 合計額}} \\ & = \text{配偶者稅額 輕減額} \end{aligned}$$

채무는 ②의 配偶者 取得財産價額에서 控除한다. 또한 상기의 ②의 課稅價格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내에 분할(일부분할도 포함한다) 등에 의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초로 계산한다.

마) 其他國

프랑스⁴⁷⁾에서는 33萬프랑의 配偶者控除가 인정되며, 이외에도 配偶者에게는 4千프랑의 稅額控除가 인정되고 있다.

臺灣⁴⁸⁾의 경우, 被相續人의 配偶者의 경우 遺産總額에서 200萬元을 차감하고 있다.

3) 主要國의 配偶者控除制度 沿革

가) 우리나라

1950년에 公布되어서 시행되어온 相續稅法은 1960년의 稅法改正⁴⁹⁾을 통해서 비로소 配偶者控除制度가 도입되어 1961년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 시행 당시의 控除額은 5萬원으로서 基礎控除額의 10분의 1에 불과했지만⁵⁰⁾, 사회구조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고 또한 女權이 伸張되면서 控除額이 점차 상향 조정되어서 1977년에는 基礎控除額과 동일한 액수가 되고 1980년에는 基礎控除額의 2배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1990년의 稅法改正에서는 結婚年數를 고려해서 配偶者控除額을 산정했으며, 현행 配偶者控除制度는 결혼연수에 1,200萬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億원을 합한 금액과 10億원을 한도로 配偶者가 실제로 상속받은

47) IBFD(1995), p.163.

48) 韓相國(1995), p. 104.

49) 1960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제1항: 國內에 住所를 둔 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된 경우에는 國務院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課稅價格에서 相續開始 當時의 被相續人의 配偶者와 同居家族 中 成年에 達하지 아니한 者, 60歲 以上の 老年者 또는 不具廢疾者 各 1人에 대하여 50萬환을 控除한다.

50) 이용 빈도가 가장 많고, 또한 生存家族의 最低限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시행되는 基礎控除와의 비교를 통해서 配偶者控除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비교했다.

財産價額 中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表 2-4-3〉 참조).

〈表 2-4-3〉 相續稅 控除額의 推移

(單位: 萬원)

	基礎控除	配 偶 者	子女	未成年者	年老者	障 碍 者
1961	50	5	—	5	5	5
1968	150	50	—	$20+5 \times B$	20	20
1972	300	150	—	$20+5 \times B$	40	40
1975	600	500	—	$30+10 \times B$	60	60
1977	800	800	—	$24 \times B$	100	180
1980	800	1,600	—	$24 \times B$	100	180
1983	1,000	2,000	500	$40 \times B$	300	800
1989	1,000	4,000	1,000	$100 \times B$	1,000	1,000
1991	6,000	$10,000+600 \times A$	2,000	$300 \times B$	3,000	$300 \times C$
1994	10,000	$10,000+1,200 \times A$	2,000	$300 \times B$	3,000	$300 \times C$
1996	10,000	$10,000+1,200 \times A$ 와 D 中에서 선택	2,000	$300 \times B$	3,000	$300 \times C$

註: 1. 1961년도의 각종 공제는 1960년 연말 개정시에는 화폐단위가 '환'이 었지만, 1961년의 화폐개혁으로 액면가액이 1/10로 절하되고 단위도 원으로 바뀌었다.

2. 配偶者控除欄의 A는 결혼연수를 말하고,
3. 未成年者控除欄의 B는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말하고,
4. 障 碍 者 控 除 欄의 C는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말하고,
5. 配偶者控除欄의 D는 配偶者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10억원 한도)을 말한다.

資料: 財務部(財經院), 『相續稅法沿革輯』 및 『간추린 改正 稅法』 각 연도.

民法에 규정된 法定相續分(1991년 1월 1일 이후 시행)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고, 男女間, 子女間 상속비율은 完全 均等하다. 또 戶主相續者 상속분 가산제도는 폐지되었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상속할 경우 배우자(1.5), 자(1), 녀(1)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배우자와 직계부모가 상속할 경우에는 배우자(1.5), 부(1), 모(1)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나) 美 國⁵¹⁾

1916년과 1924년에 相續稅와 贈與稅가 처음으로 각각 課稅되기 시작했으며, 兩者는 별개의 稅目으로 독립적으로 부과되었다. 당시의 相續·贈與稅 體系下에서는 配偶者控除에 대해서 별도의 明文規定이 없었다.

1939년의 歲入法(Revenue Code)에 이르기까지 夫婦共同財産에 대한 相續稅의 課稅方法에 대하여 별도의 明文規定이 없었고, 다만 夫婦共同財産의 半을 被相續人의 總遺産額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1942년의 歲入法에서는 夫婦獨立財産制를 시행하는 州와 夫婦共同財産制를 시행하는 州의 州民의 相續稅 부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遺言執行者의 조사를 통하여 配偶者 일방의 獨立財産 또는 그의 持分임이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 夫婦共同財産은 먼저 사망한 配偶者의 總遺産額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1948년의 歲入法에서 이 내용은 폐지되었다.

1948년의 歲入法에서 비로소 相續稅에 配偶者控除制度가 나타났다. 그 控除額은 被相續人의 調整遺産總額의 50%이었다. 이는 사망한 配偶者가 그의 獨立財産의 半을 免稅로 生存配偶者에게 無償移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

1976년에 이르러 議會는 相續稅와 贈與稅를 통합해서 無償移轉財産으로서 課稅對象이 되는 것을 累積合算하는 立法措置(租稅改革法: The Tax Reform Act of 1976)를 취했다. 그 결과 財産相續은 死亡者의 마지막 贈與(final gift)로 취급되었으며, 被相續人이生前에 贈與한 金額에 相續財産價額을 加算해서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統合移轉稅率(unified transfer tax rate)을 적용해서 相續稅額을 산출했다. 따라서 종전에 贈與稅와 相續稅에서 각각 별도로 인정되

51) NU Law Services National Underwriter(1995).

던 稅額控除도 단일한 稅額控除로 통합되었다⁵²⁾. 配偶者控除額은 調整遺產總額의 50%와 25萬달러 중 큰 쪽을 上限으로 허용되었다.

1981년의 經濟復興稅法(The Economic Recovery Tax Act)에서는 移轉稅(transfer tax)⁵³⁾의 課稅單位를 個人에서 夫婦로 변경하는 改革을 취함에 따라 夫婦間의 贈與나 相續으로 인한 財産移轉에 대하여는 金額 제한없이 控除(unlimited marital deduction)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課稅對象에서 제외하였다. 즉 配偶者控除가 無制限으로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現行 制度가 형성되었다.

다) 英國

현행 相續稅의 모태가 되는 遺產稅(estate tax)는 1894년에 도입되어 1974년까지 시행되었으며 기본적으로 遺產課稅型이다. 同 稅는 資産의 生前移轉(贈與)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死亡前 7年內⁵⁴⁾에 행한 生前移轉만을 死亡遺產에 合算해서 課稅했다. 配偶者間 資産의 生前移轉은 1961년의 Finance Act에 의해 非課稅되어 왔다⁵⁵⁾.

1975년에 遺產稅가 폐지되고 資産移轉稅(capital transfer tax)가 시행되었다. 資産移轉稅에서는 贈與者가 平生⁵⁶⁾ 동안 행한 모든 贈與額을 累積合算해서 累進稅率을 적용해서 資産移轉稅를 과세함과 동시에 그 贈與者가 사망하면 그 사망유산에 대하여는 生前移轉

52) 즉 統合移轉稅額控除(unified transfer tax credit)를 말하며,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統合移轉稅額控除限度는 19만 2,800달러이다. 이는 課稅價額 60만달러에 해당하는 稅額으로 개인은 자신의 相續稅와 贈與稅에 대하여 평생동안 이 限度額의 未使用殘額을 이월해 가면서 공제받을 수 있다.

53) 相續稅와 贈與稅를 포괄하는 概念으로 移轉稅(transfer tax)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54) 1894년에는 1年으로 시작했으나 1910년에는 3年으로 1946년에는 5年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贈與로 인한 租稅回避를 방지하기 위하여 合算期間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55) Sandford(1973), pp. 13~21.

56) 1981년부터는 10年으로 단축되었다.

課稅時에 도달한 超過累進稅率上의 限界稅率點에서 그 稅率 적용이 시작되도록 하였다⁵⁷⁾. 그러나 配偶者間 財産의 無償移轉에 대해서는 여전히 完全한 免除가 허용되었다.

1986년 3월에는 資産移轉稅가 폐지되고, 同年 4월부터 相續稅(inheritance tax)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獨逸⁵⁸⁾

相續 및 贈與課稅制度의 연원은 1906년의 獨逸帝國相續稅法에서 찾을 수 있는데, 1959년에 새로운 相續稅法의 제정이 있었고, 現行法⁵⁹⁾은 1974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의 부분적인 改正이 있었다. 相續稅와 贈與稅는 統合型으로 單純累進稅率 構造의 同一한 稅率이 적용된다.

獨逸 民法에 의하면, 配偶者가 자녀와 함께 상속하는 경우의 配偶者 法定相續分은 4분의 1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男女를 불문하고 子女들이 평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⁶⁰⁾.

그리고 婚姻契約에서 특별히 정한 합의가 없으면 夫婦財産은 增加財産共同制에 의하며, 이는 法定財産制이다. 婚姻期間 중에 취득한 增加財産은 增加財産共同制가 종료하는 때에 清算된다. 配偶者 일방의 사망으로 增加財産共同制가 종료하는 때에는 法定相續의 경우 生存配偶者도 사망한 배우자의 相續人이 되며, 生存配偶者의 相續分은 法定相續分보다 相續財産의 4분의 1만큼 증가해서 相續分이 相續財産의 2분의 1이 된다. 增加財産共同制에서 발생하는 清算債權은 夫婦財産共同制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때 清算債權은

57) 崔明根(1990), p. 80.

58) IBFD(1995), p. 181.

59) 독일 相續·贈與稅制度의 중요한 特徵 중의 하나는 財産取得者를 被相續人 또는 贈與者와의 身分關係에 기초하여 4개의 範疇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第1類 내지 第3類는 親族關係를 기준으로 가까운 순서로부터 分類하고 第4類는 親族關係가 없는 자이다. 身分關係에 따라 적용되는 稅率과 人的控除가 相異하다.

60) 山田晟(1984), p. 166(崔明根(1990), p. 118에서 再引用).

상속의 대상이 되고 이를 讓渡할 수 있다. 清算債權額은 增加財産 共同制의 종료시에 債務額을 공제하고 남은 殘餘財産價額에 의하여 정한다⁶¹⁾.

마) 日本⁶²⁾

遺産課稅型 相續稅 體系를 유지해 오던 日本의 相續稅制는 1950년 Shoup使節團의 권고에 따라 承繼課稅型(accession tax type)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社會慣行과의 衝突 및 稅務行政上的의 어려움 등⁶³⁾으로 인하여 1953년에 이를 폐지하고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取得課稅型 相續稅制의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의 폐단이 노출되자 稅制調査會의 권고에 따라 1958년의 稅制改正에서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에 의한 取得課稅型⁶⁴⁾이라는 折衷型을 취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現行 日本 民法에 의하면, 被相續人에게 子女가 있으면 그 子女가 被相續人의 配偶者(妻 또는 남편)와 同順位로 相續人이 된다. 被相續人의 配偶者가 子女와 함께 상속하는 경우, 遺言에 의한 指定이 없으면 配偶者는 第1順位의 相續人이 되며, 그 法定相續分은 2분의 1이고, 나머지 2분의 1은 男女를 불문하고 子女들이 평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相續分의 지정은 遺留分을 어길 수 없으며, 相續人이 配偶者와 直系卑屬일 때 또는 配偶者와 直系尊屬일 때에는 被相續人 遺産의 2분의 1이다.

1950년 Shoup의 권고에 따른 稅法改正에서 配偶者控除制度가 도입되었으며, 價額控除法을 채택했는데, 그 控除額은 配偶者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財産價額의 2분의 1 相當額으로 하였다. 1958년의

61) 稅法研究所(1984), pp. 5~6(崔明根(1990), pp. 118~119에서 再引用).

62) 尾崎三郎·中野秀之(1995), pp. 856~861.

63) 崔明根(1990), pp. 137~138.

64)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에 의한 取得課稅型이란 과세되는 遺産總額, 法定相續人의 數, 法定相續分이라는 객관적 數値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遺産課稅型과 取得課稅型의 折衷型이라고 할 수 있다.

改正에서 價額控除法을 稅額控除法으로 전환하면서 法定相續分에 대해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稅額控除를 허용했다. 1966年~1974年の 기간중에는 結婚年數를 고려해서 配偶者控除額을 산정했다. 1968년의 改正에서는 配偶者の 法定相續分에 대한 稅額의 全額控除로 바꾸었다. 配偶者 稅額輕減制度(控除制度)를 도입한 취지는 配偶者가 相續이나 遺贈으로 취득한 재산은 夫婦가 공동으로 축적한 것이 많고 또 配偶者の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었다.

2. 問題點

가. 配偶者 全額控除 主張의 擡頭

現行 民法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改正된 바 있다. 그 중 親族·相續法(家族法)은 1962년, 1977년 및 1989년에 改正되었고 1977년과 1989년의 改正은 대폭적인 것이었다. 改正 過程에서 女性 關聯 條項은 女性的의 社會·經濟的 地位의 향상과 그 軌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民法改正 過程에서 國民平等의 原則(憲法 第11條)과 同 規定의 具體化 方案이라고 할 수 있는 兩性平等精神(憲法 第36條)을 구현하기 위한 立法措置가 취해졌는데, 이는 향상된 女性的의 社會·經濟的 地位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立法措置는 家族法의 基本指導原理로 자리를 잡았으며 그 내용이 相續稅法에 반영되었다.

伸張된 女權이 民法에 반영된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⁶⁵⁾. 1977년의 民法改正에서는 被相續人과 同一家籍 內에 있는 여자의 相續分과 남자의 相續分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被相續人 妻의 相續分은 直系卑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同一家籍 內에 있는 直系卑屬 相續分의 50%를 加算하고, 直系尊屬과 共同으로 相續

65) 金疇洙(1990), 韓瑋熙(1990).

하는 때에는 直系尊屬 相續分의 50%를 加算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所有不分明한 財産에 대한 夫婦의 共有權 및 父母親權의 共同行使 등도 兩性平等의 理念을 實現한 改正이라고 볼 수 있다.

1989년의 民法改正에서는 配偶者의 相續順位에 있어서 父가 相續人인 경우와 妻가 相續人인 경우로 나누어 夫婦間에 차별을 두었던 것을 夫婦平等하게 相續順位를 고쳐 被相續人의 配偶者는 被相續人의 直系卑屬과 同順位로 共同相續人이 되고, 直系卑屬이 없을 때에는 被相續人의 直系尊屬과 同順位로 共同相續人이 되며, 그 相續人이 없는 때에는 單獨相續人이 되게 하였다. 또한 離婚 후의 配偶者(주로 여성)를 보호하기 위한 離婚配偶者의 財産分割請求權을 신설하여 夫婦共同生活 중 형성한 財産의 分割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民法의 女性關聯 條項이 相續稅法에 반영된 것을 보자. 먼저 1950년에 공포되어 시행되어온 相續稅法은 民法의 영향을 받아 1960년 稅法을 改正하여 配偶者控除制度를 도입하여 1961년부터 施行하였다. 그리고 1977년과 1989년의 民法 改正으로 상속세법에서 同順位 相續人인 直系卑屬의 相續分이 균등해졌다. 즉 長男, 次男과 未婚女, 既婚女의 구분이 없는 均分相續主義가 채택되었다. 相續稅法상의 配偶者法定相續分이 直系尊·卑屬보다 50% 加算되고, 被相續人의 配偶者는 被相續人의 直系尊·卑屬과 同順位의 共同相續人이 되었으며, 配偶者控除額이 지속적으로 上向 調整되었다.

政府는 1990년대 들어와서 相續·贈與稅制를 개편하면서 土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⁶⁶⁾의 평가시 公示地價의 적용으로 財産價額이 상당폭으로 현실화됨에 따라 相續稅 配偶者控除 등을 비롯해 각종 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특히 配偶者控除를 대폭 상향 조

66) 相續財産의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不動産이 전체 相續財産의 85~90%, 金融資産이 7~15%, 其他資産이 3~5%를 차지하고 있다(1990~1994).

정하고 配偶者控除의 산정시에 結婚年數를 고려한 점은 女性の 社會的·經濟的 地位 向上을 반영하고⁶⁷⁾, 配偶者의 財産形成寄與度를 감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⁶⁸⁾.

이처럼 民法에서의 兩性平等의 精神을 구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상속세법에서 配偶者의 財産形成寄與度를 감안한 규정을 도입하게끔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속에서 女性界를 중심으로⁶⁹⁾ 配偶者의 相續·贈與分에 대한 全額控除 要求가 점점증하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산과세형 국가의 경우 相續稅制의 기본흐름이 현재의 垂直的(父子間 移動) 및 水平的 移動(夫婦間 移動)에 대해서 모두 과세하는 混合體系에서 垂直的 移動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體系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점과 相應한다고 할 수 있다.

나. 配偶者 全額控除가 時機尙早인 理由

이상과 같은 일련의 배우자공제 확대의 움직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 勢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현실여건의 미비가 配偶者의 相續·贈與分에 대한 全額控除 要求의 수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첫째, 現行 制度下에서는 配偶者控除分이 ‘協議分割’ 過程을 통해서 상속세 납부시 財産의 名目上 分割과 다른 分割이 사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大法院 判例에서는 합법적이라고 판시받고 있다. 現行 相續登記制度에선 共同相續人이 相續財産을 協議分割함

67) 1990년도 세법개정안.

68) 1993년도 세법개정안.

69) 相續·贈與稅와 相關한 女性界의 主張을 요약하면 첫째, 生存配偶者가 相續하는 재산에 대해 相續稅를 폐지하고 둘째, 이혼시 分割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贈與稅를 課稅하지 않으며 셋째, 婚姻生活중의 配偶者間의 贈與에 대한 控除範圍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한 夫婦共有財産인 相續財産에 대해 과세하는 現行 相續稅法은 여성을 法律上 및 經濟的 無能力者로 보는 조치이며, 이는 改正家族法의 基本精神에 위배되며 특히 憲法上의 兩性平等의 原則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이다(崔 洸(1993), p. 212).

에 있어 共同相續人 중 1인이 자기의 法定相續分(固有의 相續分)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同 超過取得분에 대하여 贈與稅가 부과되지 않는다⁷⁰⁾. 또 共同相續人間의 法定持분에 따른 相續登記 後, 協議分割에 따른 更正登記 시에도 贈與稅가 부과되지 않는다⁷¹⁾. 이것은 현행 제도하에서 協議分割 過程을 통하여 富가 아무런 稅負擔없이 다음 世代로 이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현재의 일반적인 相續慣行에 의하면 相續財産의 分割과 被相續人의 負債에 대한 辨濟는 상속개시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課稅官廳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事後管理를 해야 하는데 現行 稅務行政 執行體制面에서 보면 어려움이 많다. 특히 動産(金融資産 등)에 대한 財産分割 여부 확인은 실무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⁷²⁾.

셋째, 우리나라의 配偶者控除額이 主要國과의 비교에서 보듯이 낮지 않으며, 국가간 所得水準의 차이를 고려하면 더욱 낮다고 할 수 없다.

넷째, 課稅人員의 21%가 決定稅額의 90%를 부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配偶者의 相續·贈與分の 全額控除에 따른 惠澤의 대부분이 高額資産家에게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表 2-4-4〉 참조). 이는 女權 尊重이라는 명분이 高額資産家 계층의 稅負擔 輕減에 이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0) 大法院 判例(大法院 1986.11.25 宣告, 86누505 판결 및 大法院 1993.3.9 宣告, 92누18481 판결 등) 및 相續稅法 基本通則(基本通則 93-2-29-2)이 규정하고 있다.

71) 大法院 判例은 協議分割에 의하여 共同相續人 중 1인이 高유의 相續分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分割의 效果는 相續開始 時에 소급하므로 이는 相續開始 當時에 被相續人으로부터 직접 承繼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共同相續人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同 超過取得분에 대하여 贈與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72) 韓相國(1994), p. 19.

〈表 2-4-4〉 相續財産 課稅現況(1995)

(單位: 名, 萬, %)

	계	1억 이하	1~5억	5~10억	10~50억	50억 초과
과세인원	3,464 (100)	377 (10.9)	1,701 (49.1)	647 (18.7)	634 (18.3)	105 (3.0)
결정세액	8,811 (100)	8 (0.1)	458 (5.2)	405 (4.6)	2,664 (30.2)	5,275 (59.9)

資料: 財政經濟院.

다섯째,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점하는 토지에는 地價仰騰에 기인한 資本利得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配偶者相續分을 모두 부부 노력의 共同產物로 보아 全額控除하는 것은 論理的으로도 맞지 않다.

여섯째, 英國과 美國의 社會與件 및 相續慣行은 우리의 그것과 차이가 크다.

일곱째, 最高稅率 50%가 없어진 상황에서 배우자공제 확대는 상속세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

다. 配偶者 控除의 理論的 根據

앞에서 논의된 일련의 문제점을 논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배우자 공제의 이론적 근거를 夫婦共同財産의 持分 分割論과 1世代 1回 課稅原則의 두 측면에서 살펴본다.

1) 夫婦共同財産의 持分 分割論

이는 夫婦를 하나의 社會·經濟的 單位로 보고 또 配偶者間 財産 移轉을 結婚중에 共同努力으로 축적한 共同財産의 持分 分割로 認識하여 相續稅 免除의 根據를 부여하는 理論이다. 즉 하나의 社會·經濟的 單位인 夫婦가 婚姻中에 공동노력으로 形成, 蓄積한 財産은 夫婦 중 누구의 名義로 되어 있든간에 실질적으로는 夫婦의 共有이며 배우자는 潛在的 持分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配偶者 一方(남편)의 사망으로 他方(부인)이 상속하는 재산은 이러한 潛在的 持分을 顯在化하여 分割하는 것이므로 相續稅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理論이다⁷³⁾.

結婚 후 形成·蓄積한 재산이 配偶者의 공헌이나 부부의 상호협력에 의해서 형성된 共同財産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配偶者間 財産移轉인 상속 및 증여가 다른 사람들간의 相續 및 贈與와 다르다는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現行 民法은 夫婦別算制를 채택하여 부부의 일방이 결혼전부터 소유하던 재산 및 혼인기간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特有財産으로 하고 있지만 피상속인 남편명의의 재산에 대한 相續稅法上 寄與分⁷⁴⁾ 인정과 이혼급부의 청구 등에서 부인의 寄與分이 포함되어 있다는 法律的構成을 취하고 있으므로 配偶者控除의 논리적 근거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

또 전통적인 논리이긴 하지만 配偶者間 財産移轉에 대한 상속과세가 生存配偶者의 物的基礎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物的基礎 確保 차원에서 配偶者 持分을 인정해온 것이 配偶者控除의 한 가지 논거라고 할 수 있다.

2) 1세대 1회 課稅 原則

相續稅는 재산이 한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無償移轉될 때 과세되는 稅目이다. 夫婦는 대부분 同一 世代에 속하므로 配偶者 일방이 사망할 때 相續稅를 과세하고 生存配偶者가 사망할 때 또 課稅한다면 同一 世代 二回 課稅가 된다. 따라서 同一 世代에 속하는 配偶者間 財産의 無償移轉을 免除시켜야 한다는 理論이다. 生存配偶者도 가까운 장

73) 崔明根(1990), pp. 83~84, p. 115.

74) 寄與分이란 共同相續人 중에서 被相續人 재산의 維持 또는 增加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몫이며, 共同相續人間의 협의나 家庭法院의 仲裁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寄與分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被相續人의 財産價額에서 遺贈價額을 공제한 金額을 넘지 못한다.

래에 사망하므로 이때 國家는 免除해 준 稅額을 회복할 수 있다⁷⁵⁾.

現行 우리나라의 世代省略 移轉課稅와 美國의 世代省略 移轉稅는 1세대 1회 課稅原則을 벗어나는 상속사례를 응징하는 의미에서 割増稅率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들 制度는 1세대 1회 課稅 原則에 충실하고자 한 立法事例라고 할 수 있다.

3. 改善方案

가. 第1案

結婚年數 1년에 대해 허용하는 年間限度額을 3천만원 정도로 引上한다. 제안 이유는 세 부담 분포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 방안이 中規模 以下の 資產을 남기는 가족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줄여주기 때문이다. 現行 遺産課稅型이 유지되고 民法上的 協議分割 制度가 존재하며 配偶者 相續財產에 대한 稅務當局의 事後管理 行政이 일정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한 全額控除의 허용은 명분과 달리 실질에 있어 합법적인 상속세 脫漏를 확대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한 法定相續分 控除도 전액공제에 비하면 이같은 마이너스 효과는 작지만 유사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나. 第2案

上限額과 下限額을 설정한 法定相續分 控除 방식을 도입한다. 이 제안의 경우 第1案에 비해 세 부담 분포의 변화라는 점에서 열위에 있지만, 장기적인 방향에서 배우자공제를 배우자 상속분의 全額控除로 이행시켜 가기 위한 前段階로서 도입을 검토해 볼만하다. 문

75) 崔明根(1990), pp. 83~84.

제는 이 방안의 경우 단기적으로 새로운 배우자공제를 이용한 節稅, 避稅 行爲에 따라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實現된 資本 利得에 대해 적절하게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이다.

4. 檢 討

우리 사회의 富의 偏在을 감안할 때 配偶者控除의 확대로 高額 資産家 階層의 相續稅 負擔이 크게 낮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相續稅 課稅類型이 遺産課稅型이므로 配偶者控除를 확대시키고 가능하면 배우자 유산몫을 全額 非課稅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遺産’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財産이라는 의미인데, 그 동안 配偶者의 財産形成 寄與에 따른 지분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피상속인 名義 財産이면 이를 모두 상속세 課稅對象에 포함시켜온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의 경우 ‘協議分割’이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慣行이 生存配偶者 유산에 대한 相續課稅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配偶者控除의 확대조치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第 2 節 시뮬레이션을 통한 配偶者 相續控除 制度 改編效果 分析

1. 問題의 提起

配偶者間에 행해지는 富의 移轉은 크게 보아 死後移轉인 相續 및 遺贈과 生前移轉인 贈與로 이루어진다. 이들 무상이전 행위에 대해

相續·贈與稅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또 과세의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놓고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배우자간의 상속·증여에 대해 수십년간의 논의를 거듭하던 끝에 1世代 1回 課稅 原則을 중시하여 이미 비과세로 전환한 바 있다.

선진국 과세체계의 개편에 따른 영향과 국내의 각 분야에서의 女權의 급진장으로 인해 상속세 배우자공제제도의 근본적인 改正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같은 주장은 당연히 여성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 출생률이 낮아지고 女性의 社會的進出이 활발해지면서 그 동안 여성에 불리하게 되어 있던 경제·사회적 각종 법률이 하나 둘씩 개선되어 오고 있다. 이미 1977년에 民法의 家族法(親族·相續法) 개정으로 자녀들이 性, 出生順, 既婚·未婚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상속받는 이른바 均分相續의 원칙이 천명되었고, 배우자의 유산몫이 일본보다 후하게 배정되는 등 女性에 대한 불평등 조항이 상당분 시정되었다. 이로 인해 相續稅法 등 관련법규들이 순차적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時流에 힘입어 여성계는 상속세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먼저 주목한 것은 배우자 상속공제와 배우자 증여 공제이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남편을 死別한 女性 配偶者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두 공제가 허용하는 금액을 대폭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그 동안 배우자 상속공제는 1989년에 기존의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인상되고, 1991년에는 1억원 + 결혼연수 × 6백만원으로, 또 1994년에는 현행 수준인 1억원 + 결혼연수 × 1천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같은 인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계를 중심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더욱 인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配偶者가 받는 遺産 全額을 非課稅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配偶者 遺産을 夫婦間의 富의 移轉으로 보지 않고 배우자가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視角에 입각하여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이미 오래전에 배우자 상속 유산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수십년간의 논의를 거친 후 英國이 먼저 配偶者間의 相續·贈與에 대해 과세하지 않게 되었고 美國도 1982년부터 非課稅로 전환하였다.

2. 研究方法과 利用資料

앞 節에서 우리는 배우자공제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同 制度를 서둘러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진단한 바 있으며, 또 장기적으로 協議分割 問題의 해결 등 여건이 성숙되면 配偶者控除制度를 미국, 영국과 같은 全額控除 方式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本節에서는 사회여건의 변화 등으로 배우자공제제도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바람직한 改編方向을 모색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波及效果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논의되었지만 現行 配偶者控除의 개편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配偶者에게 배분되는 遺産의 全額控除, 둘째는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에 대한 全額控除, 셋째는 現行 配偶者控除의 틀을 유지하면서 年間限度額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들 세 방안은 相續에 따른 稅負擔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共通性을 지닌다.

분석에 이용한 資料는 1986년 이후 相續이 개시되어 1995년 말 이전에 相續稅額이 결정된 1,966건의 相續稅 賦課資料이다. 전체 자료는 2,265건의 표본으로 구성된 相續稅 課稅 實態資料 중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기재사항간의 不一致가 보이는 표본, 또 결혼연수가 조사되어 있지 않은 표본, 유산가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표본, 기재사항의 오류가 인정되는 표본과 特異値로 판정되는 표본을 제거하고 남은 1,966건의 표본이다. 이는 같은해 부과액이 결정된 3,464건의 57%에 해당되며 결정세액으로 보면 全 決定稅額의 98%에 상당하는 규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課稅價額(상속재산과 사전증여 합산분의 합계액)이 누락된 표본이 6건, 배우자공제와 관련해 기입된 結婚年數와 계산된 결혼연수가 불일치하는 표본이 10건, 1991년 이전 자료로 結婚年數가 누락되어 있는 표본이 185건, 그리고 유산가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표본이 6건이다. 기재사항의 오류 등으로 특이하게 높거나 낮은 값을 지니는 표본이 92건이다.

結婚年數가 누락된 표본을 제거한 것은 분석작업에서 결혼연수가 필수적인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분석결과에의 왜곡효과가 우려되지만 이들 표본의 분포가 유산가액별로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에 왜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記載事項의 誤謬 등으로 특이하게 높거나 낮은 값을 보이는 표본을 찾아내는 기준으로 相續稅負擔率(상속세액/유산가액, 유산가액은 과세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값)이 같은 유산가액 그룹의 $\mu - 2\sigma \leq$ 표본치 $\leq \mu + 2\sigma$ (μ 는 평균, σ 는 표준편차) 범위를 이용하였다⁷⁶⁾. 이들의 경우 個別標本을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는

76) 상속세 부담률의 경우 단기상속 면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등 控除가 同 부담률을 차이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특히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배우자공제이므로 우리는 표본을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구별하여 상속세 부담률을 구하고 이들 값이 같은 유산가액 계급 내에서 정규분포를 보인다고 가정한다. 이는 상속재산이나 유산가액의 경우 계급구간 내(특히 100억원 초과)에서 편차가 클 수 있으나 세부담률의 경우 논리적으로 큰 편차를 지닐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바 상당수에 있어 記載誤謬나 計算誤謬 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들 표본을 제거한 것이 분석결과의 信賴度를 낮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分析結果

분석결과가 <表 2-4-5>부터 <表 2-4-9>까지와 [圖 2-4-1]부터 [圖 2-4-5]까지에 정리되어 있다. <表 2-4-5>는 配偶者控除制度 變更 前의 遺産價額 階層別 相續稅 負擔率과 稅負擔分布를 나타내고 <表 2-4-6>은 配偶者控除制度의 變更前後의 稅收 변화를 보여준다. <表 2-4-6>에 제시된 당초 算出稅額은 配偶者控除制度 變更 前의 算出稅額이다.

配偶者控除制度의 변경이 가져올 것으로 豫想되는 效果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稅收⁷⁷⁾ : 全額控除가 허용되면 相續稅 稅收는 40.9%가 감소하여 法定相續分控除(1)의 17.7%, 年間限度額 引上(3천만원)의 18.8%보다 훨씬 큰 稅收減少가 발생한다. 물론 이상의 세수감소 비율은 고려가능한 최대규모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97년의 상속세 부과시 개정된 배우자 공제율이 적용되는 사례는 1997년에 상속이 개시되는 사례로 한정되어 전체 부과전

77) 1980년대 중반 이후 상속세제 개편은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지가 상승과 같은 외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어 줄 경우, 줄어든 상속세수만큼 다른 세목에서 보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역진성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78) 이는 결정세액의 對 상속재산(가령 토지)의 時價(혹은 기준시가) 비율인 實效稅率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우리의 경우 토지나 건물의 대부분이 時價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고려한 실효세율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정의한 상속세 부담률보다 낮게 나온다.

수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 상속재산 중 일부가 수년 혹은 수십년 후에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착될 것을 고려하면 一定期間 이후 稅收減少 규모는 개정 초기보다 감소폭이 낮아질 것이다(〈表 2-4-6〉 참조).

2. 相續稅 負擔率⁷⁸⁾ : 全額控除가 허용되면 配偶者가 있는 가족의 경우 相續稅負擔率이 거의 모든 階層(5億원 초과 10億원 이하 제외)에서 2분의 1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法定相續分控除(1)의 경우에도 모든 계층에서 相續稅 負擔率이 낮아지고 있다. 전액공제와 달리 法定相續分控除(1)에서 3분위(유산가액 기준 7億원 이하)까지의 상속세부담률이 零(0)이거나 零(0)에 가까운 것은 배우자 공제액의 下限이 5억원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간 한도액 인상(3천萬원)의 경우 낮은 遺産價額 階層일수록 稅負擔率의 경감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⁹⁾. 50億원 초과 100億원 이하 계층의 경우에는 稅負擔率의 경감이 12.9%, 100億원 초과 계층에서 稅負擔率의 경감이 5.5%에 머물고 있다(〈表 2-4-5〉, 〈表 2-4-7〉, 〈表 2-4-8〉 참조).
3. 階層別 稅負擔 分布 : 全額控除가 허용되면 유산가액이 20億원 초과 100億원 이하의 증상류 계층의 稅負擔이 줄어드는 형태의 稅負擔 分布의 양상을 보이고 法定相續分控除(1)의

79) 연간한도액 인상의 경우 1991년 이전의 상속개시 표본의 경우 결혼연수에 따른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처리방법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즉 이들에게 적용되던 정액공제제도를 결혼연수 방식으로 변경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배우자공제 방식의 차이로 인해 비교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제도변경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에 있으므로, 정액공제가 적용되던 1991년 이전에까지 결혼연수 방식을 가정하여 발생하는 차등효과를 전액공제 및 법정상속분공제를 가정하여 발생하는 차등효과와 비교하는 것은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는 100億원 초과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 계층의 稅負擔이 줄어든다. 年間限度額 인상(3천萬원)의 경우에는 50億원 이하 계층의 세부담이 줄고 50億원 초과 계층만이 稅負擔이 늘어나 세 가지 방안 중 가장 바람직한 負擔分布 변화를 보인다(〈表 2-4-5〉, 〈表 2-4-7〉, 〈表 2-4-8〉참조), [圖 2-4-2] 참조).

4. 相續稅 負擔率의 경우 配偶者가 없는 가족의 稅負擔率이 配偶者가 있는 가족의 세부담률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全額控除에 비해 法定相續分控除의 경우 최고 고액자산가 계층인 10분위에서 격차가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다([圖 2-4-1], [圖 2-4-3], [圖 2-4-4] 참조).
5. 法定相續分控除(1)의 배우자공제 上限額을 15億원으로 낮추고 下限額을 3億원으로 낮춘 법정상속분공제(2)에 대한 분석 결과가 〈表 2-4-9〉와 [圖 2-4-5]에 제시되어 있다. 〈表 2-4-9〉는 相續稅 負擔率과 稅負擔分布를 나타내고 [圖 2-4-5]는 법정상속분공제(1)과 법정상속분공제(2)의 부담분포를 비교하고 있다. 먼저 稅收減少는 (2)의 경우가 (1)에 비해 낮은 10.5% 수준(상속 개시연도 세율 적용시)이다. 그리고 相續稅 負擔率은 (1)보다 약간 높고 세부담분포는 20億원 이하 및 50億원 초과 100億원 이하 계층에서 (1)보다 높게 나오지만 [圖 2-4-5]에서 보듯 부담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법정상속분 공제 체계하에서 배우자공제액의 상한액 및 하한액을 조정하는 것은 세수감소를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세부담분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6. 이상의 논의를 綜合하면 法定相續分控除(1)은 첫째 세수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전액공제보다 훨씬 작고 연간한도액

인상(3천만원)보다 약간 작다. 둘째 세 부담분포 변화에 있어 전액공제와 달리 낮은 유산가액 계층의 세 부담을 낮추어 주지만 최고자산가 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의 세 부담을 낮추어 주는 약점이 있다. 즉 연간한도액 인상(3천만원)의 경우 50억원 이하 계층의 세 부담을 낮추어 주지만 50억원 초과 계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변화를 가져온다.

위에 논의된 세 부담분포의 변화를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이 [圖 2-4-2]에 제시된 相續稅 負擔分布이다. 전액공제와 법정상속분 공제(1)에 비해 연간한도액 인상(3천만원)이 누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相續稅 改編의 큰 방향이 일정재산 이하의 遺産價額 階層에 대한 相續稅 負擔을 낮추어 주고 相續課稅를 통한 富의 分散效果를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⁸⁰⁾ 우리의 相續稅制 改편방안은 年間 限度額 引上을 중심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는 생존 배우자의 유산에 대한 寄與分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향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上限額과 下限額을 설정한 法定相續分控除는 全額控除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책으로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는 次

80) 相續稅 改編의 基本的인 方向에 대한 논의는 本 報告書의 第2部 第1章 참조. 또 相續稅의 경제학적 고찰과 관련하여 상속세에 대한 세 가지 視點을 정리해 본다. 첫째 자산분배 촉진 기능을 지닌 독립적인 稅로서의 상속세, 둘째 상속·증여분을 소득이나 소비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나 支出稅 등 基幹稅 틀 내의 일부로서의 상속세, 셋째 應益稅 성격의 相續稅가 그것이다. 셋째 視點은 年金 등의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큰 移轉所得을 받는 계층으로 상속재산을 남기는 이들에게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지우고, 징수된 상속세수를 상속인이 속하는 노령자 그룹의 연금급부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이른바 상속·증여라는 世代間 移轉을 社會化하는 사례이다. 우리는 첫째 視點이 오늘의 우리에게 적합한 상속세 기능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셋째 視點에 근거한 상속세 과세강화 주장이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本 報告書의 第1部 第2章 참조.

善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檢討와 將來의 課題

여기서 본 시뮬레이션 분석이 지닌 限界點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의 분석은 앞에서 논의된 바 있는 協議分割에 따른 相續稅 回避問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協議分割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이용가능한 정보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全額控除나 法定相續分 控除로 인해 거액의 배우자 상속재산이 발생할 경우 生存配偶者가 일정 기간 후 사망시 그 유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相續稅額과 이로 인한 稅負擔分布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相續樣態의 변화, 國稅行政의 개선에 따른 事後管理 강화, 그리고 지금까지보다 월등히 큰 配偶者 財產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생존배우자에 대한 상속과세가 지금까지처럼 유명무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推論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에선 이 推論을 계량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유는 현 시점에서 이들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推論에 의한 계량화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점에서 우리의 분석결과는 제도 변경 후 수년간의 상속세 세수규모를 예상하고 세부담 분포를 예상하는 자료로는 힘을 지니지만 장기적인 稅收變化와 稅負擔 분포에 대한 전망에는 制約點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한계는 制度變更에 따른 移行期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 수반되는 보편적인 문제로 일정기간후 생존배우자가 사망기에 접어들어 사망자 패턴이 定常狀態를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表 2-4-5〉 階層別 相續稅 負擔率과 稅負擔 分布(相續開始年度 適用률)

(單位: %)

계층별	유 산 가 액 ¹⁾	표본분포 ²⁾			부 담 륜 ³⁾		세 부 담 분 포 ⁴⁾		
		a	b	a+b	a	b	분포(A)	분포(B)	분포(C)
1	3억원 이하	13.3	23.4	36.7	6.3	6.5	0.1	0.0	0.1
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8	6.0	10.8	12.9	12.0	0.3	0.2	0.2
3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	1.6	10.0	11.6	17.3	3.5	0.2	0.2	0.2
4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	9.4	10.9	21.0	7.2	0.4	0.4	0.4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1	14.2	16.3	30.8	16.0	1.5	1.4	1.6
6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0.6	4.7	5.3	39.7	30.2	4.4	4.3	4.6
7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0.1	2.5	2.6	41.3	36.3	7.3	7.2	7.4
8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0.1	0.9	1.0	43.6	39.4	10.1	10.2	10.3
9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0.4	2.4	2.8	46.2	45.1	18.3	18.3	18.3
10	100억원 초과	0.3	1.7	2.0	47.4	48.9	57.4	57.9	56.8
		24.8	75.2	100.0					

註: 1) 유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그리고 장례비용 등을 차감한 값

2) 표본분포 및 부담률에 있어 a는 배우자가 없는 표본, b는 배우자가 있는 표본

3) 부담률은 각 표본의 산출세액/유산가액

4) 세부담분포는 분포(A)가 상속개시 연도별 륜을 적용한 사례, 분포(B)가 다른 값은 동일하고 세율로 1995년도 세율을 적용한 사례, 분포(C)는 다른 값은 동일하고 세율로 1996년도 세율을 적용한 사례

資料: 韓國租稅研究院.

〈表 2-4-6〉 配偶者 控除制度 變更에 따른 稅收變化

(單位：億圓，%)

	전액공제 ¹⁾			법정상속분공제(1) ²⁾			연간한도액 인상 ³⁾								
	A	B	C	A	B	C	(1)			(2)			(3)		
							A	B	C	A	B	C	A	B	C
당초 산출세액	(A)8,651			(B)8,230			(C)6,959								
조정후 산출세액(1)	5,109	4,807	4,156	7,120	6,754	5,727	7,616	7,232	6,065	7,022	6,669	5,574	6,174	5,864	4,880
1가족 감세액 평균	1.80	1.74	1.43	0.78	0.75	0.63	0.53	0.51	0.45	0.83	0.79	0.70	1.26	1.20	1.06
감액 합계	3,542	3,423	2,803	1,532	1,476	1,232	1,036	998	894	1,629	1,561	1,385	2,478	2,366	2,079
	40.9	41.6	40.3	17.7	17.9	17.7	12.0	12.1	12.8	18.8	19.0	19.9	28.6	28.7	29.9

註：A, B, C의 구별은 〈表 2-4-5〉의註 4) 참조.

1) 전액공제는 전 유산가액의 1/2이 배우자 공제로 허용되는 경우를 가정.

2) 법정상속분공제(1)은 계산된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5억원 미달시 법정상속분을 5억원으로 인정하고, 또 同 법정상속분이 30억원 초과시 법정상속분을 30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3) 연간 한도액 인상은 결혼연수 1년당 허용금액이 (1) 2천만원 (2) 3천만원 (3) 5천만원

資料：韓國租稅研究院.

〈表 2-4-7〉 階層別 相續稅 負擔率과 稅負擔 分布(全額控除, 法定相續分控除(1))

(單位: %)

계층별	진액공제					법정상속분공제(1)				
	부담률		세부담분포			부담률		세부담분포		
	a	b	분포(A)	분포(B)	분포(C)	a	b	분포(A)	분포(B)	분포(C)
1	6.3	1.9	0.1	0.0	0.1	6.3	0.0	0.0	0.0	0.0
2	12.9	5.2	0.3	0.2	0.3	12.9	0.0	0.2	0.1	0.1
3	17.8	3.5	0.3	0.3	0.4	17.8	0.1	0.1	0.1	0.1
4	22.1	5.1	0.6	0.6	0.7	22.1	2.9	0.3	0.3	0.4
5	31.8	8.9	1.7	1.6	1.9	31.8	12.7	1.5	1.5	1.8
6	40.4	14.1	4.2	4.2	4.7	40.4	23.1	4.2	4.2	4.6
7	42.0	17.1	6.1	6.0	6.6	42.0	27.2	6.5	6.5	6.8
8	44.3	18.9	8.9	9.0	9.4	44.3	30.6	9.4	9.5	9.8
9	46.5	22.1	17.7	17.7	17.7	46.5	33.2	16.8	16.7	16.7
10	47.6	24.0	60.2	60.3	58.4	47.6	41.1	61.0	61.2	59.8

註: 〈表 2-4-5〉의 註 참조. 계층별은 유산가액 기준으로 10분위 계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
 資料: 韓國租稅研究院.

〈表 2-4-8〉 階層別 相續稅 負擔率과 稅負擔 分布(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單位: %)

계 층 별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부 담 률		세 부 담 분 포			부 담 률		세 부 담 분 포			부 담 률		세 부 담 분 포		
	a	b	분포(A)	분포(B)	분포(C)	a	b	분포(A)	분포(B)	분포(C)	a	b	분포(A)	분포(B)	분포(C)
1	6.3	0.0	0.0	0.0	0.0	6.3	0.0	0.0	0.0	0.0	6.3	0.0	0.0	0.0	0.0
2	12.9	0.1	0.1	0.1	0.1	12.9	0.0	0.1	0.1	0.1	12.9	0.0	0.2	0.1	0.2
3	17.8	0.2	0.1	0.1	0.1	17.8	0.1	0.1	0.1	0.1	17.8	0.0	0.1	0.1	0.1
4	22.1	1.0	0.2	0.2	0.2	22.1	0.5	0.2	0.2	0.2	22.1	0.3	0.2	0.2	0.2
5	31.8	7.1	0.9	0.9	1.1	31.8	3.3	0.7	0.6	0.8	31.8	0.9	0.5	0.5	0.5
6	40.4	22.7	3.7	3.7	4.1	40.0	15.8	3.0	3.0	3.3	40.4	7.1	1.9	1.9	2.1
7	42.0	31.2	6.7	6.7	7.0	42.0	26.0	5.9	5.9	6.3	42.0	16.4	4.3	4.2	4.6
8	44.3	35.0	9.6	9.7	9.9	44.3	30.7	9.0	9.1	9.3	44.3	21.9	7.4	7.5	7.8
9	46.5	42.2	18.5	18.5	18.5	46.5	39.5	18.6	18.5	18.5	46.5	34.2	18.4	18.4	18.5
10	47.6	47.5	60.0	60.1	59.0	47.6	46.3	62.4	62.5	61.3	47.6	43.8	67.0	67.1	65.9

註: 〈表 2-4-5〉의 註 참조. 계층별은 유산가액 기준으로 10분위 계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
資料: 韓國租稅研究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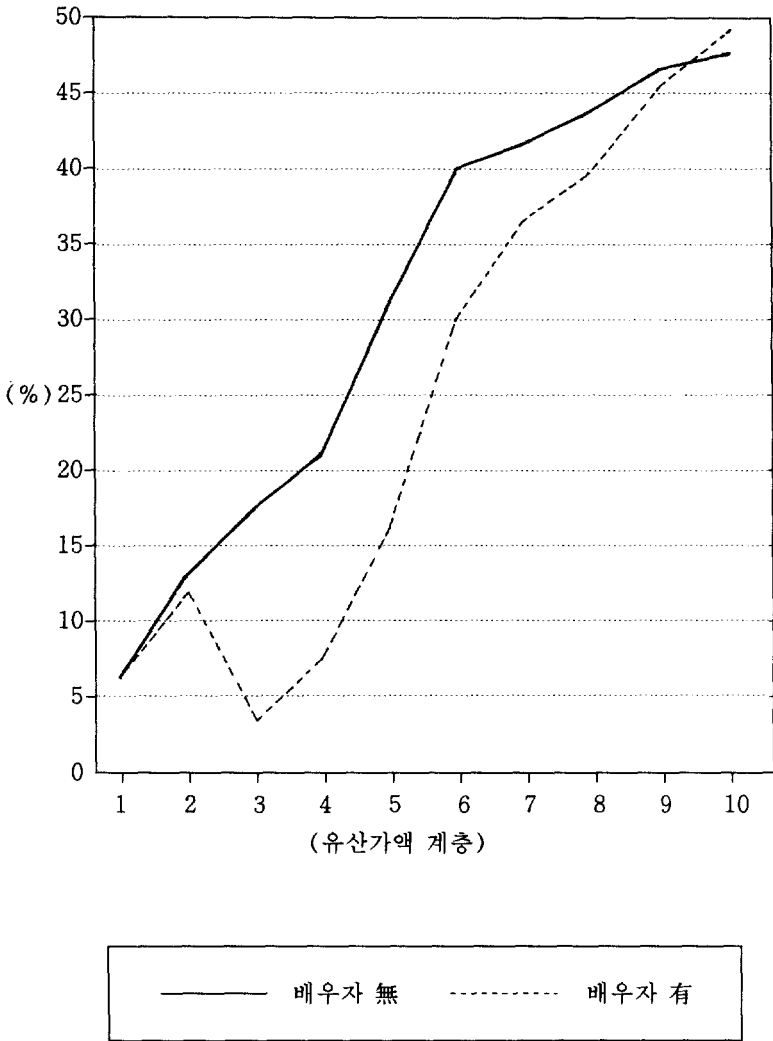
〈表 2-4-9〉 階層別 相續稅 負擔率과 稅負擔 分布(法定相續分控除(2))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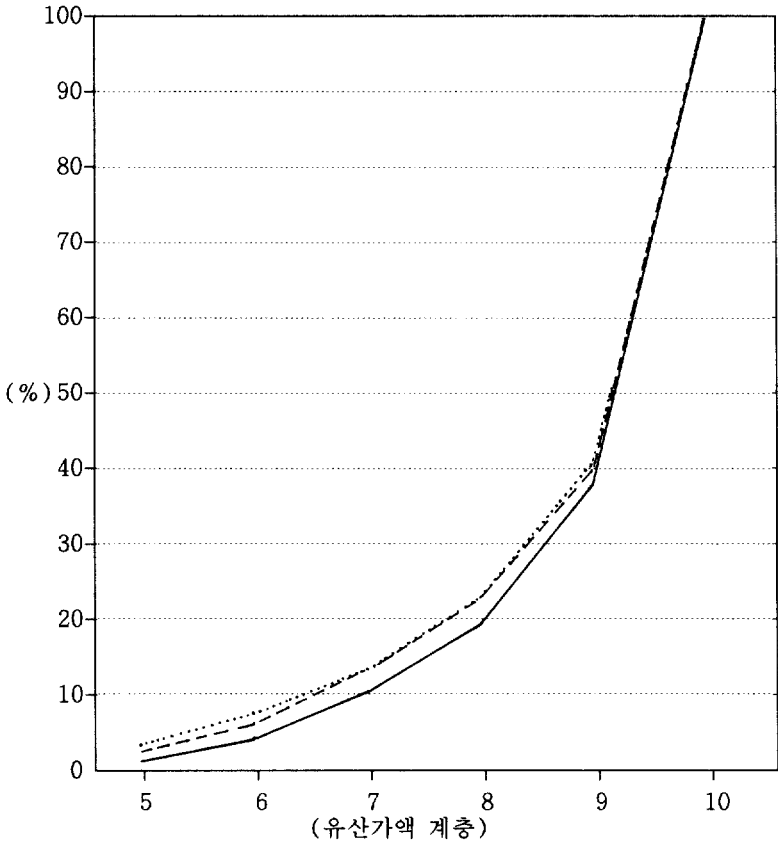
계층별	법정상속분공제(2)				
	부담률		세부담분포		
	a	b	분포(A)	분포(B)	분포(C)
1	6.3	0.0	0.0	0.0	0.0
2	12.9	0.6	0.2	0.1	0.1
3	17.8	3.4	0.2	0.2	0.2
4	22.1	8.23	0.6	0.5	0.6
5	31.8	15.5	1.6	1.6	1.9
6	40.4	23.6	4.0	4.0	4.4
7	42.0	27.8	6.2	6.2	6.5
8	44.3	31.1	9.0	9.1	9.3
9	46.5	37.3	17.5	17.4	17.4
10	47.6	45.1	60.7	60.9	59.5

註：법정상속분공제(2)는 계산된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3억원에 미달시 법정상속분을 3억원으로 인정하고, 또 同 법정상속분이 20억원을 초과시 법정상속분을 20억원으로 제한하는 공제를 말한다.

[圖 2-4-1] 配偶者 有無別 相續稅 負擔率(相續開始年度 適用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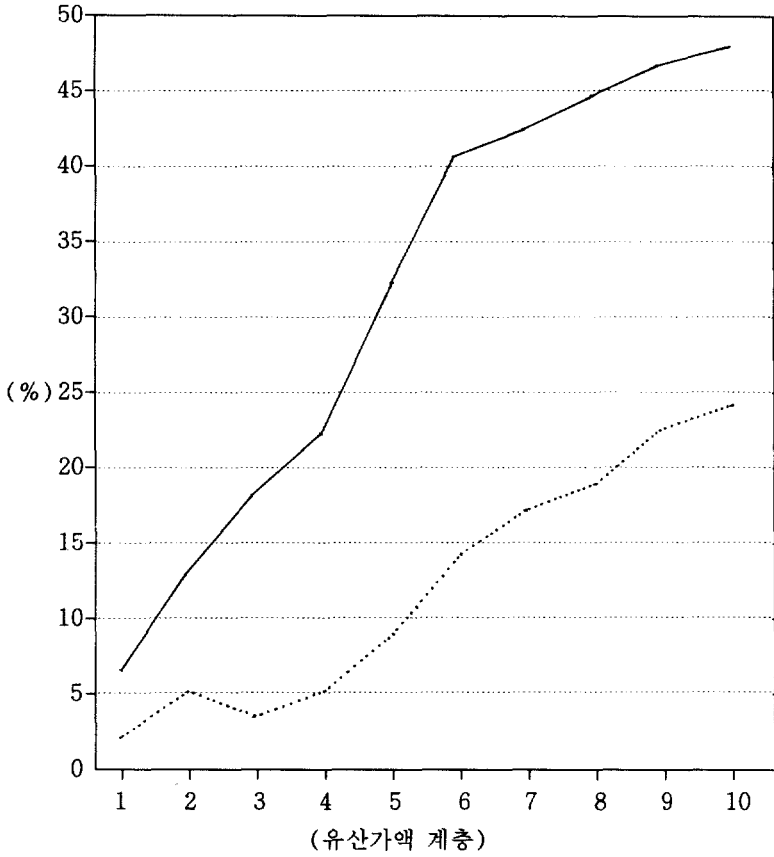


[圖 2-4-2] 相續稅負擔分布(3천만원, 全額控除, 法定相續分控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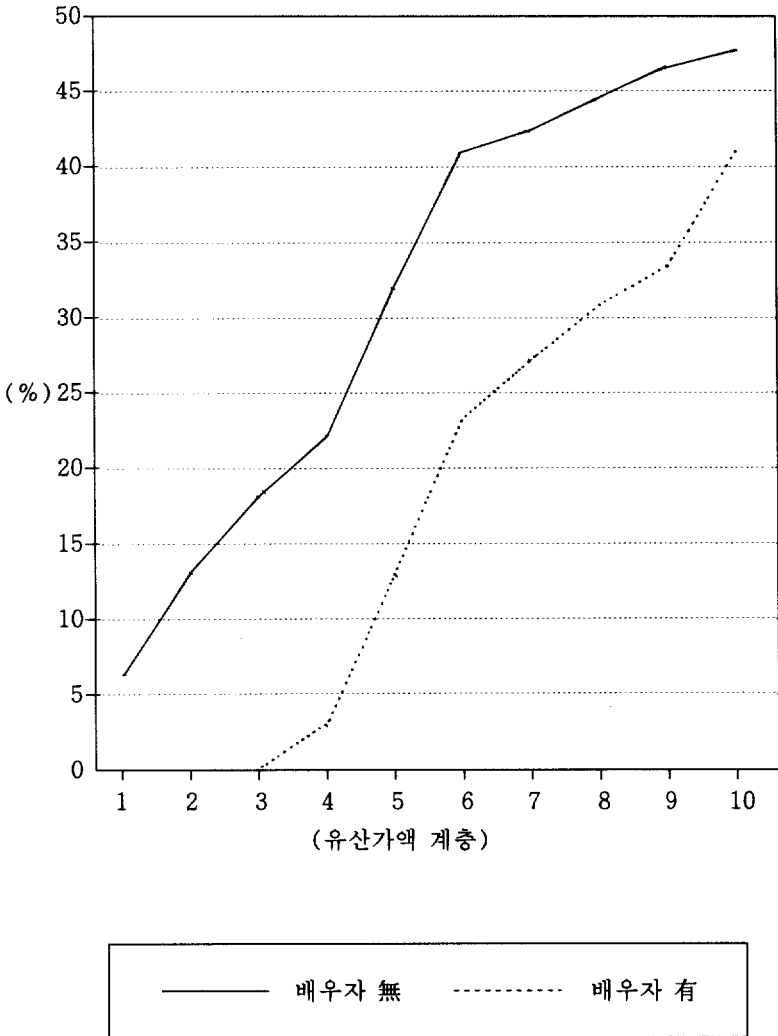
3천만원
 전액공제
 법정상속분공제(1)

[圖 2-4-3] 配偶者 有無別 相續稅 負擔率(全額控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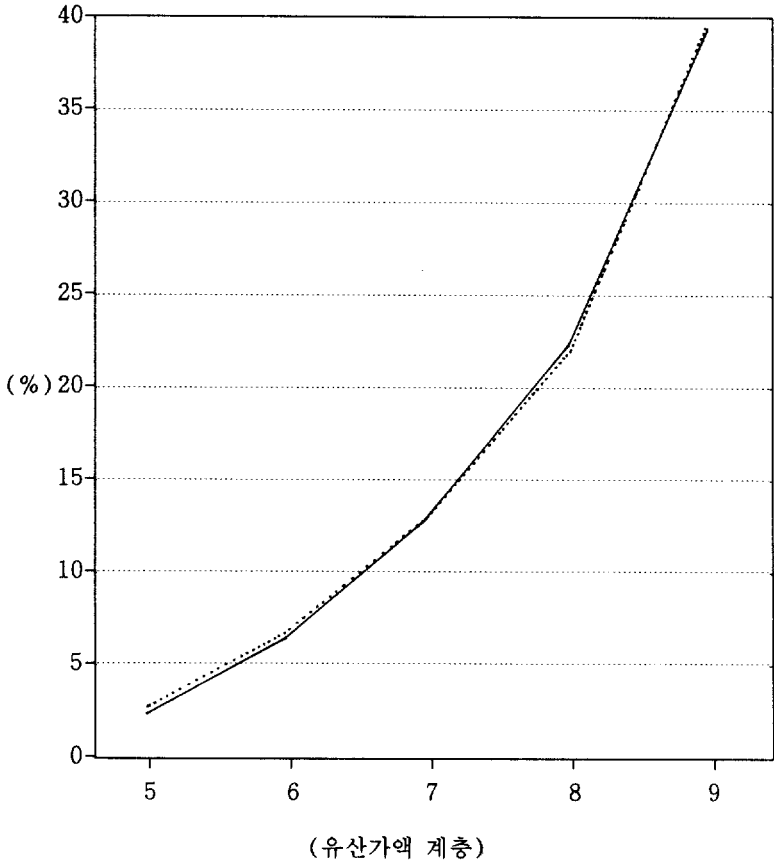


———— 배우자 無 ······ 배우자 有

[圖 2-4-4] 配偶者 有無別 相續稅 負擔率(法定相續分控除(1))



[圖 2-4-5] 相續稅負擔分布(法定相續分控除(1), 法定相續分控除(2))



법정상속분공제(1)

 법정상속분공제(2)

5. 要約 및 政策示唆點

本書에서는 相續稅 配偶者控除制度의 現況을 國際間 比較와 理論的 推論을 통해 검토한 다음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몇 가지 配偶者控除制度 改편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상의 比較·檢討와 分析을 통해 얻은 結論은 다음과 같다. 國際間 比較와 論理的인 推論에 입각해 분석해 본 결과 1996년 현재의 우리나라의 相續稅 配偶者控除制度는 生存配偶者 및 其他 相續人에게 무거운 稅負擔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서둘러 同 制度를 改正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現行 遺產課稅型이 계속 유지되고, 民法에 입각한 協議分割制度가 존재하며 또한 配偶者 相續財産에 대한 稅務當局의 事後管理 行政이 일정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한 全額控除나 法定相續分控除의 허용이 時機尙早라는 것이다.

한편 中長期的인 改編方向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改編方案에 대해 그 波及效果를 分析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中期的인 配偶者控除制度의 改편방향은 結婚年數 1년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 年間限度額을 引上시키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改編方向이라는 점이다. 근거는 세 부담분포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 방안이 中規模 이하의 자산을 남기는 가족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줄여주기 때문이다.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해 가는 가운데 女性界를 중심으로 配偶者의 相續·贈與分에 대한 全額控除 要求가 점증해 오고 있다. 이들 주장의 논리는 재산의 형성이 夫부공동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유산의 夫婦共同財産說로 요약될 수 있으며, 同 主張은 一國의 富의 形成過程을 度外視하고 論理的인 측면에만 주목할 경우 說得力을 지닌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주장은 原則的인 主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

는 本稿의 結論의 根據가 되는 사실을 정리한다.

1. 현행 제도하에서는 協議分割을 통해서 아무런 稅負擔이 없이 富가 다음 世代로 이전될 수 있다. 따라서 僞裝分割防止策이 미비된 가운데 配偶者 몫의 相續·贈與分을 全額控除한다면 이는 相續稅 回避의 길을 넓혀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2. 1995년의 都市勤勞者家口 年平均所得이 2,293萬원인 점과 생존배우자의 餘命을 고려할 때 현행 配偶者控除額은 낮은 수준이 아니다. 配偶者控除의 限度額을 主要國과 비교해 보면 全額控除 方式을 채택하고 있는 美國과 英國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부분공제 方式을 채택하는 기타 국가보다 높다.
3. 蓄積된 富의 상당 부분은 夫婦 努力의 共同產物이기보다 社會發展이나 地價仰騰에 기인하고 있다.
4. 동일한 稅收減少를 가져오는 개편방안 중 全額控除가 高額資產家族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주는 데 비해, 年間 限度額 引上은 中規模 이하의 자산을 남기는 家族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준다.
5. 외형상 配偶者 相續分의 全額控除는 生存配偶者가 사망할 때까지의 課稅移延措置이지만 生存配偶者가 상속받은 유산을 처분해 버리거나 移延期間중 原本이 소진될 우려도 크므로 相續稅의 稅收 감소는 필연적이다. 단기적으로는 42%, 장기적으로는 21%의 稅收減少가 예상된다.

장기적인 추진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配偶者 相續財產에 대한 全額控除의 허용을 위해 필요한 여건의 정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現在の 協議分割制度和 相續登記制度下에서는 遺產의 僞裝分割이 가능하므로 事後管理와 관련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생존배우자가 金融機關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인출시 國稅廳에 통보하여 金融資產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制度를 도입하는 등 相續받은 財產의 事後管理體制를 확립시켜 나

가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本 研究의 發展과 관련하여 補完해야 할 課題 두 가지를 지적하여 장래의 研究課題로 삼는다. 먼저 英國, 美國 등 우리보다 앞서 배우자 유산몫을 全額控除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 配偶者 遺産 몫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또 이들 生存配偶者가 일정기간 후 死亡時 課稅實績이 어떠한지를 조사하는 작업이 고려될 수 있다. 다음은 이같은 西歐의 遺産配分과 課稅實態가 우리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검토하여 우리가 채택한 단순화 假定的 現實的 妥當性을 檢證하고 이를 수정하는 작업이다.

第 3 節 配偶者 贈與控除

1. 現 況

우리나라의 경우 5년 동안에 대해 5천萬원+(結婚年數×500萬원) 만큼을 허용하고 있다. 結婚年數가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이다. 이것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結婚年數가 고려되기 시작한 것과 동일한 시점이다. 1991년 이전에는 定額으로 1972년부터 1990년까지는 150萬원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1991년부터 1993년까지 1,500萬원+(100萬원×結婚年數), 1994년부터 1995년까지는 3천萬원+(300萬원×結婚年數)이었다.

주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美國과 英國은 全額控除이고, 日本은 基礎控除 60萬円(약 440만원) 외에 婚姻期間 20년 이상인 부부에 대해 평생에 1회 住宅資金 마련과 관련한 증여에 대해 2千萬円을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다. 獨逸은 25萬마르크(1억 2,5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고 프랑스는 33萬프랑(5,280만원)을 공제해 준다. 獨逸과 프랑스의 경우 配偶者 相續控除와 한도금이 동일하다.

2. 問題點

현행 배우자증여공제제도는 배우자 상속공제제도보다 너그럽게 되어 있어 贈與를 誘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贈與控除額이 結婚年數로 계산되고 5년이라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5년 간격으로 증여를 反復할 경우 30여년 동안에 배우자 상속공제보다 큰 배우자 贈與控除를 허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증여공제 가능금액은 결혼연수 5년에 7,500萬원이므로 30년 동안에 6회 증여를 할 경우 4억 5천만원의 증여가 가능하다. 이는 30년 결혼연수를 지닌 배우자의 상속공제액이 4억 6천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절대치에서 조금 작지만 현재가치로 따지면 월등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改善方案

가. 第1案

5년간 概算控除水準(5億원)을 공제해 준다. 이것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法定相續持分(30億원 한도 내)으로 확대되어 非課稅되는 것과 형평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5년간에 5億원을 공제해주면 30년간에 30億원을 공제해주는 셈이 된다. 또 결혼연수가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寄與度を 측정하는 유일한 바로미터가 아니므로 결혼연수 적용기준을 배제하려는 발상이다. 즉 現行 制度는 결혼연수 30년인 부부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5년간에 2억원 정도라고 보는 데 비해, 결혼연수 2년인 부부에 대해서는 동 기여도가 5년간에 6천만원 정도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규정은 논리적으로 보아 모호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나. 第2案

현행 률을 유지하되 結婚年數 1年當 공제금액과 기초금액을 확대시킨다. 즉 5년간에 1億원+(結婚年數×2천萬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준다. 이것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준해 배우자에 대한 財産形成 壽與度가 결혼생활 지속연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30년 동안에 이용 가능한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배우자상속공제 금액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자는 것이다. 결혼연수가 30년인 부부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이 12億원이라고 할 경우, 5년에 2億원의 배우자 증여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것도 배우자 증여를 우대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4. 檢 討

위에서 검토한 배우자증여공제는 第1案이든 第2案이든 모두 현재의 配偶者 贈與控除額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을 허용해 주는 것은 틀림없다. 또 改正案에서 제시된 금액은 일본의 허용한도액이나 프랑스, 독일의 허용 한도액에 비해서도 월등히 큰 값이다. 이들 국가는 遺産取得型 과세를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우리의 경우 상속과 달리 증여는 受贈者가 納稅義務者이므로 증여세 체계는 유산취득형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같은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배우자 贈與控除額이 지나치게 크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우리의 배우자 증여공제액은 정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증여가 상속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

첫째, 증여는 상속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자산의 移轉일 뿐으로 다르게 규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일정 간격을 두고 행해지는 증여가 한 시점에 행해지는 상속에 비

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끔 稅制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控除制度에만 한정할 경우 현행 우리의 배우자증여공제제도가 이에 해당된다(1996년도 현재, 세율에 있어선 증여가 상속에 비해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증여공제를 상속공제와 공제액 및 세율에 있어 동일하게 처리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제도도 기본적으로 이 주장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증여는 통상의 상속과 달리 事前 計劃에 의해 증여자와 수증자의 생전에 행해지는 資本의 移轉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도입의 기본 취지인 所得·資産의 再分配(의도적인 節稅·避稅 포함) 및 勤勞意慾의 鼓吹에 비추어 볼 때 증여는 상속에 비해 엄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얻어진다. 日本의 사례가 이 주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물론 최근의 상속은 과거와 달리 被相續人 혹은 상속인간의 암묵적인 계약에 의해 행해지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등 사망에 따른 단순한 資本移轉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여에 비하면 사전의 계획이나 계약에 의해 상속이 행해지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증여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贈與者가 아니고 受贈者라는 점에서 상속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증여세를 국제비교할 경우 비교대상은 증여자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英國, 美國이 아니라, 수증자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日本, 獨逸, 프랑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는 배우자 증여에 대해 엄하게 과세하고 있다. 즉 우리의 경우 유산과세형이라는 큰 틀이 영국·미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장기적으로 英·美가 취하는 정책방향과 동일한 보조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두 국가는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점에서 우리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改正案은 증여를 상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결

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一定期間의 증여액 합계액이 한 차례의 상속액과 同----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稅率體系가 통합됨으로써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증여를 통한 節稅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증여와 상속을 中立的으로 다룬다는 명분은 결과적으로 증여 優待稅制를 탄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제적으로 볼 때 贈與優待 稅制가 贈與抑制 稅制에 비해 반드시 나쁜 세제라고 할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즉 상속·증여세의 도입취지에서 보면 증여우대 세제가 자산 재분배를 저해하고 稅收 결손을 늘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資本 所有權이 분산되어 젊은 세대의 資本 所有權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가용 재원의 규모가 증대될 경우 經濟의 生産性이 증가하여 所得稅, 法人稅, 附加價值稅 등이 증수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설사 증여우대 세제로의 개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경제의 활력을 沮害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한 판단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나 가능할 것이다.

第 4 節 基礎控除, 人的控除, 物的控除의 單純化

1. 現 況

가. 基礎控除

1994년부터 1億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과거의 공제 수준은 1983년 이후 1千萬원, 1991년 이후 6千萬원이었다.

나. 人的控除

배우자 공제를 제외한 인적공제로 子女控除, 未成年者控除, 年老者控除, 障礙者控除가 있다(<表 2-4-10>참조).

다. 物的控除

물적공제제도의 이용현황(1995)을 보면 다음과 같다. 課稅人員 3,464명(100%) 중 住宅控除가 2,172명(62.7%), 農地·草地·山林地控除가 345명(10%), 山林控除 3명, 家業相續控除가 4명이다. <表 2-4-10>에 제시되어 있듯이 물적공제는 주택공제 등 7종이 있으며 이용실적은 住宅控除를 제외하면 비교적 낮은 편이다.

<表 2-4-10> 우리나라의 相續稅 控除制度 概要

	항 목	공 제 내 용	한 도
基礎控除		• 1억원	
人 的 控 除 (4종)	- 자녀공제	• 1인당 2천만원(2인 한도)	4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300만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료자공제	• 1인당 3천만원(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자)	
	- 장애자공제	• 300만원×75세까지의 잔여연수	
物 的 控 除 (7종)	- 주택공제 (일반공제) (추가공제)	• 상속재산 중 주택 1채 • 3대 이상 대물림주택 및 5년 이상 동거분양 주택 가액의 90% 공제	1억원
	- 농지	• 9천평 이내	
	- 초지	• 4만 5천평 이내	
	- 산림지	• 9만평 이내	
	- 어선	• 20t 미만 이내	
	- 어장	• 3만평 이내	
	- 기업상속공제	• 5년 이상 계속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공제	
山林相續 控除		• 5년 이상 조림한 산림전액공제	없음
營農·營漁 相續人控除		• 1억원 추가공제	
林業後繼者		• 2억원 추가공제	

2. 問題點

가. 基礎控除

1994년의 상향조정 후 시간의 경과로 기초공제액 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또 기초공제액이 一般人과 家業相續人, 營農·營漁·林業 相續人을 구별하지 않고 無差別하게 적용되는 반면 ‘상속인공제’ 규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공제관련 규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

나. 人的控除

成年인 자녀에 대한 공제가 필요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未成年者 控除는 1년당 허용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扶養費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지 의심스럽다. 다만 子女控除가 정액으로 허용되므로 부족액이 커버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자녀공제의 적용대상을 2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出產을 장려해야 할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면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年老者控除는 연로자의 상태에 따른 구분없이 定額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거동이 불편한 연로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로 분류되어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同 年老者가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重症患者⁸¹⁾’로 분류되지 아니할 경우 현행 年老者控除로는 실질적인 扶養費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物的控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住宅控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물적공제가 10% 이하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현행 공제한도액이 1989년 이후 1億원으로 제한되어 물적공제 도입의 당초 취지를

8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주택공제를 통한 住居生活 保障, 住宅相續 追加控除를 통한 父母奉養의 促進, 農地控除를 통한 營農 保障 등의 입법 취지가 거의 퇴색된 상태에 있다.

또 해당 공제대상 자산의 保有 有無에 따라 과세상 불공평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농업, 어업, 임업 등을 일반 家業에 비해 월등히 우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明確한 根據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런데 세법은 林業 相續人을 최대로 우대하고 그 다음으로 營農, 營漁 상속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반 가업의 경우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의 20%를 공제해 주지만 1억원 한도에 묶여 실질적으로 優待措置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라. 一部 金融資産 控除

금융자산 중 保險과 實物信託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保險金의 경우 1,500萬원, 實物信託의 경우 700萬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의해 다른 금융자산과 보험 및 실물신탁이 差別的으로 처리됨으로써 衡平性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물론 크기는 알 수 없지만 金融資産의 配分에 왜곡을 안겨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지 말자는 것도 형평성에 비추어 공평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금융자산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금융자산의 경우 노출도가 높고(주식과 일부 비실명자산 정도가 예외) 노출된 자산은 時價가 명확히 드러나 있거나 時價를 유추하기가 쉬어 과세대상 재산이 거의 대부분 課稅網에 포착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경우 노출도는 높지만 상속재산 평가시 基準時價가 적용되어 時價의 70~80% 수준으로 평가되는 반면 금융자산은 額面金額으로 평가되므로 노출된 재산만을 두고 볼 경우 금융자

산이 부동산에 비해 不利한 待遇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문제는 양 자산의 露出度에 있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양 자산 공히 노출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實名制 實施 以後 양 자산의 노출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특히 부동산의 노출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평가액에 초점을 맞추어 일괄적인 ‘金融資産控除’를 허용하는 문제는 금융자산의 노출도라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는 점에서 再考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에 있어 실명화가 유보된 자산이 株式 등 일부 자산이고 장기적으로 이들 자산에 대해서도 실명제가 확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 금융자산공제 허용이 거꾸로 이들 자산에 대한 실명제 확대 실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同 공제의 신설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증여재산의 종류별 점유비(1995년 과세가액 기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는 不動産 87.2%, 金融資産 9.6%, 其他資産 3.8%이고 증여세는 不動産 87.7%, 金融資産 11.2%, 其他資産 1.1%이다.

3. 改善方案

가. 基礎控除

기존의 1億원을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 差等適用한다. 먼저 一般人은 2億원, 營農·營漁 상속인은 3億원, 林業 後繼者는 4億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처럼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다종다양한 物的控除를 廢止하고 기존의 물적공제 허용한도인 1億원을 基礎控除에 흡수하여 제도를 單純化하자는 것이다.

나. 人的控除

1) 子女控除

20세 이상의 성인 자녀에 대한 子女控除를 폐지한다. 다만 취학중인 성인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2천萬원의 자녀공제를 허용한다.

또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선 1인당 2千萬원에서 3千萬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2인까지 허용하고 있는 控除對象 子女數 규정을 폐지한다.

제안 이유는 성인자녀에 대해 자녀공제를 인정해 주는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취학중인 성년자녀의 경우 教育費用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養育費, 教育費의 상승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해 주자는 것이다. 자녀수 제한을 철폐하자는 것은 낮은 出產率로 장래의 생산연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가 이같은 人口構造의 歪曲을 장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녀공제 이용 실적(1995)은 3,524명으로 사망자 1인당 1.02명 꼴이다.

2) 年老者控除

연로자공제는 연로자의 健康狀態에 따라 差等化하여 건강한 연로자는 연 3千萬원, 看病看護가 필요한 연로자로 障礙者로 분류되기 어려운 경우 75세까지의 잔존여명 연수에 3百萬원을 곱한 값을 추가적으로 공제해준다.

연로자공제의 이용인원(1995)은 359명이다.

3) 未成年者控除

미성년자공제는 현행 300萬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를 500萬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로 상향조정한다. 미성년자공제 이용인원(1995)은 1,020명이다.

4) 障者控除

현행 300萬원×75세까지의 잔여연수를 500萬원×75세까지의 잔여연수로 상향조정한다. 제안 이유는 장애자공제금액이 장애자의 일상생활을 현실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1991년부터 도입되었으나 도입 후 6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생계비 인상을 고려하여 上向調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장애자공제 이용인원(1995)은 78명이다.

다. 物的控除

물적공제는 폐지하고 해당 금액은 基礎控除의 擴大와 一括控除制度의 신규 도입을 통해 조정한다.

물적공제를 廢止하자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기존의 물적공제는 도입 취지가 상속인의 物的 基礎財産을 유지시켜 주자는 것이었는데 한도액의 설정으로 도입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게 되었다. 둘째 노부모부양 촉진 등 물적공제를 통한 一連의 誘引政策이 한도액에 묶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셋째 주택공제의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주택가액이 높아져 주택공제가 사실상 고액의 基礎控除 性格을 지니게 되었다. 넷째 상속인별로 物的控除 대상자산의 보유 유무에 따라 납세액이 크게 달라져 水平的 不公平이 지적될 수 있다.

라. 一括控除制度 導入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라 項目別控除(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에 一括控除額(5億원)을 選擇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概算控除와는 別途로 허용된다.

이상은 일반가족의 경우이고 同 공제액은 營農·營漁 相續人の 경우 6億원, 林業後繼者인 경우 7億원으로 높게 설정된다.

제안 이유는 配偶者의 有無, 子女의 有無와 多寡, 物的控除 許容

對象 財産의 有無에 따라 발생하는 상속가족의 稅負擔 格差를 줄여 주자는 것이다. 즉 일정금액까지 一括控除를 허용해줌으로써 이상의 문제점에 대응가능하며 세액계산 절차가 單純化된다.

일괄공제액으로 5億원을 제시한 것은 대부분의 상속가족의 경우 배우자공제를 제외하면 공제액 합계가 5億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은 一括控除를 택하도록 하고, 자녀수가 많거나 장애인이 2인 이상 있는 가족과 같이 예외적인 사례에 한해 項目別 控除를 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항목별 공제가 5億원이 되는 사례를 찾아보면 미성년자 자녀(9세, 13세)가 둘 있고 배우자가 장애인 가족의 경우, 기초공제(2億원)+자녀공제(2인×3천萬원)+미성년자공제(각각 9세, 13세인 경우 9천萬원), 장애인 공제(30년간 생존시, 1억 5천萬원)=5億원이 된다.

마. 金融資産控除制度 導入

현행 保險金과 實物信託에 대한 特別相續控除는 폐지하고 모든 금융자산의 20%를 金融資産控除로 인정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다만 한도액은 2億원으로 제한하며 상대적으로 유산규모가 작은 상속가족에 대한 세부담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1億원 이하의 금융자산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2천萬원의 공제를 인정한다. 또 최대 주주 株式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증여재산도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

제안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기존의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공제가 초래한 금융상품간 水平的인 不公平 問題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금융자산이 부동산에 비해 높게 評價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낮았던 금융자산의 保有와 금융자산 相續을 促進하기 위함이다.

한도액을 설정한 것은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 가족이 이를 惡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도액 2억원은 金融所得 綜合課稅 基準金額 4천萬원의 元金에 해당하는 4億원 상당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 2천萬원 이하의 이자소득을 지니는 가족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最大株主 株式의 경우 회사경영권 등이 포함되어 상속세 평가시 일반주식보다 10% 더 높게 割増評價되는 징벌적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세법 규정에 의해 징벌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서도 金融資産 공제를 허용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만일 이러한 주식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융자산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二重의 징벌을 가하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일면에서 징벌하고 다른 일면에서 우대하는 것은 더욱 모순된 처사이다. 따라서 최대주주 주식을 징벌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선 金融資産控除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대주주 주식을 일반주주의 주식 등 다른 여타 금융자산에 비해 37.5% 더 높게 할증평가되어 개정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稅負擔을 강요받는 셈이 된다.

여기서 ‘最大株主 株式’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의 주식을 가리킨다. 이는 현행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株主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株主로서 그와 특수관계 있는 株主가 보유하는 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주식 중 가장 많은 주주의 주식보다 크게 완화된 내용이다.

금융자산을 贈與하는 경우에는 증여시마다 일정액(5년간 5억원)이 공제되므로 20%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금융자산이 부동산에 비해 높게 평가되어 상속세 과세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보자. 단적으로 말해 금융자산 상속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 방식의 상속에 비해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속세의 경우

상당수준의 탈세와 절세행동이 시도되기 마련이고 금융자산의 경우 실명제가 시행된 현행 체계하에서조차 脫稅·節稅가 토지에 비해 불리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토지는 등기에 의해 소유자가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탈세가 어려운 반면 금융자산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과거에 비해 假·借名 등을 통한 변칙 거래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세무당국의 과세망에 포착되는 비율이 아직은 토지만큼 높지 않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고 따라서 金融資產의 상당부분은 세무당국에 드러나지 않은 형태로 家族間, 親族間에 상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결국 금융자산이 토지에 비해 상속세 과세에 있어 언제나 不利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요컨대 토지에 대한 低評價 政策이 不動產 實名制 및 ‘登記’라고 하는 제도적 요인에 의해 상속세 포탈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것은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이에 비해 金融資產이 金融實名制라고 하는 제도적 요인에 의해 相續稅 連脫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金融所得 相續控除를 신규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앞에서 말한 論理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第 5 節 贈與控除制度

1. 現 況

우리나라의 경우 直系尊卑屬間은 5년간에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허용하고 其他 親族間은 5년간에 500만원까지 허용한다. 주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表 2-4-11>과 같다.

〈表 2-4-11〉 主要國의 贈與控除

(單位：自國貨幣)

	직 계 존 비 속	기 타 친 족
미 국	1년간 1만	(좌 동)
영 국	1년간 3천	(좌 동)
독 일	10년간 9만(자녀)	10년간 3천~5만
프 랑 스	10년간 30만(자녀)	10년간 10만(형제자매)
일 본	1년간 60만	(좌 동)

2. 問題點

우리의 경우 國際比較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現行 規程은 아주 너그럽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속세 공제와의 均衡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즉 배우자상속공제와 배우자증여공제에 있어 배우자증여공제가 세계상 優待받는 형태로 되어 있는 데 비해 존비속간 증여공제는 상속공제에 비해 월등히 不利하게 되어 있는 점에서 衡平性이 문제시될 수 있다. 세율체계와 과세구간을 통합하여 상속과 증여를 무차별하게 다루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면 증여공제도 상속공제와 同---하게 다루는 것이 正當性있는 개정방향일 것이다. 물론 이상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稅率體系와 課稅區間의 統合 原則이 正當하다는 전제하에 성립한다. 가령 同 原則이 부당하다고 할 경우 상속공제와 증여공제를 일치시켜야 할 當연성은 전혀 없다.

3. 改善方案

直系尊卑屬과 其他親族의 구별없이 5년간 500萬원으로 하향조정한다.

제안 이유는 자녀에게 5년 단위로 6회, 즉 30년에 걸쳐 행하는 3천萬원의 증여에 대해서는 贈與稅를 공제해 주자는 것이다. 이는 子女控除인 3천萬원과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

未成年者에 대한 공제액을 성년자녀와 구별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성년자와 성년자를 구별하는 규정을 철폐한다. 일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사전증여를 통한 相續·贈與稅 回避手段으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성년자녀에 대한 증여가 事前贈與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구별은 실익이 약하면서 법규정만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증여세 회피 금융상품인 他益信託 등을 이용한 사전증여는 빈도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성년자, 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이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第 6 節 相續後 發生하는 特別損失 控除

1. 現 況

相續開始 後부터 상속세 신고서 제출기한 前까지 발생한 損失에 대한 공제제도가 없다. 美國과 日本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화재 등으로 상속재산에 損失이 발생하고, 保險 등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2. 問題點

상속재산이 신고기한 내에 멸실·훼손되어 가치가 현저히 下落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없다. 이같은 사례는 극히 例外的으로 발생하겠지만 실제 발생했을 경우 납세능력이 없어

졌거나 약해진 납세자의 세부담을 緩和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3. 改善方案

特別損失控除制度를 新設한다. 사망후 6월인 신고기한 내에 화재·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상속재산의 손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控除한다. 다만, 保險金에 의해 보상되거나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提案 理由는 상속재산이 신고기한 내에 멸실·훼손되어 현저히 가치가 下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第 7 節 短期再相續控除制度

1. 現 況

우리의 경우 상속이 완료된 후 7년 이내에 再相續이 발생할 경우 100% 控除, 10년 이내의 재상속일 경우에는 70% 控除가 허용된다. 공제율의 폭이 크기 때문에 재상속기간과 공제율간의 相互聯關性이 미흡하다.

특정 자연인의 사망을 과세요건으로 상속세가 부과될 때, 단기간에 상속이 重複되는 경우와 장기간 동안 次回の 상속이 없는 경우를 비교한다면 양자간의 세부담에는 현저한 差異가 발생한다. 즉 동일한 재산에 대한 重複課稅로 인해서 양자간에는 현저한 상속세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를 조정해서 유족의 과중한 세부담을 방지하는 제도가 短期相續控除制度이다.

主要國의 해당 공제의 공제율이 <表 2-4-12>에 제시되어 있다.

〈表 2-4-12〉 主要國의 短期相續控除率

(單位：%)

경과연수	미 국	일 본	독 일	영 국
1년 이내		100	50	
2년 이내	100	90	45	100
3년 이내		80	40	80
4년 이내	80	70	35	60
5년 이내		60	30	40
6년 이내	60	50	25	20
7년 이내		40		
8년 이내	40	30	20	
9년 이내		20		
10년 이내	20	10	10	

2. 問題點

年數를 기준으로 면제되는 금액의 差異가 지나치게 커서 재상속 기간과 공제율과의 상호연관성이 미흡하다. 또 주요국에 비해서도 輕減額이 지나치게 크다.

3. 改善方案

年數의 경과에 따라 세부담 경감도가 완만하게 체감하는 日本의 控除率方式이 타당할 것이다. 1년 간격으로 100%에서 10%까지 10년간 매년 10%씩 遞減되는 案이 再相續期間과 控除率間의 상관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表 2-4-13〉 短期相續控除 控除率(案)

年 數	控 除 率
1년 이내	100% 공제
2년 이내	90% 공제
3년 이내	80% 공제
4년 이내	70% 공제
5년 이내	60% 공제
6년 이내	50% 공제
7년 이내	40% 공제
8년 이내	30% 공제
9년 이내	20% 공제
10년 이내	10% 공제

第 8 節 控除制度 改善方案 要約

1. 改善의 基本方向

- 1)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와 증여공제를 대폭 擴大시킨다.
- 2) 기존의 기초공제, 물적공제, 인적공제 대신 一括控除를 신설해 대부분의 상속가족이 이를 택하도록 하고 일부 가족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로 구성되는 항목별 공제를 택할 수 있도록 한다.
- 3) 물적공제는 기초공제의 확대로 代替시킨다.
- 4)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를 부분적으로 擴大 適用한다.

- 5) 금융자산 相續控除를 新設하여 實물자산과 금융자산간의 상속 재산 평가시 발생할 수 있는 不公平性を 解消한다. 따라서 기존의 보험금 및 신탁에 대한 상속공제와 증여공제는 廢止한다.
- 6) 諸控除制度의 정비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相續稅 免稅點(課稅最低限)의 경우, 漸進的인 인상을 통해 현재 약 1%(世帶單位 약 2%)인 상속세 과세대상 인원의 확대를 모색한다.

2. 檢討

配偶者 相續控除의 대폭적인 확대는 10%~15%대의 稅收減少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이들 상속재산 중 일부가 배우자의 사후에 課稅網에 포착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稅收減少가 이보다 작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協議分割制度가 제약을 받고 稅務行政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강화될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우리의 분석이 제시하고 있듯이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지닌 법정상속분 공제보다 結婚年數 1年當 年間許容金額의 인상이 보다 바람직한 代案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서 이번 개정법에 채택된 법정상속분공제는 次善策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次善策이라 함은 장기적으로 全額控除로 이행해 가야 한다면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법정상속분공제를 일정기간 시행해 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음을 지칭한다.

배우자증여공제를 상속공제에 준해 대폭 확대 개정된 것은 결과적으로 既存의 贈與 優待稅制를 그대로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되었다. 문제는 1995년 1월 이후 배우자증여공제가 크게 확대되면서 상속세가 배우자에 관해 상속보다는 증여를 우대하는 세제로 바뀐 결과, 세수 감소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기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선 명확한 전망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세율구조가 累進稅率 構造를 지녀 증여의 경우 상속에 비해 낮은 限界稅率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 과급효과를 알기 어려운 것은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이 증여 전과 증여 후에 어떻게 달리 사용되느냐 하는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日本은 배우자증여공제를 상속공제와 비교해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는 우리와 유사하게 상속공제와 증여공제를 구별하지 않고 있어 國際比較를 통해선 우리의 개정방향이 主流派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우리의 경우 ‘協議分割’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지녀 배우자가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재산이 배우자의 사망시점에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기초공제, 물적공제를 통합하고 여기에 인적공제까지를 고려해 一括控除制度를 도입한 것은 세액계산의 單純化라는 측면과 상속가족의 상속인수, 장애자의 유무, 미성년자의 유무, 보유자산의 특성 등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정이라고 판단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一括控除 金額인 5億원이 타당성을 지닌 수준이냐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다소 높게 설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다. 본시 人的控除라고 하는 제도는 도입 취지가 배우자의 유무, 자녀의 유무, 미성년자의 유무, 장애자의 유무를 따져 이를 고려해 주자는 것인데, 표준적인 상속가족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億원에 미달하여 이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속가족이 一括控除를 택한다면 인적공제제도 존립의 목적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가령 제도 존립의 목적을 자녀수가 예외적으로 많거나 장애자를 안고 있는 가족과 같은 예외적인 가족을 위한 제도로 다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子女控除를 상향조정하여 장애자공제와 일치시킨 것은 올바른 개정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기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녀공제 특히 성년자녀에 대한 공제는 취학중에 있는 자녀를 제외하면 공제의 의미가 불분명한 반면 年老者控除는 노후 부양에 필요한 경비 공제의 성격을 지니는 점에서 명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람직한 개편방향은 성년자녀에 대한 공제는 예외적으로 취학자녀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縮小시키고 미성년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현실에 맞게 上向 調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年老者의 경우 장애자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연로자공제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직계존속·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대한 공제가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보다 낮게 설정된 것은 개정에 흐르는 전반적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例外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약간 上向 調整함으로써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개시 후 발생한 特別損失 費用控除의 新設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短期再相續 控除의 경우 기존의 한계공제율이 자의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규 공제율은 이같은 자의성을 배제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相續稅 控除制度의 改編은 免稅點(課稅最低限)의 引上을 수반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면세점의 인상이 그렇지 않아도 特定 階層에 限定된 租稅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相續稅의 適用對象을 한층 縮小시킬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향후 相續稅 控除制度의 改編方向은 免稅點의 漸進的인 引上을 통해 課稅對象 人員을 늘려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第 5 章 稅率體系

第 1 節 稅率體系

1. 現況

1996년 현재 우리나라의 相續稅와 贈與稅 稅率構造는 <表 2-5-1>과 같다.

<表 2-5-1> 우리나라의 相續·贈與稅 稅率(1996)

相續稅率(區間始點의 實効稅率)		贈與稅率(區間始點의 實効稅率)	
5천만원 이하	10%(0)	2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2억 5천만원 이하	20%(10)	2천만원~1억 5천만원 이하	20%(10)
2억 5천만원~5억 5천만원 이하	30%(18)	1억 5천만원~3억원 이하	30%(18.7)
5억 5천만원 초과	40%(24.5)	3억원 초과	40%(24.3)
(4단계)		(4단계)	

주요국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는 統合型이 일반적이다. 구별하여 살펴보면 상속·증여세율을 統合型으로 운영하는 국가에는 美國, 獨逸, 프랑스 등이 있고 分離型으로 운영하는 국가에는 日本과 英國이 있다. 분리형 국가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다. 즉 日本은 증여세율이 상속세율보다 엄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英國의 경우 이와 반대로 상속세율이 보다 엄하게 적용되고 있다.

英國의 특이한 사례는 역사적인 추세에 그 원인이 있다. 즉 英國

에선 오랫동안 증여세를 과세해오지 않던 것을 과세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妥協의 產物로 낮은 세율로 징수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정책을 두고 영국의 정책당국이 인위적으로 증여를 상속보다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主要國의 相續稅 및 贈與稅의 稅率과 課稅區間은 다음과 같다.

〈表 2-5-2〉 主要國의 相續·贈與稅 稅率

	상 속 세	증 여 세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 18~55% (17단계) • 최고계급구간 300만달러(약 23억4천만원) 초과 55% 	(좌 동)
영 국	40%	20%
독 일 (배우자· 자녀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 3~35% (25단계) • 최고계급구간 1억마르크(약 508억원) 초과 35% 	(좌 동)
프랑스 (배우자 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 5~40% (7단계) • 최고계급구간 1,120만프랑(약 17억원) 초과 40% 	(좌 동)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 10~70% (9단계) • 최고계급구간 20억円(약 146억원) 초과 70% • * 4억円(약 29억) 이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 10~70% (13단계) • 최고계급구간 1억円(약 7억 3천만) 초과 70%

2. 問題點

1) 현행 세율체계는 상속인 3인(배우자+자녀 2인) 기준 7億원

까지 세부담을 全額 免除해 주는 반면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급격히 높아지는 稅負擔을 요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2) 과세대상 유산이 中規模(10억원 이하)인 가족에 대해 높은 稅負擔을 요구하는 반면 同 遺産이 大規模(50억원 이상)인 가족을 優待하고 있다.
- 3) 1994년 말의 세제개정시 10億원 초과 유산에 적용되는 50% 세율을 폐지한 것은 상속세수를 15% 정도 減少시킨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4) 또 이같은 최고세율 구조 변화는 稅制改革 때마다 주장되어 온 ‘所有集中 緩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방향이다.
- 5) 相續稅率 체계는 所得稅率 체계에 비해 엄한 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즉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이 7千萬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5千萬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받고 2千萬원은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것을 소득세와 비교해 보면 자산의 收益率을 10%로 볼 경우 소득은 700萬원이 되어 10%의 세율을 적용받아 자산에 비해 稅負擔이 낮다. 다시 말해 상속 재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稅負擔을 하고 있는 셈이다.
- 6) 세율과 과세구간을 통합할 경우 세제는 單純化되겠지만 개정 전에 비해 증여를 促進하는 세제로 바뀐다. 따라서 이를 노리는 증여를 다소라도 막기 위해선 증여재산의 상속재산에의 算入期間을 현행 5년에서 10년 혹은 그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단 이때는 증여자산의 가치 증감에 대해 評價를 하여 일정기준 이상을 넘은 增加나 減少를 보인 자산에 대해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3. 改善方案

1) 第1案：兩 稅率을 統合하여 稅率體系를 5단계로 조정

〈表 2-5-3〉 相續·贈與稅率 改正(案)

(單位：%)

課稅區間	稅率	平均實效稅率 ¹⁾
1억원 이하	10	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8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40	24
50억원 초과	50	36.8

註：1) 서울구간의 始點 과표에 적용되는 세율임.

本案의 제안취지는 10億원 이하의 課稅對象 遺產을 남기는 가족에 대한 稅負擔을 낮추고 50億원을 초과하는 유산을 남기는 극히 일부의 가족에 대한 稅負擔을 높여 상속이 발생하는 가족간의 富의 分配를 개선하고 中規模 이하의 遺產을 남기는 가족이 느끼는 상속세 重稅感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런데 50억원 초과시에도 세율 50%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가령 과세대상 자산이 株式 등 기업의 經營權 유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자산일 경우 40%를 최고세율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즉 50% 세율을 기업의 경영권과 관계가 약한 토지, 부동산 등의 과세대상 자산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신축적인 적용은 피상속인과 그의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과 관계없이 거액의 토지, 부동산을 남기는 자산가와 기업을 경영하다가 거액의 주식 등을 남기는 자산가를 차별화하여 과세하는 것은 검토해 볼만한 과제이다.

기대효과는 10억원 이하의 과세대상 遺産(유산총액 17億원 상당)을 남기는 가족에 대한 稅負擔을 현행보다 완화시키고 50억원(유산총액 62억원 상당)을 초과하는 유산을 남기는 가족에 대한 세 부담을 현행보다 강화시켜 상속을 받는 家族間的 富의 分配를 개선하고 中規模 유산을 남기는 가족의 重稅感을 낮추어 租稅抵抗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최고세율 구간을 100億원으로 조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니게 된다. 기타 효과 등에 있어선 50億원으로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며 상대적으로 中上流 階層의 세 부담이 50억원에 비해 낮아질 것이다.

〈表 2-5-4〉 相續·贈與稅率 改正案

(單位：%)

課稅區間	稅率	平均實效稅率 ¹⁾
1억원 이하	10	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8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40	24
50억원 초과	50	47.4

註：1) 세율구간의 始點 과표에 적용되는 세율임.

2) 第2案：相續·贈與稅의 稅率 및 課稅區間的 完全 統合

1億원 이하 10%, 5億원 이하 20%, 10億원 이하 30%, 10億원 초과 40%의 4단계 세율구조로 개편한다.

제안 이유는 相續과 贈與를 선택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贈與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공제를 포함한 控除制度를 재조정함에 있어서도 상속과 증여에 중립적인 상속세법 제정

을 염두에 두어 왔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세율과 과세구간도 兩者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 이유는 올바르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같은 개정이 상속과 증여에 中立的이라기보다 贈與優待 性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제제도의 조정으로 우대를 받은 諸贈與는 세율체계의 조정으로 다시 한번 優待를 받는 셈이 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상속세법은 간접적으로 증여를 促進하는 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굳이 상속과 증여에 中立的인 법 개정이라는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될 것이다.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증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상속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세부담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결코 무겁지 않다는 것은, 세수 감소의 마이너스 효과가 자신에게 돌아오지만 않는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개편방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당국이 稅收 缺損分을 다른 세목 등을 통해 增稅할 것을 고려하면 납세자가 이같은 贈與優待 조치를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데 있다.

과세구간의 경우 소득세 체계와 연계를 염두에 두고 정한 것이지만 내년도 이후 소득세 과세구간이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여유를 두고 설정한 값이다.

다만 向後 問題點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所得稅와 贈與稅가 동시에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대해 贈與稅 課稅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고 이 과정에서 租稅摩擦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 소득과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명확히 구분짓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 과정에서 列舉主義를 채택한 소득세와 包括主義를 채택한 증여세의 성격상 모호한 소득이 모두 贈與稅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稅負擔이 부당하게 減免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증여세 과세를 둘러싸고 물의를 빚어왔던 사례가 많았는데 이같은 마찰의 큰 원인이 높은

세부담에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낮게 그리고 폭넓게 과세가 행해질 경우 납세자의 抵抗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증여세 운영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最高稅率의 경우 50%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일부에서 주장되고 있다. 이 문제는 所得稅 稅率體系⁸²⁾와의 조화와 國際比較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의 최고세율 40%는 소득세 의존도가 높은 미국, 일본에 비하면 낮지만 直間構造가 우리와 유사한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3) 第3案：現行 課稅體系 유지하되 課稅區間 調整

〈表 2-5-5〉 우리나라의 相續·贈與稅 稅率(1996)

상속세율(실효세율)	증여세율(실효세율)
1억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10%(0)
1억원~5억원 이하 20%(10)	5천만원~2억5천만원 이하 20%(10)
5억원~10억원 이하 30%(18)	2억5천만원~5억원 이하 30%(18)
10억원 초과 40%(24.5)	5억원 초과 40%(34)
(4단계)	(4단계)

현재의 과세체계를 유지하여 贈與抑制型 稅制를 당분간 존치시키는 방안이다.

제안 이유는 所得稅와 贈與稅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만큼 兩者間의 세부담이 크게 차이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贈與稅를 상속세 세율체계에 통합시킬 경우 所得稅에 비해 증여세 세부담이 턱없이 낮아져 통상의 소득으로 분류되

82) 1996년도 소득세율 체계는 0원~1천만원 이하 10%(평균 실효세율, 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1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30%(17.5%), 8천만원 초과 40%(23.8%)이다.

지 않고 贈與所得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소득이 지금에 비해 큰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不法所得이나 贈與擬制所得 등과 같은 不勞所得에 대해 근로소득 등 통상의 소득보다 월등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衡平性에 어긋난다.

第2節 世代省略 相續·贈與에 대한 適用 稅率

1. 現 況

우리나라의 경우 1세대를 뛰어 넘어 相續·贈與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稅額의 20%를 加算하여 과세한다. 가령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父가 사망하고 孫子女가 상속 받는 경우인 代襲相續은 제외된다.

主要國의 경우 日本의 경우 1寸(等親)의 혈족(자, 부모) 및 배우자 외의 者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액의 20% 割増課稅가 시행된다. 다만, 최고세율(현행 70%)을 한도로 한다. 美國에서는 一世代 一回課稅原則에 근거해서 間接省略移轉 및 直接省略移轉을 모두 포함하는 世代省略移轉에 대해서 世代省略移轉稅를 부과하고 있다. 상속·증여재산의 합계액이 1百萬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55%로 과세한다.

世代省略移轉이란 어떤 사람이 그의 재산을 다음 世代로 無償移轉함에 있어서, 손자 또는 증손자에게 직접 贈與 또는 遺贈을 하거나 信託을 설정해서 자녀에게는 平生收益權(life-interest or estate for life)을 부여하고, 그 자녀의 사망 후에는 손자에게 殘餘權(remainder interest)을 부여하는 移轉⁸³⁾을 말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83) 崔明根(1993), p. 118.

대한 과세가 世代省略移轉稅이다. 同 稅目은 一世代 一回課稅原則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世代省略移轉에 대해서 징벌적인 차원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世代省略을 통한 無償移轉이 없었더라면 世代가 省略된 世代가 부담했을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世代省略移轉에 의해서 회피한 상속세를 추징해서 公評課稅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世代省略移轉을 통해서 이전되는 재산은 一世代 一回課稅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대부분이 直系親族 내부로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내서 富의 집중 억제라는 상속과세제도의 정책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世代省略移轉에는 신탁을 통하여 世代省略移轉하는 間接省略移轉과 祖父가 직접 손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直接省略移轉으로 구분된다.

현행 상속세법에 의하면 1세대를 뛰어 넘어 직접 相續 또는 贈與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산출된 세액의 20%를 加算하여 割増課稅하고 있다. 이는 1세대를 뛰어 넘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부담을 回避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상속받는 代襲相續의 경우는 제외된다.

2. 問題點

實事例 중에는 절세 목적으로 세대생략 과세를 시도하는 가족이 있겠지만 해당 가족 내부사정이나 기업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世代省略 상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實事例 중 어느 정도가 이같은 사례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또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經營權 維持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 상속세법에서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하여 세액의 20%를 가산하여 割増課稅하고 있지만, 이는 상속·증여세의 평균 실효세율 수준인 30%에 못미침에 따라 實效性이 떨어지고 있다.

3. 改善方案

세대省略 相續·贈與에 대하여는 30% 수준의 割増課稅를 시행한다. 30%의 근거는 이하의 분석에서 제시되고 있다.

세대생략 과세가 割増稅率을 적용받아야 할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산의 경우 保有期間에 따라 차등과세하여 長期 保有 자산에 대해 短期保有 자산보다 重課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오래되면 자산의 운용에 따른 기대수익이 그만큼 크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로 징수되지 아니한 分의 增殖分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所得稅를 보완하는 과세로서 相續稅를 규정지면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과세, 즉 장기보유 자산에 대한 重課稅 論理가 설득력을 지닌다. 세대생략 상속과세의 경우 세대省略이 이루어질 정도로 피상속인의 해당 자산보유가 장기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 논리에 따라 세대생략 상속에 대해 割増課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지닌다.

다른 하나는 1세대 1회 相續課稅 原則에 입각할 경우 세대생략 과세는 割増課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세대에 걸쳐 1회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두 기준은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重課稅의 타당성을 확보해 준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割増率이 적정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割増稅率의 適正水準을 파악하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도 간단한 식의 전개를 통해 할증세율 수준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는 수준에 그친다. 80대의 父, 50대의 子, 20대의 孫으로 구성된 고액자산가 가족을 생각해 보자. 80대의 父가 20대일

때 지닌 富를 K 라고 하고 1世代인 30년간에 걸친 富의 증식률을 r 이라고 하자. 同 富는 30년이 지나 父가 50代가 되고 子가 20代 시점이 되면 $K(1+r)$ 로 증식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 보자. 첫번째는 父가 50代 시점에서 子에게, 또 子가 50代 시점에서 孫에게 상속하는 1世代 1回 相續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두번째는 父가 80代일 때 孫인 20代에게 곧바로 상속하는 이른바 世代省略 相續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첫번째의 경우 父가 50代일 경우 납부 상속세액은 $K(1+r)t$ 이다. 여기서 t 는 상속세율이고 자산이 증식되는 기간중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상속세 납부 後 富는 子代의 30년 운용으로 子가 50代, 孫이 20대가 되는 시점에서 $K(1+r)^2(1-t)$ 로 증식되고 여기에 $K(1+r)^2(1-t)t$ 의 상속세액이 부과된다. 결국 孫이 20代인 시점에서 父와 子가 납부한 상속세액은 $K(1+r)^2 t(2-t)$ 로 평가된다. 상속세액의 現在價値를 구하는 데 사용한 할인율은 r 이다.

두번째의 경우 孫이 20대가 되는 시점에서 富는 $K(1+r)^2$ 로 증식되고 여기에 통상의 상속세율 t 가 적용되면 납부세액은 $K(1+r)^2 t$ 가 된다.

이상의 두 가지 사례에 있어 世代省略 相續이 행해지는 두번째 사례에 대해 통상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상속세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시 말해서 孫이 20대가 되는 시점에서 상속세 유효세율을 비교해 보면 첫번째는 $t(2-t)$ 인 반면 두번째는 t 가 되어 첫번째의 $1/(2-t)$ 배에 해당된다. 가령 $t=0.4(0.3)$ 라고 하면 세대생략 상속시의 세부담은 정상적인 경우 세부담의 62.5%(58.8%)수준에 멈춘다.

물론 위의 계산결과는 지극히 단순화시킨 모형에서 얻어진 결과이지만 세대생략에 대한 割增率에 대해 약간의 함의를 제공해 준다. 즉 30%~40% 정도의 할증세율이 적절한 수준이 아닐까 하는 점을 시사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실 사례 중에는 절세 목적보다는 가족내부

나 기업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세대생략 상속을 희망하는 사례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企業經營權維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割増率은 30% 전후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第3節 相續·贈與 不動産에 대한 移越課稅： 讓渡益 課稅

1. 現 況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자녀·특수관계법인 등에게 자산을 贈與한 후, 수증자가 수증일부터 「2년내」에 讓渡할 경우 贈與者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讓渡所得稅를 과세한다(不當行爲의 計算 否認). 이때 讓渡差益은 양도가액에서 贈與者의 當初 取得價額을 차감한 값이다.

主要國의 경우 먼저 日本은 상속·증여에 의해 재산이 無償移轉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시점에서 讓渡所得稅를 과세한다. 이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차감한 값이다.

상속·증여후 3년내 양도한 경우는 양도가액에서 상속·증여세액을 차감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상속·증여시의 時價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看做하여 상속·증여시점에 讓渡所得稅를 과세한다. 즉 법인(공익법인은 제외)에 대한 증여나 限定相續의 경우이다. 여기서 限定相續이라 함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사망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조건부 상속을 가리킨다.

그리고 英國에서는 1965년부터 1971년까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資本利得稅(capital transfer tax)와 相續稅를 부과하였다. 이때 산출된 자본이득세는 유산가액에서 채무 등과 같이 공제된다. 1971년부터 1986년까지는 資本利得稅만이 과세되고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았다.

2. 問題點

현재는 贈與資產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점을 贈與者 取得時點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으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크게 확대시키면서 이 규정을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까지 擴大시킬 것 인가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상한액을 지닌 법정상속분공제로 크게 확대될 경우 현행과 같이 相續時點을 取得時點으로 인정하면 배우자 공제로 분배되는 상속재산이 양도되어 資本利得이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同 所得이 非課稅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는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讓渡所得稅를 부과한다는 所得稅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⁸⁴⁾. 결국 신설되는 배우자 법정상속분공제를 통해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資本利得의 대부분이 非課稅될 가능성까지 남게 된다.

가령 상속시점에서 가급적 배우자 몫의 유산을 많이 신고해 이를 상속세 납부 후 협의분할을 통해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자식이 이를 매각할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점이 배우자의 상속시점으로 파악

84) 우리의 세법은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서까지 부분적으로 과세하는 엄격한 과세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다른 아닌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다. 상속의 유무에 관계없이 한 자산의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되어야 한다. 다만 상속이라는 이전과정을 거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를 양도차익과세액에서 차감하면 그 뿐이다. 따라서 상속을 거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배우자 상속공제분 재산의 경우, 차감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피상속인의 취득시점 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차익과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되어 讓渡所得稅를 거의 납부하지 않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상속공제 재산의 취득시점을 피상속인의 취득시점으로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일부에서 주장되고 있다. 곧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상당기간 동안 未分割되거나 이후 協議分割 등을 통해 분할되더라도 상속인 간에 僞裝分割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배우자 상속 부동산에 대해 이를 철저히 파악하여 移越課稅하는 것이 稅務行政上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칙의 준수이다. 배우자공제를 확대시키는 목적은 이를 통해 脫稅行爲를 조장시키겠다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상속세 과세원칙에 충실하고 나아가 配偶者의 厚生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 동 제도 도입의 기본 목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당국이 배우자 상속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손질해야 할 것이다. 만일 손질하지 않는다면 도입 취지는 명분으로만 남고 실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한 대규모 탈세를 방조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입 취지라는 오해를 받게 될 수 있다.

요컨대 세무행정 측면의 不備로 배우자 상속 재산에 대한 移越課稅가 어렵다면 배우자 법정상속분공제의 허용은 원점으로 되돌아가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또 법정상속분공제를 계속 추진하려면 稅務行政 體系를 재정비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3. 改善方案

가) 자녀와 특수관계인 등이 不動產을 증여받은 후 「3년내」에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의 當初

取得價額으로 看做하여(carry-over)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讓渡所得稅를 부과한다. 이는 현재 非營利法人이 출연재산을 「3년내」 양도한 경우 출연자의 當初 取得價額으로 特別附加稅(법인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나) 배우자가 不動產을 증여받은 후 「5년내」에 타인에게 讓渡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讓渡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의 當初 取得價額으로 看做하여(carry-over)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讓渡所得稅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는 배우자증여공제가 개정되어 5년내 5億원으로 확대될 경우 5億원 이하의 토지·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를 배우자가 매각하는 방법으로 讓渡所得稅를 경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不動產을 상속받은 후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이 직접 讓渡한 것으로 보아 讓渡所得稅를 부과한다⁸⁵⁾. 제안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상한액을 지닌 法定相續分 控除로 크게 확대될 경우 현행과 같이 상속시점을 取得時點으로 인정하면 배우자 공제로 분배되는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非課稅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은 배우자 상속·증여공제액의 초과분으로 간주하며 상속·증여세 부담액을 必要經費로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로 인정할 세액은 按分計算한다.

85) 이 案은 당초의 시안에 들어 있던 것인데 최종안에서 빠졌다. 당국은 이를 뺀 이유를 세무행정 체계의 不備로 돌리고 있다. 재정경제원 (1996), p. 11.

第 6 章 相續財産의 評價

第 1 節 相續財産評價의 一般原則

1. 相續財産評價의 意味

相續稅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때에 상속재산을 課稅物件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즉, 상속세란 상속재산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간에 그 상속재산이 가지고 있는 經濟的 價値를 화폐액으로 換價하여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評價하는가는 상속세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贈與稅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相續稅法 제34조의 7에 의하여 相續稅法 第9條(상속재산의 평가)가 準用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相續財産은 無償으로 이전된다는 특징 외에 자산의 양도 소득과 같이 실제로 有償으로 이전되어 실현되는 가치가 아니므로 어차피 擬制되는 가격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經濟的 價値를 客觀的으로 근접하게 찾아내는 公正한 基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의 評價가 상속재산의 客觀的 價値를 발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評價가 정확한 科學이 아니라는 사실'⁸⁶⁾을 받아들여야 한다.

86) Revenue Ruling 59~60, Sec. 3.01.

2. 時價評價의 原則

相續財産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公課 또는 債務는 相續開始 당시의 現況에 의한다. 다만, 失踪宣告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現況에 의한다.

가. 「現況」의 意味

상속재산의 加額, 公課 또는 債務는 상속개시 당시의 「現況」에 의하도록 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現況에 의한 상속재산의 加액은 그 당시의 「時價」에 의하되, 時價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種類, 規模, 去來狀況 등을 참작하여 相續稅法 施行令第5條 第2項 내지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즉 補充的 評價方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評價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規定에서 相續財産, 公課 또는 債務는 「時價」에 의해 평가한다는 原則은 제시되었으나, 法文上 그 時價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定義規定이 없다. 그 대신 相續稅法 基本通則에서, 時價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財産의 現況에 따라 不特定 多數人 間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通常 成立된다고 인정되는 價額을 말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나. 相續稅法 基本通則上 時價로 보는 範圍

時價에 관한 例示的인 規定으로서 相續稅法 基本通則에서는 時價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다만, 時價로 보는 것이 地價下落 또는 減價의 要因 등으로 價額의 變動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例外로 하며, 株式評價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時價로 보는 加額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最近의 價額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1) 상속개시일 전후 6個月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公信力 있는 감정기관의 鑑定價額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價額
- 2) 상속개시일 전후 6個月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賣買事實이 있어 그 去來價額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價額
- 3) 상속개시일 전후 6個月 내에 土地收用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補償價額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價額
- 4) 상속개시일 전후 6月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建物の 新築價額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新築價額

3. 相續稅法上 「時價」의 規定 新設

상속재산의 時價를 보다 적절히 반영하는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별로 다양하겠으나 一般的인 原則으로서 설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 例로서 현행 相續稅法 基本通則 39...9와 같은 일차적인 時價算定의 原則으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時價로 보는 경우는 재산의 현황에 따라 不特定多數人間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客觀的인 交換價値를 말하므로, 獨逸의 경우와 같이 異例的인 事情(예로서 자금의 긴급한 필요)이나 매매당사자들의 個人的 關係(예로서 친구간의 거래) 등에 의해 가격이 달라지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⁸⁷⁾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87) 한국조세연구소(1989), p. 120.

第 2 節 上場法人의 支配株式 割増評價

1. 現況 및 問題點

현행 상속세법상 支配株式에 대한 10% 割増評價는 非上場法人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上場法人과 場外登錄法人의 支配株式에 대하여는 割増評價를 적용하고 있지 아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식을 割増評價하는 취지가, 少數株主持分은 회사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데 비하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支配株式에 대하여는 통상의 주식가치 이외에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힘, 이른바 經營權 프리미엄(control premiums)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란 非上場法人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는 上場法人에 대하여도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주식의 집단, 즉 支配株主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불합리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2. 改善方案

가. 支配의 意味

株式會社를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社團性과 法人性이 뚜렷한 회사로서 株式으로 세분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사원(株主)이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出資義務만을 부담할 뿐 회사의 債務에 대하여 사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회사재산만의 책임을 지는 회사형태를 말하며⁸⁸⁾, 上場法人도 이러한 주식회사의 형태

88) 최기원(1996), p. 237.

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갖는 주식회사를 支配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것이다. 여기서 理事選任權을 통한 支配⁸⁹⁾의 의미를 살펴보자.

株式會社를 支配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단일 會社의 支配를 단순히 회사의 업무집행을 관장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회사를 누가 지배하느냐 하는 것은 法的으로 무의미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株主의 責任이 有限함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 경영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집행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만큼, 所有와 經營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會社의 經營權은 이론상 株主와 별개의 지위를 갖는 理事와 理事會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누가 회사를 관리·경영하느냐 하는 것은 따져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理事는 株主總會의 決議라는 형식을 빌려 株主들이 선임하게 되므로 株主들은 理事選任權을 가지고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會社를 支配하느냐 하는 것은 누가 株主總會의 意思決定, 특히 理事選任을 좌우할 수 있는만큼의 株式 또는 다른 수단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에 관해 어느 회사에나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제도상의 원칙, 즉 株主總會에서 理事를 선임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支配關係의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支配株主의 認識時點

少數株主持分과는 달리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支配株主라는 존재를 稅法上 어느 시점에 지배주식인 과세대상으로서 인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89) 이철송(1991), pp. 143~145.

같이 讓渡時點과 保有時點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讓渡時點에 認識하는 見解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支配株式에 대하여는 그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支配株式으로서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지배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는 단계에서 割増評價한다는 것은 상속개시 당시 架空의 利益에 대해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견해이다.

2) 保有時點에 認識하는 見解

회사를 지배하는 권리를 理事選任을 통한 支配로 이해할 때 支配株式으로서의 가치는 그 주식의 保有段階에서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개념을 구태여 양도시점에서야 인식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위의 두 가지 견해를 종합하여 볼 때 양도시점에 인식하는 견해의 기본에는 보유단계에서도 지배주식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나 지배주식으로서의 評價 問題點이 있으므로, 양도시점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확정된다는 權利義務確定主義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지배주식의 존재는 보유단계에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견해와 일치하며, 단지 보유단계에서의 지배주식 평가에 합리적인 고려가 이루어진다면 양도시점에 인식하는 견해에서 지적하는 架空利益에 대한 과세라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보유단계에서 대량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少數株主가 행사할 수 없는 회사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支配株式에 대해 少數株主持分으로서의 주식평가보다 割増評價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다. 上場法人 및 30大 企業集團의 所有構造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個人 大株主의 높은 지분율과 다수의 대규모 기업집단 형성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부의 經營權 保護政

策 등으로 인하여 大株主에 의한 獨占의 經營權 行使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上場法人 및 30代 企業集團의 所有構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上場法人의 所有構造⁹⁰⁾

우리나라 상장법인의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은 1993년 말 현재 15.0%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 통계는 기업집단에 속한 系列社 持分의 상당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주주의 영향력하에 있는 지분은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國民株를 제외한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은 1990년 18.7%, 1991년 16.4%, 1992년에는 15.9%, 1993년에는 15%로 지속적으로 減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30大 企業集團의 所有構造

30대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의 특징으로서는 첫째로 대주주의 內部 持分率이 평균 40%를 넘고 있으며, 낮은 지분율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또는 파견, 채무보증 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하여 所有와 經營面에서 모두 絶對的인 支配權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⁹¹⁾.

한편 公正去來委員會에 따르면 1996년 4월 12일을 기준으로 30大 企業集團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44.1%로 잠정 집계되었다. 內部 持分率은 재벌기업의 그룹총수 개인의 지분율에 그 친인척, 계열사 임원, 비영리법인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 그리고 계열사를 통해 확보된 지분율 등을 모두 합친 것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소유·분산이 잘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룹총수들의 系列社에 대한 지분율은 1990년 6.3%였으나 1996년에는 4.8%로 낮아져 직접적인 지배의 정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系列會社를 통한 지분율은

90) 정광선(1995), pp. 74~75.

91) 소일섭(1996), pp. 39~40.

1990년 31.3%에서 1996년에는 33.8%로 높아져 실질적인 지배력은 오히려 強化되었다⁹²⁾.

라. 支配株主의 判定에 관한 株式所有比率

주식회사 및 상장법인의 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商法, 證券去來法 등의 규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商法上 理事選任·解任에 관한 決議要件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改正 商法에서는 理事의 선임·해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理事의 選任은 株主總會의 普通決議에 속하는 사항이며, 普通決議는 商法 또는 定款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출석한 株主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商法 368 ①).

그러므로 改正 商法에 의하면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더 나아가 의결권의 과반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또한 改正 商法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持分率이 극히 낮은 주주에 의하여 회사가 지배될 우려가 있다.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 第7條 第1項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까지 議決權 없는 株式을 발행한 上場法人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분의 1을 소유하는 주주가 출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면 결의가 성립되므로 이는 결국 회사의 普通決議 議事決定이 발행주식 총수의 8분의 1(12.5%)을 가진 주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⁹³⁾.

둘째, 理事의 解任은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속하는 사항이며, 特

92) 한겨레신문(1996. 7. 5)

93) 최기원(1996), p. 557.

別決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數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數로써 하여야 한다(商法 434).

그러므로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 第7條 第1項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까지 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발행한 上場法人의 경우는 발행주식 총수의 6분의 1(약 16.7%)을 가진 주주에 의하여 特別決意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

2) 證券去來法上 主要株主의 持分率

기업을 운영하거나 그 기업에 대한 持分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 등의 內部者가 有價證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그 기업의 증권을 거래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證券去來法 第188條가 규정되었다. 證券去來法 第188條 第1項에서는 內部者의 범위에 上場法人의 임원·직원 또는 主要株主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主要株主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主要株主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事實上的 支配株主를 말한다. 이때 事實上的 支配株主라 함은 당해 법인의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株主라 하더라도 任員의 任免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株主를 말한다.

3) 公正去來法上 所有分散 優良企業集團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이하 ‘公正去來法’이라 함)에서는 大規模 企業集團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系列會社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 중 株式

所有의 分散 및 재무구조가 우량한 企業集團(所有分散 優良企業集團)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所有分散 優良企業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上場會社 중 동일인 및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8% 미만(계열회사 포함시 15% 미만)이며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즉, 公正去來法에서는 계열회사 지분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기준으로 소유분산의 우량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4) 相續稅法上 支配株主의 定義

현행 상속세법상 非上場株式을 평가하는 경우 法人稅法 施行令 第46條의2 第2項과 第3項의 규정에 의한 支配株主와 그와 特殊關係에 있는 株主가 소유하는 株式에 대하여는 10% 割増評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支配株主 등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支配株主’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정부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所有株式 合計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特殊關係에 있는 株主’라 함은 支配株主와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 ① 親族關係에 있는 者
- ② 支配株主가 法人인 경우에는 당해 法人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法人
- ③ 支配株主인 法人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法人이나 個人
- ④ 支配株主가 個人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法人
- ⑤ 支配株主와 그 親族이 理事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

을 위한 출연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非營利法人

5) 上場法人 支配株式 割増評價時 持分率

상속세법상 上場法人의 支配株式을 할증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持分率은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가능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일인, 동일인의 특수관계자 및 계열법인이 소유하는 지분율이 15% 이상이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公正去來法上 동일인 및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15% 미만인 경우에는 所有分散 優良企業으로 보아 출자총액 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우대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둘째, 改正 商法에 의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까지 議決權 없는 株式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보통결의 의결사항에 대해 이론상 12.5%의 지분율을 가진 주주에 의하여 결정되며,

셋째,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최소지분율에 관한 연구검토에 의하면⁹⁴⁾, 대주주 1인이 기업지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지분을 Cubbin-Leech(1983)의 確率的 議決權 行使模型에 의거하여 추정한 결과 주주총회에서 결의안이 대주주 1인(의결권 행사 기준으로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물론 계열사 지분율을 포함한 내부지분율 개념)의 의사대로 통과될 확률을 99%, 95%, 90%로 전제할 경우 각각 평균 19.53%, 14.84%, 12.45%로 분석된 결과를 참고할 수 있으며,

넷째, 현행 相續稅法上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식을 판정하는 기준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94) 소일섭(1996), pp. 84~85.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주식분산이 우량한 법인일수록 작은 지분율만으로써도 지배주주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상장법인의 지배주식 판정시에는 별도의 定義規定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 支配株式의 割増評價시 割増率의 결정

현행 상속세법상 上場法人의 주식평가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최종시세가액을 고려하는, 이른바 市場評價法(market approach)에 의하고 있으며, 이 시장평가법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평가액은 少數議決權의 地位가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가격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에 넣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支配株式에 대하여 시장가격법에 의한 소수의 결권의 지위가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가격을 아무런 조정없이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상장법인의 支配株式에 대해 시장가격법에 의한 평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割増評價에 관련된 外國의 立法例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財務管理論에서의 割増率

經營權을 지배할 수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으로는 ① 이사를 선임하고 경영진을 지명하는 권한 ② 보통주에 대한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권한 ③ 기업의 투자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자금조달 ④ 여유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사적 경비 지출을 결정하는 권한 ⑤ 회사를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시점을 선택할 자유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권 지배의 이익으로 말미암아 경영권 지배지위의 가치와 소수의결권 지위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크기의 차이를 추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은

經營權賣買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다.

經營權賣買에 관한 우리나라의 자료는 현실적으로 관련자료를 입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토할 수가 없으나 美國의 경우 1980년부터 1987년 사이에 이루어진 134개의 경영권매매에서 지불된 평균 프리미엄이 41.5%였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때의 프리미엄은 인수요청을 받기 5일 전 인수대상기업의 주가와 인수자가 지불한 가격간의 비율차이로 계산하고 있다⁹⁵⁾.

2) 美國의 相續稅法上 支配株式 評價

미국의 상속세법상 上場株式은 원칙적으로 時價(the fair market value per share)에 의해 평가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평가대상인 株式의 블록(the block of stock)이 너무 커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주식시세를 하락시키지 않고 처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주식인수인(underwriter) 등과 같은 場外에서 양도할 수 있는 가격이 더 정확한 가치평가가 될 수 있다고 한다⁹⁶⁾.

이러한 가정과 관련하여 「블로키지 디스카운트」(blockage discount)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동일주식을 짧은 기간 내에 양도한다면 그 양도가격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는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美國稅廳은 「블로키지 디스카운트」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매우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블로키지 디스카운트」란 假定에 불과할 뿐이며 실제로는 거의 그러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⁹⁷⁾.

「블로키지 디스카운트」에는 비정상적인 讓渡費用(예로서 주식인수인 수수료)으로서 양도금액의 2% 내지 8%와 株式價格 減少額

95) Bradford(1993), p. 148.

96) Reg. § 20. 2031~2(d).

97) Lawrence(1983), p. 86.

(market reduction)으로 구성된다고 하나, 이 주식가격 감소액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주식블록의 크기, 최근의 주식매매량에 관한 자료, 주당 가격수준, 경영권지배, 주식시장 및 산업의 동향, 주당 수익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비율은 없다⁹⁸⁾.

이러한 「블로키지 디스카운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立證責任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경험상 납세자가 美國稅廳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推定을 반복하기는 어렵다고 한다⁹⁹⁾.

3) 獨逸의 경우 支配株式評價¹⁰⁰⁾

독일 내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有價證券은 기준일의 最低賣買價額에 따라 평가한다. 기준일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 전 30일 이내의 최근의 매매가액에 의한다.

한편 1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커서 會社支配가 가능한 경우에까지 個別株式의 평가에 관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支配株式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의 株式持分이 갖는 通常의 支配價値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4) 英國의 경우

英國의 상속세법상 上場株式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最高呼價에서 最低呼價를 차감한 금액의 4분의 1을 최저호가에 가산하는 방법 또는 評價基準日의 최고 및 최저거래 시세의 單純平均方法에 의하며¹⁰¹⁾, 支配株式에 대한 割増評價制度는 없다.

참고로 英國에서는 지배주식에 대한 割引評價制度와는 다르지만, 事業相續控除(business property relief)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法人을 支配(control)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98) Lawrence(1983), pp. 87~88.

99) Lawrence(1983), p. 86.

100) 한국조세연구소(1989), pp. 121~122.

101) Timothy(1990), p. 120.

경우 50%의 事業相續控除를 규정하고 있다¹⁰²⁾. 여기서 支配란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문사항에 대해 過半數의 議決權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¹⁰³⁾.

5) 割增率

지배주식의 양도시에도 그때 그때의 현실적인 거래에서 회사 상황, 계약당사자의 판단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거래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지배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外國의 立法例를 보더라도 株式의 割增評價나 割引評價의 경우에는 통상의 주식평가액에 一定率을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인위적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하며, 上場法人의 支配株式에 대해 割增評價를 하는 경우에도 그 할증률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는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법인의 支配株式 讓渡時 時價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나, 지배주식의 양도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하고 설사 입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평가기준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확정적인 方法論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국의 주식시장, 경제환경, 상속과세제도의 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또는 할인평가의 수준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上場法人의 支配株式에 대해 割增評價規定을 신설하는 경우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현행 非上場支配株式의 割增評價에 적용되는 10%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02) Timothy(1990), p. 349.

103) Timothy(1990), p. 351.

第 3 節 上場株式의 評價

1. 現況

現行 相續稅法上 上場株式은 상속개시일 전 1개월간의 證券去來所 最終時勢價額(거래실적의 유무 불문)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證券去來所 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간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달부터 相續開始日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 問題點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의 時勢가 있는 재산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時價는 상속개시일 현재 형성된 株價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심하여 특정일 하루에 형성된 가격을 가지고 상장주식의 안정적인 가치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평가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현행 규정은 일정기간 동안의 上場株式의 價格變動을 감안하였다는 점에서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개월간의 기간이 短期間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¹⁰⁴⁾.

3. 改善方案

상장주식의 평가 안정성을 고려하여 회사의 事業年度(일반적으로 1년)는 정상적인 株價循環의 최소단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

104) 이철송(1994), p. 204.

시일 전 1년간의 平均株價와 상속개시일 현재의 株價를 대비하여 낮은 쪽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면 적정한 가치를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¹⁰⁵⁾.

그러나 1년의 기간은 상속세법상 재산평가를 위하여는 다소 대상 기간이 길어지므로, 평균액 계산시 3個月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로 美國이나 英國의 立法例에서는 상장주식의 평가시 일정기간의 평균액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 아니하나, 日本의 경우에는 과세시기의 최종가격이 과세시기가 속하는 月以前 3개월간의 매일의 최종가격의 各月別 平均額(最終價格의 月平均額)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장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다¹⁰⁶⁾.

第 4 節 場外登錄法人의 支配株式 評價

1. 現況 및 問題點

現行 相續稅法上으로는 場外登錄法人의 支配株式에 대해 할증평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支配株式에 대해 통상의 주식가치 이외에 經營權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것도 타당하며 이는 場外登錄法人의 支配株式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割增評價時 持分率

割增評價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외등록법인의 지배주식을 정의하

105) 이철송(1990), p. 205.

106) 財産評價基本通達 169(1).

는 持分率로서는 상장법인의 지배주식 판정시 적용되는 持分率, 즉 동일인과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기업이 소유하는 持分率이 15% 이상인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 판정기준은 계열회사의 지분율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株式分散이 우량한 법인의 경우에는 15% 이하의 낮은 지분율을 가지고도 지배주식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3. 割増率

장외등록법인의 지배주식에 대하여도, 상장법인의 지배주식에 대한 割増率과 마찬가지로 10%를 적용하도록 한다.

第 5 節 非上場株式의 評價

1. 現況

現行 相續稅法上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다른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時價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즉, 비상장주식이라 할지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時價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去來價額이 時價로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時價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相續稅法 施行令 第5條 第2項 내지 第6項에서 규정하고 있는 補充的 評價方法에 의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資産價値와 收益價値에 의한 評價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그 評價要素로서 원칙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와 收益價値만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資産價値와 收益價値에 대해 同一한 加重値 適用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算式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대해 同一한 加重値를 적용하고 있다.

$$\left(\frac{\text{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text{발행주식총수}} + \frac{\text{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0.15} \right) \div 2$$

= 비상장주식의 1주당평가액

다. 資産價値에 의해서만 評價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수익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의 純資産價額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는 資産價値에 의해서만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한다.

-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 전인 법인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 평가기준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중인 법인
-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

라. 資産價値인 純資産價額의 評價方法

자산가치인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재산을 상속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상속재산 평가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負債를 공제한 것

으로 한다. 이때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공신력 있는 鑑定機關의 時價鑑定書에 의할 수 있다.

1) 土地

비상장법인인 소유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個別公示地價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또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倍率方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建物

地方稅法 施行令 第80條의 규정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3) 船舶

地方稅法上の 課稅時價標準額에 의해 평가한다.

4) 施設物 기타 構築物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減價償却費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5) 商品·製品·半製品·在工品 기타 이에 준하는 動産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6) 所有權의 대상이 되는 動物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7) 販賣用이 아닌 書畫·骨董品

2인 이상의 專門家가 감정 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鑑定評價審議會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8) 買入한 無體財產權

매입가격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減價償却費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9) 自己創設營業權

비상장법인의 自己創設營業權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하여 純資產價額에 가산한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영업권은 이미 비상장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純資產價額 계산시 다시 가산하지 아니한다.

$$\left\{ \begin{array}{l} \text{상속개시일 전} \\ \text{3년간의} \\ \text{평균순이익} \end{array} \times 0.5 - \begin{array}{l} \text{상속개시일} \\ \text{현재의} \\ \text{자기자본} \end{array} \times 0.1 \right\} \times \begin{array}{l} \text{영업권의} \\ \text{지속연수} \\ \text{(원칙적으로 5년)} \end{array} \\ = \text{自己創設營業權}$$

10) 法人稅法上 留保金額

法人稅申告書上的 資本金과 積立金明細書(乙)上的 留保金額은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조정 결과 법인의 純資產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금액이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加算 또는 減算하여야 하나, 법인의 기장내용과는 별도로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 자산 또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계정과목의 금액은 순자산가액 계산과 무관하므로 법인세법상의 유보 금액 계산시 제외시키고 있다.

11) 法人稅法上의 移延資產

法人稅法 施行令 第38條의 규정에 의한 移延資產인 창업비, 개업

비, 신주발행비, 연구개발비, 사채발행비 및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자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2) 純資産價額이 負(-)數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이 負(-)數인 경우 그 負數인 순자산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收益價値만을 2등분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계산된다.

마. 負債의 範圍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제되는 負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負債에 포함되는 항목

- 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로서 납부할 세액
- 나)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 다)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자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라) 비상장회사인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로서 공제할 준비금은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됨.

2) 負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

- 가) 海外市場開拓準備金, 輸出損失準備金 등
租稅減免規制法 및 法人稅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증권거래준비금 등은 모두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負債란 평가대상법인이 지급 또는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들 준비금은 稅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일

정기간 경과 후에 換入하거나 또는 발생된 손금과의 相計處理 등을 예정한 것이므로 이를 負債로서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손금으로 계상하고 평가기준일까지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하여는 장차 법인세·주민세 등이 부과될지 불확실하므로 준비금과 관련되는 법인세 등을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라고 볼 수 없다¹⁰⁷⁾.

나) 保證債務도 負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바. 收益價値의 評價方法

주식가치를 형성하는 다른 평가요소로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收益價値를 고려하여 純損益額을 감안하게 된다.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로서 純損益額을 계산하기 위한 출발점은 企業會計基準에 의한 當期純損益이 아니라 法人稅法上的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純損益額은 결국 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예로서 국세환급금의 이자)을 수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다시 가산하고, 주주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예로서 벌금 등)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各 事業年度所得에 가산하는 項目

- 가) 국세 또는 지방세의 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나) 機關投資家가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 土地超過利得稅의 환급액과 地方稅法 第112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액의 환급액

2) 各 事業年度所得에서 공제하는 項目

107) 대법원 1991.1.29 선고, 90누4316 판결.

- 가)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 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 라) 토지초과이득세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 마)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바)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
- 사) 접대비 한도초과액
- 아) 주식취득,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및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 자)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 차)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액 및 주민세액

3) 1株當 最近 3年間 純損益額의 加重平均額 計算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란 상속개시 당시의 수익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어 평가하도록 다음과 같은 算式에 의하여 계산된다.

$$\begin{aligned}
 & \text{1주당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left\{ \begin{array}{l} \text{상속개시 전} \\ \text{1년이 되는} \\ \text{사업연도의} \\ \text{1주당 순손익액} \end{array} \times 3 \right\} + \left\{ \begin{array}{l} \text{상속개시 전} \\ \text{2년이 되는} \\ \text{사업연도의} \\ \text{1주당 순손익액} \end{array} \times 2 \right\} + \\
 & \left\{ \begin{array}{l} \text{상속개시 전} \\ \text{3년이 되는} \\ \text{사업연도의} \\ \text{1주당 순손익액} \end{array} \times 1 \right\} \times \frac{1}{6}
 \end{aligned}$$

4) 1株當 推定利益에 의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總理令이 정하는 信用評價專門機關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證券管理委員會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株當 推定利益에 의할 수 있다.

5) 加重平均純損益額이 零(0) 이하인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零(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零(0)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을 2등분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다.

2. 問題點

가. 純資產價額의 計算에 관한 問題點

現行 相續稅法上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不動產의 평가와 租稅負擔額의 差減

企業會計基準上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取得原價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비상장법인의 부동산을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경우 個別公示地價, 건물의 경우 課稅時價標準額으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 장부상 가액과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요소 중 純資產價値評價法은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清算價値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¹⁰⁸⁾, 청산을 전제로 한다면 그 增額評價된 부분(상속세법상 평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차액)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108) 대법원 1996.2.15 선고, 94누16243 판결.

租稅負擔額이 다르게 된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부동산의 평가에 의해 증액평가된 부분에 대한 조세부담액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다.

2) 移延資産의 공제범위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제되는 이연자산의 범위는 法人稅法 施行令 第38條에 의한 이연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연자산의 종류는 商法, 法人稅法, 企業會計基準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에 포함되는 使用收益 寄附資産이란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使用收益 寄附資産은 종전까지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다시 기부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부한 분부터는 이연자산으로 처리한 후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부한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¹⁰⁹⁾.

〈表 2-6-1〉 移延資産의 種類

商 法	法 人 稅 法	企業會計基準 ¹⁾
창업비	창업비	창업비
개업비	개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신주발행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사채발행비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

註：1) 건설업회계기준 제7조 제4항에서는 이연수수비를 인정하고 있음.

109) 조달영(1995), p. 745.

현행 相續稅法上으로는 이연자산의 종류를 상법 또는 기업회계기준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轉貸하여 임대보증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또한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관련된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自己創設營業權의 評價問題

첫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自己創設營業權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가가 문제된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요소 중 자산가치는 주식발행법인의 清算을 가정하여 清算價値에 의하고, 수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주식발행법인의 초과수익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의미하는 자기창설영업권은 二重으로 주식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¹¹⁰⁾.

둘째, 현행 상속세법 규정은 自己創設營業權의 계산시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순이익을 단순평균함으로써 평균순이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단순평균방식은 평가대상법인의 수익력이 계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타당하나, 만일 수익력이 상승하는 추세라면 평균순이익은 과소하게 산정되고 반대로 수익력이 하락하는 추세라면 평균순이익은 과대평가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단순평균에 의하여 순이익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연도에 더 높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평균방법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상속세법상 營業權은 그 개념이 불분명하여 상속개시 당시에는 불확실한 권리로서 상속세의 擔稅力을 갖는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110) 최명근(1988), p. 230.

있다¹¹¹⁾.

셋째, 평균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정상수익력의 이익액 계산에 합리성이 없다. 日本의 경우에는 總資産價額에다 수익률 8%를 곱하여 정상수익력을 계산하고¹¹²⁾, 美國의 경우에는 平均有形固定資産價額에다 통상 8%의 수익률을 곱하여 정상수익액을 계산하고 있다¹¹³⁾.

그러나 현행 상속세법 규정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自己資本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율(10%)을 곱하여 정상수익액을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 정상수익은 자기자본의 운용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자본의 운용도 수익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자기자본만을 수익력의 원천으로 보고 있는 현행 방식도 불합리하다.

넷째, 평균이익액의 50%에서 자기자본에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초과수익력을 계산한 후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단순히 곱하여 영업권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수익력이 장래의 5년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평가기준일의 시점에서는 화폐가치가 달라지므로 現在價値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 규정은 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負債의 評價에 관한 問題點

1) 退職給與充當金の 控除範圍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제되는 負債 중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규정하고 있다.

111) 이철송(1994), pp. 209~210.

112) 財産價額基本調達 제165조.

113) 최명근(1988), pp. 230~231.

이에 관한 大法院 判例¹¹⁴⁾에서는, 순자산가액을 清算價値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退職金推計額 全部가 負債에 해당되어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만을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범위를 축소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租稅法律主義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 現在價値에 의한 評價

企業會計基準上 社債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전환권 조정계정, 신주인수권조정계정 등은 모두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 계정과목은 負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명문규정이 현행 상속세법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收益價値의 評價에 관한 問題點

청산가치를 전제로 하는 자산가치의 계산과는 달리, 수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평가요소이다. 그러므로 수익가치는 계속기업의 전제 아래 비상장법인의 經常的 收益力이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하나 현행 상속세법상으로는 수익가치의 평가에 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非經常的 損益項目의 除去 與否

계속기업의 전제 아래 수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평가대상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비경상적인 손익항목들은 수익가치 계산시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법은 수익가치의 계산시 법인세법상의 각

114)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판결.

사업연도 소득에서 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비경상적인 손익항목도 모두 포함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수익가치를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株當 推定利益에 의하는 경우에는 有價證券引受業務規程 施行細則에서 推定經常利益에서 출발하도록 함으로써, 과거 3년간의 영업실적에 의하는 경우와는 비경상적 손익항목의 제거 여부에 일관성이 없는 모순이 있다.

2) 退職給與充當金 轉入額을 損金으로 計上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규모의 법인들은 일정수준의 과세소득을 내기 위하여 퇴직금 추계액의 일부만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負債 평가시 퇴직금추계액의 전액을 인정한다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純損益額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합리적이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실무상 손금을 추가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減價償却費를 損金으로 計上하지 아니한 경우

비상장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평가실무상 법인의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충당금누계액)에 法人稅法上 부인액을 가산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자산가치뿐만 아니라 수익가치도 과대평가되는 결과가 된다.

라. 資産價値와 收益價値의 加重値

현행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은 純資産價値評價法에 의하여 자산가치와 수익력가치평가법에 의한 수익가치를 원칙적인 평가요소로 하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加重値를 1:1로 보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단순평균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평가대상법인의 규모, 업종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동일한 加重値를 부여함으로써 지나치게 경직된 평가방법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마. 市場性 缺如 등에 대한 割引評價

비상장주식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주식양도에 있어 市場性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비상장법인의 支配株式에 대하여는 10% 割増評價를 적용하고 있음에 비하여 市場性 缺如와 少數株主持分에 대한 割引評價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다.

3. 改善方案

가. 純資産價額의 評價에 관한 改善方案

1) 不動産의 評價와 租稅負擔額

비상장법인의 토지를 個別公示地價에 의해 평가함으로써 평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증액평가된 부분은 純資産價値評價法이 법인의 청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資本利得(capital gains)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법인의 통상소득인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게 되어 租稅負擔이 수반되게 되는 것이다¹¹⁵⁾.

현행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이나 청산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法人稅率은 동일하며 법인세 이외에 特別附加稅 및 住民稅를 고려하여 52.8%를 부동산의 평가시 차감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해 2%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28%
특별부가세율	20%
주민세	4.8%
계	<u>52.8%</u>

115) 최명근(1988), pp. 245~256.

이 조세부담액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미확정된 잠재적인 조세부담액이나 비상장법인이 청산하여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회피불가능한 부담인 것이다. 따라서 美國은 이 조세부담액의 공제문제에 대하여 일반적 관행이 이를 긍정하는 추세이고¹¹⁶⁾, 日本의 경우에는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51%¹¹⁷⁾를 공제토록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2) 移延資産의 控除範圍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제되는 이연자산의 범위는 法人稅法 施行令 第38條에 의한 이연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使用收益寄附 資産價額은 공제되는 이연자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기부자산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재산을 타인에게 轉貸하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이연자산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은 負債로 보아 공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제되는 이연자산의 범위는 商法에서 규정하는 이연자산의 범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3) 自己創設營業權

- ① 自己創設營業權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요소 중 순자산가액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만 순자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 ② 영업권을 계산하는 평균순이익은 3년간의 단순평균방식에 따르지 말고, 평가대상법인의 수익력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수익가치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가까운 사업연도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加重平均方式에 의하도록 한다.
- ③ 영업권 평가산식 중 自己資本에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토록

116) 최명근(1988), p. 246.

117) 財産評價基本通達 186-2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法人稅, 事業稅, 道府縣民稅 및 市町村民稅의 세율의 합계에 상당하는 비율임.

하고 있으나 법인의 정상수익도 자기자본의 운용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자본의 운용도 수익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總資産(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합계)에 대해 1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日本의 경우에는 總資産價額에 8%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¹¹⁸⁾.

- ④ 초과수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5년을 곱하여 영업권을 결정하고 있으나 그 초과수익이 영업권의 존속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익력을 現在價値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수익가치 계산시 적용되는 15%의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5년의 기간으로 한 複利年金現價率 3.3522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負債의 評價에 관한 改善方案

1) 退職給與充當金の 控除範圍

大法院 判例(1996.2.15 선고, 94누16243 판결)를 존중하여 순자산가액을 清算價値에 의해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退職金推計額 全部를 負債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때 퇴직금추계액은 평가대상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계산하며 만일 평가대상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基準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다. 收益價値의 평가에 관한 改善方案

1) 非經常的 損益項目의 제거

繼續企業(going concern)의 전제 아래 수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손익을 대상으로 하여야

118) 財産評價基本調達 165.

한다. 현행 상속세법과 같이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출발한다고 할지라도 평가대상법인의 손익계산서상 특별손익항목을 제거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수익가치 계산시 비경상적인 손익항목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따른 法人稅 등의 증감액을 다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비경상적인 손익항목을 제거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손익을 구한다는 의미이지 이미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을 무시한 가상의 法人稅를 도출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損金으로 計上하지 아니한 경우

退職給與充當金 또는 減價償却費 등과 같이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을 요하는 손금을 평가대상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가치를 계산함과 동시에 수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손금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경우에도 손금에 추가할 금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간 귀속이 가능한 항목은 과거의 사업연도별로 귀속시키는 방법이 타당하다.

또한 추가적으로 손금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법인세 등을 재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라. 資産價値와 收益價値의 加重值

종전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는 純資産價値評價法, 收益力價値評價法과 함께 類似上場法人比較評價法이 사용되었다. 類似上場法人比較評價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단순평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과 ‘당해 비상장법인과 업종·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2 이상의 上場法人의 주식가액의 평균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類似上場法人比較評價方法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모든

上場法人을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細分類 또는 細細分類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기가 어려우므로 類似上場法人의 선정이 실무집행상 곤란하고 株當 純資産價額, 株當 純利益, 賣出額 經常利益率이 상하 20% 범위 이내인 類似上場法人이 거의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1991년 도입되어 1993년까지만 적용되었다.

또한 上場會社數도 1993년 693社, 1994년 699社, 1995년 721社로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類似上場法人比較評價法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純資産價値評價法과 收益力價値評價法의 전제 아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加重値를 통한 개선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 不動産 保有比率이 50% 이상인 法人

상속개시일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평가대상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구축물 등의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純資産價値評價法에 의해서만 평가하도록 한다¹¹⁹⁾. 이는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평가대상법인의 가치는 收益力보다는 자산가치가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부동산 보유비율의 산정은 所得稅法 施行令 第158條(其他資産의 범위)를 準用하도록 한다.

2) 缺損法人

수익가치인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負(-)數인 결손법인의 경우 계속기업을 전제로 수익가치를 계산하더라도 負(-)數가 산출되고 현행 相續稅法上으로는 그 가중평균액을 零(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손법인의 주식은 자산가치를 2로 나눈 금액에 의해 평가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더라도 負(-)의 收益力이 산출된다

119) 최명근(1988), p. 262.

면 일반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수익가치보다는 清算價値로서의 자산가치가 주식평가시보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負(-)數인 경우에는 純資産價値評價法에 의해서만 평가하도록 한다.

한편 평가대상법인이 향후 2년간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株當 推定利益에 의할 수 있도록 한다.

3) 適正留保超過所得의 과세대상이 되는 法人

法人稅法 第22條의 2에 의하여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다음의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에는 수익가치에 더 높은 加重價値를 부여하여 자산가치에 1, 수익가치에 1.5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한다.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大規模 企業集團에 속하는 法人

적정유보초과소득이 있다는 것은 당해 비상장법인이 충분한 수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산가치보다는 수익가치에 더 높은 加重價値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참고로 公募株式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인 「有價證券 引受業務에 관한 規程」에서는 종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對 1로 적용하다가 1996년부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그 가중치를 1 對 1.5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4) 補充的 評價方法이 적용되는 場外登錄法人株式

현행 상속세법상 場外登錄法人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證券業協會의 기준가격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證券業協會 기준가격 중 낮은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기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므로 현행 비상장주식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단순평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株式의 場外去來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投資留意種目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月과 그 직전월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代用證券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

場外登錄하기 위하여는 그 등록기준¹²⁰⁾으로서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1주당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가 액면가액 이상이며,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의해 평가하는 때에는 1對 1.5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5) 其他 法人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결손법인,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場外登錄法人의 주식 및 현행 상속세법 규정상으로도 순자산가치평가법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법인(사업개시 전의 법인 등) 이외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현행 방법과 마찬가지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대해 1對 1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단순평균하는 방법을 유지하도록 한다.

6) 美國의 경우

美國의 경우 非上場株式의 평가방법은 純資產價值評價法(net assets value approach), 收益力價值評價法(earning capacity approach), 배당력가치평가법(dividend-paying capacity approach)

120)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相對價値評價法(comparative appraisal method) 등이 있으며 이들 평가방법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각 방법별 가중치에 관하여는 정형화된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나 용역회사의 경우에는 수익력에 더 높은 加重値를 부여하고, 부동산 보유회사나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더 높은 加重値를 부여한다고 한다¹²¹⁾.

마. 非支配株式에 관한 割引評價

1) 美國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할인요소로서 흔히 열거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¹²²⁾.

- ① 市場性의 缺如에 대한 割引(lack of marketability discount)
- ② 小數株主持分에 대한 割引(minority interest discount)
- ③ 核心 經營人의 喪失에 대한 割引(loss of key manager/owner discount)
- ④ 피라미드 디스카운트(pyramid discount)
- ⑤ 持株會社株式에 대한 割引(holding company discount)

Revenue Ruling 77~287은 1971년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주식(restricted securities)의 거래실태와 市場性에 따른 割引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영향을 받아들여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市場性 缺如가 주식평가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고 있다¹²³⁾.

2) 非支配株式의 割引評價導入

현행 상속세법상 비상장법인의 支配株式에 대해 10%의 割増評價

121) Revenue Ruling, Sec. 5.

122) Lawrence H. Averill Jr. (1983), pp. 162~180.

123) Revenue Ruling 77~287, Sec. 4.02, Sec. 6.04.

를 유지하는 한, 非支配株式에 대한 割引評價를 도입하는 것이 균형이 맞다고 본다. 割引評價時 적용하는 率을 어느 수준으로 책정하는가가 어려운 문제이나 현행 지배주식의 할증평가율인 10% 수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3) 市場性 缺如에 관한 割引評價

비상장주식의 할인평가요소로서 市場性 缺如를 들 수 있으며 이의 도입도 고려될 수 있으나, 金融資産 相續控除制度로서 금융자산가액의 20%(한도:8천만원, 지배주식은 제외)를 공제하는 방안이 신설되는 경우¹²⁴⁾에는 넓은 의미에서 市場性 缺如에 대한 相殺效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성 결여에 대한 割引評價制度는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

바. 假決算을 생략하는 方案

현행 상속세법상 수익가치의 계산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실적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상속개시일까지의 假決算作業이 생략되나 자산가치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결국 평가대상법인은 假決算作業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당초 취지는 퇴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순수하게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이유에서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결산작업을 생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전후 3월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
-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124) 한국조세연구원(1996), p. 25.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

다만, 위의 어느 경우에도 토지의 평가를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사. 改正 企業會計基準의 考慮

1996년 3월 30일자로 개정된 企業會計基準은 199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평가요소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收益價値에 關聯되는 規定

현행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의 당기순손익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사항을 가산하고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항목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이렇게 산출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출발점으로 하여 상속세법상 수익가치를 계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정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수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非經常的인 손익항목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정 企業會計基準 第53條에서는 종전에 특별손익으로 처리되었던 사항 중 투자자산 처분손익, 유형자산 처분손익, 상각채권추심이익 등을 원칙적으로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다만,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거액의 손익은 특별손익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손익의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종전 회계연도의 특별손익항목 중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

도록 개정된 사항을 개정내용에 맞출 필요가 있다.

2) 資産價値에 관련되는 事項

개정 企業會計基準 第93條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中小企業(상장법인을 제외함)에 대하여 복잡한 회계처리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함.
- 장기할부매출액 등은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함.
- 장기연불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는 명목상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함.

상기 회계처리의 특례규정은 주로 자산·부채의 현재가치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상속세법에서의 자산·부채의 평가시 회계처리의 특례규정을 존중하는 경우 자산·부채가 과대평가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처리를 요구한다면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개정 기업회계기준을 받아들여 중소기업이 회계처리특례규정을 적용하고 또한 비상장주식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선택하면 상속세법상 중소기업의 자산·부채평가시 상기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3) 移延法人稅의 처리

개정 企業會計基準에서는 기간손익의 적정성 제고와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移延法人稅制度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므로 1997년도에 발생하는 상속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나 추후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계산시 이연법인세의 효과를 어떻

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아. 非上場支配株式의 割増評價率

1993년부터 시행된 非上場支配株式의 할증평가는 商價行上 지배 주주는 사실상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지배주주 소유주 식은 일반주주 소유주식보다 10% 정도 높게 평가되고 있으므로¹²⁵⁾ 10%의 割増率을 적용하였다.

한편 올해 상속세의 개편방향에서는 이 할증률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93년 이후 지배주식의 지속적인 가치상승이 있었다는 실증적 분석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현행과 같이 10% 할증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第 6 節 土地·建物の 評價

1. 土地의 評價

가. 現 況

상속재산인 土地는 國稅廳長이 指定하는 地域에 있어서는 倍率方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일반지역의 경우 個別公示地價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問題點

國稅廳長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倍率方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이때의 倍率方法이란 상속개시 당시의 個別公示地價

125) 재무부(1993a), p. 111.

에 地域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土地의 賣買實例價額을 참작하여 國稅廳長이 정하는 倍率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래 倍率方法에 의한 평가는 投機去來가 행해짐으로 인해 가격이 앙등하는 지역의 地價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시 實地去來價額에 접근하는 基準時價를 만들어 投機現象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과세방법으로 안출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투기거래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용되는 倍率方法을 非隨意的인 원인에 의해 無償으로 이전되는 相續財産의 평가에 원용함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¹²⁶⁾.

다. 改善方案

土地의 時價를 산정하기 어려워 補充的 評價方法이 적용되는 경우 倍率方法에 의한 평가규정을 폐지하고, 個別公示地價에 의해서만 평가하도록 한다.

2. 建物の 評價

가. 現況

國稅廳長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共同住宅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國稅廳長이 평가하여 告示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地方稅法 施行令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1996년부터 時價標準額으로 바뀌었음)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한편 地方稅法 施行規則 第40條의 5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아파트)의 新築價格을 기준으로 구

126) 이철송(1994), p. 203.

조별·용도별·위치별 指數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加減算率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問題點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의 하나로 地方稅法上 時價標準額에 의한 평가액이 時價의 약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時價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過少評價된다는 점이다.

다. 改善方案

동일재산에 대해 個別租稅法에서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地方稅法上의 時價標準額의 산출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新築價格을 現實化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建物新築價格은 1㎡당 14만 5천원으로서, 이는 韓國鑑定院이 발표하는 新築建物單價表(1995년)上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6층~15층, 중앙난방)의 標準單價인 1㎡당 39만 4천원의 약 36%에 불과하며 또한 建設交通部가 고시하는 사항 중 15층 이하, 85㎡ 이하인 아파트의 건축비 상한가격인 1㎡당 50만 8,197원(168만원/3.3058㎡)과 비교할 때 약 28%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國稅廳長은 韓國鑑定院의 新築建物單價標 및 建設交通部의 아파트 건축상한가격 등을 고려하여 建物時價標準額의 계산기초가 되는 新築價格을 每年 告示하는 방법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第 7 節 擔保提供된 財産價額의 評價

1. 擔保提供된 財産價額의 評價特例

가. 現行 評價特例의 內容

상속재산의 평가원칙은 時價主義原則에 의하며 時價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補充的 評價方法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擔保로 제공된 재산가액은 일반적인 보충적 평가방법, 즉 土地의 경우 個別公示地價와 建物の 경우 課稅時價標準額 또는 國稅廳 基準時價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1) 抵當權(공동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債權額
- 2) 共同抵當權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債權額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3) 根抵當權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에 의한 鑑定評價業者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鑑定價額이 있을 때에는 最高의 價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 4) 質權이 설정된 재산 및 讓渡擔保財産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債權額
- 5) 傳貰權이 登記된 재산의 가액은 登記된 傳貰金
- 6) 事實上 貸貸借契約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

은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나. 問題點

상속세법상 補充的인 評價方法은 時價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방법이나 상속재산은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實地去來價額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액이 결정된 이상 그 평가액은 일용 시가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擔保提供된 재산가액에 대한 특례규정이 그 존재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이 특례규정에 의한 평가액(예로서 債權額)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을 때이다. 그렇다면 이 특례규정에 의한 평가액(예로서 債權額)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을 경우 특례규정에 따른 평가액(예로서 債權額)에 의해 평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왜냐하면 비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되었다고 하였을지라도 그 평가액은 법규정상 時價에 해당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일단 시가로 결정된 이상 그보다 높은 가액의 被擔保債權이 있다 해서 이를 時價로 擬制한다는 것은 그보다 낮은 被擔保債權을 時價로 보는 것만큼이나 근거가 없다는 지적¹²⁷⁾이 있다.

또한 被擔保債權을 時價로 봄으로써 해서 야기되는 보다 큰 문제는 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재산 사이에 課稅의 不均衡이 생긴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被擔保債權이 그 담보재산의 가액보다 낮은 것이 常例이나 사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큰 채권액을 위한 담보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으로서의 평가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은 公平課稅의 原則에 어긋나는 것이다¹²⁸⁾.

127) 이철송(1994), p. 212.

128) 장재식(1990), p. 410 및 이철송(1994), p. 212.

2. 抵當權·質權·讓渡擔保·共同抵當이 設定된 財産

가. 問題點

먼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債權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본다. 抵當權의 경우 民法 제360조에 의하면 抵當權은 元本, 利子, 違約金,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 및 抵當權의 實行費用을 담보하며,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元本の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抵當權에 의해 담보되는 債權의 범위는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서의 時價의 의미와도 어울리지 아니한다.

나. 改善方案

저당권·질권·양도담보·공동저당이 설정된 재산도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재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하는 것이 合理的이므로 特例規定을 廢止하는 것이 타당하다.

3. 根抵當權이 設定된 財産

가. 問題點

根抵當權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鑑定價額(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最高의 價額)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鑑定價額이 時價에 근접한다고 하여 그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배척하고 時價로 보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감정가액에 의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가치를 보다 적절히 반영한다는 개별적 형평은 기할 수 있으나, 같은 종류의 다른 재산 또는 根抵當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假定된 당해 재

산과의 일반적 형평을 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¹²⁹⁾.

설사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를 수긍한다고 할지라도 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最高의 價額에 의한다는 것은 더욱 論理的 妥當性이 없다. 왜냐하면 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의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平均額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도 課稅衡平에 어긋난다.

나. 改善方案

根抵當權이 설정된 현행 特別規定을 폐지하고 補充的인 評價方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傳貰權이 設定된 財産

民法上 傳貰制度를 物權化한 이유는 전세금이 목적부동산의 時價의 상당한 한도에까지 이르는 高額이므로 傳貰制度利用權者의 權益을 강화한다는 취지 때문이다¹³⁰⁾. 부동산 거래의 일반관행상 전세금이 부동산 시가보다 높은 경우를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금에 관한 상속세법상의 특례규정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현행 상속세법상의 特例規定을 폐지하고 補充的 評價方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129) 이철송(1994), p. 213.

130) 박윤직(1992), p. 467.

5. 事實上 賃賃借契約이 締結된 경우

가. 問題點

현행 규정상 사실상 賃賃借契約이 체결되었거나 賃借權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율(10%)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이에 관하여는 사실상 賃賃借契約이 체결된 경우와 그렇지 아닌 한 재산 사이에 課稅의 不均衡이 초래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특례규정 자체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즉, 이 계산구조에서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눈다는 것은 임대료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연 이자율 10% 정도로 정해진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동산임대 관행상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경우 月 2%(年利 24%) 정도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특례규정은 실제의 임대보증금보다 큰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출하게 되어 과대평가할 소지가 있다.

나. 改善方案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1989년부터 특례규정이 도입된 이유는, 대부분 시가산정이 어려우므로 內務部 課稅時價標準額(또는 國稅廳 基準時價)으로 평가하는바, 동 가액이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는 평가액보다 많은 임대보증금이 채무로서 공제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때문이었다¹³¹⁾.

그러나 1989년 도입 이후 경제환경이 바뀌어 土地公概念의 도입, 個別公示地價에 의한 評價, 國稅廳 基準時價의 도입 등으로 토지의

131) 재무부(1989), p. 249.

경우에는 시가의 70%~80%까지 상향 조정되어 왔다.

따라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도 현행 特例規定을 폐지하고, 현행 補充的 評價方法을 적용하도록 한다.

6. 租稅回避 行爲에 대한 規制

상속세법상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이 被擔保債權 등의 가액보다 過少評價됨으로써 상속세·증여세의 租稅回避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해 현행 特例規定을 폐지하고 현행의 補充的 評價方法에 의하도록 한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가. 不動産 評價水準의 現實化

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며 현재 토지의 경우에는 個別公示地價를 적용함으로써 時價의 70%~80%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건물의 경우 課稅時價標準額을 적용하여 時價의 약 4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時價와 세법상 평가액과의 괴리는 결국 장기적으로 時價와 세법상 평가액을 일치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 相續稅의 경우

담보 등으로 제공된 재산도 다른 상속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

하되 그 담보 등으로 제공된 재산의 被擔保債權額(根抵當의 경우에는 채무의 확정치)은 상속재산가액에서 債務控除를 할 때에 그 擔保財產의 課稅價額을 한도로 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¹³²⁾.

그러나 이 방안은 民法上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包括的 權利義務를 승계한다는 相續의 效果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채무의 존재 자체를 조세법에서 인위적으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대신 상속재산 평가의 현실화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負擔附贈與

담보제공된 재산의 하나인 임대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채무액이 임대부동산의 가액보다 큰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고 租稅回避의 결과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상속재산 과세평가의 補充的 評價方法을 활용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¹³³⁾.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며, 보다 직접적인 규제방법으로는 채무부담액이 더 큰 경우(실무에서는 逆贈與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는 이러한 경우의 경제적 실질내용이 재산가액보다 더 큰 채무액을 부담부증여에 받게 됨으로써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채무초과부분을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¹³⁴⁾이 검토될 수 있다.

132) 최명근(1994), p. 50.

133) 최명근(1994), p. 112.

134) 과세실무상 국세청 예규(재삼 46014-1049, 1995.4.26)에 의하면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어머니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債務免除 등의 贈與)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는 현행 所得稅法 제88조 제1항의 규정 중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 중 ‘그 채무액’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채무액’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第 8 節 其他 財産에 관한 評價

1. 相續稅法上 評價方法의 明文化

다음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현행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이 相續財産評價準則 또는 과세당국의 行政解釋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 新株引受權·新株引受權證書의 評價

- 1) 新株의 株金을 피상속인이 납입한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舊株와 新株가 모두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2) 新株의 株金을 피상속인이 납입하지 아니하고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납입한 경우에는 舊株와 新株引受權이 과세된다(신주인수권 = 구주평가액 - 배당차액 - 주금납입액).

나. 株價指數先物去來에 관한 평가

증권 및 금융상품의 발달에 따라 新種 金融商品이 등장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재산평가방법을 개발하고 立法化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예로서 1996년 5월 2일부터 KOSPI 200이라는 株價指數先物去來가 개시된 것이 그 一例이다.

이러한 新種 金融商品에 대한 평가를 탄력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委任規定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골프會員券 등의 評價

1) 現況

상속세법에서는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에 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평가준칙에서 特定施設物 利用權(예: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告示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만을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있다.

2) 改善方案

상속개시일 현재 국세청장이 告示한 基準時價에 의해 평가하고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명문화한다.

2. 現在價値에 의한 評價

화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므로 未來의 現金흐름을 현재시점에서의 가치로 환산해 주는 것을 現在價値化한다고 하며 이때 현재가치의 환산을 위해 市場利子率을 이용한다.

가. 現況

현행 상속세법상 재산평가에 있어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개념이 도입된 것으로는 特許權, 著作權, 鑛業權 등의 無體財產權의 평가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나. 改善方案

개별재산에 대한 現在價値 評價를 두더라도, 時價評價原則의 하나로서 상속재산, 公課 또는 債務 등의 현금흐름에 의해 명목가치

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現在價値에 의한 평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채권회수일 또는 채무변제일이 1년 이상인 장기채권·채무에 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市場利子率(무체재산권의 할인율인 10%를 고려할 수 있음)을 적용한 現在價値評價를 그 내용으로 한다.

3. 未收利子 등에 대한 源泉徵收稅額 差減

가. 現況 및 問題點

證券去來所에 상장되지 아니한 國債, 公債, 社債는 매입가격에 상속개시일까지의 未收利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예금·적금·貸付金債權의 평가에 있어서도 未收利子를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나. 改善方案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는 경우 이는 납세자의 可處分所得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所得稅法上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利子所得 등에 대하여는 未收利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第 9 節 相續後 發生하는 特別損失費用

1. 現況 및 問題點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이 滅失되는 경우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의 輕減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상속인은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정상적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어 상속인의 생활기초를 상속세로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2. 改善方案

상속개시 후 災害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는 경우 상속세의 輕減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적으로 납세능력이 부족하게 된 納稅者의 便宜를 제고하도록 한다.

가. 災害의 定義

災害의 범위에 관하여는 國稅徵收法의 정의규정을 準用하도록 한다. 國稅徵收法 基本通則 2-2-4...15에서는, “災害”라 함은 震災, 風水害, 落雷, 旱害, 冷害,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災害와 火災, 火藥류의 폭발, 鑛害, 交通사고, 기타 人爲에 의한 異常한 災害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災害의 發生時點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法定申告期限 內에 발생하는 災害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상속세법상 무제한납세의무자의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月)과 제한납세의무자의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9月)이 다르더라도 상속개시 후 6개월 내에 발생한 災害를 대

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상속 후 발생한 災害에 대한 특별손실을 고려하는 취지이므로, 상속세법상 제한납세의무자에게 3개월의 기한 연장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 災害喪失比率

法人稅法上 災害損失稅額控除는 사업용 총고정자산가액의 30% 이상을 재해 등으로 상실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所得稅法上 재해손실세액공제도 사업용 재산(토지 제외)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속재산이 멸실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特別損失費用이 적용되는 대상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災害로 인한 피해재산가액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 損失이 補填되는 부분 除外

재해재산이 보험 등에 가입되어 保險金을 수령하거나 손해배상금 등으로 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해 등으로 인한 特別損失費用 계산시에는 제외한다.

마. 名義信託財産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特別損失費用은 재해를 입은 재산이 名義信託된 것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 7 章 其 他

第 1 節 累積合算課稅期間의 延長

1. 現況 및 問題點

가. 現況

상속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合算해서 상속세를 과세한다.

증여세에 의하면 5년간의 증여분(직계존비속간 3천만원, 기타 친족간 500만원)은 合算하여 세액을 정산한다.

日本의 상속세법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증여 당시에 과세된 증여세는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獨逸의 상속세법은 동일한 증여자가 동일한 수증자에게 10년 이내에 수회에 걸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계산해서 이를 합산하고, 이 합산액에 대해 현재의 세율로 세액을 계산한 후, 그 총세액으로부터 이전의 취득재산에 대해 배부되는 현재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나. 問題點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상당기간에 걸쳐서 少額으로 分割贈與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증여재산의 누적합산과세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증여세

체계하에서 賦課除斥期間(10, 15년)과 合算課稅期間(3, 5년)이 상이해서 사전증여에 의한 租稅脫漏의 소지가 많다. 또한 현행 합산과세기간 5년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일 때 책정된 것이므로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현행 累積合算期間은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해서 분할증여를 통해 累進構造의 높은 限界稅率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전증여에 의한 상속·증여세의 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合算期間의 延長이 필요하다.

2. 改善方案

생전증여와 사후증여와의 세부담을 同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자간의 의사결정에 상속·증여세가 中立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구간의 統合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누적합산과세기간을 부과제척기간에 맞추어 10년으로 延長함이 바람직하다.

- ① 누적합산과세기간의 연장을 통해서 사전증여에 의한 租稅脫漏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遺産課稅型下에서 더욱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② 단, 統合電算網의 구축이 전제가 되므로 당분간은 행정적인 지원과 事後管理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第 2 節 葬禮費用의 現實化

1. 現況 및 問題點

가. 現況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된다. 家庭儀禮

準則에 의하여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
까지 概算控除된다.

한편 相續稅法 基本通則 16…4에 의하면 장례비용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

-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直接 所要 費用에 한한다.
- ② 묘지구입비(공원묘지사용료를 포함한다), 묘지치장, 비석, 상석 등 제반비용은 장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③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500만원 초과시에는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간이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을 인정한다.

나. 問題點

현행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500만원은 非現實的인 액수이다. 이는 경제의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改善方案

2개의 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이는 피상속인의 最終的인 所費支出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자체의 구성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액 공제하는 案이다.

- ① 그러므로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용도에 지출되었으면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공제를 허용하되 신뢰성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는 현행 기본통칙의 규정을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②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의 치료비를 상속인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그 금액도 채무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장례비용 500만원을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수준까지 上向 調整하는 案이다.

① 사람의 사망이란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도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② 이 수준을 상회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증빙서류의 제출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③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의 치료비를 상속인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그 금액도 채무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④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는 墓地購入費를 공제해야 할 것이다.

第 3 節 相續登記 後의 協議分割에 대한 贈與稅 課稅

1. 現況 및 問題點

가. 現況

현재의 일반적인 관행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과 피상속인의 부채에 대한 辨濟는 상속개시 후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事後管理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행 세무행정 집행체제 측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많다. 특히 大法院判例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협의에 의해 언제든지 分割이 가능하고 심지어 상속등기 한 경우에도 再分割이 가능하며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까지 溯及된다.

나. 問題點

상속등기 후 장기간이 지나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의사(상속지분의 포기)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이익을 얻게 되므로 事實上 贈與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과세할 수 없다. 이는 또한 실질과세의 原則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한편 배우자상속공제가 대폭 확대될 경우 상속세 輕減을 위해 자녀상속분을 배우자 상속분으로 僞裝分割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므로 合法的인 租稅回避方法이 되고 있다.

2. 改善方案

상속등기 후 새로이 協議分割에 의한 경정등기를 통해 늘어난 상속지분에 대하여 贈與稅를 과세하거나 移越課稅制度를 도입한다.

- ① 상속등기 후 장기간이 지나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의사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이익을 얻게 되므로 事實上 贈與行爲로 볼 수 있다.
- ②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공제를 확대할 경우 상속세 경감을 위해 자녀상속분 등을 일단 배우자 상속지분으로 僞裝·分割하여 등기한 후 나중에 다시 분할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 ③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再分割 및 경정등기를 통해서 특정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늘려 주는 것을 증여로 보아 贈與稅를 과세토록 한 조치이다.
- ④ 상속세 신고서 제출기한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해서 協議分割期間을 6개월로 제한하고 同 期間 이후의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상속법

의 개정이 전제가 되므로 相續稅法 領域 밖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移越課稅制度를 도입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자산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상속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동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看做해서 동 자산의 취득시점을 피상속인의 취득시점으로 보아 讓渡所得을 계산한다.

終章 要約 및 政策建議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相續·贈與行爲의 패턴과 同行爲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의 근거를 살펴보고, 이같은 이론적인 틀 위에 현행 相續稅法이 안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항목별로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相續稅制의 改編方向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부 연구자들이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改善方案을 제시해 왔지만 폭넓은 주제에 대해 經濟學的·法學的인 분석의 틀을 써서 包括적으로 연구한 것은 본 보고서가 최초가 아닐까 생각된다.

본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금년도 稅法改正案 作業에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많은 사안을 討議하고 建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세법이라는 것은 經濟學的, 法的 논리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政治的인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금년도 세법 개정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중요한 사안 중 상당수가 국민계층간 혹은 이해집단간의 政治的인 折衷에 의해 최종적으로 案이 가다듬어졌다. 公聽會, 稅制發展審議委員會 討論, 黨政協議가 바로 이같은 절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 보고서에 기술된 개선방안은 여러 부분에서 금년도 세법개정안과 相異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政治的인 절충을 고려하지 않고 經濟學的이고 法學的인 논리에 충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政治的인 절충에 의한 방안은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제시한

정책대안 중 금번 개정안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中·長期的인 시점에서 보면 장래의 개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안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히 整理하고 필요할 경우 改善方案을 제시하게 된 논리적인 理由를 추가로 기입한다.

	개 선 방 안
1. 과세유형	당분간 유산과세형을 유지하되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
2. 과세 베이스 확충	1. 상속·증여세를 모두 제한적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증여세만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2. 상속세 관련 과세자료 수집체계 정립 3.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당국의 일괄조회 허용 4. 현행 상속세법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조항을 존치시키면서 주식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실명화를 유도 5. 증여의제규정을 추정규정으로 전환
3. 공제제도	1.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조정 제1안 : 결혼연수방식을 유지하면서 결혼연수 1년에 대해 허용하는 금액을 인상 제2안 : 법정상속분 내에서 실제상속분을 전액 공제 (15억원 한도) 2. 배우자 증여공제제도를 상속공제에 맞추어 확대 조정 제1안 : 결혼연수방식을 유지하여 결혼연수 1년당 허용금액을 인상 제2안 : 5년간에 2억원의 공제를 허용 3. 기존의 기초공제, 물적공제, 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를 신설하되 대부분의 상속가족이 이를 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함. 일부 예외적인 가족이 기초공제, 인적공제로 구성되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토록 함

	개 선 방 안
	4. 물적공제는 기초공제 확대에 따라 폐지 5.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신설하고 기존의 보험금 및 신탁에 대한 상속공제·증여공제는 폐지 6. 배우자의 유무, 해당자산의 유무 등에 따른 상속가족간 세부담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큰 금액의 一括控除를 신설 7. 특별재해손실 공제 신규도입 : 상속개시 후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평가액의 30%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손실비용을 인정 8. 相續稅 免稅點의 漸進的 引上으로 課稅對象 人員의 擴大를 모색
4. 세 율	제1안 : 상속·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 구간을 통합하되 세율구간을 5단계로 확대 조정 : 50억원 초과에 적용되는 최고한계세율 50% 신설(단, 50% 세율 적용 대상은 신축적으로 運用) 제2안 : 상속·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의 통합 :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의 4단계 세율구조
5. 평 가	1. 경영권을 가지는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규정을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에도 확대적용 2. 상장주식 평가시 평균액 계산기간을 상속개시일 전 1개월간에서 3개월간으로 연장 3. 비상장법인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가 (2) 결손법인의 경우 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 (3) 자산가치 계산시 부동산 평가차액에 대한 세부담액을 차감하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공제

	개 선 방 안
	(4)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자산가치에 의하여만 평가 4. 담보제공된 부동산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 5. 상속재산 중 과소평가되고 있는 건물의 평가를 현실화시킴 6. 시가의 정의규정이나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규정을 상속세법에 명문화
6. 세대생략	30% 수준의 할증과세를 시행
7. 상속·증여부동산 이월과세	1. 자녀와 특수관계인 등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3년 내에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2.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 후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8. 기타	1. 누적합산기간을 부과제척기간에 맞추어 10년으로 연장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소비지출이어서 상속재산 자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액공제하거나 장례비용 공제액을 상향조정 3. 상속등기 후의 협의분할에 의한 사실상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이월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

1. 課稅類型

가. 問題點

급속한 經濟成長과 더불어 제기되어 온 富의 集中 抑制, 公平課稅에 대한 國民의 輿望 및 應能負擔의 實現이라는 租稅政策 그리고

평등주의의 확산 및 상속의 기본 흐름의 변화라는 새로운 稅制 環境이 대두함에 따라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제도로의 전환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 改善方案

당분간은 유산과세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유는 세무행정상의 번잡함과 세수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이 때 「法定相續分課稅方式에 의한 取得課稅型」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相續慣行 및 相續登記制度가 합리화되고 稅務行政이 개선되면 「純粹 取得課稅型」으로 轉換해 간다.

理想論에 입각하여 과세유형을 논하는 경우 取得課稅型이 遺産課稅型보다 바람직한 課稅類型일 수 있다. 왜냐하면 유산을 취득하여 상속세 담세능력이 있는 이가 상속인이고, 과세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과 그들 당대에 축적한 자산을 차별화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상속인간의 능력에 맞는 세부담을 통한 상속가족원간의 재산재분배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在의 相續慣行 및 相續登記制度 등에 의해서 遺産의 偽裝分割相續이 가능하고, 相續稅 關聯 稅務行政을 뒷받침할 電算網이 完備되어 있지 못하고, 金融資産에 대한 一括照會權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선결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법정상속분 취득과세형이나 純粹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2. 課稅베이스의 擴充

가. 問題點

첫째, 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新種 金融商品이 등장하고 다양한

資本去來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경제현상이 등장하고 있지만 증여세는 列舉主義의 課稅方式을 취하고 있어서 새로운 경제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집된 상속·증여세의 課稅資料가 일부 자산에 국한되고, 수집된 자료가 자산종류별로 관리됨에 따라 관련 과세자료의 效率의인 確保體系가 미흡하다.

셋째, 「金融實名去來 및 秘密保障에 관한 緊急財政經濟命令」에 의하여 금융자산 一括照會制度가 폐지되고 특정 점포별 조회만 허용됨에 따라 금융기관과 과세관청의 많은 시간과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 및 과세 불공평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과세당국에 대한 지나친 金融情報의 制限은 상속세 과세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넷째, 각종 법령의 규제 回避 내지는 要件의 부합을 위해서 또한 상속·증여채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株式의 借名去來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속·증여세의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식의 차명 거래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다섯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 贈與擬制規定은 國稅基本法上의 實質課稅原則을 희생시키고 있으며, 同 規定이 어떤 면에서는 租稅法의 擴張 해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租稅法律主義와 상충된다. 또한 同 規定은 현행 조세행정의 편의를 고려해서 도입·확산된 측면도 있다.

나. 改善方案

첫째, 제1안은 현행 상속·증여세의 列舉主義的 과세방식을 制限的 包括主義 課稅方式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경제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실상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함이다. 제2안은 列舉主義 課稅方式을 계속 유지하되 贈與稅만 包括主義 課稅方式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고액재산가의 私生活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세 관련 課稅資料 蒐集體系를 정립한다. 구체적으로는 電算資料網을 이용해 인별 및 가구별 재산변동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國稅基本法, 相續稅法, 法人稅法 등 관련 법규에서 유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기적이고 자동적으로 과세자료가 수합되도록 한다.

셋째, 과세당국이 필요할 경우(가령 사망자 및 그 배우자로 한정하여) 금융기관의 본점을 대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一括照會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안 이유는 현재와 같이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상속세 과세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또한 사망자에 대해 일생에 한번 과세하는 상속세의 특성상 금융자산의 一括照會 허용이 사회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때 두 가지 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안은 利子·配當所得 支給明細書가 국세청에 제출된 자 가운데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다. 둘째 안은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위해서 제출·신고된 금융소득자료를 DB化하여 이를 상속세 부과시 이용하는 것이다.

넷째, 현행 상속세법의 名義信託에 대한 증여의제 조항을 존치시키면서 株式 借名去來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實名化를 유도한다.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실명전환을 유도하고 동기간중 실명전환분에 대해서는 免稅措置하고, 유예기간까지 실명화하지 않거나,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를 新設하여 課稅한다. 또 僞裝贈與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직계비속 및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시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당수의 차명거래는 각종 규제의 회피 내지는 요건의 부합을 위한 것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 내지 완화없이 차명주식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關聯法律의 改善 내지는 改正이 전제가 되

므로 상속세법으로는 限界가 있다. 비록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서 상속세법의 강화 내지 개정이 차선책이 될지라도 상속세법의 입장에서는 탈법적인 내용을 과세대상으로 포착해야 한다.

다섯째, 贈與擬制規定을 推定規定으로 轉換한다. 推定이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므로 실제적인 진실에 따라 과세할 수 있게 되고 행정상 사실인정의 부담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또 그 내용이 包括的이므로 과세대상을 包括主義로 전환하는 것과 상응한다. 또 實質課稅의 原則과 租稅法律主義의 原則에 부합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추정규정화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일부는 이미 전환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

3. 控除制度

가. 問題點

첫째, 配偶者相續控除는 遺產型 課稅體系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금액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配偶者贈與控除는 외형상 배우자상속공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상속공제보다 優待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基礎控除는 금액수준이 낮다. 인적공제는 적은 금액이 다양하게 허용되고 있다. 未成年者控除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녀공제는 허용해 줄 명분이 약하다. 한편 年老者控除는 연로자의 건강특성에 따라 차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해서 규정하는 등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또 物的控除는 주택공제와 같이 다수가 이용하여 기초공제와 같은 성격으로 변해버렸다. 농지, 초지, 산림지 공제 등의 경우 이용도가 극히 낮다. 住宅控除는 한도액이 설정되어 주택상속추가공제가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기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保險商品과 實物信託 등 일부 금융상품에 한해 공제가 허용됨으로써 금융상품간 선택이 歪曲되고 있다.

다섯째, 공제제도는 配偶者의 有無, 該當 資産의 有無 등에 따라 상속가족간에 세부담의 차이가 크다.

나. 改善方案

첫째, 配偶者相續控除를 擴大 調整한다. 제1안은 결혼연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결혼연수 1년에 대해 허용하는 금액을 현행 1,2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시킨다. 제2안은 15억원 한도 법정상속분 내에서 실제 상속분을 전액 공제해 준다.

본 분석이 제시하고 있듯이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지닌 법정상속분공제보다 결혼연수 1년당 연간 허용금액의 인상이 보다 바람직한 代案이다. 이 점에서 상한액과 하한액을 지닌 법정상속분공제는 次善策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全額控除로 이행해가야 한다면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법정상속분공제를 일정기간 시행해 보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配偶者贈與控除制度를 相續控除에 맞추어 擴大 調整한다. 제1안은 결혼연수 방식을 유지하여 결혼연수 1년당 허용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시킨다. 이것은 배우자증여공제가 배우자상속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세제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2안은 5년간에 2억원의 공제를 허용한다.

配偶者相續控除 허용금액과 비교해 贈與控除의 확대 폭을 축소한 것은 현행 贈與 優待稅制가 절세를 위한 조세계획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즉 누진세율 구조하에서는 증여의 경우 상속에 비해 낮은 限界稅率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기초공제, 물적공제, 인적공제 대신 一括控除를 신설하여 대부분의 상속가족이 이를 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일

부 예외적인 가족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로 구성되는 項目別 控除를 택하도록 한다¹³⁵⁾.

기초공제, 물적공제를 統合하여 기초공제로 하여 금액을 확대시키고 또 여기에 인적공제까지를 고려해 一括控除制度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세액계산의 단순화와 상속가족의 상속인수, 장애자의 유무, 미성년자의 유무, 보유자산의 특성 등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일괄공제액으로 5億원을 제시한 것은 표준적인 상속가족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億원에 미달하여 이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속가족이 一括控除를 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인적공제 등 기존의 항목별 공제의 존립 목적을 자녀수가 예외적으로 많거나 장애자를 안고 있는 가족과 같은 예외적인 가족을 위한 제도로 다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物的控除는 기초공제를 확대시키면서 이를 폐지한다.

다섯째, 金融資産 相續控除를 신설하여 실물자산과 금융자산간의 상속재산 평가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을 해소한다. 따라서 기존의 보험금 및 신탁에 대한 상속공제·증여공제는 廢止한다.

여섯째, 상속개시 후 상속세의 法定申告期限 내에 災害 등으로 相續財産評價額의 30% 이상의 被害가 발생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납세능력이 부족하게 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特別損失費用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일곱째, 配偶者의 有無, 해당 資産의 有無 등에 따라 상속가족간

135) 개정안에서 자녀공제를 상향조정하여 장애자공제와 일치시킨 것은 올바른 개정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기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녀공제 특히 성년자녀에 대한 공제는 취학중에 있는 자녀를 제외하면 공제의 의미가 불분명한 반면 연로자공제는 노후 부양에 필요한 경비 공제의 성격을 지니는 점에서 명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람직한 개편방향은 성년자녀에 대한 공제는 예외적으로 취학자녀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축소시키고 미성년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연로자의 경우 장애자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연로자공제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에 세부담의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큰 금액의 一括控除를 신설한다.

4. 稅 率

가. 問題點

현행 세율체계는 상속인 3인(결혼연수 30년의 배우자+자녀 2인) 기준 7億원까지 세부담을 全額 免除해 주는 반면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급격히 높아지는 稅負擔을 요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과세대상 유산이 中規模(10억원 이하)인 가족에 대해 높은 稅負擔을 요구하는 반면 同 遺産이 大規模(50억원 이상)인 가족을 우대하고 있다. 상속세율 체계는 소득세 체계에 비해 엄한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상속재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고 있는 셈이다.

나. 改善方案

제1안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통합하되 세율체계를 5단계로 조정한다. 제안 이유는 10億원 이하의 課稅對象 遺産을 남기는 가족에 대한 稅負擔을 낮추고 100억원을 초과하는 유산을 남기는 일부의 가족에 대한 稅負擔을 높여 상속이 발생하는 가족간의 富의 분배를 개선하고 中規模 이하의 遺産을 남기는 가족이 느끼는 상속세 重稅感을 줄이자는 것이다.

최고세율의 경우 50%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일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 세율체계¹³⁶⁾와의 조화와 國際比較를 통해 보더라도 우리의 세율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50% 세율의

136) 1996년도 소득세율 체계는 0~1천만원 이하 10%(평균 실효세율, 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1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30%(17.5%), 8천만원 초과 40%(23.8%)이다.

도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외국의 경우 우리의 최고 세율 40%는 소득세 의존도가 높은 美國, 日本에 비하면 낮지만 直間構造가 우리와 유사한 獨逸, 프랑스, 英國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100億원 초과시에도 과세대상 자산이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상속세 부과로 기업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지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어 적용하는 등 彈力的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즉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대상을 기업의 경영권과 무관한 토지, 부동산 등 고액자산가의 자산으로 한정시키자는 것이다.

제2안은 상속·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의 完全 統攝이다. 1億 원 이하 10%, 5億원 이하 20%, 10億원 이하 30%, 10億원 초과 40%의 4단계 세율구조로 개편한다. 제안 이유는 상속과 증여를 선택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증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이유는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이같은 개정이 상속과 증여에 중립적이라기 보다 증여 優待性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제제도의 조정으로 우대를 받은 증여가 세율체계 조정으로 다시 한번 우대를 받는 셈이 된다.

제3안은 상속세율과 贈與稅率을 分離하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되 과세구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과세체계를 유지하여 贈與抑制型 稅制를 당분간 존치시키는 방안이다. 제안 이유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만큼 양자간의 세부담이 크게 차이 나도록 하지 말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증여세를 상속세 세율체계에 통합시킬 경우 소득세에 비해 증여세 세부담이 턱없이 낮아져 통상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증여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소득이 지금에 비해 큰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不法所得이나 贈與擬制 所得 등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등의 통상소득보다 월등히 낮은 세율을 부과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5. 評價制度

가. 問題點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과세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經濟的 價値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경제적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상 어려움이 있음이 사실이다.

첫째, 현행 상속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時價에 의하도록 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相續稅法 施行令에서 규정하는 補充的 評價方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법상 시가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상속재산의 특성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실무상으로는 補充的 評價方法이 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보충적 평가방법 중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주식 등의 유가증권이 상속과세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현행 상속세법의 규정으로는 토지 및 건물의 평가가 시가보다 過少評價됨으로써 평가방법 차이를 이용한 租稅回避가 이루어지거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 등의 지배주식과 같이 평가대상에서 누락됨으로써 상속재산평가의 불공평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나. 改善方案

첫째, 會社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經營權을 가지는 支配株式에 대한 10% 割増評價의 규정을 上場法人 및 場外登錄法人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한다.

둘째, 상장주식 평가시 상속개시일 전 1개월간의 평균액 계산을 3개월간의 平均額 計算으로 연장한다.

셋째, 非上場法人의 評價方法에는

- ①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非上場大法人 등의 경

우에는 資産價値와 收益價値에 加重價를 도입해서 자산가치에 1, 수익가치에 1.5의 加重價를 부여한다.

- ② 缺損法人의 경우 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 ③ 資産價値 계산시 不動產 평가차액에 대한 稅負擔額을 차감한다. 또 退職金推計額 全額을 負債로 공제한다.
- ④ 자산총액 중 不動產比率이 50% 이상인 非上場法人의 경우 資産價値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넷째, 담보제공된 부동산도 基準時價에 의해 평가한다.

다섯째, 상속재산 중 建物は 일반적으로 過少評價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시킨다. 過少評價되는 이유는 地方稅法上 建物の 時價標準額의 계산요소 중 新築價格이 낮은 데 있다. 따라서 韓國鑑定院 및 建設交通部의 新築單價表를 참조하여 國稅廳長이 이를 告示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여섯째, 상속재산 평가의 원칙으로서 時價評價를 적용하고 있으나, 時價의 定義規定이나 時價로 볼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규정을 상속세법상 明文化시킨다.

6. 世代省略課稅

가. 問題點

현행 상속세법에서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하여 세액의 20%를 가산하여 割増課稅하고 있지만, 이는 상속·증여세의 평균 실효세율 수준인 30%에 못 미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나. 改善方案

30% 수준의 割増課稅를 시행한다. 간단한 식의 전개를 통해 할 증세율 수준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면 세대생략 상속시의 세부담은 정상적일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62.5%(58.8%) 수준에 그친다. 이

상의 계산결과는 지극히 단순화시킨 모형에서 얻어진 결과이지만 세대생략에 대한 割増率에 대해 약간의 함의를 제공해 준다. 즉 30~40% 정도의 할증세율이 적절한 수준이 아닐까 하는 점을 시사해 준다. 다만 실제 사례 중에는 절세 목적보다는 가족내부나 기업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세대생략 상속을 희망하는 사례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企業經營權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할증률은 30% 전후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7. 相續·贈與 不動産에 대한 移越課稅：讓渡益 課稅

가. 問題點

현재는 贈與資産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점을 증여자의 취득시점으로 看做하는 규정이 있으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크게 확대시키면서 이 규정을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까지 확대시킬 것인가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상한액을 지닌 법정상속분공제로 크게 확대될 경우 현행과 같이 상속시점을 取得時點으로 인정하면 배우자 공제로 분배되는 상속재산이 양도되어 資本利得이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이 非課稅 處理되기 때문이다. 이는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所得稅法의 基本原則에 위배된다. 결국 신설되는 배우자 법정상속분공제를 통해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의 대부분이 비과세될 가능성까지 남게 된다.

나. 改善方案

자녀와 특수관계인 등이 不動産을 증여받은 후 「3년내」에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看做하여(carry-over)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다. 배우자가 不動產을 증여받은 후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看做하여(carry-over)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讓渡所得稅를 부과한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不動產을 상속받은 후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讓渡所得稅를 부과한다.

8. 其 他

가. 問題點

첫째,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상당기간에 걸쳐서 少額으로 分割贈與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증여재산의 累積合算課稅期間을 두고 있지만 현행 누적합산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해서 分割贈與를 통해 누진구조의 높은 한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둘째, 현행 피상속인의 葬禮費用 500만원은 비현실적인 액수이며, 이는 경제의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적시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상속등기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協議分割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의사에 의해 특정상속인이 이익을 얻게 되므로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과세할 수 없다. 이는 또한 實質課稅의 原則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나. 改善方案

첫째, 累積合算課稅期間의 연장을 통해서 사전증여에 의한 租稅脫漏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累積合算課稅期間을 賦課除斥期間에 맞추어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피상속인의 葬禮費用은 피상속인의 最終的인 所費支出이므로 상속재산 자체의 구성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全額 控除하거나 현행 葬禮費用 500만원을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案을 상정할 수 있다.

셋째, 大法院 判例에 의해 상속재산은 협의에 의해 언제든지 분할이 가능하고 심지어 상속등기한 경우에도 再分割이 가능하고 그 효력이 상속개시 시점까지 소급되므로 상속등기 후의 협의분할에 의한 사실상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속등기 후 장기간이 지나서 새로이 協議分割에 의한 경정등기를 통해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의사에 의해 특정상속인이 이익을 얻게 되므로 사실상 증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늘어난 상속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移越課稅制度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郭潤直, 『物權法』, 서울:박영사, 1992.
- 權純源·高日東·金寬永·金善雄, 「資産不均等の 實態」, 『分配不均等の 實態와 主要政策課題』, 제6장, 한국개발연구원, 1992, pp. 167~184.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각 연도.
- 金光政·金種寬, 『相續·贈與稅의 實務』, 조세통람사, 1995.
- 金疇洙, 「改正家族法概說」, 『考試研究』, 1990年 2月號~4月號.
- 魯英勳, 「多住宅保有 現況과 財産稅 稅負擔 分析」, 『租稅政策과 所得再分配』, 서울:韓國租稅研究院, 1996, pp. 285~309.
- 稅制發展審議委員會 財産課稅制度研究分科委員會, 『稅制發展研究基礎資料(財産稅制 分野)』, 1985. 11.
- _____, 『稅制發展研究報告書』, 1990.
- _____, 『民法改正과 관련한 相續稅制補完方案 및 遺產稅를 遺產取得課稅型으로 改編하는 方案』, 1991. 4.
- 소일섭, 「經濟力集中 抑制策과 企業支配構造 改善方案」, 서울:韓國經濟研究院, 1996.
- 延河淸 外, 『中産層 實態分析과 政策課題』, 韓國開發研究院, 1990.
- 李哲松, 「現代社會의 所得 및 支配概念의 變化」, 『法經濟研究(I)』, 서울:한국개발연구원, 1991. 8.
- 李鎭淳·李哲松, 「相續課稅의 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相續課稅의 法的 衡平性』, 서울:한국조세연구소, 1994.
- 張在植, 『租稅法』,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財政經濟院, 「96 상속세법 개정안 관련 보충 설명자료」, 1996.

- 財務部, 『간추린 改正 稅法』, 각 연도.
- _____, 『相續稅法沿革集』, 1982.
- _____, 『改正稅法 主要內容』, 1993a.
- _____, 『日本の 稅制概要』, 大韓民國 財務部 稅制室, 1993b.
- _____, 『재정관련통계집』, 1996. 5.
- 정광선, 『기업경쟁력과 지배구조』,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1995.
- 趙達永, 『법인세법정해』, 서울: 조세통람사, 1995.
- 崔 洸, 『男女平等의 夫婦財產權 確立과 稅制面에서의 補完方案』, 政務長官 第2室, 1993.12.
- 崔基元, 『新會社法論』, 서울: 박영사, 1996.
- 崔明根, 『韓國租稅의 諸問題』, 서울: 조세통람사, 1988.
- _____, 『相續課稅論』, 세경사, 1990.
- _____, 「取得課稅型 相續課稅制度 導入方案에 관한 研究」, 서울: 韓國租稅研究院, 1993.
- _____, 『租稅回避行爲에 대한 規制와 課稅合理化方案』, 서울: 韓國租稅研究院, 1994.
- 한국은행, 『도시가계 저축시장조사』, 1994.
- 韓國租稅研究所, 『相續課稅의 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書 No. 10, 1994.
- _____, 『主要國의 相續課稅制度』, 研究調查資料 No. 4, 1989.
- 韓國租稅研究院, 『1996年 相續稅法 改編方向』, 1996.
- 韓瑋熙, 「改正相續法概要」, 『司法行政』, 1990年 1月號.
- 韓相國, 『取得課稅型 相續稅轉換에 관한 研究』, 政策報告書 94-07, 서울: 韓國租稅研究院, 1994.
- _____, 『臺灣의 財政과 租稅制度』, 서울: 韓國租稅研究院, 1995.
- 韓相國·裴竣皓, 「相續稅 配偶者控除制度의 改編方向 檢討」, 『財政金融研究』 第3卷 第2號, 韓國租稅研究院, 1996.

- 韓相震, 「韓國中産層의 개념화를 위한 試圖」, 『韓國社會學』, 第21輯, 1987 겨울.
- 玄鎭權, 「토지소유의 편중실태와 종합토지세의 세부담기착」, 『租稅政策과 所得再分配』, 研究論文集 96-01, 韓國租稅研究院, 1996, pp. 253~284.
- 洪斗承, 「職業分析을 통한 階層研究」,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第5卷 第3號, 1983.
- 洪學杓·崔致德, 『美國稅法要解』, 行法社, 1994.
- 橘木俊沼·高田聖治, 「遺産と 資産分布: 人的資産と世代間の資産移轉」, IPTP 國際コンファレン스 提出 論文, 1992.
- 吉田和男, 『日本財政論—數理財政學序說』, 京都大學 學術出版會, 1995.
- 尾崎三郎·中野秀之, 『資産稅の取扱いと申告の手引』, 1995.
- 山田晟, 「ドイツ法律用語辭典」, 東京: 大學書林, 1984.
- 石川 經夫, 『所得と富』, 岩波書店, 1991.
- 稅法研究所, 「稅法學」, 『西ドイツ相續稅法の邦譯』, 京都, 1984.
- 野口悠紀雄, 『現代日本の稅制』, 有斐閣, 1989.
- _____, 「相續稅の合理化」, 『稅制改革のビジョン』, 第6章, 日本經濟新聞社, 1994a.
- _____, 「相續稅に關する基礎的考察」, 『稅制改革の新設計』, 第4章, 日本經濟新聞社, 1994b.
- 『日本經濟新聞』, 1996年 7月 6日字 夕刊.
- 井堀利宏, 『ストックの經濟學』, 第11章, 有斐閣, 1993.
- 中馬宏之, 『勞動經濟學』, 創世社, 1994.
- 『朝日新聞』, 1991年 10月 23日字.
- チャールズ·ユウジ·ホリオカ, 「貯蓄と遺産·相續の經濟學」, 高山憲之外(編), 『高齢化社會の貯蓄と遺産·相續』, 第1章, 郵政研究所研究叢書, 1996. 3.

- Barro, R. J., "Ar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Nov./Dec. 1974, pp. 1095~1117.
- Beach, C. M., Dollars and Dreams : A Reduced Middle Class ? Alternative Explanations, 1989,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24, No. 1, pp. 162~193.
- Becker, G. S.,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Nov./Dec. 1974, pp. 1063~1093.
- Bernheim, B. D. A. Shleifer and L. H. Summers,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3, Dec. 1985, pp. 1045~1076.
- Bittker, B. I. and E. Clark (eds.),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5th ed.,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1984.
- Blackwell, *The Equitable Life Tax Guide*, London, 1995.
- Blinder, A., "Comments on Chapter 1 and Chapter 2," D. Kessler and A. Masson (eds.), *Modelling the Accumulation and Distribution of Wealth*, Clarendon Press, Oxford, 1988, pp. 68~76.
- Boswell, J., *The Rise and Decline of Small Firms*, Allen and Unwin, London, 1972.
- Bradbury, K., "The Shrinking Middle Class," *New England Economic Review*, Sep./Oct. 1986, pp. 41~55.
- Bradford, Cornell, "Corporate Valuation: Tools for Effective Appraisal and Decision Making," Homewood Illinois, Business One Irwin, 1993.
- Carter Commission,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Ottawa, 1996.
- Churchill W. C., *Lord Randolph Churchill*, Macmillan, London, 1906.

- Commerce Clearing House, *Internal Revenue Code*, Chicago, 1995.
- _____, *U.S Master Tax Guide*, Chicago, 1996.
- Committee of Inquiry on Small Firms., *Bolton Report*, Cmnd 4811, HMSO, London, 1971.
- Cubbin, J. and D. Leech, "The effect of shareholding dispersion on the degree of control in British companies," *The Economic Journal*, Vol. 93, June 1983, pp. 351~369.
- Davies, J. B. and D. G. Duff, "Wealth Tax Proposals : Distributional Impacts and Revenue Potential," A. M. Maslove(ed.), *Issues in the Taxation of Individuals*, Univ. of Toronto Press, 1994, pp. 172~260.
- Deiningler, K. and L. Squire, "Measuring Income Inequality : A New Database," *World Bank Economic Review*, Sep. 1996.
- Galor, O. and J. Zeira, "Income Distribution and Macro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0, 1993, pp. 35~52.
- Goode, R., *The Individual Income Tax*,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1964.
- Harbury, C.D. and D.W.W.N. Hitchens, *Inheritance and Wealth Inequality in Britain*,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1979.
- Hay, D. A. and D. G. Morris, *Unquoted Companies*, Macmillan, London, 1984.
- Hopkins, Bruce R., *The Law of Tax-Exempt Organization*, 6th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1992.
- Horrigan, M.W. and S. E. Haugen, "The declining middle class thesis : a sensitivity analysis," *Monthly Labor Review*, May 1988, pp. 3~13.

- IBFD, *European Tax Handbook 1995*, Juhani Kesti, LL.M. (ed),
IBFD Publications.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5.
-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 : Report of a Committee Chaired by Professor J. E. Meade*, London, Allen and Unwin, 1978.
-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European Tax Handbook*, 1993.
- Ishikawa, T., "Family Structures and Family Values in the Theory of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3, Oct. 1975, pp. 987~1008.
- Kotlikoff, Laurence and Spivak, Avia, "The Family as an Incomplete Annuities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1.
- Kuznets, N.,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5, 1955, pp. 1~28.
- Lawrence, R. Z., "Sectoral Shifts and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The Brookings Review*, Fall 1984, pp. 3~11.
- Lawrence, H. Averill, Jr., *Estate Valuation Handbook*,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83.
- Levy, F., *Dollars and Dreams : The Changing American Income Distribution*, New York: Russell Sage Books, 1987.
- McMahon, P.J. and J. H. Tschetter, "The declining middle class : a further analysis," *Monthly Labor Review*, Sep. 1986, pp. 22~27.
- Meade Committee,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 London : Allen and Unwin, 1978.
- Modigliani, F., "The Collected Papers of Franco Modigliani Vol.2 :

-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 Abel (ed.),
Combridge, Massachusetts : MIT Press, 1980.
- Modigliani, F.,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Life
Cycle Saving in the Accumulation of Weal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88.
- NU Law Services National Underwriter, *1995 Tax Facts on In-
vestments*.
- OECD, *Taxation of Net Wealth, Capital Transfer,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 Paris, 1988.
- Pechman, J. A. (ed.), *Federal Tax Policy*, 5th ed., The Brook-
ings Institution, 1987.
- _____, *World Tax Reform A Progress Report*, The Brookings In-
stitution, 1988.
- Perotti, Roberto, “Growth, Income Distribution, and Democracy :
What the Data Say,” *Journal of Economic Growth*, June
1996.
- Richard, B. Stephense, Guy B. Maxfield and Stephen A. lind,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5th ed., Boston : War-
ren, Gorham & Lamont, 1987.
- Rosental, N. H., “The shrinking middle class : myth or reali-
ty?,” *Monthly Labor Review*, March 1985, pp. 3~10.
- Sandford, C. T., *Taxing Inheritance and Capital Gains*, 2nd ed.,
London: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67.
- _____, “Taxing Wealth,” *More Key Issues in Tax Reform*, Ch.
4, Fiscal Publications, 1995.
- Sandford, C. T., J. R. M. Willis and D. J. Ironside, *An Acces-
sions Tax*, London :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1973.
- Scase, R. and R. Goffee, *The Entrepreneurial Middle Class*,

- Croom Helm London and Canberra, 1982.
- Shoup, Carl S., *Federal Estate and Gift Taxes*, 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6.
- Steward, BV. C. and A. Taylor, *The Equitable Life Tax Guide, 1995/96*, 99th ed., The Economist, 1996.
- The Economist*, 10.19~10.25, 1996, p. 104.
- Thurow, L. C. "The Disappearance of the Middle Class," *The New York Times*, Feb. 5, 1984, p. F3.
- Timothy, J. Lyons, *Chapman's Inheritance Tax*, London:Longman, 1990.
- Torvik, R., "Talent,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ol. 95, No. 4, 1993, pp.581~596.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 Zuhtu Yucelik, M., "Taxation of Bequests, Inheritance, and Gifts," P. Shome(ed.), *Tax Policy Handbook*, IMF, 1995, pp. 188~191.

〈附錄 1〉 相續·贈與稅 改正 沿革表

1. 相續·贈與稅制의 沿革

가. 相續·贈與稅率 調整沿革

〈附表 1-1〉 相續稅率의 調整沿革

(單位：千圓，%)

課 標	67.11.29	74.12.21	79.12.28	81.12.31	88.12.26	90.12.31	94. 1. 1	96. 1. 1
	稅 率	稅 率	稅 率	稅 率	稅 率	稅 率	稅 率	稅 率
200 以下	5							
200 超過	10							
500 以下		10						
500 超過	15	12						
1,000 以下			7	7				
1,000 超過		15	10	9				
2,000 超過	20							
3,000 以下					5			
3,000 超過		20	13	11	10			
5,000 超過	30	25	17	13				
7,000 超過		30	21	15				
10,000 超過	40	35	25	17	15			
13,000 超過			29	20				
15,000 超過		40						
19,000 超過			33	25				
20,000 以下						10		
20,000 超過		45				20		
25,000 超過			37	30				
30,000 超過	50	50			20			
35,000 超過			42	35				
50,000 以下							10	10
50,000 超過		55	47	40			20	20
60,000 超過					25			
70,000 超過		60	52	45				
100,000 超過	60	65	57	50	35			
200,000 超過						30		
250,000 超過							30	30
300,000 超過		70	62	55	45			
500,000 超過	70	75	67	60	55	40		
550,000 超過							40	40
1,000,000 超過						55	50	40
※ 所得稅	7~50	8~70	6~62	6~60	5~50	5~50	5~47	10~40

〈附表 1-2〉贈與稅率의 調整沿革

(單位：千圓，%)

課 標	67.11.29 稅 率	74.12.21 稅 率	79.12.28 稅 率	81.12.31 稅 率	88.12.26 稅 率	90.12.31 稅 率	94. 1. 1 稅 率	96. 1. 1 稅 率
300 以下	10	10						
300 超過	15	15						
500 以下			7	7				
500 超過		20	11	11				
1,000 超過	20	25	15	15				
1,500 以下					5			
1,500 超過								
3,000 超過	30	30	19	19	10			
5,000 超過		35	23	23	15			
7,000 超過	40	40	27	27				
10,000 以下						15		
10,000 超過		45	32	32	20	25		
13,000 超過			37	37				
15,000 超過		50						
19,000 超過			42	42				
20,000 以下							15	10
20,000 超過	50	55					25	20
25,000 超過			47	47				
30,000 超過		60			30			
35,000 超過			52	52				
50,000 超過	60	65	57	57				
60,000 超過					40			
90,000 超過						35		
100,000 超過		70	62	62	50			
150,000 超過							35	30
200,000 超過	70	75	67	67	60			
250,000 超過						45		
300,000 超過							45	40
500,000 超過						60	55	40

나. 相續·贈與稅 控除額 調整 沿革

〈附表 1-3〉 相續稅의 控除額 調整沿革

區分 \ 施行日	1968.1.1	1972.1.1	1975.1.1	1977.1.1	1979.1.1	1980.1.1
① 基礎控除	150萬원	300萬원	600萬원	800萬원	800萬원	800萬원
② 人的控除						
가. 配偶者	50萬원	150萬원	500萬원	800萬원		1,600萬원
나. 子女		—	—	—		
다. 未成年者	20萬원 + (5萬원 × 20歲까지 의 年數)	左 同	30萬원 + (10萬원 × 20歲까지 의 年數)	24萬원 × 20歲까지 의 年數	左 同	24萬원 × 20歲까지 의 年數
라. 年老者	20萬원	40萬원	60萬원	100萬원		100萬원
마. 障礙者 (不具廢疾者)	20萬원	40萬원	60萬원	180萬원		180萬원
③ 住宅相續控除 3대 이상 대물림 住宅 등 追加控除						
④ 農地相續控除					120萬원 × (21歲부터 상속開始 時까지 農 耕從事年 數)	79.1.1 ~ 81.12.31 120萬원 × 21歲부터 農業從事 年數
⑤ 農地·草地·山林 地 相續 控除						
⑥ 家業相續控除 (課稅價額에서 控除：租減法)						
⑦ 山林相續控除			租減(73.1. 1)免稅	左 同	租減(78.1. 1)50% 控 除	左 同

〈附表 1-3〉의 계속

	1982. 1. 1	1983. 1. 1	1988. 1. 1	1989. 1. 1
① 基礎控除	800萬원	1,000萬원	1,000萬원	1,000萬원
② 人的控除				
가. 配偶者	1,600萬원	2,000萬원		4,000萬원
나. 子女				
다. 未成年者	24萬원 × 20歲까지의 年數	1人當 500萬원 40萬원 × 20歲까지의 年數	左 同	1,000萬원 100萬원 × 20歲까지의 年數
라. 年老者	100萬원	300萬원		1,000萬원
마. 障礙者 (不具廢疾者)	180萬원	800萬원		1,000萬원
③ 住宅相續控除 ○ 3대 이상 대 물림 住宅 등 追加控除	4,000萬원 (但,①+②包含)	6,000萬원 (但,①+②包含)	左 同	1億원 (但,①+②包含) (住宅價額 1億 원) × 90% (동거 부양 住宅控除에 3,000萬원 한도 설정)
④ 農地相續控除	削 除			
⑤ 農地·草地·山 林地 相續 控除	· 農地 : 6千坪 · 草地 : 3萬坪 · 山林地 : 3萬坪 ※ 5千萬원 限度	· 農地 : 6千坪 · 草地 : 3萬坪 · 山林地 : 6萬坪 ※ 7千萬원 限度	左 同	· 農地 : 9千坪 · 草地 : 4萬5千坪 · 山林地 : 9萬坪 ※ 1億 1千萬원 限度
⑥ 家業相續控除 (課稅價額에 서 控除 : 租 減法)			· 5年 以上 繼續 한 中小自營事 業을 相續받은 境遇 : 財産價 額의 20% 控 除	
⑦ 山林相續控除	5年 以上 山林全 額 免除	5年 以上 山林全 額 免除	左 同	左 同

〈附表 1-3〉의 계속

	1991. 1. 1	1994. 1. 1	1995. 1. 1	1996. 1. 1
① 基礎控除	6,000萬원	1億원	1億원	1億원
② 人的控除	1億원 + 결혼年數 × 600萬원	1億원 + 결혼年數 × 1,200萬원	左 同	선택 · 1億원 + 결혼年數 × 1,200萬원 · 실제상속가액 (10億한도법정상속지분) 左 同
가. 配偶者	2,000萬원	左 同		
나. 子女	300萬원 × 20歲까지의 年數	左 同		
다. 未成年者	3,000萬원	左 同		
라. 年老者	75歲까지의 年數 × 300萬원	左 同		
마. 障碍者 (不具廢疾者)				
③ 住宅相續控除 ○ 3대 이상 대물림 住宅 등 追加控除			1億원 (但, ①+② 包含) (住宅價額 1億원) × 90% (동거부양住宅控除에 3,000萬원 한도설정)	左 同
④ 農地相續控除				
⑤ 農地·草地·山林地 相續 控除		· 農地 : 9千坪 · 草地 : 4만5천坪 · 山林地 : 9만坪 ※ 1億1千萬원 限度	· 農地 : 9千坪 · 草地 : 4만5천坪 · 山林地 : 9만坪 (追加) · 漁船 : 20 톤 미만 · 漁業權 : 3萬坪 이내 漁場 (新設) · 營農相續人 : 1億 · 林業後繼者 : 2億	左 同
⑥ 家業相續控除 (課稅價額에서 控除 : 租減法)			· 5年以上 繼續한 中小自營事業을 相續 받은 境遇 : 財產價額의 20% 控除	左 同
⑦ 山林相續控除	5年以上 山林全額 免稅	左 同	左 同	左 同

〈附表 1-4〉 贈與稅의 控除額 調整沿革

區分	施行日				
	1968. 1. 1	1972. 1. 1	1982. 1. 1	1987. 1. 1	1989. 1. 1
① 親族控除					
가. 配偶者·直系尊 卑屬으로부터 受贈時	50萬원	150萬원	左 同	左 同	左 同
나. 親族으로부터 受贈時		100萬원			左 同
② 課稅最低限	50萬원	10萬원	左 同	左 同	左 同
③ 山林贈與控除	-	-	5年 以上 山林全額免除		左 同
④ 自耕農民이 贈與 받는 農地 등 免 除(租減法)	-	-	-	農地：6千坪 草地：3萬坪 山林地： 6萬坪 (91.12.31 까 지 贈與分에 한함)	農地：9千坪 草地： 4萬5千坪 山林地： 9萬坪
⑤ 營農 1子女가 贈 與받는 農地 등 免除(租減法)	-	-	-	上 同	上 同

〈附表 1-4〉의 계속

	1991. 1. 1	1994. 1. 1	1995. 1. 1	1996. 1. 1
① 親族控除	- 배우자 가.配偶者·直系 尊卑屬으로부터 受贈時 나.親族으로부터 受贈時	- 배우자 : 3,000 만 원 + 300만원 × 결혼 연수 - 직계존비속 :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 배우자 : 5,000 만 원 + 500만원 × 결혼 연수 左 同	- 배우자 : 5,000 만 원 + 500만원 × 결혼 연수 左 同
② 課稅最低限	10萬원	左 同	左 同	左 同
③ 山林贈與控除	5年 以上 山林全 額免除	左 同	左 同	左 同
④ 自耕農民이 贈與받는 農地 등 免除 (租減法)	農地 : 9千坪 草地 : 4萬5千坪 山林地 : 9萬坪 (96. 12. 31까지 贈與분에 한함)	左 同	農地 : 9千坪 草地 : 4萬5千坪 山林地 : 9萬坪 漁船 : 20톤미만 漁業權 : 3만평 이내의 어장 (1996. 12. 31 까지 증여분에 한 함)	農地 : 9千坪 草地 : 4萬5千坪 山林地 : 9萬坪 漁船 : 20톤미만 漁業權 : 3만평 이내의 어장 (1996. 12. 31 까지 증여분에 한 함)
⑤ 營農 1子女가 贈與받는 農 地 등 免除 (租減法)	上 同	上 同	左 同	左 同

〈附錄 2〉 公聽會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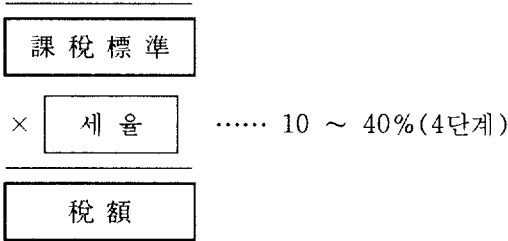
I. 現行 相續·贈與稅法 課稅體系

1. 相續稅 課稅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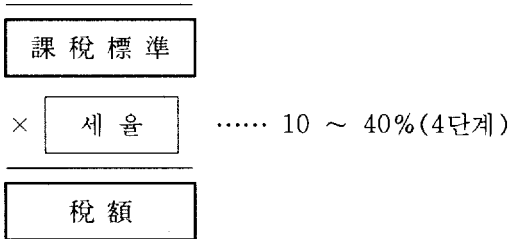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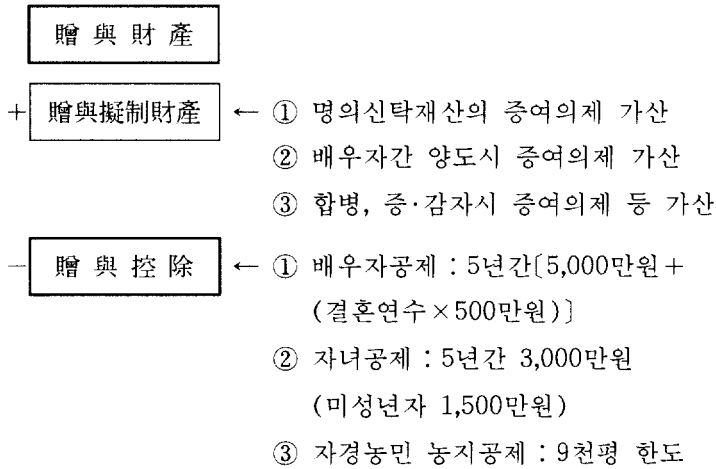
	相續財產	
+	사망전 5년내 증여재산	
-	채무·공과금	
-	비과세재산	← 국가·공공단체·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	각종 相續控除	← ① 기초공제 : 1억원 ② 배우자공제 : 1억원 + (결혼연수 × 1,200만원) 〈또는 실제상속가액 10억원 한도〉 ③ 자녀공제(2인까지) : 1인당 2천만원 ④ 미성년자공제 : 300만원 × 20세까지의 잔여연수 ⑤ 연로자공제 : 3천만원 ⑥ 장애자공제 : 300만원 × 75세까지의 잔여연수 ⑦ 주택·농지 등 물적공제 : 1억원 한도 ⑧ 농·어민 상속공제 : 1억원 추가공제 ⑨ 임업후계자 상속공제 : 2억원 추

가공제

- * 일반적으로 3~5억원 정도 공제
(배우자공제 감안시 13~15억
원까지 공제 가능)



2. 贈與稅 課稅體系



3. 相續·贈與稅 課稅 現況

-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접하는 비중 : 국세의 2%

〈附表 2-1〉 相續·贈與稅가 國稅에서 접하는 比重

(單位 : 10억원, %)

	1985	1990	1995	1996전망
국세(A)	11,876	26,847	56,736	64,509
상속·증여(B)	47	296	1,029	1,275
B/A	0.39	1.10	1.81	1.98

- 세수비중의 국제비교

〈附表 2-2〉 稅收比重的 國際比較

(單位 : %)

	일본(1995)	미국(1992)	영국(1993)	독일(1993)	프랑스(1993)
국세 중 접유비	4.7	1.78	0.76	0.47	1.96

- 상속재산 과세현황(1995) : 상위 3%가 60% 세부담

〈附表 2-3〉 相續財產 課稅 現況(1995)

(單位 : 명, 억원, %)

	계	1억원 이하	1~5억원	5~10억원	10~50억원	50억원 초과
과세인원	3,464 (100%)	377 (10.9)	1,701 (49.1)	647 (18.7)	634 (18.3)	105 (3.0)
결정세액	8,811 (100%)	8 (0.1)	458 (5.2)	405 (4.6)	2,664 (30.2)	5,275 (59.9)

- 증여재산 과세현황(1995) : 5억원 이하가 대부분(인원:99%, 세액:65.8%)

〈附表 2-4〉 贈與財產 課稅 現況(1995)

(單位:명, 억원, %)

	계	1억원 이하	1~5억원	5~10억원	10억원 초과
과세인원	35,555 (100%)	32,299 (90.8)	2,932 (8.4)	227 (0.6)	97 (0.2)
결정세액	4,481 (100%)	1,310 (29.2)	1,639 (36.6)	662 (14.8)	870 (19.4)

- 상속재산 분포현황(1995) : 부동산이 87% 차지

〈附表 2-5〉 相續財產 分布 現況(1995)

(單位:%)

계	토지	건물	금융자산	기타자산
100	75.9	11.3	9.6	3.2

- 상속·증여세 자진신고비율(자진신고액/총결정액) : 40% 수준

II. 改編背景 및 基本方向

1. 改編背景

相續稅法이 지난 1950년에 制定된 이후 그동안 所得水準의 향상, 人口의 노령화, 男女平等主義의 확산 및 金融·不動產 實名制 실시 등으로 變化된 經濟社會 與件을 수용

2. 基本方向

- 稅制의 單純化
 - 課稅基準을 명확히 하여 相續·贈與稅 탈루의 소지를 縮小
- 中産層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負擔感 경감
 - 中産층에 대한 生活基盤의 계속 維持를 지원
- 高額財産家에 대한 상속·증여세 課稅 強化
 - 高額財産家의 富의 이전에 대하여는 철저히 課稅하여 富의 分散을 유도하고 경제력 集中을 緩和
- 實名制 실시에 따라 상속·증여세제 운영의 實效性을 제고
 - 상속·증여 課稅資料의 효율적 수집과 高액재산가를 중심으로 한 人別財産管理體系 確立

Ⅲ. 取得課稅型으로의 轉換問題

가. 現行

- 相續稅 과세체계는
 - 사망자가 남긴 遺産 總額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遺産稅型과
 -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遺産取得稅型으로 구분됨.
- 우리나라는 사망자의 遺産 總額에 대하여 과세하는 遺産稅 型임.

나. 檢討意見

당분간 현행 遺産稅型 유지

다. 提案理由 및 檢討

- 유산취득세형의 경우 실제상속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고, 친족내부의 富의 분산에 유리
하며,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 신고기한(현행 : 사망일부터 6개월)까지 상속재산이 분할되
지 않는 일반적인 상속관행에 맞지 않고
 - 오랜기간 유산세형 과세방식을 시행해온 결과 상속세는 유
산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것이 일반국민의 인식
이라는 점과
 - 상속인별 상속금액의 확인이 어렵고, 상속재산의 위장분할·위장
결혼·위장입양 등에 대한 조사에 많은 세무행정력이 소요되며
 - 상속재산이 장기간 분할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액을 확
정할 수가 없어 상속세를 징수할 수 없음.
 - 또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가 확대되고 과세구간이 조
정될 경우 단기적으로 세수감소가 너무 크게 확대되는 문제
점이 있음.
- 따라서 상속과세체계는 당분간 現行을 維持하고, 취득과세형
으로의 전환문제는 중장기적으로 檢討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參考事項

1) 상속세 과세 방식

- 유산세형 : 우리나라, 미국, 영국
 - 납세의무자 : 피상속인(遺産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인 등이 승계)
 - 유산취득세형 : 일본, 독일, 프랑스
 - 납세의무자 : 상속인
- ※ 일본 : 변형된 유산취득세형(法定相續分 取得課稅型)

- 상속세 총액 : 상속인별로 법정상속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각 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모두 합산
- 상속인별 상속세액
 -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별로 실제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안분계산
 - 분할이 안될 경우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

2) 주요국의 相續·贈與稅 課稅 現況

〈附表 2-6〉 主要國의 相續·贈與稅 課稅 現況

	한국('95) (억원)	미국('92) (억달러)	영국('93) (백만 파운드)	독일('93) (억 마르크)	프랑스 ('93) (억프랑)	일본 ('95) (억円)
GNP	3,482,843	60,258	632,600	28,428	70,275	4,731,700('94)
국세	567,360	7,066	164,735	6,530	14,296	568,128
상속·증여세	10,290	126	1,268	30	280	26,840
GNP대비(%)	0.3	0.21	0.2	0.11	0.4	0.57
국세대비(%)	1.81	1.78	0.76	0.47	1.96	4.7

IV. 稅率 및 課稅區間의 統合方案

가. 現行

〈附表 2-7〉 相續·贈與稅의 稅率 및 課稅區間

상속세	증여세
5천만원 이하 10%	2천만원 이하 10%
2억5천만원 이하 20%	1억5천만원 이하 20%
5억5천만원 이하 30%	3억원 이하 30%
5억5천만원 초과 40%	3억원 초과 40%
(4단계)	(4단계)

나. 代案

1) 상속·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완전통합

2) 과세구간별 대안

제1안(1억, 4억, 8억원)	제2안(1억, 3억, 6억원)	제3안(1억, 5억, 10억원)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이하 10%
• 4억원 이하 20%	• 3억원 이하 20%	• 5억원 이하 20%
• 8억원 이하 30%	• 6억원 이하 30%	• 10억원 이하 30%
• 8억원 초과 40%	• 6억원 초과 40%	• 10억원 초과 40%

다. 提案理由 및 檢討

-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여 세제를 단순화
- 상속·증여간 意思決定에 세부담이 중립적이도록 함.
- 제1안은 현행 소득세과세 구간(1천, 4천, 8천원)을 고려
- 제2안은 개산공제의 도입 등으로 공제가 확대될 경우 세율 및 과세구간은 현행 수준 유지
- 제3안은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라. 參考事項

1) 外國의 事例 — 통합형이 일반적 추세

- 상속·증여세율 통합형 : 미국, 독일, 프랑스
- 증여억제형 세율구조 : 일본
- 증여장려형 세율구조 : 영국

2) 外國의 세율 및 과세구간

〈附表 2-8〉 主要國의 相續·贈與稅 稅率 및 課稅區間

	상속세	증여세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 18~55% (17단계) • 최고계급구간 300만\$ (약 23억 4천만원) 초과 55% 	(좌 동)
영 국	40%	20%
독 일 (배우자· 자녀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 3~35% (25단계) • 최고계급구간 1억DM(약 508억원) 초과 35% 	(좌 동)
프 랑 스 (배우자 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 5~40% (7단계) • 최고계급구간 1,120만F(약 17억원) 초과 40% 	(좌 동)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 10~70% (9단계) • 최고계급구간 20억円(약 146억원) 초과 70% * 4억円(약 29억원) 이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 10~70% (13단계) • 최고계급구간 1억円(약 7억 3천만원) 초과 70%

V. 配偶者 相續·贈與에 대한 課稅問題

1. 配偶者 相續控除

가. 現 行

- 『1억원+(결혼연수×1,200만원)』과 法定相續持分 內에서 실제 相續받은 金額(10억원 한도) 중 選擇

- 잔존배우자가 相續받았던 재산에 대해서는
 - － 잔존배우자의 死亡으로 7년 내 재상속시에는 100%, 10년 내 재상속시에는 70%의 短期再相續控除 인정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배우자상속공제액(결혼연수 기준)을 공제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 * 공제액 : 1억원 + (결혼연수 × 1,200만원)

나. 代案

(제1안)

- 1) 배우자상속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전액 비과세
 - － 현행 10억원의 금액한도 폐지
 - － 결혼연수 기준에 의한 공제제도 폐지
 -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경우는 遺留分 상당액(법정상속분의 1/2)을 공제
 - 비과세분은 단기재상속공제를 적용 배제하고, 잔존배우자 사망시에 과세
- 2) 이혼시 재산분할
 - 증여세 비과세

(제2안)

- 1) 배우자상속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비과세하되,
 - － 일정금액(예 : 30억원 수준)의 한도 설정
 - － 결혼연수기준에 의한 공제제도 폐지
 -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경우는 遺留分 상당액을 공제하되, 한도금액(예 : 30억원)까지 공제인정

- 단기재상속공제
 - 비과세분은 적용 배제하고, 과세분은 적용

2) 이혼시 재산분할

- 배우자상속공제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제3안)

1) 배우자상속공제

- 결혼연수 공제기준을 확대
 - 『1억원+(결혼연수×1,200만원)』 →
 - 『2억원+(결혼연수×2,400만원)』

- 단기재상속공제 허용

2) 이혼시 재산분할

- 배우자상속공제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다. 提案理由 및 檢討

1) 제1안의 경우

○ 1세대 1회 과세원칙상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전액 비과세를 인정

- 배우자간 移轉은 세대간 이전이 아니므로 夫婦를 하나의 課稅單位로 인정하여 배우자상속분을 非課稅하고, 잔존배우자 사망시에 비과세된 상속재산을 과세이연하여 과세함이 타당.

○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과세시 부부합산과세하는 것과의 일관성 유지.

- 상속세 회피를 위해 배우자 상속분을 실제와 달리 신고하거나 비과세된 재산을 조기매각을 통해 잔존배우자가 자녀에게 移轉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탈루하는 문제는

- 상속재산의 약 90%가 부동산인 점을 감안하여 배우자가 상

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로 과세(移越承繼課稅方式)되기 때문에 문제가 적음.

2) 제2안의 경우

- 배우자상속액을 限度 없이 과세 제외하는 경우 高額財產家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 들어 富의 分散을 유도하기 어려우므로 금액한도를 설정.

3) 제3안의 경우

- 결혼생활 지속연수에 비례하여 配偶者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老後生活을 보장할 수 있는 金額을 배우자공제
*연 2,400만원(월 200만원)씩 공제인정

라. 參考事項

1) 외국의 배우자 상속공제

- ① 미국·영국 : 배우자 상속분은 전액공제
- ② 일본 : 법정상속분(유산액의 1/2) 상당세액 공제
법정상속분이 적더라도 최소한 1억 6,000만円 이상(12억 3,500만원)을 공제 인정
- ③ 독일 : 25만DM(1억 2,500만원)를 공제
- ④ 프랑스 : 33만F(5,280만원)을 공제

2) 민법상 법정상속분(1991년 1월 1일 이후 시행)

- 배우자의 상속분은 50% 가산
- 男女間, 子女間 상속비율의 완전 균등화
- 호주상속자 상속분 가산제도의 폐지

(事例)

- i) 배우자, 자녀 2인이 상속시 : 배우자(1.5), 자(1), 녀(1)
- ii) 배우자, 부모가 상속시 : 배우자(1.5), 부(1), 모(1)

3) 배우자상속공제연혁

- 1968~1971 : 50만원 - 1972~1974 : 150만원
- 1975~1976 : 500만원 - 1977~1979 : 800만원
- 1980~1982 : 1,600만원 - 1983~1988 : 2,000만원
- 1989~1990 : 4,000만원
- 1991~1993 : 1억원 + 결혼연수 × 600만원
- 1994~1995 : 1억원 + 결혼연수 × 1,200만원

2. 配偶者 贈與控除

가. 現 行

- 5년간 5,000만원 + (결혼연수 × 500만원)

나. 代 案

- (제1안) 5년간 개산공제수준(5억원) 공제
- (제2안) 5년간 2억원 + (결혼연수 × 1,200만원)

다. 提案理由 및 檢討

1) 제1안의 경우

- 배우자상속공제(제1, 2안)에서와 같이 법정상속지분 또는 일정 금액한도(30억원 수준) 내에서 비과세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5년간 5억원을 공제
 - * 30년간 30억원을 공제
-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결혼연수의 장단에 관계 없이 동일하다고 봄.
 - 결혼연수가 긴 부부의 연간 배우자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현행 : 30년인 부부는 5년간 2억원 공제)가 결혼연수가 짧

은 부부(현행 : 2년인 부부 5년간 6,000만원)에 비해 크다고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2) 제2안의 경우

○ 배우자상속공제(제3안)에서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재산형성 기여도를 결혼생활 지속연수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 체증하여 공제 인정

* 결혼생활 10년인 부부의 경우 5년간 3억 2천만원이 증여세 면세되는 수준

라. 參考事項

1) 배우자증여공제 연혁

1972~90	1991~93	1994~95	1996
150만원	1,500만+100만원 ×결혼연수	3,000만+300만원 ×결혼연수	5,000만+500만원 ×결혼연수

2) 외국의 배우자증여공제

- ① 미국·영국 : 전액공제
- ② 일본 : 기초공제 60만円(약 440만원)을 공제
혼인기간 20년 이상 부부간 주택자금은 2천만円
추가공제 (평생 1회)
- ③ 독일 : 25만마르크(1억 2,500만원)를 공제
- ④ 프랑스 : 33만프랑(5,280만원)을 공제

3. 相續·贈與 非課稅 不動產에 대한 移越承繼課稅制度

가. 現行

○ 배우자·자녀·특수관계법인 등에게 자산을 贈與한 후, 수증자

가 수증일부터 '2년내'에 讓渡할 경우 贈與者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不當行爲의 計算 否認方式)
 양도차익 = 양도가액 - 贈與者의 당초 취득가액

나. 代案

① 자녀 등이 不動產을 증여받은 후 '3년내'에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carry-over)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세 과세

(이유)

- 현재 비영리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내' 양도한 경우 출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 과세하는 것과 균형 유지

② 배우자가 상속·증여받은 不動產에 대한 이월승계(carry-over) 과세제도 도입

(이유)

- 배우자상속공제(제1, 2안)와 균형유지
 - 배우자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보아 상속·증여세를 대폭 비과세(공제) 인정한 것이므로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세 과세

※ 양도차익 계산방법

- 배우자 상속·증여공제액 초과분을 상속·증여세 과세하고
- 양도세 과세시에는 상속·증여세 부담액은 필요경비로 공제
- * 필요경비로 인정할 세액은 안분계산함.

다. 參考事項：外國의 事例

1) 일본

- 상속·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과세함.
 -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당초 취득가액을 이월승계하여 양도시점에 양도세 과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당초취득가액

- * 상속·증여후 3년내 양도한 경우는 양도가액에서 상속·증여세액을 차감함.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상속·증여시의 時價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看做하여 상속·증여시점에 양도세 과세
 - 법인(공익법인은 제외)에 대한 증여
 - 한정상속의 경우
- * 限定相續：상속재산을 한도로 사망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조건부 상속

2) 영국

- 1965~71년 무상이전에 대해서 자본이득세(capital transfer tax)와 상속세 과세
 - (* 자본이득세를 유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
- 1971~86년 자본이득세만 과세(상속세를 과세 안함)한 바 있음.

VI. 相續·贈與控除制度의 改善方案

1. 相續控除制度의 單純化

가. 現行 相續控除制度

〈附表 2-9〉 現行 相續控除制度

	항 목	공 제 내 용	한 도	
基礎控除 人 的 控 除 (5종)	- 배우자공제	· 1억원 · 1억원 + '1,200만원 × 결혼연수'와 법정상속 지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10억원 한도) 중 선택	10억원	
	- 자녀공제	· 1인당 2,000만원(2인 한도)	4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300만원 × 20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 1인당 3,000만원(남자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자)		
	- 장애자공제	· 300만원 × 75세까지의 잔여연수		
	- 주택공제 (일반공제)	· 상속재산 중 주택 1동		
	- 주택공제 (추가공제)	· 3대이상 대물림주택 및 5년이상 동거봉양주택 가액의 90% 공제	1억원	
	物 的 控 除 (7종)	- 농지		· 9천평 이내
		- 초지		· 4만 5천평 이내
		- 산림지		· 9만평 이내
- 어선		· 20톤 미만 이내		
- 여장		· 3만평 이내		
- 기업상속공제		· 5년 이상 계속사업용자산 가액의 20% 공제		
山林相續 控除	· 5년 이상 조립한 산림 전역 공제	없 음		
營農·營漁 相續人控除	· 1억원 추가공제			
林業後繼者	· 2억원 추가공제			

나. 代案

1) 物的控除制度를 폐지하고, 基礎控除額을 인상

<u>현</u> <u>행</u>	<u>방</u> <u>안</u>	<u>비</u> <u>고</u>
• 一般人 : 기초공제 1억원	→ 2억원	물적공제 한도
• 營農·營漁 相續人 : 1억원 추가공제	→ 3억원	1억원만큼 인상
• 林業後繼者 : 2억원 추가공제	→ 4억원	

(이 유)

- 물적공제를 廢止하고, 기초공제에 흡수하여 제도를 單純化
 - 주택 등 적용대상재산이 광범위하여 사실상 기초공제화되고 있음.
- 현행 물적공제제도는 상속인의 物的基礎財産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는 意味가 있으나, 금액제한으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고,
 - 物的控除 대상자산의 유무에 따른 과세상 불형평 문제가 있음.

※ 물적공제제도의 이용현황(1995)

- 과세인원 : 3,464명(100%)
 - 주택공제 : 2,172명(62.7%)
 - 농지·초지·산림지 : 345명(10%)
 - 산림공제 : 3명
 - 가업상속 : 4명

2) 人的控除制度의 單純化方案

○ 子女控除

- 공제액(현행 1인당 2천만원)을 상향조정 : 2천만원→3천만원
- 현재 2인까지 허용되고 있는 공제대상자녀수 제한은 폐지

(이 유)

- 연로자공제, 미성년자공제와 동일하게 3천만원 정액공제를 인정하여 제도 단순화
- 산아제한으로 공제자녀수가 줄었기 때문에 자녀수 제한제도의 실효성이 적음.

※ 자녀공제 인원(1995) : 3,524명(사망자 1인당 1.02명)

○ 年老者控除·未成年者控除를 定額控除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로자공제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300만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 	}	⇒ 3천만원
--	---	--------

(이 유)

- 공제제도의 단순화

※ 연로자공제 인원(1995) : 359명

미성년자 공제 인원(1995) : 1,020명

○ 障礙者控除

(제1안)1억원 공제	(제2안)현행유지(300만원×75세까지의 잔여연수)
○ 공제제도의 단순화	○ 정액공제전환시 공제액이 축소되는 경우 발생

※ 장애자공제 인원(1995) : 78명

3) 概算控除制度의 導入

(도입이유)

- 일정금액까지는 一括控除해주는 간편한 개산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중산층의 相續稅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줌.
 -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라 項目別控除(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에 개산공제액(예:5~7억원)을 選擇 허용.
- ※ 배우자상속공제는 概算控除와는 別途로 허용됨.

<p>(제1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 * 5억원 • 영농·영어상속인 : 6억원 • 임업후계자 : 7억원 	<p>(제2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 * 4억원 • 영농·영어상속인 : 5억원 • 임업후계자 : 6억원
<p>○ 일반상속의 경우</p> <p>* 상속공제액(5.2억원) : 기초공제(2억원) + 자녀공제(3천만원 × 2인) + 미성년자공제(3천만원 × 2인) + 장애자공제(10살, 300만원 × 65년)</p>	<p>○ 일반상속의 경우</p> <p>* 상속공제액(3.2억원) : 기초공제(2억원) + 자녀공제(3천만원 × 2인) + 미성년자공제(3천만원 × 2인)</p>

2. 贈與控除制度

가. 現 行

- 직계존비속간 : 5년간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 기타 친족간 : 5년간 500만원

나. 代 案

(제1안) 직계존비속·기타친족 구분없이 3,000만원 공제
(제2안) 직계존비속·기타친족 구분없이 5,000만원
(미성년자 3,000만원) 공제

다. 提案理由 및 檢討

1) 제1안의 경우

- 친족간의 부의 분산을 촉진하고 공제제도를 단순화
- 과세구간의 통합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되므로 증여공제액 수준을 현행유지

2) 제2안의 경우

- 권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공제액을 축소하여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소지를 축소
- 공제액을 인상할 경우 증여세 회피 금융상품(예 : 타익신탁)의 증가 문제가 발생

라. 參考事項 : 外國의 事例

〈附表 2-10〉 主要國의 贈與控除制度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미 국	1년간 1만달러	(좌 동)
영 국	1년간 3만파운드	(좌 동)
독 일	10년간 9만마르크(자녀)	10년간 3천~5만마르크
프랑스	10년간 30만프랑(자녀)	10년간 10만프랑(형제자매)
일 본	1년간 60만円	(좌 동)

3. 金融資産 相續控除制度 新設 方案

가. 現 行

- 不動産은 基準時價로 평가되어 時價의 70~80% 수준으로 과세되나, 금융자산은 額面金額으로 과세됨.

나. 代 案

- 금융자산 20% 공제인정
 - 한도 : 8,000만원
 - 支配株式은 제외
- 증여재산은 적용배제

다. 提案理由 및 檢討

- 금융자산이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문제 해소
-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자산이 양성화되어 과세포착률이 높아지므로 금융자산의 보유를 장려할 필요성 증대
- 한도없이 공제를 인정할 경우 고액의 금융자산소유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한도 설정
 -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원본 약 4억원)임을 감안하여 8천만원(4억원의 20%)을 한도로 설정
- 支配株式에 대하여는 회사경영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주식보다 할증평가되므로 20%의 금융자산 控除對象에서 제외
 - * 지배주식 : 당해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株主로서 그와 특수관계 있는 株主를 포함)가 보유한 주식
- 금융자산을 贈與하는 경우에는 증여시마다 일정액(5년간 3천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20%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함.

라. 參考事項 : 상속·증여재산 종류별 점유비 (1995년 과세가액 기준)

- － 상속세
 - 부동산 : 87.2% • 금융자산:9.6% • 기타자산:3.8%
- － 증여세
 - 부동산:87.7% • 금융자산:11.2% • 기타자산:1.1%

4. 保險金·信託에 대한 特別相續控除 問題

가. 現 行

- 보험금은 1,500만원, 實物信託(금전신탁은 제외)은 700만원을 상속세 과세제외

나. 代案

보험금·신탁에 대한 특별상속공제제도 폐지

다. 提案理由 및 檢討

- 금융상품간 과세불형평 문제해소
- 특정금융상품별 공제제도는 개산공제제도로 흡수가능
- 상속세제의 단순화

5. 相續後 發生하는 特別損失費用 認定方案

가. 現行

- 상속개시 후에서 신고서 제출기한 전까지 발생한 損失에 대한 공제제도 없음.

나. 代案

- 특별손실공제제도 (신설)
 - 신고기한 내에 화재·천재지변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 다만, 보험금에 의해 보상되거나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다. 提案理由 및 檢討

- 상속재산이 신고기한 내에 멸실·훼손되어 현저히 가치가 하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

- 현실적으로 납세능력이 부족하게 된 납세자의 편의 제고

라. 參考事項：外國의 事例

- － 상속세신고기한 전에 화재 등으로 상속재산에 손실이 발생하고, 보험 등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인정(미국, 일본)

VII. 高額財産家에 대한 課稅實效性 提高方案

1. 公益法人 管理方案

가. 現行

- 공익법인에 財産을 출연하는 경우 相續·贈與稅를 조건부 免稅
- 다음의 경우에는 免稅한 상속·증여세를 추징
 - － 出捐目的 外에 사용한 경우
 - － 相續人 또는 그 친족에게 출연재산의 利益이 귀속되는 경우
 - － 출연받은 재산을 3년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특정회사의 株式을 5% 이상 소유하는 경우 등

나. 代案

- ① 自己內部去來에 대한 규제 強化(신설)
 - 현재는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이 사용·수익한 때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나,
 - 앞으로는 당해 공익법인의 임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그 임원을 규제대상에 추가함.

② 5%초과 출연주식의 처분의무 부여 (신설)

- 현재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시 특정내국법인의 議決權株式의 5% 이하로 제한하여 면세하나, 1993년 12월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20%까지 인정함.
- 앞으로 1993년 12월 이전 5%超過 株式에 대해서도 일정 유예기간(3년)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
- 위반시 가산세 부과(1회에 한함) : 20%

③ 外部監査 의무화 (신설)

- 회계사 등의 외부감사(2년에 1회)를 받도록 하여 투명성 확보

— 신고시에 「세무감사의견서」를 함께 제출

※ 주요 감사사항

- 출연목적사용 여부, 5%초과 보유주식, 자기거래 위반
- 비업무용자산출연·처분대금의 용도
- 감사결과를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에게 열람 허용
 - 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비치의무 부여 (보존기간 : 10년)

○ 적용대상의 선정

- 공익사업의 내용, 총자산 규모, 연간 출연·수증금액, 자산의 변동상황, 이사의 구성 등 운영의 투명성을 반영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④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理事就任 제한제도는 폐지

- 명의를 빌리거나 총이사수를 늘림으로써 취임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어 同 制度는 실효성이 의문시됨.

다. 다음의 제도는 현행유지

- i) 매년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50% 이상을 공익목적에 使用 의무화
- ii)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액 추징
- iii) 특정회사의 株式을 5% 이상 보유금지 등

2. 借名株式의 實名化 誘導方案

가. 現 行

- 주식의 차명은 각종 법령의 규제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
- 현재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緊急命令에 의하여 실명거래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
- 현행 相續稅法에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명의신탁)할 경우 차명시점에 증여의제 과세하여야 하나
 - 조세회피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워 증여세 課稅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나. 代 案

- ① 실명전환유예기간(2년)중 실명전환한 주식에 대하여는 特例 稅率(10%)로 최저과세
 - 과거의 차명주식에 대하여 실명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통과장치를 마련
 - ※ 당초 명의신탁사실의 확인 : 입증자료 등을 통해 사실판단

② 유예기간까지 실명화하지 않거나, 범시행일(1997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推定하는 根據를 신설

- 세무당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推定하여 과세할 수 있는 論理的 정당성 확보

③ 僞裝贈與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근거마련

- 실명전환유예기간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주식을 타인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계비속 또는 미성년자 명의 등으로 실명전환한 경우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 필요

④ 株主名簿의 實名化 추진방안

- 회사(비영리법인은 제외)에 대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시마다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

- 대상주식은 상장 및 비상장주식을 불문함.

○ 실명전환의 강제방법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은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부실·허위기재에 대하여 제재가 없어 주주명부를 실명화하기 어려움.

- 앞으로 주주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의 실명화 유도(소액주주는 제외)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세법처벌법)

: 형사벌(징역, 벌금, 과료)

3. 支配株式에 대한 割増評價

가. 現行

-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식에 대하여는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일반주식보다 10%를 割増評價하여 상속·증여세 과세

※ 支配株式의 범위

- :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주식합계가 당해법인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식(법인세법시행령 §46의 2② 준용)

나. 代案

- 상장법인의 지배주식에 대하여도 할증평가하고,
- 지배주식(상장,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를 상향조정 (현행 10% → 20%)

다. 提案理由 및 檢討

-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 지배주식에 대한 과세형평 유지
- 지배주식은 지배가치를 반영하여 통상가격보다 고가로 거래되고 있음을 감안

4. 世代省略 相續·贈與에 대한 課稅強化

가. 現行

- 1세대를 뛰어 넘어 상속·증여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稅額의 20%를 가산하여 과세 (例: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

증여하는 경우)

- 다만, 代襲相續(例:父가 사망하여 孫子가 상속받는 경우)은 제외

나. 代案

(제1안) 30% 할증과세	(제2안) 40% 할증과세
○ 상속·증여세의 평균실효세율(약 30%) 수준으로 할증과세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현행 40%) 수준으로 할증과세

다. 參考事項：外國의 事例

1) 일본

- 1촌의 혈족(자, 부모) 및 배우자 외의 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액의 20% 할증과세
- 다만, 최고세율(현행 70%)을 한도로 함.

2) 미국의 세대생략 과세(generation-skipping tax)

- 상속·증여재산의 합계액이 1백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55%로 과세

5. 短期再相續 控除制度 改善

가. 現行

- 7년 이내 재상속시 100%공제, 10년 이내는 70%공제 허용
- 공제율의 폭이 크기 때문에 재상속기간과 공제율간의 상호 연관성이 미흡

나. 代案

(제1안) 1년간격으로 100%에서 10% 포인트씩 체감(일본식)	(제2안) 2년간격으로 100%에서 20% 포인트씩 체감(미국식)
○ 연수의 경과에 따라 세부담 이 완만하게 경감되도록 다 단계화	(좌동)

다. 參考事項：短期再相續控除率

〈附表 2-11〉 主要國의 短期再相續 控除率

(單位：%)

경과연수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1년 이내		100		50
2년 이내	100	90	100	45
3년 이내		80	80	40
4년 이내	80	70	60	35
5년 이내		60	40	30
6년 이내	60	50	20	25
7년 이내		40		
8년 이내	40	30		20
9년 이내		20		
10년 이내	20	10		10

VIII. 金融 및 不動產實名制 實施 關聯 補完事項

1. 相續開始 2年內 處分財產에 대한 相續看做制度 補完

가. 現行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내에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를 상속인이 밝히지 못하면 당해 재산을 상속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 通帳을 통한 금융거래는 입금과 출금이 빈번한 것이 일반적이나 출금액에 대해서만 그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에 대한 분쟁 발생

* 현행 입증책임 한도

- 10억원 이하 : 80%까지
- 10억원 초과분 : 95%까지

나. 代案

- ① 상속으로 간주하는 대상재산의 범위를 축소
(2년 내 처분된 1억원 이상 → 1년 내 처분된 2억원 이상)
- ② 동일 통장 내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1년 이내 예금잔고 감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동 제도의 적용 배제

다. 提案理由 및 檢討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

이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축소

※ 舊案 : 동일 통장 내의 거래에 대해서는 예금잔액 비율이 일정기준(예:75%) 이상인 경우는 상속간주제도 적용배제

理由 : 동일한 통장 내에 있는 입금액과 출금액 합계액 모두의 사용처를 일일이 밝히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완화

$$* \text{예금잔액비율} = \frac{\text{사망일의 예금잔액}}{\text{사망일 1년전 예금잔액}}$$

- 예금잔액비율이 일정기준(예:75%) 미만인 경우만 출금내역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推定

2. 不動產名義信託에 대한 贈與擬制課稅制度 廢止

가. 現行

-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는 신탁시점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나. 代案

-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제도 폐지

다. 提案理由 및 檢討

- 부동산실명법의 실시로 부동산명의신탁이 금지되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화됨(1995년 7월 1일 이후).

- 따라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화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제도의 실효성 상실

3. 相續財産 公示制度 廢止

가. 現 行

-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내용을 세무서 게시판에 공고

나. 代 案

- | |
|-----------|
| ○ 공시제도 폐지 |
|-----------|

다. 提案理由 및 檢討

-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 토지·주택전산망 등의 구축으로 상속세 신고내용의 사실검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도입된 상속재산 공시제도는 폐지

라. 參考事項 : 상속재산 공시제도 운용현황(1991~95)

- 총공고건수 : 248건
- 세무서 게시판에 공고하므로 공시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행정력만 소모되는 결과

IX. 稅務行政의 改善

1. 申告納付制度로의 轉換問題

가. 現 行

- 상속·증여세는 정부부과결정제도
 - － 상속·증여일부터 6월 내 신고
 - － 신고내용을 기초로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나. 代 案

(제1안) 현행 정부부과결정제도 유지
(제2안) 신고납부제로 전환

다. 提案理由 및 檢討

1) 제1안의 경우

- 상속재산의 파악, 신고누락재산의 조사, 재산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가 필수적이므로 정부부과결정제도의 유지가 필요
-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신고성실도를 사전에 검증할 방법이 없음.
- 재산의 유상양도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현재 정부부과결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균형 유지

2) 제2안의 경우

- 세금을 자진신고 유도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려는 것

이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임.

○ 상속·증여세는 대부분 세무대리인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제로 전환하더라도 실질적인 신고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라. 參考事項：加算稅와 稅額控除

〈附表 2-12〉 加算稅와 稅額控除

	신고납부제도 (소득세·법인세 등)	정부부과결정제도 (상속·증여, 양도세 등)
○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불성실(과소신고) 가산세 : 10% 또는 20% 무납부(과소납부) 가산세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불성실(과소신고) 가산세 : 20% 무납부(과소납부) 가산세 : 10% 또는 10~30%
○ 신고세액 공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세액공제 : 상속·증여 10% 납부세액공제 : 양도 15%

2. 相續·贈與稅 合算課稅期間

가. 現 行

- 상속세 : 상속개시 5년 내(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는 3년) 증여분을 상속세에 합산하여 과세
- 증여세 :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5년간 합산하여 과세

나. 代案

- (제1안) 현행 유지(5년)
 (제2안) 현행 5년→7년으로 연장

다. 提案理由 및 檢討

1) 제1안의 경우

- 현재 시점의 증여세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합산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합산과세기간 연장시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이 증대

2) 제2안의 경우

- 사전 분할증여에 의한 누진세 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산기간의 연장이 필요

라. 參考事項：各國의 合算課稅期間

〈附表 2-13〉 主要國의 合算課稅期間

	상속세 합산	증여세 합산
미 국	평 생	평 생
영 국	7 년	7 년
독 일	10년	10년
프 랑 스	10년	10년
일 본	3 년	1 년

3. 金融資産 一括照會

가. 現行

- 긴급명령상 금융자산 조회는 특정점포에 개별적으로 요구

- 法院의 令狀이 있는 경우는 本店 電算室에 대한 일괄조회 허용
- 公職者倫理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도 일괄조회 허용
- ※ 구상속세법상 금융자산 일괄조회제도가 1990년 12월 도입되었으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1993년 12월에 폐지되었음.

나. 代案

- 「死亡者 및 그 配偶者」에 대하여 일괄조회를 허용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자 중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

다. 提案理由 및 檢討

- 특정점포별로 照會하므로 소유주의 확인절차가 번잡하여 금융기관과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 측면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의 금융정보이용을 과다하게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나 사망자에 대해 일생에 한번 최종적으로 과세하는 상속세의 특성상 일괄조회 허용에 따라 증대되는 사회적 이익을 감안할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일괄조회 허용이 필요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망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일괄조회가 필요
- ※ 상속세 과세인원이 연간 약 3,500명(1995년)이므로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자 중 연간 약 7천명 정도가 일괄조회 대상이 됨.

4. 相續·贈與財產의 評價方法

가. 現行

-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時價에 의해 평가
 - 時價를 알 수 없는 경우
 - － 不動產
 - 토지는 公示地價,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공동주택(APT)은 국세청 基準時價
 - － 株式
 - 상장주식 : 1개월간 평균 주식가격과 사망일의 주식가격 중 낮은 價格
 - 비상장주식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
- 다만, 지배주식인 경우에는 10% 割増 評價

나. 代案

1) 基準時價의 現實化 推進

(이유)

- 부동산은 대부분 基準時價로 과세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가와 의 차이를 최소화
- *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建物(예 : 상가,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算定·告示

2) 上場法人株式의 評價方法 改善

- 3개월 平均額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을 평가
- 증여세 신고기한을 단축 (현행 6개월→3개월)

(이유)

- 추가등락을 이용하여 稅金을 줄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

- 증여취소·재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사례 최소화

3) 擔保設定된 財産에 대한 評價方法

- 현행 : 담보설정된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시가(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제1안) 시가(기준시가)로 평가	(제2안) 현행유지
○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담보설정 여부에 따라 평가액이 차이가 나게 되어 과세불형평이 발생하는 문제 해결	○ 담보채권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됨. ○ 시가(기준시가)로 평가시 채무액이 시가(기준시가) 이상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발생

5. 包括主義 課稅方式으로의 轉換 問題

가. 現 行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에 의한 본질적 의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
- 예외적으로 증여의제규정을 두어 특수관계인 등에게 이익을 분여했을 때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
(예) 합병·불균등 감자·증자시 증여의제 등

나. 代 案

(제1안) 자본거래에 대하여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

다. 提案理由 및 檢討

1) 제1안의 경우

- 다양한 자본거래 형태에 대하여 현행 증여의제규정으로는 사실상 증여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주식의 거래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의 제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를 예상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증여세과세규정을 두어 주식을 이용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차단장치 마련

2) 제2안의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작위·부작위로 사실상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
-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에 따라 납세자와 미찰이 예상되고, 과세요건이 불명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열거주의방식에서 포괄주의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포괄주의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실효성이 저하될 것이 예상된다.

6. 物納基準金額의 調整

가. 現 行

-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인 경우 물납 신청가능
- ※ 물납요건
 - 납부세액 240만원 이상
 -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1/2 이상일 것

-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신청할 것
-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할 것

나. 代案

- 물납 기준금액을 인상(240만원→1,000만원)

다. 提案理由 및 提案

- 상속세의 물납 기준금액을 양도세, 토초세, 법인세와 일치시켜 세법간 형평유지

라. 參考事項

〈附表 2-14〉 主要稅目的 物納基準金額 및 對象財産

세 목	납부세액기준	대 상 재 산	비 고
○ 법인세	○ 1,000만원 초과	○ 토지개발채권	○ 토지개발채권 : 한국토지공사 에 양도한 부 동산대금으로 교부받음.
○ 상속· 증여세	○ 240만원 이상	○ 부동산·유가증권	
○ 토지초과 이득세	○ 1,000만원 초과	○ 토지	
○ 양도소득세	○ 1,000만원 초과	○ 토지개발채권	○ 법인세와 동일

7. 相續稅의 更正請求權의 特例 新設

가. 現行

- 당초신고시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後發的 사유)가

생긴 경우는 「2개월 내」에 당초신고된 세액을 감액경정청구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나. 代案

- ① 상속세의 감액경정청구기한을 연장
(현행 2개월→6개월)
* 후발적 사유 : 相續回復請求訴訟에 의한 상속권자의 변동 등
- ② 상속받은 부동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例:수용·공매)된 경우 → 당초 평가액과 실제 처분가액이 차이가 있는 때는 정부 결정 전까지 감액경정청구 허용

다. 提案理由 및 檢討

-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
 -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결과 패소한 경우에는 현행 신고기한(6개월)까지 감액청구기한을 연장
 - 상속 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는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
 - ※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자가 증여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무상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당초신고시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적기 때문에 특례를 인정하지 않음.

8. 人別財産管理 電算體系의 構築

가. 現行

- 수집된 과세 자료는 자산종류별로 관리되고 있고, 人別管理는

미흡한 실정

- 과세자료 보유기관의 과세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도 불충분함.

나. 代 案

① 課稅資料 수집 관련기관의 協助義務 補完

- 이자·배당 :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철저히 하도록 의무화
- 보험금 : 수동으로 작성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산 테이프 제출 의무화
- 골프장회원권 등 시설물이용권 : 매년 회원변동상황을 보고 의무화
- 주식 : 이동상황명세서 제출시 출자지분도 포함

② 人別財產管理體系(personal record) 구축을 명문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및 고액 배우자상속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인별관리하도록 법정화

다. 提案理由 및 檢討

- 토지, 주택, 주민전산망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상속·증여세 과세의 실효성 제고
- 수집된 자료와 활용가능한 자료의 입력을 통해 고액재산가 중심의 인별재산관리체계를 구축

〈附錄 3〉 公聽會 發表內容

- 일 시 : 1996년 6월 3일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가야금홀)
- 토 론 자 : 강용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강인애 (변호사)
김숙자 (명지대 교수)
신찬수 (한선합동회계사무소 대표공인회계사)
엄기용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이사)
윤건영 (연세대 교수)
이근경 (재정경제원 재산소비세심의관)
이철송 (한양대 교수)
- 객석지정 토론자 : 송쌍중 (서울시립대 교수)
김면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객 석 발 언 자 : 정용선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영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노동래 (유한양행 상임감사)
박철용 (동암합동회계사무소)
이승남 (경인지방국세청)
정준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이사)

〈附表 3-1〉 討論內容 要約

	강 용 선	강 인 예	김 숙 자
개편배경 및 기본방향의 평가	· 긍정적 평가	· 원칙적인 찬성	-
취득과세 전환	· 장기적으로 찬성 · 단기적으로 유산과세형 지 지	· 반대 · 유산과세형 지지	-
세율, 과세구간 통합	· 상속세율 인상 필요(50→ 60%) · 과세구간 통합 반대	· 완전통합 찬성(구간 증설 및 최고세율 55% 수준 필요)	-
배우자 상속·증여공제	· 상속:조건부 제2안 찬성 일정상한내 인정 · 증여:제1안 찬성 일정한도 내 비과세	· 상속:제3안 찬성(결혼기간 에 따라 금액누진필요) · 이월승계과세제도 반대	· 배우자간 상속·증여세 전 액공제 필요. 단, 유산의 1/2 한도 내 · 차선으로 제1안 찬성
상속·증여공제	· 장애자공제:제2안 · 증여공제:제2안(미성년자 한도확대 반대) · 금융자산공제 반대	· 물적공제 폐지 · 기초공제 인상 · 장애자공제:제2안 · 개산공제:제1안 · 증여공제:제1안 · 금융자산공제 반대	-
고액자산가 과세실효성 제고	· 차명주식 증여의제 찬성하 나 번거로움 · 지배주주 할증평가 반대 · 소액주주 제한에 대해 검 토 필요 · 공익법인 관련조치 일정 기간 두고 정리	· 공익법인 출연주식문제 개 정안 반대	-
금융·부동산 실명제 보완	-	·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증 여의제 과세 금지찬성	-
세무행정	· 전체적으로 찬성 · 과세포착률 강화	· 상속재산공시 폐지 찬성 · 신고납부제도 전환 찬성 · 상장법인 주식평가방법 개 정안 반대 · 증여세 신고기간 단축 반대 · 담보설정재산 평가 제1안 · 포괄주의과세 방식:제2안 찬성 · 물납제도개선 · 인별재산관리체제 구축 반대	-
기 타	· 공익법인초과주식처분은 법인이 수용가능한 합리적 기간 필요	· 상속세 이월승계 과세제도 반대	-

〈附表 3-1〉의 계속

	신 찬 수	윤 건 영	엄 기 용
개편배경 및 기본방향의 평가	· 찬성	· 부정적(중산층을 위한 개편은 아님) · 공청회 자료의 근거가 비현실적	· 대체로 찬성
취득과세 전환	· 빠른시일내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 장기적으로 취득과세 전환이 타당	-
세율, 과세구간 통합	· 제3안 찬성	· 세율 및 과세구간 통합에 따른 증여세 인하, 상속세 부담 완화에 반대	-
배우자 상속·증여공제	· 상속·법정상속분 기준과 30억원 수준 찬성(제2안)	·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비과세는 옳으나 신중한 연구 필요 · 근본적으로 민법 등 구조 개혁이 이루어진 후에 다루어야 할 문제임.	-
상속·증여공제	· 상속증여공제제도는 단순화(통합) 찬성 · 주택공제는 별도 유지 필요	·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한 후 단순화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개정안의 공제안은 과세완화로 연결되므로 반대	· 기업상속공제제도 폐지 반대 · 물적공제제도 폐지
고액자산가 과세실효성 제고	· 차명주식 증여의제과세: 주식실명제 찬성 · 상장법인 지배주식 합증평가 반대, 오히려 비상장법인 관련조치 강화 필요 · 공익법인 출연주식 처리문제 반대	· 세대생략 상속·증여 및 지배주주 주식의 상속에 대한 활동은 면밀한 검토 필요	· 지배주식 합증평가 반대 · 공익법인 초과출연 주식 처분 3년내 처리 재검토 요망. · 공익법인 출연 촉진 필요
금융·부동산 실명제 보완	-	-	-
세무행정	· 신고납부제도 전환 · 상속세 증여세 과세합산기간 연장 반대 · 증여세 신고기간 단축반대 · 담보재산 시가로 평가 · 포괄주의 과세방식 규정 찬성하나 확대적용 반대 · 경정청구권 특례 찬성	· 상속증여세 합산과세기간: 제1안 · 금융자산 일괄조회 및 포괄주의 과세방식 전환 찬성	· 비현금자산 50% 이상인 경우 물납허용 제안 · 신고납부제도 보완 필요 ·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신청제도 도입 제안
기타	· 이월승계과세시先공제대상 자산의 선택 문제	· 세대생략 이전과세에 대한 합중세율 적용시 합리적 분석방법이 필요	· 생산업종 연부연납제도 제안 · 기업의 영속성과 기업가 재산의 사회환원 촉진 강조

〈附表 3-1〉의 계속

	이 철 송	김 면 규	송 쌍 중
개편배경 및 기본방향의 평가	· 대체로 찬성	· 찬성	· 기본방향에 찬성하나 부정적 측면이 많음. 즉 고소득층에 너무 큰 혜택 부여함.
취득과세 전환	· 유산과세형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음.	· 유산과세형을 전제로 한 개정안임.	· 일본식 유산취득과세 전환을 제안
세율, 과세구간 통합	· 상속세, 증여세 과세구간 조화 찬성	-	-
배우자 상속· 증여공제	· 상속공제액 30억원은 큰 금액 · 배우자 절대연령별 공제제도 제안	· 합리적 개선의도에 찬성	· 공제수준 30억원은 너무 큰 금액임.
상속·증여공제	· 상속공제와 증여공제의 일치 필요 · 주택공제제도 별도 유지에 동감 · 장애자, 미성년자 공제 상향 조정 필요	-	· 주택상속공제 및 기업상속공제 폐지 반대 · 기업상속공제는 오히려 강화 필요 · 미성년자공제 별도유지 요망
고액자산가 과세실효성 제고	· 비상장주식 환증평가 반대 · 지배주식 환증평가 반대 · 공익법인 초과출연 주식처분 의무 반대 · 주식실명화 시의적절	·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완화 찬성 · 실명전환 주식 10% 과세 반대 · 공익법인 관련 조항의 개선 찬성	· 공익법인 외부감사 2년 1회 너무 잦음. · 잠정적인 단축 필요 · 비상장주식 평가 현실성 갖추어야 함.
금융·부동산 실명제 보완	· 상속개시 2년내 처분 재산에 대한 상속간주제도 반대	· 상속개시 2년내 처분 재산에 대한 상속간주제도 반대	-
세무행정	·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전반적인 보완요망	· 상속세 평가시 기준시가 원칙 제안	· 상속재산 합산기간 현행 유지 바람직
기 타	· 자산취득자금 증여의제 과세제도 폐지 · 피상속인의 2년내 처분자산과 2년내 부담 채무의 용도 불분명시의 상속재산가산제도 폐지	· 자산취득자금의 증여의제 폐지	-

〈附表 3-1〉의 계속

	정 용 선	정 영 화	노 동 래
개편배경 및 기본방향의 평가	-	-	-
취득과세 전환	· 취득과세 찬성(적극적 수용의지 필요)	· 유산과세 유지 전제	-
세율, 과세구간 통합	· 상속·증여세 통합 · 최고세율구간 100억원 최고세율 50%로 해야 함.	· 세율통합 반대	-
배우자 상속· 증여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제2안(분할의 경우 공제방법 규정 필요)	-	-
상속·증여공제	-	-	-
고액자산가 과세실효성 제고	· 공익법인 외부감사시 세무사 참여요망 · 공익법인 출연재산율 천축이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때 증여세 과세 반대 · 차명주식 증여의 제과세 반대 · 상속개시 2년내 처분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반대	·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찬성(세무사의 역할 저해 우려). 단,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간의 공정한 경쟁 보장 필요.	· 공익법인 출연주식 5% 제한 및 초과주식 처분 의무 및 위반시 가산세 부과 반대.
금융·부동산 실명제 보완	-	-	-
세무행정	· 담보설정재산의 기준시가평가 찬성 · 포괄주의과세 반대 · 지배주식 할증평가	· 신고납부제도찬성: 상속증여재산에 관한 국세청 자료를 상속인에게 제공함이 바람직.	-
기타	-	-	-

〈附表 3-1〉의 계속

	박 칠 용	이 승 남	정 준 용
개편배경 및 기본방향의 평가	· 긍정적	-	-
취득과세 전환	-	-	-
세율, 과세구간 통합	· 소득세 과세구간과 형평성 유지 요망 · 소득세 과세구간을 상속, 증여세에 맞추든가 그 반대	-	-
배우자 상속· 증여공제	-	-	-
상속·증여공제	-	-	-
고액자산가 과세실효성 제고	-	· 실명전환주식 10%세율 적용반대(형평성 문제) · 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 하지 않거나 새롭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조세회피추정 과세 찬성	· 상장법인 지배주주주식 할증평가 반대 · 경영권 지속이 보장되지 않는 상장회사의 지배주주식 할증평가는 재고되어야 함.
금융·부동산 실명제 보완	-	·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과세제도 폐지 반대	-
세무행정	-	-	-
기타	-	-	-

〈附表 3-1〉의 계속

	이 근 경
개편배경 및 기본방향의 평가	-
취득과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건 미성숙으로 인해 장기과세로 추진하고자 함. · 당분간은 유산과세형을 유지
세율, 과세구간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계급의 과표구간 40%세율 유지 · 최고세율 확대문제는 참고로 고려
배우자 상속· 증여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과세의 시류에 따라 배우자간 이전에 대하여 비과세를 확대 · 잔존배우자의 사망시 과세 (이월승계과세제도로 조세회피 방지 가능)
상속·증여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 상속공제는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자산보유 관행을 이동 시키는 것임. · 증여세 공제는 확대되지 않음.
고액자산가 과세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명주식관련 문제점 검토 · 지배주식 할증평가 문제점 검토 · 공익법인 관련 선의의 법인에 대한 특별규정 검토 · 상속간주제도는 적용범위를 조정하겠음.
금융·부동산 실명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간주제도 완전폐지는 어려움.
세무행정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개정의 목표는 중산층 세부담 경감, 고액자산가 계층의 과세회피 방지, 중장기적 과세형평성 제고 등임. · 개선된 의견은 적극 최종안에 반영

政策討論會 討論內容 要約

李 桓 均 (財政經濟院 次官)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 광 한국조세연구원장,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각계 대표 인사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는 96년 상속세법 개편방향이 되겠습니다.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므로 그동안 많은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과거의 낡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시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취해온 금융·부동산실명제 등 각종 제도 개혁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세제를 보다 단순화하고 명료하게 하는 한편 중산층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반면에 고액자산가 계층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게 과세하자는 데에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안에 불과하지만은 상속세법 개편방향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속·증여세의 세율, 과세구간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를 통합·단순화해서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고 둘째, 배우자 상속분에 대하여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맞게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익법인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감사를 받게 하고 회계장부 등 각종 장부서류를 작성,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넣었습니다. 넷째, 상장법인의 지배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증과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액자산가 계층에 대하여는 거처상 소유 현황을 파악, 관리할 수 있도록 인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세무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상속세법의 주요 개편방향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시안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부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 자리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니므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이를 통해 21세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을 전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견해를 기탄없이 제시해주시고 또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국민적인 공감을 유지해 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이 기회에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사안을 보면 관련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전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 재경원 차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속세법이 46년만에 대폭 개정되는 만큼 한번의 공청회 개최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상속세법 개정작업이 이제 초보단계에 불과하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를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을 목표로 할 경우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따라서 관계자들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책이나 법과 달라서 상속세법은 대한민국의 4,400만명과 직접적으

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기를 바라면서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기본개편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중산층을 보호하며 경제실명화시대에 맞추어 부의 세습화를 방지하고 부의 분산에 초점을 맞춘 방향 설정은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을 유산과세형으로 할 것이냐 유산취득과세형으로 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저는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과세형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속인의 능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의 상속관행과 제도 변경에 따른 상속세 세수 감소, 또 결과적인 부의 분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유산에 대해서 과세한 다음 나머지를 상속인별로 나누어 갖는 유산과세형이 필요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야기할 때 동일선상에서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남기는 것이고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에 이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의 세습에 대해 우리 사회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앞으로도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조치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세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여의 경우 자기 자식세대에 있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정 수준의 부의 형성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증여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관련규정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상속과 증여는 달리 보아 상속은 지금보다 엄하게, 증여는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향을 기본축으로 하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세율과 과세구간의 통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똑같이 40%를 적용하는 현행 규정

의 적합성 즉, 10억, 100억, 500억, 1,000억원을 무차별적으로 취합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속의 경우는 당분간 최고세율인 50~60%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증여 문제는 이번 상속세법 개정의 골자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인데 오늘 공청회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이나 정부는 여성계에서 많은 주장을 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실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 결혼연수에 비례해서 배우자의 상속·증여분을 공제해 주는 구시대적인 방법은 없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혼시에 보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절반 정도를 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법을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배우자 공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인정해 주겠다는 제1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현실적인 조치로 일정한 상한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는 50억, 100억, 500억, 1,000억원까지 비과세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에 제시된 제2안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증여의 경우에는 같은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해주되 한도 설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증여는 제1안을 지지합니다.

공제제도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현재의 16개 항목을 단순화하자는 데는 발제자와 동감입니다. 다만 우리가 소득 2만달러의 선진경제를 지향하면서 장애자 문제를 도외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가령 제1안으로 가면 장애자에 대한 상속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겁니다. 예컨대 10세 이전에 장애자가 되었을 경우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60년이나 70년은 살 터인데 연수대로 주어버리면 장애자를 배려한 개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현행 방식

대로 연수에 곱하는 방식을 택하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제2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는데, 즉 자녀가 가정을 이루거나 또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증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릴 때부터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 중 중요 이슈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금융자산 공제를 신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공시지가가 시가의 70~80%밖에 반영하지 못하므로 금융자산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자는 것인데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므로 부동산 측면을 보완해야지 금융자산 측면에서 무차별적인 공제를 도입한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정에서 고액자산가 계층에 대한 상속세·증여세과세 강화가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금융소득공제는 이 맥락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속 후에 발생하는 특별손실인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고액자산가 계층에 대한 과세 실효성의 제고 문제도 이번 상속세법 개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먼저 고액법인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1993년 12월 이전의 5% 초과 주식에 대해 인정했던 잠정조치를 지금쯤 정리할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공정거래법의 출자 상호채무보증을 앞으로 없앤다는 논리에서 보면 현실화의 필요는 있는데 이것이 3년이 되어야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익법인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이 제도를 도입하자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명주식 증여의제 과세방안에서 차명주식을 실명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주주 명부를 실명화하는 의무를 회사에게도 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염

려됩니다.

또 소액주주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컨대 개인은 모두 증권회사에 통장을 개설하여 실명화 확인을 받은 후 주주가 되는데 굳이 회사에 주주명부 실명화 책임을 부여한다면 회사에 지나치게 부담을 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와 상의한다든가 하는 부담을 줄이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촉진하더라도 상속세법에 규정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해 문제제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배주주의 할증평가,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재산가치로 환산하는 문제는 비상장기업에만 관련되는데 이것을 상장기업에까지 확대하고 또 그 수준을 10~20%로 올리겠다는 것도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로 중소기업인 비상장기업들을 측면 지원하여 기업이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목적이라면 현재의 할증평가 규정도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별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촉진하는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무행정의 개선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안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신고납부제나 합산과세, 그리고 금융자산 일괄조회제와 같은 좋은 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원포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쓸모가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세무행정이 세원을 포착하려는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제시되었습디다만, 과세자료의 수집과 관련하여 예컨대 사망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가령 동사무소)에 신고가 이루어지면 이 정보가 행정전산망을 통해 세무관청에 통보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시켜 과세자료의 수집과 유효활동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보의 통보를 의무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이 사망자 대 과세건수 비율

을 일본과 비교해 보면 199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2%인 데 비해 일본은 5.8%입니다. 이 같은 차이가 발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1.98%라는 상속세 징수실적에 비해 일본이 4.7%라는 상속세 징수비율을 보이는 차이를 가져왔다고 판단됩니다. 요컨대 아무리 좋은 제도도 세무행정면에서 과세포착률을 좀더 강화시키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에 (변호사)

기본 개편방향에서 발제자의 발표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제의 간소화 문제는 항구적인 세제가 지녀야 할 3원칙인 공정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최소징세비의 원칙 중 최소징세비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의 포괄화는 모든 조세에서 다 요구되는 것으로 상속세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에 비과세, 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해지고 따라서 바람직한 세제로의 기본틀에서 그만큼 벗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상속세제 개편이 간소화방향으로 나가는 점에 있어 크게 환영합니다.

중산층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담감 완화문제도 상속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액재산가 계층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과세강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988년도 현재 우리 국민의 상위 20%가 국민총자산의 60.1%와 국민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제 느낌으로는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와 부의 사회적 분산을 위해서 고액자산가 계층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한층 강화시켜야 합니다.

실명제 실시에 따른 상속·증여세 운영의 실효성 제고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신중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특별재산 관리체계입니다. 개편안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17조와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23조의 법리와 상충될 소지가 아주 큼니다. 즉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제자가 맨 처음에 언급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은 유산세형을 지지하고 유산취득세형을 반대합니다. 유산취득세형은 상속재산을 포괄승계하는 상속인의 무상취득재산을 과세재산으로 파악하므로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적합하고 공동상속인인 친족간 부의 분산에는 효과적이지만 대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소득의 재분배 내지 부의 분산 기능은 미약합니다. 조세의 기능에 있어서 친족간의 소득재분배나 부의 분산에 관한 것은 크게 다를 문제가 아닙니다. 유산세형은 피상속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청산적 과세의 의미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과세나 재산과세의 연장선상에서 과세대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누진과세하는 것이 대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소득재분배 내지 부의 분산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구간을 완전통합하는 데 찬성합니다. 다만 세율문제와 관련하여 수직적 공평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저한계세율 10%는 그대로 두고 최고한계세율은 정부안보다도 높은 55%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세구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재산계층별 수직적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적어도 6단계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부안에서는 제3안에 해당합니다. 제가 만든 시안의 경우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15%, 10억원 이하 25%, 50억원 이하 35%, 100억원 이하 45%,

100억원 초과 55%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정부안은 10억원 초과를 40%로 세율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를 보다보면 100억원 이상의 재산상속이 너무 많습니다. 10억원짜리에도 40%라는 것은 수직적 공평의 확보라는 점에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문제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제3안에 찬성합니다. 이유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취지가 배우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배우자의 상속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부부간의 재산을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 함은 결혼한 후에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킵니다. 사망자의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망자명의의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중 사망자의 지분합계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부재산을 모두 공동재산으로 취급하는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결혼기간과 관계가 깊습니다. 정부안은 두 가지 문제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의 실무경험으로 보거나 이론적으로 보거나 배우자의 상속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결혼기간과 관계가 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결혼기간이 1년인 경우와 결혼 후 10년, 20년에 걸쳐 맞벌이를 하거나 남편을 열심히 지원해주며 살아온 경우를 똑같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결혼기간과 재산의 형성과정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결혼기간에 따른 누진적 비율을 곱하여 배우자공제액을 산출하자는 것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문제는 제3안에 따라 하되 다만 결혼기간에 따라 금액을 누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결혼연수 10년까지는 1,200만원, 20년까지는 2,000만원, 20년 초과는 2,500만원 등으로 부부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부부간의 결혼기간에 따라 할증하여 평가해주자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비과세 부동산에 대한 이월승계과세제도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과세방법이 복잡해지므로 조세의 간소화라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또 상속재산의 평가체계를 다원화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치는 상속이나 증여 당시의 정상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적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초공제액을 인상하겠다는 안에 찬성합니다. 인적공제제도의 단순화안 중 자녀공제안에 찬성합니다. 장애자 공제는 제2안을 지지합니다. 개산공제제도의 도입은 제1안에 찬성하는데 그 이유는 개산공제가 항목별 공제와 선택적인 관계에 있고 제1안의 금액이 항목별 공제액의 최대치와 대등하기 때문입니다. 증여공제제도는 제1안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상속공제제도 신설은 반대합니다. 이유는 부동산의 가액 평가도 원칙적으로 시가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금융자산에 대하여 공제제도를 도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제 간소화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과세나 공제제도가 많으면 세제가 복잡해져서 좋지 않습니다. 보험금 신탁에 대한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데 찬성합니다.

또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 실시와 관련된 보완사항에서 두번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과세 금지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명의신탁이 본시 수동신탁으로 수탁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실질과세와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명의신탁이 금지되고 처벌되더라도 민사관계에 있어서 장래에도 명의신탁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명의신탁이 존재하는데도 증여의제제도를 폐지할 것인가 신중히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법

리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포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공시제도의 폐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사생활 비밀보호 원칙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납세제도의 전환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개선에 있어 제안된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증여세의 신고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제안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신고기간과 상속세 신고기간은 동일하게 해야 할 터인데 이렇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포기기간과 상속세의 신고기간을 3개월로 일치시키는 셈인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담보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은 제1안에 제시된 시가방식에 찬성합니다. 이유는 담보채권액은 원래 담보물의 시가 이하인 것이 통상이며 경우에 따라 담보물의 시가를 초과하여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있어서는 제2안인 증여세 과세대상의 포괄주의에 찬성합니다. 증여세는 본질적으로 수증자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상의 공평과 응능부담의 원칙에 비추어 포괄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물납제도 개선이며 여기에 제시된 대안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물납의 이행 자체가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의 대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로 물납의 법률적 성격을 행정처분설, 공법상 계약설, 공법상의 대물변제설과 공법상의 견제계약설 중 행정처분설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처분설에 의하면 물납의 허가에 의하여 금전 채무인 조세채무가 물

건 채무인 조세채무로 변경되고 그 물납의 이행에 의하여 조세채무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물납의 이행은 조세채무의 이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물납의 이행을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별재산 관리체계 구축의 명문화안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몇 차례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비밀보호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나아가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숙자 (명지대 교수)

저는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민법 교수입니다. 그래서 세법에 관한 깊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를 토론자로 지정해 주신 것은 여성계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성계와 학계, 특히 가족법학계에서는 1990년 이후 배우자의 상속·증여에 있어 세계상의 양성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여러 차례 상속세법 개정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상속세법 개정은 1년에 어느 만큼씩,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공제를 허용하다가 조금씩 상향 조절하는 것이 법 개정의 패턴이었습니다. 그후 1993년도에 남녀평등에 입각한 세계개혁을 위한 여성단체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대체적인 여성계의 견해가 정리되었습니다. 당시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련된 대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최측에서는 많은 여성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기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오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성계에서는 별도로 이에 관한 공청회나 기자간담회를 기획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지만 여성단체협의회, 가정법률상담소, 여성가정생활연구소 등 여러 단체에서 임원들, 회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성계의 의견을 대변해 보겠습니다. 여성계의 주장은 배우자간의 상속·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상속과세는 세대간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상의 일반론이라는 것입니다. 1세대 1회 과세의 원칙론에 입각해 볼 때, 배우자는 같은 세대의 사람으로 생존배우자에 대한 상속과세는 부당합니다. 그러나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에게 과세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상속세 세수가 적은데 상속세수가 크게 감소될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론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생존배우자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더라도 생존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상속받는 생존배우자가 생존시 상속재산을 소비한다면 소비세로써 징수할 것이고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등으로 징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점에서 동세대인 생존배우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유산의 축적과정과 그 보존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해서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에는 내것, 네것을 따질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부부가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하여 집 한 채를 겨우 마련했을 때 우리 상황에서는 주부들의 가사업무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많은 경우 남편명의로 등기하게 됩니다. 민법은 부부간의 재산을 특유재산, 공유재산 또 부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불투명 재산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당 재산의 명의가 누구 것인지와 관계없이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가정을 가지셨을 줄 압니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든가 혼인중에 부모에

게서 재산을 받았다거나 다른 제3자로부터 증여받았다거나 하는 재산은 명확히 특유재산입니다. 혼인중에 부부가 합심하여 축적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배우자 각자의 몫으로 인정될 것이지만 혼인생활기간 동안은 네것, 내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별산제의 참의미라고 봅니다. 별산제를 택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현행 법률은 민법상 혼인하려는 부부가 혼인전 부부재산 계약을 맺어 별산제 아닌 다른 재산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계약을 맺는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별산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별산제와 상속·증여세의 배우자 공제문제가 반드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별산제를 취하는 주에서도 배우자간의 상속세·증여세가 전면 공제되기 때문에 민법상의 별산제와 조세법상의 배우자 상속·증여세가 반드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혼인생활 기간 동안에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혼인중 축적된 재산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가사업무를 대부분 처가 담당하므로 처의 가사업무에 대한 평가결과가 반영되어야 되고 따라서 그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관해서는 각자의 몫이 잠재적으로 있다기 이혼할 때라든가 또 사별할 때 그 각자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자의 재산몫에 대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다가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래에 와서는 부부간의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도 실명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부간의 재산의 이동은 눈에 보이듯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납니다. 또 부부의 자산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상관없이 구태여 배우자간의 증여세 문

제를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이렇습니다. 먼저 중산층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거의 다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여성계가 주장하는 대로 법이 개정되면 재벌과 같이 수십억 혹은 수백억원을 반씩 나누는 경우에 세수가 크게 감소할 뿐 아니라 과세형평 측면에서도 불공평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짜로 이혼하여 크게 증여해주는 경우에 증여세 포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부부 재산에 있어 배우자의 몫을 세법상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또 상위법 개념으로 올라가 헌법상의 양성평등의 원칙을 세법이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들 문제에 대한 대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같이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얼마되지 않는 재벌의 예나 변칙적인 가짜 이혼 등을 거론하면서 배우자 평등, 한국적인 상황에서 처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에 인색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국세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세수의 비율은 2%입니다. 이 2%에는 배우자의 상속·증여세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 가령 자녀들이나 다른 증여자들 등에 대한 세액까지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의 세수 중 일부가 감소한다는 것을 배우자가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들 문제를 모두 논의하는 데는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이미 제시된 세 가지 대안에 초점을 맞추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성계의 주장과 그 논거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대안도 여성계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수용하기 어려운 대안입니다. 그나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제1안으로 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1안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범위 내의 상속 재산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법정상속분의 한도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한 그 기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1.5입니다. 50%를 자녀들과 함께 또는 직계존속들과 함께 상속할 때 50%를 가산해서 1.5입니다. 자녀들은 각각 1 : 1의 비율로 나가겠죠. 과연 1.5를 배우자의 지분, 그러니까 혼인생활중에 형성된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몫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이유에서 일반적인 국민감정으로서 막연히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인정하면 되겠다 하는 발상에서 제시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법정상속분 내에서 받는 것이 배우자 고유의 재산상속이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민법의 별산제에 충실할 경우 예를 들어서 남편명으로 된 재산 중에서 고유상속분으로 받는 1.5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라면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분의 결정은 먼저 유언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둘째로 유언이 없을 때 법률이 정한 상속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이들이 퇴근 후 아버지의 가게 일을 도와서 아버지 재산을 증식시켰다고 할 경우 상속인들은 자기의 기여도에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자기의 법정상속분 + 기여분 =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경우에도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것을 전체 상속분으로 간주하여 이를 비과세해 주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가정 재산형성에 있어 배우자의 기여도를 따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귀찮은 일입니다.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 성별을 불문하고 특강을 할 때에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관해서 아내의 몫이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압도적인 다수가 2분의 1이라고 답합니다. 그 다음은 3분의 1이라고 답하는 사람은 아주 적는데 놀랍게도 3분의 1이라고 답하는 사람보다 3분의 2라고 답하는 사람이 꼭 2~3명이 더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5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분의 1이라는 사람이 압도적인 다수이고 3분의 1은 딱 1명이고 3분의 2라는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적인 합의이고 이것이 과세기준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 자신은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간의 상속세·증여세공제를 개정함에 있어 21세기에 적용될 수 있는 선진 세법을 만들어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배우자 몫을 인정하고 선진국 세법의 추세에 따라 배우자간의 상속세·증여세를 전면 공제하거나 법정 상속분한도 내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수정하여 2분의 1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입니다. 2분의 1 한도 내에서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세·증여세를 면제하고 그 초과부분에 한해서만 상속세를 물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수의 감소나 멸실이나, 부부재산제에 있어서의 별산제라는 것보다는 더 상위개념인 헌법이 규정하는 만인평등 사상과 배우자의 혼인생활의 기여도를 인정해 준다는 평등사상에 입각해서 이번 상속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찬수 (한선합동회계사무소 대표공인회계사)

지금부터 항목별로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아주시지요. 여기서는 대안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첫째, 상속세법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수준이 향상되었고 노령화사회로 이행해가고 있으며 남녀평등주의가 확산되는 등 경제사회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마저 있습니다. 이 점은 강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둘째, 개정추세로 보아 한동안 유산과세제도가 계속되지 않겠냐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중장기 방안으로 취득과세제도로의 전환이 검토되었지만 유산과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조세부담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응능부담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자기가 받은 대가에 걸맞지 않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점에서 취득과세제도로의 전환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법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민법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그 다음은 상속세법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분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씀의 취지는 이러한 예외적 규정을 두어서라도 상속재산을 조기 분할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할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속받은 사람 상호간에 증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규정하고 이것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율 및 과세구간의 통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국, 영국, 프랑스가 다 이와 같이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김 교수님이 배우자상속에 대해서 전액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부의 집중문제와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고려하면 이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과세를 논할 때 부부간의 합심에 의한 공동재산형성의 세대간의 부 이전과 두 가지 사항만이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세대간 이전에 대해 과세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아까 강인에 변호사님께서 1년간의 부부생활에 대해서도 전액공제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면서 부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부부간 생활중에 형성된 재산을 중심으로 배우자공제를 검토해야 되는데 따지고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가 속출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배우자공제분으로 공제되는 몫을 정함에 있어 먼저 형성된 재산이 먼저 나간다고 볼 것인지 나중에 형성된 재산이 먼저 나간다고 볼 것인지를 문제가 발생해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배우자공제액에 피상속인 사망후 배우자의 생활을 고려하여 법정상속액 기준과 30억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증여공제제도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는 종류가 지나치게 다기다양합니다. 또 물적공제는 1억원을 한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약한 것 같습니다. 주택공제가 무차별하게 1억원을 한도로 허용되고 있고 5년 이상 부모를 봉양한 상속인이나 3대째 물려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5년 이상 봉양했다거나 3대째 물려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1억원짜리 주택은 서민주택이

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통합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택과 관련한 상속의 경우 중산층의 주거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정도를 공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현재의 1억원은 상당히 작은 수준이므로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공제제도를 통합하는 경우에도 주택공제만큼은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하여 제시된 공익법인에 대한 5% 출연재산의 처분 의무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은 사회에서 얻은 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접적인 경영지배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하자는 측면에서 제한을 두기 시작해 처음에는 20%, 그 다음에 현재 수준인 5%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년 이내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20%를 부과하겠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세 과세기준이 산출세 기준이냐 보유자산 기준이냐가 불분명하고 또 과거의 무제약을 20% 허용 그리고 5% 허용으로 축소시키면서 과연 일정기간 내에 5%이상 소유분을 처분할 수 있는냐는 문제가 내재되게 된 것입니다. 법인세법 18조의 3은 198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990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대해서는 지급이자손금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고 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자시켜 새로 취득했을 때 이때도 취득자산에 대해서는 동 불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음에 양도했을 경우 먼저 취득한 것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가, 후에 취득한 것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동 규정 적용의 순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순위규정은 나중에 증자에 의해서 취득한 것을 먼저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여 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적인 사항인 외부감사 의무화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의사와 약사의 분쟁문제가 있듯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간에도 업무 영역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법인세에 신고납부제가 실시되었을 때 외부감사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직업인은 공인회계사지 세무사가 아닙니다. 가령 상속세법에서 외부감사로 표기할 경우 나중에 상속세법상 외부감사가 있었으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불씨의 씨앗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과거 공개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을 외부감사인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심사제도라고 기술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감사라는 용어를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 실명제에 이어 주식실명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비실명제로 인해 실제소유자와 명의신탁 분쟁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명화가 시행될 경우에도 여전히 위장증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잘 고려하여 부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주식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문제는 현재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데 상장법인에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지배주주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배주주 중에서 비상장지배주주는 사실 비지배주주를 꺾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상장법인의 경우 지배주주는 보유주식을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으므로 상장법인보다는 비상장법인에 대해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장법인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무행정의 개선방향과 관련해 정부조사 결정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상속·증여세의 과세합산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안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간 연장에 따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또 제대로 운용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장하려면 15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증여·상속의 과세시효가 15년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자는 제안에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자의적인 결정이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증여했다가 신고기한 내에 증여한 상장주식의 값이 떨어지니까 증여를 취소해 세금을 안 냈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증여를 개시하는 실례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세 기간인 6개월로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2회 이상 증여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규제차원에서 일정횟수를 초과하는 취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도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담보재산에 대해서는 담보가격보다 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담보 제공시 금융기관의 대출액이 1억원인 경우에도 이자나 회수문제를 고려해 130%의 담보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시가로 결정해야지 담보금액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용자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설정하여 항시 용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며 담보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합병 등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포괄적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그 외에는 증여자의 청약과 증여받는 사람의 응낙에 의해서 증여행위가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과세방식이란 이상의 행위가 없어도 경제적 이익이 같으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어느 특정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과세방법은 그냥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좋지만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

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경정청구권의 특례는 찬성합니다. 상속 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은 현재 화재나 천재지변에 국한하여 특별손실비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처분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경정청구권의 경우 2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처분에도 이것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비과세 부동산에 대한 이월승계과세제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점과 가격을 상속시와 상속시의 가격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시점과 이때의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공제액을 전혀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되었을 경우 어느 자산을 먼저 공제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되길 바랍니다.

윤건영(연세대 교수)

상속세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아야 하고 둘째, 그런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상속세 문제를 다룰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로 공청회 자료의 표(본고의 <附表 2-3>)를 보아주시시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애써 만든 자료라고 생각되므로 이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실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도 상속세 과세인원이 3,464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마다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니므로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잡고 앞의 숫자에 30을 곱하면 약 10만 4천명쯤 되는 숫자가 얻어집니

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는 4,500만명이고 가구수로는 약 1,300만 가구쯤 됩니다. 그 중에서 10만 가구 정도만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별로 관계가 없을 터인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속세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표에 나온 사람수를 굳이 하층, 중층, 상층으로 나눌 경우 중산층도 있고 고액자산가도 있겠지만 1,300만 가구 중에서 대략 10만여 가구만이 대상이 되는 세금을 놓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논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유사한 논의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지난 해에도 있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과세자가 올해 몇 명이 될 것인가에 대해 분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전망(재정경제원 발표)으로는 실제 과세대상이 될 사람 수는 전체 국민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류, 상류로 나누어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층의 세부담을 올리겠다는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상속세법 논의에서 말하는 중산층이라는 것은 1,300여만의 전체 상속세가구 중에서 불과 10만여 가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류계층이라 함은 납세액의 90%를 차지하는 사람들로 인원수로 치면 21.3%입니다. 정리하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1,300만 가구 중 10만가구에 지나지 않고 이들 중 20% 곧 전체가구의 1%도 안되는 가구가 상속세의 90%를 납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실이 이럴진대 이걸 가지고 중산층 세부담의 경감 운운하고 논한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가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입니다.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이므로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법을 개편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을 우리와 비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로 든 선진국과 우리를 최근 30여년 동안의 발

전양상이 크게 다릅니다. 상속세는 본시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과세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소득과세를 보완하는 역할도 상당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고세를 설정문제는 소득과세의 최고세율구조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뒤의 표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실명제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지만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자산 중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여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 하여 생긴 이익을 모아서 구입된 재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높은 부동산 가격의 속을 좀더 들여다 보면 이른바 자본이득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놓았더니 언제 보니까 값이 크게 올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자본이득을 처음에 자산을 취득한 사람의 기여, 곧 해안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시각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가액이 올라간 것은 자산의 소유자가 열심히 자산을 관리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희소자원인 토지에 대한 수요압력이 커져 지가가 크게 올라서 엄청난 자본이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토지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형성된 자산가치 전액이 소유주의 노력과 고민의 대가라고 인정하는 것은 억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상속·증여세를 논할 때 사회적인 관점에서 좀더 시각을 넓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부간의 재산 배분이나 부자간의 재산배분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완전히 비과세되어온 자본이득 형

태의 축적된 재산 중 일부를 사망시점에서는 우리 사회에 돌려주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발표된 내용을 만든 이들은 물론 토론하는 우리들도 정말 통이 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발표안에 보면 증여에 대해 5억원씩 공제해 주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명색이 월급을 많이 준다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받을 평생월급을 다 모아 보아도 지금 3억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는데 5억원씩이나 깎아 줘니까? 지금 아무래도 통이 크다고 밖에 달리 말할 재간이 없습니다. 요컨대 소득과세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상속·증여세의 역할이 강조되어야지 약화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취득과세가 옳으나 유산과세가 옳으나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취득과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발표된 안에서 취득과세를 장기과제로 미루고 있는 점은 유감입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과표구간의 통합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가지 구조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핵심은 증여세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줄이고 그보다 정도는 약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시된 1, 2, 3안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30년을 산다고 하고 또 재산을 모아서 증여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30년을 5년씩 쪼개서 생전에 다섯번에 걸쳐 균등하게 증여를 하고 죽을 때 나머지 6분의 1을 증여해 준다면 증여나 상속에 대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99%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상속재산다운 재산을 남길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99%의 사람들은 상속을 하는 경우에도 죽을 때 한번 상속해 주는 것으로 끝

납니다. 그나마도 자손들이 세금낼 몫도 안되는 미미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여러번 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자료에 나와 있는 3,400명 중 상위 그룹인 105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를 자주 해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이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증여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나 상속세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세금 덜 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사촌이 논을 사 배아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세 부담 완화가 앞에서 제시된 많은 국민들은 오늘의 정부안에서 거론하고 있는 증산층의 세 부담 경감과 부합되는 것이냐 할 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산층에 나도 과연 포함되느냐 하는 의문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국민들이 오늘의 논의를 한심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대꾸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토록 증여를 한번도 못해주는 사람이 99%나 되는데 어떻게 5억원씩 증여공제를 해주는 논리가 타당한 것처럼 제시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취득과세나 유산과세나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자산형성에 기여한 기여분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는 배우자 기여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것입니다. 김숙자 교수님께서도 2분의 1 정도가 적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유산과세형이므로 배우자 몫, 아이들 몫, 그리고 장애자 몫 등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매겨진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상속인인 유가족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여기서 배우자 몫을 2분의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채무나 장례비용 등을 모두

차감하고 남은 유산가액이 3,000억원인 재산은 부인몫이 비과세되므로 먼저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1,500억원에 대해서도 자녀공제 등을 하고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때 부인몫으로 배분된 1,500억원이 실제로 부인에게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은 그렇게 계산했지만 실제 배분되는 것이 세금계산서와 전혀 딴 판으로 이루어져도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른바 협의분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협의분할의 대상이 된 부인몫은 1세대 1회 과세가 아니라 1세대 0회 과세가 되고 맙니다. 부인몫이 과세받지 아니하고 바로 자손한테 나누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현실이 이렇진대 부인몫인 2분의 1을 면세하자 또는 부인의 정당한 몫을 면세하자는 주장은 상속세과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허한 얘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대로 부인몫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부인으로부터 자손으로 물려지게 되고 이 과정에 세금이 다시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1세대 1회 과세의 원칙은 현행 제도하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은 유가족 같으면 부인의 공제몫을 크게 늘려 놓았다가 세금을 내자마자 부인이 자식들에게 자신몫의 대부분을 나누어 주도록 하여 부인몫의 재산을 상속·증여세와 관계가 없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는 부인의 몫을 얼마나 크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루기 힘든 문제이고 또 근본적으로 민법을 포함한 구조개혁 없이는 상속세제 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기반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유산세제형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취득세제형태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증여공제의 단순화문제는 취득과세형으로 가지 않고서는 공

허한 논의입니다. 예를 들면 그 유산을 실제로 취득하는 사람이 엉뚱한 친지들이나 형제이름으로 공제를 받고 자산은 자신이 독차지하는 경우가 생겨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된 후에 공제를 얘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공제제도의 경우, 부동산이 낮게 평가되니까 금융자산도 조금 낮게 평가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느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잘못됐다면 부동산부터 바로 잡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생략상속·증여의 경우 할증세율을 30%로 할 것인지 40%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어느 선진국에서 시행하니까 답습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 세율을 t라고 하고 두 세대에 두 단계의 상속이 이루어 진다고 하면 30%, 40% 할증세율과는 훨씬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따라서 선진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자는 식으로 하지 말고 원리를 따져 생략하지 않고 상속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여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증여세 합산기간을 늘리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과 우리의 경우 발전기간과 발전패턴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실질성장률이 약 2%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 예상성장률이 적어도 6%를 상회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물가가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합산기간을 늘렸을 경우 실익 없이 계산만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므로 지금의 5년을 늘려서 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자산 일괄계산과 포괄적인 과세방법으로의 전환에는 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배주주 주식의 상속에 대해 20%를 할증한다고 했는데 이런 논의가 틀린 논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중을 20%, 10%, 아니면 50%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배주주라고 해도 골칫덩어리 회사의 지배주주가 있는가 하면 전도가 양양한 기업의 지배주주도 있을텐데 그럴 경우 일률적으로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20%로 할 것이지 30%로 할 것인지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하에 단순하게 10%에서 20%로 올리고, 비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장기업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단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고려중인 방식으로 지배주식의 상속에 대해 과세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 할증률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이사)

상속세제를 단순화하고 세무행정을 간소화하려는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관할업계를 대변해야 할 상공회의소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상속세법 개편방향 중 다소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우선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실효성 제고방안이 대부분의 기업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을 통해 경영권의 전승을 차단하고 기업의 소유분산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짙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개편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라든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한도 초과분의 3년내 해소라는 의무규정의 도입 등은 기업경영권을 되물림하지 말라는 정책적 주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들이 업주 2세가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은 안된다는 경직된 사고에 근

거하여 제안된 것이라면 극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같은 조치가 부의 축적, 즉 기업경영을 하려는 의욕을 억제하고 다음 단계인 기업계승자를 위한 재투자자를 망설이게 하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창업주의 부담만을 늘리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가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속세·증여세를 통한 소유분산 촉진정책은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때, 은행에서 주인찾아주기 운동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유개념이 약한 기업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 사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기업관련 상속세법 개편의 기본방향에 있어 두 가지가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기업상속인 경우에는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둘째 고액재산가들이 재산을 사회에 쉽게 환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액재산가의 과세실효성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제시된 공익법인에 대한 5% 주식출연한도 초과분의 3년내 해소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급입법의 문제도 우려되고 또 기존의 공익법인 출연 기업인에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큰 압박을 준다는 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자기 재산으로 주식을 다시 취득하든가 제3자에게 인수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 대주주의 자금부담이 우려되고 또 결과적으로 기업경영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의 공익법인 출연이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소 편향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물론 상속 후의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출연하는 대주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지배주주가 공익법인에의 재산출연을 통해 자신의 생애에서 이룩한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여 명예를 얻도록 해 주는 것은 사회적

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측면에서 볼 때에도 정부가 상속세를 거두어서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업이 직접 출연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촉진할지언정 우리와 같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이 선진국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산실명제 등과 같은 규제조치를 마련해 온 문민정부가 재벌기업 규제 강화조치로 생각되는 조치를 또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5% 한도 초과분을 3년에 처분하도록 하는 개편안은 상속세를 기업소유의 분산을 촉진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정책의도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하고 이와 관련된 효과를 확대시키려는 것이 정책목적이려면 오히려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 주거나 비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인세법에 주식 보유를 축소시키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공익법인 출연주식이 일정기간 후 무의결권주식으로 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경우 공익법인에 주식이 출연한 기업에 충격을 주지 않고도 고액재산가 재산의 사회환원이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번 개편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또 개정안은 기업경영권의 안정에 매우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배주주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 규정이 그것인데 내년부터 증권거래법 제200조 상에 있는 기업경영권 보호조항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외국투자로부터 국내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상당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보다도 20% 할증 평가할 경우 지배주주가 사망하기 전에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개편안대로 할증과세할 경우 주식상속분에 대한 상속세실효세율은 48%가 됩니다. 상속 전의 지분율이 30%인 대주주는

상속후 지분율이 15.6%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지분율이 급격히 낮아지면 증권시장에서 해당 상장기업은 기업사냥꾼이라는 기업매수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회사를 차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어렵게 되면 창업의욕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정책당국이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의 도입취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중과세하겠다는 것인데, 치열한 국제경쟁하에 기업은 항상 도산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판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경영주의 인맥과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령 영국에서는 기업경영권의 상속에 대해서 우리와 달리 5%만큼 할인평가해 주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경영권 상속에 대해서는 중과하기보다 경과하는 제도의 도입방안이 국내기업의 경영권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다음은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개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제도가 폐지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주택공제와 같은 다른 물적 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1억원이라는 공제한도가 매우 낮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는 한도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가업상속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상속세 납부로 인해 가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세수에 미치는 마이너스효과보다 개인 창업의 촉진과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가업상속 우대는 하나의 제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제도는 폐지하기보다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적 공제제도는 폐지하되 가업상속공제는 선진국의 '사업재산 공제제도'라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어야 하겠고 공제한도도 대폭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제금액은 물가상승과 연계하여 매년 조정하는 물가슬라이드 제도가 함께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등의 기업상속공제는 폐지하면서 임업, 어업 또는 농업상속인의 공제제도를 존속시키려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가 다같이 필요로 하는 생산업종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한 데 묶어 제도 보완조치로 연부연납제도를 개설해야 합니다. 현재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 기업재산의 해체나 기업행위의 중단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너무 짧아 상속인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연부연납기간을 5년 거치 10년분할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속세물납 여건을 개선하여 현금이 없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납세자가 물납을 신청하더라도 국세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국세청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판단하면 물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지침에 따르면 거래 등록종목이 아닌 유가증권이나 법정관리기업의 주식 혹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등의 물납은 거부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에 적당한 재산이 아니면 물납이 허용되지 않아 납세자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처분의 어려움을 느낀다면 납세자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만 매기면 되고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고압적인 세무행정 운영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속세법 개정시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에 적당한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소위 비현금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물납을 허용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무행정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신청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 납부를 정부부과결정방식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평가할 능력이 없을 경우, 불확실한 상속재산의 가치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가 일차적으로 지는 신고납부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납부제도의 도입에 앞서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국세청에 신청하고, 얻어진 평가를 근거로 납세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제발표자는 신고납부 후 차후에 발견되는 상속재산이나 소송중인 재산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액 조정기간을 설정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납세자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평가절차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정부부과결정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납세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세의 개편안과 관련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본입장, 즉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키는 문제와 고액재산가의 재산을 공익부문으로 사회화하는 문제가 제대로 개선된다면 상속·증여세의 사회·경제적인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보완되면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각종 탈세행위도 많이 줄고 장기적으로 상속세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이철송 (한양대 교수)

근래에 상속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 세수가 꽤 늘어났습니다. 1994년도 통계에 의하면 내국세 전체 세수 중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입니다만 과세에 대한 불복건수는 상속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조세소송 중 상속·증여세에 관한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입니다. 세수비중에 비해서 10배에 가까운 불복건수는 그만큼 상속세 과세가 설득력이 없고 조세마찰이 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근래의 상속·증여세 논의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부의 세습 차단과 재분배기능 강화라는 사회이념적인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 5천년의 역사를 되돌아 보아서도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 나라나 시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의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중립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방안에서도 많은 부문에서 시각이 중립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곳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상속세의 기본문제는 윤 교수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취득과세형이나 유산과세형이나 하는 문제입니다. 흐름을 보면 유산과세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아무리 많이 해줘 보아야 유산세제하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는 한푼도 안 돌아가고 자녀들한테 전부 돌아가도 배우자 몫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결국 배우자의 문제 해결 차원에서 배우자공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이번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여분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령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내조한 경우를 고려해 봅시다. 남편이 돈버는 데 부인이 크게 기여했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 의한 소득의 이전은 무상이므로 여기서 과세의 근거가 생겨납니다. 부인의 입장에서 원래 내것인 재산에 세금을 못매긴다라고 하는 것

은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몇 년 전의 상속세 개편시 김숙자 교수님이 주관하시는 여성단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게 발표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옳게 못나올 것 같아 사양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분들이 많아서 마음 든든하게 먹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연수의 고려문제도 배우자공제의 이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고려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가정을 유지해 온 데 대한 보상으로 공제해 준다면 결혼연수를 고려하는 것이 의미를 지니겠습니다만, 잔존가족의 생존배려 차원에서 보면 결혼연수의 고려는 의미가 없고 차라리 잔존배우자의 절대연령을 가지고 공제액을 달리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의 주장처럼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전부 철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공제금액은 크게 늘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편안은 30억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공제의 기본취지가 무엇인지를 고려하고 또 일반 서민경제의 규모를 고려할 때, 30억원 공제를 서민들이 과연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것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윤 교수님께서 평생 모아보아야 3억원밖에 안된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공제해주는 문제는 재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유산세제하에서 배우자 공제를 많이 인정해주어 보아야 소용이 없으므로 잔존배우자에게 확실하게 또 장기간 귀속되는 보험이나 연금, 신탁 등 특정의 상속재산에 대해 공제의 폭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어머니가 70~80세 까지 자식한테 천대받지 않고 자기 돈을 가지고 매달 조금씩 소비해가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상속재산에 대해 비과세하자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자공제의 경우 미성년자는 부양이 필요하고 장애자도 기대 생존연령까지 부양이 필요하므로 현행 제도가 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공제금액이 실제 부양에 필요한 액수보다 적다는 점이 불만입니다.

주택공제문제는 신 회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동감입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과세문제는 엄 이사께서 기업측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의 공익법인 출연을 백안시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된 배경을 가령 삼성이다 현대다 하는 기업에서 아산재단과 삼성미술문화재단을 만들어 계열사의 주식을 출연하고 그리고 공익재단을 계열사로 취급하는 것이 비리가 아니냐, 상속세제의 비과세규정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점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실은 이렇게 허용해서 나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식이 정주영씨나 이건희씨와 같은 재벌 총수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것보다 공익법인에 투자되어 공익법인 쪽으로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장차 부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배수단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다면 공익법인의 법적 성질상 일단 출연된 재산이 오너나 출연자에게 되돌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고, 재벌기업이 적극 출연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여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증여세제와 상속세제의 과세구간 조화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편안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피상속인이 자기 가족사정을 고려한 장차의 장기적인 설계를 증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상속세 회피를 위한 생존 증여, 증여세 회피를 위한 갖가지 행위 등이 보다 건전한 쪽으로 유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증여에 대한 공제도 상속에 대한 공제만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수차례에 의한 분

할 증여로 인해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줄어 든다는 것입니다. 현재 5년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척기간과 일치시켜(10년이든 15년이든) 합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간이 너무 길어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도 행정력을 길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자산취득자금의 증여의 제의 경우 비밀스런 제도일 뿐 아니라 무리가 뒤따르는 증여제도입니다. 가령 미성년자이거나 연령, 성별 등으로 보아 당신 돈으로 취득한 것 같지 않으므로 자금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밝히지 못하면 “당신, 누군가로 부터 증여를 받았지요. 증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증여를 받은 것이 분명하오.”라는 식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밝혀진 단계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로부터 받았든지 간에 좌우간 증여받았을 것이라고 유추하여 과세하는 것은 굉장히 강압적인 논리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행정력을 동원한 세무조사에 의해 해결할 문제를 납세자에게 입증토록 부담지우는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가 또 있습니다. 상속인이 2년 내에 처분한 재산과 피상속인이 2년 내에 부담하는 채무의 용도가 밝혀지지 않으면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아버지가 실컷 쓴 돈을 아들더러 증명하라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이 규정은 과세실무단계에서 온갖 무리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력으로 해결할 문제를 규범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무리를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개정안에서 금액을 조금 늘리고 해당연수는 1년으로 줄이는 등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산평가에 관한 문제의 하나인 지배주식의 할증평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과세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배주식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했을 때 실행되는 것이지 보유 자체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10% 할증과세하고 있습니다만 이 규정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수익력 평가에 순자산가치를 합산하여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비상장주식을 1%나 2%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했을 때 이들이 그 가격을 받고 팔 수 있겠습니까.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 같은 평가방법이 타당한 것은 지배주식에 한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비상장주식은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회사에 대한 지배가 가능한 주식일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때의 가치는 그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할증할 이유가 없고 굳이 타당성을 찾자면 상장주식의 지배주식이 할증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시세가 있고 양도하면 큰 프리미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다음 처분할 때 과세해야지 상속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할증률이 10%, 20%, 100%가 적당할지 어떻게 압니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요컨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이므로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과세회피와 주식의 실명화제는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인기업이 약 20만개가 있고 그 중 국세청에서 가동중인 법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10만개 정도인데 그 중 92%가 주식회사입니다. 여기서 상장회사 700개사를 빼면 나머지는 전부 가족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법상 회사설립의 최소인원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이름을 빌립니다. 저만해도 돈 한푼 출자한 적이 없습니다만 서너개 회사의 주주로 되거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이 어디에 박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세무서에서 2차 납세통지가 오면

알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의 현주소가 이러한 실정이므로 주식의 실명제는 시의적절한 문제입니다. 이는 언젠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회사법과의 연계도 생각해야 하고 주식의 권리이전에 대해서도 고려할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을 교부했을 때 일단 당사자 양도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에 대한 대항력을 명의 개서해야 하는 등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많이 개재되기 때문에 관련 법적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세를 탈루할 수 있는 탈출구가 생겼습니다. 가령 주식의 양도를 제한받으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증권거래법에 의해 상장주식에만 인정되는 합병 등의 경우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제도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들 규정은 모든 법인에 다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를 상당분 줄일 수 있게 되므로 상법의 개정부분에 기인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말이 연대지 일종의 2차 납세의무입니다. 이로 인해 명의신탁자산의 경우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명의신탁자산의 경우 이를 다시 환원하더라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증자의 경우 자기에게 잠깐 거쳐간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증여세는 증여자자산의 담세력을 찾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환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과세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가문제의 경우 한두가지만 언급되었을 뿐인데 자산평가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배율방법의 경우 특정 지역에 있는 자산을 상속하면 배율방법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율방법은 투기지역에 대한 과세시 탄력적으로 대응하라고 만든 것인

데 이것이 현실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잘못 두어 투기지역에 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고 다행히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일반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우스운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기단속협의과세와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 투기단속협의과세를 실시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김면규 (서울지방 세무사회 부회장)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대폭적인 손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손질된 초안을 보니까 상속세법이 크게 발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속세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법 중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이 가장 많이 내려진 법률이 상속세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상속세법의 손질은 상속세법이 거시적으로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우자공제를 중심으로 한 각종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한 것이나 상속 후에 발생한 특별손실을 공제해 주는 조치 또, 공익법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거의 실효성이 없었던 이사취임 제한규정 등을 없애고 그대신 관리방법을 강화하여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조치 등은 평소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느껴 왔던 것으로 이번에 고쳐진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보면 어떤 유형의 탈세모델이 생겨납니다. 당연히 법률의 입안시 예상되는 탈세모델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탈세를 막느냐 하는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탈세를 하지 않은 선량한 납세자가 탈세를 억

제하는 규정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철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피상속인이 처분하고 죽어 버렸는데 상속인더러 입증하라고 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한다든가 채무도 법률에 정해진 금융기관의 채무 등만 공제해준다든가 또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세하고 부부간 매매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증여로 간주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거의 다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들 규정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부 특정인이 탈세한 모델이 생기니까 이것을 막는 데 집중한 나머지 선의의 피해자를 많이 발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시에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피상속인이 빚을 얻어 썼는데 빚을 얻어서 어디다 썼느냐고 묻고 상속인이 모른다고 하면 심지어 얻어 쓴 빚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무리한 규정은 서둘러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루에 평균 30여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는데 상속인들더러 입증하라는 주문이 떨어집니다. 제가 세무사인 까닭에 이같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늘 안타깝게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이것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완화해준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법이 되지 못하므로 이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을 없앨 명분은 충분합니다. 이 조항을 만들 때의 입법취지는 상속재산을 부동산에서 현금과 예금으로 바꾸어 상속해 주면 탈세가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금융자산에 대한 일괄조회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현금이나 예금에 의한 상속세 포탈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필요로 할 때 그 납세자의 예금상황을 볼 수 있게 되면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철폐시켜야 합니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현실을 보면 비상장기업의 주주가 실제로 출자한 사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의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개정안은 2년의 전환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어 유예기간 동안에는 약 10%를 더 과세하고 유예기간이 지났거나 법률의 통과 후에는 더 높게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최근의 일련의 움직임과 상치되는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금융실명제 도입시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실명제의 도입시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았습니까. 국세청이 조사하겠다는 것은 명의신탁의 진실성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지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주식실명제의 경우 일정한 전환유예기간 동안에는 과세를 하지 말아야 옳습니다. 실명으로 전환하는 주식에 대한 과세는 유인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 재고하기를 촉구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지금까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의 시점을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버린 부동산이나 주식이 없지 않습니다. 주식의 실명화를 유도하면서 이들 주식을 포함한 모든 실명전환주식에 대해 10%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속세 평가도 기준시가를 원칙적으로 하자고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제도 과거에는 실제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했다가 나중에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실제거래가액을 예외로 바꾸었습니다. 상속과세의 경우 원칙을 적용한 납세자가 3%에도 못 미치고 나머지 97% 이상이 예외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부조리나 부작용이 생깁니다. 따라서 상속제도 기준시가 과세를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시가라

고 하는 원칙은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실제거래가액보다 더 애매한 개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거래가액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지만 시가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애매하여 어찌다가 어떤 사람이 감정을 실시하거나 매매할 경우 감정가액이나 실액에 근거하여 과세될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전체 납세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 내지 5% 정도입니다. 이들만 이 시가로 과세되고 나머지가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불공평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1990년에 공시지가가 생기기 전에는 기준시가라는 것이 있었는데 매우 낮아 시가의 10분의 1이나 10분의 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시지가가 생기고 나서 시가에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시가보다 높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시가와와 큰 갭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삼고 예외적인 경우 가령 채무가 담보된 경우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등에만 시가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시가는 1억원인데 채무로 2억원을 얻어 쓴 경우에는 최소한 채무액까지를 시가로 보는 예외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 평소에 느껴왔던 것 중 꼭 얘기하고 싶었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송쌍중 (서울시립대 교수)

상속·증여세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채 못된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상속세가 자신의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상속세를 염두에 두는 계층은 일부 계층이라는 전제하에서 제도를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학교의 월급은 사립대학보다 적은 연간 4천만원 수준인데 이는 몇 년 전 국세청이 발표한 고소득층의 소득수준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재벌그룹 사장님들의 하루 소득 밖에 안됩니다. 한달치가 아니고 하루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에는 특급에 속하는 월 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포함해 일부 고소득층을 빼놓고는 배우자 공제를 10억원보다 크게 올리고 다른 공제도 늘려 상속·증여세를 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걱정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윤 교수가 적절히 지적하셨지만 오늘 제시된 개정안의 대부분은 극소수의 고소득계층 내지 고액재산가를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를 논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현행 제도하에서 보다 세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상태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행 제도 가지고도 거의 충분하다고 할 만큼 많은 공제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공제수준도 결코 낮지 않으며 그 결과 세수가 너무 적게 징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볼 경우 너무 파격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재정경제원안인지 한국조세연구원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내년 선거하고 함수관계는 없는 것인지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까지 상속세법은 너무 고압적이고 행정국가가 국민에게 재정관련 정책을 하달하는 낡은 사고방식에 입각해 운영되어온 제도였습니다. 이제 50년만에 개정되려는 시점에 있습니다. 부과주의이면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하는 고압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도의 상당부분이 정비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에는 대체로 찬동하는 입장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과 세형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에 대해 현행 제도가 좋다,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양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절충적인 내용의 안은 개정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일본과 같은 제도로 따라가면 어떠한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 일본제도를 모방하는 것은 피하자는 생각이 근거에 깔려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조세제도가 무비판적으로 일본제도를 답습한 것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모자이크하거나 약간 비틀어 도입하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대부분 어떤 유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행 법제도의 실상입니다. 본인은 상속세과세유형을 일본식인 유산취득과세형으로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배우자상속·증여공제의 경우 솔직히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공제수준인 10억원을 배우자가 자기 몫으로 활용한다고 할 경우 은행에 예금하면 매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깁니다. 이것을 배우자가 모두 소비한다고 해도 원금은 남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금의 가치는 줄어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진대 공제수준을 30억 원까지 올려주자 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상공회의소 엄 이사가 지적하신 주택상속공제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폐지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나와 있는 영농, 어업, 임업후계자에 대한 공제제도의 존치와 비교해 가업상속제도의 폐지는 형평성을 잃은 조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폐지하기보다 조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속세법으로 들여와 영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업을 잇는 예가 적고 전통산업이 무시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

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용하는 예가 적어서 폐지하자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장려하는 의미에서 기업상속제도는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괄공제제도가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만 미성년자를 별도로 취급하자는 내용이 제2안에 나와 있는데 본인은 미성년자를 별도로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제도의 경우 용어문제를 차지하면 개정안에 나와 있는 2년에 한번은 너무 잦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에 1번이나 5년에 1번 정도로 시작하고 나중에 연한을 단축하는 방향이 원만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바보세” 곧 바보만 내는 세금이지 똑똑한 사람은 내지 않는 세금이라는 말을 안들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무행정에 관한 개선책이 현재 안보다 좀더 세밀하게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납세자와 일부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만 세무행정력을 투입하고 잠재적 납세자를 세무행정에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배세제도가 있었을 때 배세대상에 상속·증여세가 안들어간 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사각지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관련 세무행정을 대폭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증여의 상속재산 합산기간을 5년으로 할 것인지 7년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7년의 경우 너무 길므로 현행의 5년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방법에 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평가방법에 대해 불만이 많으실 줄 압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해서는 좀더 현실성이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는 비상장주식이 고평가되어서 상장주식에 비해 과세상 불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금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석토론〉 : 정응선(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상속세제는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될 뿐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에서도 합리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수용의지를 보이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율구간에 있어 정부안은 4단계로서 최고구간이 10억원인데 최고세율구간은 적어도 100억원으로 하고 최고세율도 50% 정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에 있어서는 제2안에 찬성합니다. 다만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유류분상당액을 공제한다고 하는데 유류분은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밖에 안됩니다. 상속 당시 분할이 되어 더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공제방법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법인 관리방안에 있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회계감사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련 감정 혹은 감사업무는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세무사가 참여할 때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과세 실효성문제에 있어서 법시행일 이후 새롭게 명의신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개시 2년내 처분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경우 입증자료 등 충분한 객관적인 증빙을 해야 하는데 실무차원에서 보면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개산공제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보설정에 대한 평가는 담보채권금액이 평가와 일치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를 폐지하고 기준시가 평가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포괄적인 과세가 기술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포괄적인 과세방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의 도입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과 출자지분 평가에 있어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배주식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배주식의 범위를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식으로 한정시켜 할증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실효성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그의 친족이 사용, 수익을 얻는 경우에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영화(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통합문제를 거론하면서 많은 토론자분들이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현재의 유산세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고 증여세의 경우는 수증자별로 과세하면서 현

재 5년내 증여자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과세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볼 때 5년씩 나누어도 최소한 6번은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세율을 통합하면 증여세를 통한 상속세 회피가 지금보다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우선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겠지만 납세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세율통합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에 담겨진 외부회계감사제도의 경우 세무조정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세무조정이 수반되므로 세무조정과 외부회계감사의 문제를 둘러싸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만 외부감사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지금까지 비영리 공익법인의 세무조정을 하던 세무사의 경우 업무영역을 침해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제도, 외부감사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이들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득세가 금년부터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에게는 자율신고납부를 강조하면서 세무사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관리하겠다는 신문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세무사가 설 땅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제로 가는 것은 좋지만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게 될까 우려되는 바가 큼니다. 부동산·금융실명제 등이 모두 실시되었으니까 신고납부제도로 가는 전제로서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자료를 사망개시 후 납세의무자에게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이내에 제공해 주어 상속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자기가 신고해야 될 자산이 어느 재산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잘 정비되어 있는 국세청의 자료

를 상속인들에게 제공하여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동래(유한양행 상임감사)

우리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부의 사회환원을 이룩한 기업입니다. 때문에 우리 회사의 지분 중 1% 이상의 개인 지분은 전혀 없으며, 특히 창업자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분의 분포상황을 보면 공익법인인 유한재단이 23%, 학교재단이 약 12%, 연세대학이 약 5%, 그리고 기타 공익법인 등이 상당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회사의 주식은 45% 내지 50%에 이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3년 이내에 5% 이상의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경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M&A의 주요 대상회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론석상에서 기업 경영력의 약화를 들어 반대의견을 밝혀주신 상공회의소 엄 이사, 소급입법의 문제점과 과세기술상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해주신 신찬수 회계사 그리고 강인애 변호사께서도 반대 입장을 밝혀주셨으므로 이 문제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의 사례를 들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년 이내 처분을 강행할 때에 시장에 물량이 다량으로 나돌아 주가가 상당히 낮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같은 사항이 관계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회사의 경우 주가가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 보유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개인 주주들의 경우도 주가하락으로 피해가 3년 혹은 수년

간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 위반할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액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무엇을 잘못하여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 회사는 공익법인 출연과 관련해 수익의 80% 이상을 목적사업에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 공익법인에서 나오는 수익의 100%를 썼습니다. 그리고 50%를 쓰라고 규정이 완화되었을 경우에도 우리는 100%를 썼습니다. 또 앞으로 50%로 내린다고 해도 우리는 100%를 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회사는 그동안 항상 수익의 100%를 목적사업에 다 써 온 기업으로 세법상 지켜야 될 것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을 주면서 위반여부를 논하겠다는 개정안을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5%만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은 기업의 경우 M&A의 대상이 되어 경영권이 다른 재단이나 관련없는 어딘가로 넘어가리라고 전망됩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부의 사회환원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제2, 제3의 유일한씨가 앞으로도 나와야 할 터인데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대대손손 물려주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보다 소망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사같은 기업이 제1차적인 M&A의 대상기업이 되어서야 제2, 제3의 유일한씨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5% 제한규정에 대해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철용 (동암합동회계사무소)

상속세법의 올해 개편방향은 상속세법 자체만 두고 볼 때는 썩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법을 소득세법과 비교해 보면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1996년 세법에 의하면 소득세 최고 세율이 40%로 상속세 최고세율과 같은데 과세구간은 8천만원을 초과하면 4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열심히 일해 번 소득은 8천만원만 넘어가면 40% 세율로 과세하면서 힘들이지 않고 번 소득인 증여에 대해서는 엄청난 공제를 해 주고, 게다가 아주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나 공평과세의 입장에서 크나큰 불균형을 야기시킨다고 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소득세법의 과세구간을 상속·증여세법의 과세구간에 맞추어 늘려주든지 상속·증여세의 과세구간을 축소조정하든지 정합성을 갖춘 개정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상속세법 개편안의 정당성은 크게 약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승남 (경인지방국세청)

제가 실무에서 접하는 상황과 개정시안을 검토해 볼 때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입니다. 현재

주식의 차명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 의무 회피,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 그리고 주식의 과점주주에 대한 재산세 중과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속주식이나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는 긴급명령에 의해 실명거래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실명거래의 가부에 대해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상속세법 개정 시안에 동 규정을 집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한 주식에 대해 특례세율 10%의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차명으로 주식거래시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명으로 전환한 주식에까지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명등기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실명제라는 긴급명령 등에 의해 실명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본건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은 정책당국이 실명화 유도정책을 망치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과거 세무당국이 정확한 실례를 파악하지 못해 신탁시점에서 과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던 것을 금년도에 실명전환분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은 소급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 실명전환과정을 통해서 사실과 다르게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하고서 명의신탁을 환원했다고 위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세무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의신탁제도를 잘 규제하면 기업이 살아있는 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계속적으로 과세될 것이고 상속시점에서도 실명전환 주식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유예기간까지 실명화하지 않거나 새롭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근거를

신설한다는 내용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부의 회피나 부당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초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과세제도 폐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정하여 과세하겠다고 규정하는 마당에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는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과세사안이고 과세물건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는 주식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인데 어떻게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정준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이사)

상장회사와 관련된 지배주식 할증평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시각으로 할증평가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가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상장회사의 지배주식은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식과 성격이 판이하다는 것입니다.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식은 지배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경영권이 상실되는 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영권은 항상 지배주식과 함께 따라 다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회사의 지배주식은 실질적으로 제일 대주주의 지분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이 제일 대주주의 지분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경영권의 변동 없이도 대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되어 변경신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M&A가 활성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M&A로 하루 아침에 경영권이 이동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상속이 이루어질 때 상속인의 이탈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도 경영권이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할증평가라고 하는

것은 경영권의 지속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경영권의 지속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장회사의 지배주식에 대해서까지 할증평가를 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정리〉

이 근 경(재정경제원 재산소비세심의관)

지금까지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느낀 소감은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50년에 상속세법을 만든 이후, 소규모 개편을 해오다가 이번에 대폭적인 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전면 개편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상속세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조정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지 모릅니다. 저는 상속세법을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을 연초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조세연구원의 세 분의 박사님들과 관련 분야의 교수님들과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는 8명의 작업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팀에서 그동안 작업을 해왔고 오늘 작업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작업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모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그간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상속세법은 큰 폭으로 개정되어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같은 맥락에서 우리들이 법 개정을 서두른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법을 개정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속세가 바보세로서 제대로 걷어야 할 세제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상속세를 제대로 된 세제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로 현행 상속세가 중산층을 파괴하는 세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산층의 생활기반을 유

지시켜 주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세부담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동기에서 출발하여 개정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여러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속세법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상속세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거대한 부의 이전을 상속세법 하나로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법이 부의 세습과정에서 세금없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 주지만 세습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상속세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같은 상속세법의 한계 때문에 생존시의 부의 형성과정과 부의 이전단계에서 철두철미한 과세가 행해지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에게 거대한 부가 집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중산층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매년 사망자가 30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상속세과세 대상자는 3천명 정도입니다. 3천명 중에서 23%인 700명이 납부세액의 90%를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억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전체 세금의 90%를 내고 2,300명은 10억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들이 상속·증여세에 대해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경감해 주면서 과세기준을 명확하고 단순화하여 심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세금경감이 30만명에서 과세되는 3천명을 제외한 29만 7천명의 가족들이 상대적인 불공평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상속세를 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사실에서 설명해보면 많은 기자들이 나도 상속세를 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분포도를 감안해 보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지장을 주거나 심적불안을 안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세계를 단순화하고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토론자들과 방청석에서 제시해 준 의견들은 서로 상반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의견들은 상당부분 근접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견의 합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상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좀더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의 최종적인 결정은 7월 내지 8월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안이 발표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작업반을 대표하여 간단히 응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의 선택문제입니다. 우리 작업반에서도 취득세형으로의 전환을 신중히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장기 과제로 추진토록 하고 당분간은 유산세형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세율과 과표구간 문제입니다. 최고세율의 과표구간이 안에 따르면 6억, 8억원과 10억원입니다만 최고 계급의 과표구간을 가령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여 적용세율을 현행세율인 40%에서 50% 내지 60% 정도로 상향조절하는 안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주요국의 최고 세율을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미국이 55%, 일본이 70%일뿐 나머지 국가들은 35%에서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행 40% 세율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다만 현행 세율체계를 유지하면서 과세구간은 다소 확대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는 배우자 공제제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들의 배우자 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는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연수×1,20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고액자산가 계층을 대상으로 10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이 공제액에 대해서는 상속후 배우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거나 상속세액의 50%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개정방향은 배우자간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비과세폭을 확대해 주고 잔존배우자가 사망할 때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한 의문점은 잔존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사망시에 제대로 과세가 되겠느냐? 잔존기간 동안 많은 재산들이 현금화되어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우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상속재산의 90%를 접하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되고 상속받은 후 부동산을 매도하면 잔존배우자의 부동산 보유기간이 얼마 안되므로 양도차액이 작거나 거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세 부담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게 되므로 배우자공제의 폭을 확대하면 이 조치가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완장치로서 이월승계 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작업팀의 배우자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세대간 이전, 혹은 합산과세부분의 단일 경제단위로의 간주 등의 문제보다 유산세의 세계적인 조류에 맞추어 배우자간 이전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시켜 나가고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잔존배우자가 사망할 때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차명주식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토론자들께서 찬성을 해 주셨지만 방청객 중 일부 분들께서는 반대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상법상 주주 수는 7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3명입니다. 과거에는 7명을 맞추기 위해서 가짜 주주를 주주명부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3명으로 줄여 놓았기 때문에 실제 주주로 맞춰 주어야 하는데 증여

의제과세가 무서운 것입니다. 40% 세율 적용금액이 몇억원만 되어도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실제 소유자명으로 주주명부를 바꾸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은 일정한 기간을 주어 최저세율로 과세하면서 실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자는 것이 한 가지 의도이고 다른 한 가지 의도는 여전히 실명으로의 전환을 기피하려는 이들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의제과세제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행의 증여의제과세가 가능하려면 조세회피목적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조세회피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과세할 경우 법원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명의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부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명전환에 따른 유예기간을 준 다음 여전히 실명으로의 전환을 기피하는 이들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의제과세제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의 소송에 있어서도 조세회피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두 가지 취지에서 안을 마련했습니다만 토론자 중 어느 분이 지적하신 주주명부 부실기재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지배주식 할증평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양도로 경영권이 이전될 정도의 대규모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시세 외에 거액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우리들은 이같은 거래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단계 작업으로 우선 20%의 범위 내에서 할증평가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들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평가율을 낮추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규모에 따라 할증평가율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프리미엄 측정이 쉽지 않다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기해 주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차등화하는 문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차등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상 형평과 실천 가능성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섯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신 문제의 하나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표구간 통합으로 증여에 대한 변칙적인 과세가 시정되었는바, 이것이 바람직하냐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으로 증여가 상속과 동일한 세법상 대우를 받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세에 있어서는 많은 공제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증여세에 있어서는 현행의 공제가 별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1억원의 증여시 3천만원을 공제하고 7천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로 과세하므로 700만원의 납세액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의 증여분을 합산과세하고 증여공제가 3천만원에 불과하므로 상당부분 과세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공익법인에 대한 5%의 초과 주식에 대해서 우리는 1993년 이전의 5% 초과주식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더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하나의 공익법인인 한 그룹 전체의 계열기업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개별기업 단위로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계열기업이 30개 있는 그룹의 경우 공익법인은 30개 기업의 각 개별기업당 5%의 주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상당수 공익법인의 실태를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공익법인에 있어 처분해야 하는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계열사 주식으로 바꾸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이 공익법인에게 무리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토론자가 특별히 지적하신 바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유한양행과 같은 경우라든가 공익법인의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선의의 공익법인들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초과주식에 대해서는 시가에 따라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우리들의 시안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초과 주식의 금액이 클 경우 증여세를 최고 세율인 40%가 적용되어야 합니다마는 과거에 허용되었던 사항에 대한 규제 강화조항임을 감안하여 세율을 낮추어 20%로 결정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부 토론자께서 소급입법의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인 까닭에 우리들도 작업과정에서 변호사들과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소급입법이 문제되는 것은 공지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20% 세율로 과세하던 사안에 대해 금년의 바뀐 세율 30%로 다시 계산하여 과세를 하는 경우에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된 사실입니다. 5% 초과주식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의무부과이기 때문에 자문에 응한 변호사에 의하면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덟번째는 금융공제 관련사항입니다. 우리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금융자산공제, 즉 금융자산의 2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주는 조치(8천만원 한도 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 규정은 금융자산 보유를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파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치중된 자산보유 관행을 바꾸어 금융자산 보유를 선호토록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항구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고 금융자산 신화를 만들어 가자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고액자산가 계층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자산가액 4억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4억원의 20%인 8천만원을 공제한도액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액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 제도는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동산과 비교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핸디캡을 축소하여 일정 수준의 금융자산 보유를 촉진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홉번째는 상속간주제도입니다. 그동안 2년 이내 1억원 이상 처분한 경우 처분내용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을 처분한 경우로 완화하여 처분내용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동일 통장 내에서 운영되므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 이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세회피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현실적인 제약하에서 적용대상을 크게 좁혀 효과적인 집행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작업팀이 금번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중산층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안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산가액 10억 이하의 상속가족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고액재산계층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납부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강화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

니다. 이보다는 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단순하고 명료한 상속세제와 세무행정상의 불투명요소를 줄여 헛점 투성이던 상속과세와 세무행정을 조금은 케도에 올려 놓자는 것이 이번 개정에 대한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지나치게 저평가된 금액을 토대로 하여 과세하던 것을 현실에 가까운 금액을 토대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라든가 고액자본가 계층을 통한 상속세과세 회피 노력을 방지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의 추가, 과세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의 포괄주의 도입, 금융자산의 일괄조회 부활, 그리고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과세 강화 등의 조치가 이같은 개정의 취지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금번의 제도 개편이 단기적으로 세수를 상당수준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과세 형평성을 제고시키면서 과세기반을 확충시켜 세수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배제시켰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토론자와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제기해주신 의견들 중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 있는 지적을 적극 수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의 경우 최종안의 마련 작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정리〉

최 광(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 언젠가는 죽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세금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그리고 지금은 조세연구기관의 책임자로서 일하고 있는 몸입니다. 제가 전공을 바꿔서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또 한국조세연구원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세금이 없는 상태가 더 좋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는 한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일부 국민이 세금을 피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이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상속세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이 실제로 다수 있습니다만 그들도 간접세로 일컬어지는 많은 세금을 모르는 가운데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세제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합리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수준에서의 합리화를 말합니다. 합리적인 세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외계인이 와서 우리 세제를 만들어 줄리도 만무하고 또 선진국의 어느 누가 와서 이런 세제가 좋다고 만들어 줄리도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에게 맞는 세제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예외에 속한다고 봅시다마는 담세자들 중 우리의 세금문제를 이해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극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안의 개정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정부안은 정치적인 조정과정을 거칩니다. 정치적인 과정의 불투명함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비난을 해왔고 또 정치적인 의사결정 자체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주어진 현실 내에서 우리에게 맞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재정경제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이 공청회를 마련한 것은 이와 같은 작업의 시작(just beginning)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제는 서른 하나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상속세제가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될 세법개정안 중 개편 폭이 큰 세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들간에는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같은 다양한 목소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세제를 가꾸어 나가면 완벽한 세제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경제수준과 우리 사회의 정서에 맞는 세제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경제는 1인당 소득이 1만달러 수준에 이르렀고 경제규모는 세계 10대국에 들어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제를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부심에 걸맞는 세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배출되어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토론문화가 활발해진 것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같은 주변환경을 잘 살려 국민다수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고 또 국회를 통과하여 후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상속세법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해 주신 한상국 박사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들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